

주요국과의 농업부문 FTA 추진 현황과 전망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어 명 근 선임연구위원
김 태 훈 부연구위원
정 대 희 초청연구원

연구 담당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 페루, 터키, 러시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집필
어 명 근	선임연구위원	중국, MERCOSUR, 캐나다 집필
정 대 희	초청연구원	GCC 집필, 자료정리

머 리 말

우리나라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거대경제권, 차세대 세계경제 주도국, 자원부국 등을 대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타결하였거나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모두 54개국에 달한다. 1999년 칠레와 FTA 협상을 개시한 이래 10년간 16개국과 FTA를 타결하였고, 38개국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이 타결된 16개국 가운데 ASEAN 10개국 및 미국은 거대 경제권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 비중도 높다. 나머지 5개국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과 칠레이다.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38개국 가운데에는 유럽연합(EU) 27개국과 걸프협력회의 6개국(GCC)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33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은 인도, 캐나다, 멕시코, 일본, 페루 등이다. 협상이 추진되고 있는 주요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터기, 남미공동시장(MERCOSUR) 4개국, 러시아, 중국 등이다.

이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등 취약산업에 대한 대내외 협상전략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협상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양허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향후 협상이 예상되는 국가들에 대한 협상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타결되지 않은 FTA 협상 대상국별 농업 및 농산물 교역 동향, 우리나라와의 교역, 그리고 협상 추진 동향과 향후 쟁점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가 FTA 관련 연구 및 협상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2009.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요 약

우리나라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거대경제권, 차세대 세계경제 주도국, 자원부국 등을 대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거대경제권 국가 가운데 미국, EU, ASEAN 등과의 협상은 이미 타결되었고, 일본과의 협상은 진행되고 있다. 차세대 세계경제 주도국으로 예상되는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미공동체(MERCOSUR) 등도 우리나라의 주요 FTA 대상국이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의 FTA 체결을 위해서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과의 FTA를 추진 중에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협상을 추진 중인 국가의 농업 및 농산물 무역 현황,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관세 수준 등을 분석하고,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농업부문에서 민감하게 다루어야 할 품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는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바레인, 카타르, 러시아, 터키 등 19개국이다. 보고서는 협상 중인 국가로 제1부를 구성하였으며, 협상을 추진 중인 국가들은 제2부에서 다루었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민감품목으로 고려해야 할 농산물은 곡물 가운데 쌀을 제외하면 보리와 감자가 가장 많은 국가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와의 협상에서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일 가운데에서는 오렌지와 포도가 가장 주목해야 할 품목이며, 사과와 키위도 경쟁이 심한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과일 가운데 배와 복숭아는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소와 과채류 가운데에서는 고추, 양파, 토마토의 민감도가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축산물의 경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협상에서 주의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걸프 연안 6개국이나 우루과이, 파라

과이 등의 일부 남미 국가들 같이 FTA로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낮은 국가도 있다.

쿠웨이트를 제외하고 농산물 평균 관세율(양허관세 기준)이 우리나라 (63.2%)보다 높은 경우는 없다. 평균 관세율이 대체로 높은 나라는 터키 45.8%, 러시아 30.4%, 페루 30.4%, 남미공동체 4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바레인 37.9%, 쿠웨이트 100% 등이다. 러시아, 걸프 연안 국가, 남미 국가 등 관세율이 높은 국가들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별 주요 경제지표와 FTA 영향평가는 다음 표와 같다.

표. FTA 대상국별 협상 관련 지표(2006년 기준)

	단위	한국	페루	터키	멕시코	캐나다
인구	1,000명	48,297	27,588	73,921	105,342	32,576
국토면적	1,000ha	9,968	128,522	78,356	196,438	998,467
경지면적	1,000ha	1,800	4,310	26,606	27,600	52,110
GDP	백만 달러	887,400	93,269	402,710	839,182	1,251,463
총수출	백만 달러	325,465	23,765	85,526	249,961	388,091
총수입	백만 달러	309,383	15,312	138,581	256,086	349,906
농산물수출	백만 달러	3,395	1,804	6,065	12,757	23,019
농산물수입	백만 달러	16,101	1,634	5,347	15,833	19,208
대한국 농산물수출	백만 달러	-	12.71	29.88	40.26	443.20
대한국 농산물수입	백만 달러	-	0.24	3.80	2.41	25.02
농산물 평균과세율	%	63.2	30.4	45.8	25.2	4.5
민감품목		-	쌀, 감자, 포도, 양파, 고추, 닭고기	감자, 보리, 오렌지, 포도, 복숭아, 고추, 양파, 토마토	고추, 오렌지, 포도, 잎담배, 천연꿀, 참깨, 마늘, 토마토, 돼지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낙농품, 보리
협상단계 (2009.03 현재)		-	2차협상 추진 중	공동연구 단계	2차협상 개최	실무자급 회의추진 중
예상영향		-	소	소	소	소

(표 계속)

	단위	러시아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구	1,000명	143,221	1,314,480	127,953	20,530	4,139
국토면적	1,000ha	1,709,824	959,809	37,791	774,122	26,771
경지면적	1,000ha	123,581	130,039	4,692	49,742	3,406
GDP	백만 달러	986,940	2,700,462	4,340,133	768,178	103,873
총수출	백만 달러	301,551	968,936	646,725	123,323	22,409
총수입	백만 달러	137,728	791,461	579,064	132,651	26,424
농산물수출	백만 달러	4,365	31,030	2,028	20,870	10,868
농산물수입	백만 달러	19,060	31,990	42,120	5,599	2,093
대한국 농산물수출	백만 달러	194.39	2,199.15	212.72	1,656.88	697.47
대한국 농산물수입	백만 달러	207.47	259.45	651.06	54.48	13.89
농산물 평균과세율	%	30.4	11.7	4.8	6.9	4.6
민감품목		보리, 감자, 사과, 포도, 토마토, 양파	쇠고기,합판, 마늘,김치, 대두,고추, 쌀,전분박, 사과,감귤, 배,인삼, 돼지고기, 닭고기, 토마토, 포고버섯, 감자	쌀, 사과, 감귤, 녹차, 낙농품	쇠고기, 낙농품, 감자, 양파, 맥류, 오렌지	쇠고기, 낙농품, 키위, 체리, 사과,녹용
협상단계 (2009.03 현재)		경제동반자 공동연구그룹	산관학 공동연구5차	중단 (협상재개 실무협의)	2009년 하반기 2차공식 협상예정	2009년 상반기 1차공식 협상예정
예상영향		소	대	소	중	중

(표 계속)

	단위	남미공동체(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인구	1,000명	39,134	189,322	6,015	3,331
국토면적	1,000ha	278,040	851,488	40,675	17,622
경지면적	1,000ha	29,505	66,600	4,298	1,412
GDP	백만 달러	214,058	1,067,962	9,110	19,308
총수출	백만 달러	46,423	137,806	1,906	3,952
총수입	백만 달러	34,160	91,343	5,879	4,775
농산물수출	백만 달러	19,620	34,594	1,479	2,209
농산물수입	백만 달러	1,062	4,686	364	433
대한국 농산물수출	백만 달러	290.50	600.92	5.51	20.43
대한국 농산물수입	백만 달러	2.20	2.45	0.36	0.70
농산물평균 과세율	%	29.5	31.0	33.7	30.3
민감품목		대두유, 치즈, 섬유관	대두, 오렌지, 잎 담배, 커피, 닭고 기, 대두유	-	-
협상단계 (2009.03 현재)		공동연구결과발표			
예상영향		소	중	소	소

(표 계속)

	단위	걸프협력회의(GCC)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구	1,000명	738	2,778	2,546	821	24,174	4,248
국토면적	1,000ha	71	1,782	30,950	1,100	214,969	8,360
경지면적	1,000ha	6	154	105	21	3,710	255
GDP	백만 달러	12,914	80,781	24,284	42,463	309,778	129,702
총수출	백만 달러	11,662	-	21,586	34,051	211,306	142,505
총수입	백만 달러	8,957	-	11,038	16,440	69,800	97,864
농산물수출	백만 달러	46	45	318	13	1,449	1,516
농산물수입	백만 달러	503	1,609	1,088	802	8,638	6,868
대한국 농산물수출	백만 달러	-	0.00	0.10	1.18	19.46	0.15
대한국 농산물수입	백만\$	0.28	1.55	0.24	1.58	10.85	124.99
농산물평균 과세율	%	37.9	100.0	18.8	18.2	9.8	17.8
민감품목		-	-	-	-	-	-
협상단계 (2009.03 현재)		3차 협상 예정					
예상영향		소	소	소	소	소	소

주: 오만을 제외한 GCC 국가들의 GDP는 2005년 자료임. 단 오만은 2004년 자료임
 자료: 농림업주요통계,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외교통상부 FTA정보 <<http://www.fta.go.kr>>, FAO STAT <<http://faostat.fao.org>>,
 UNdata <<http://data.un.org>>

ABSTRACT

Effects of FTA negotiations with important countries on Korean Agriculture

Under the aim to construct global FTA networks, South Korea has been leading the FTA negotiations with countries, such as ones in enormous economic blocs, economic leading countries in the next generation, and nations with rich resources. Among the negotiations with countries in enormous economic blocs, those with the United States, the EU, and ASEAN have been already concluded. Moreover, those with Japan is under progress. Those with predicted economic leading countries in the next generation, such as China, India, Brazil, Russia, and MERCOSUR are also under a careful consideration. Those with countries holding rich resources, such as Gulf Cooperation Council (six states of GCC), Australia, New Zealand, and Peru, are also under progress.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agricultures and the present trade status of agricultural products, trade relations with Korea, and tariff conditions of countries which have been proceeding FTA negotiations with Korea. Furthermore, it attempts to scrutinize the sensitive items in agricultural sector, which Korea should pay a careful attention to. The nineteen countries - China, Japan, Australia, New Zealand, Canada, Mexico, Peru, Brazil, Argentina, Uruguay, Saudi Arabia, Kuwait, the United Arab Emirates, Oman, Bahrain, Qatar, Russia, and Turkey - are chosen to be assessed. The chapter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chapter for countries which Korea is under negotiation, and the second chapter for ones which Korea is under progress.

Under the FTA negotiation with China, it appeared most of agricultural products to be treated as sensitive items. For the negotiations with other countries besides with China, it appeared barley and potato, when rice is excluded, to have correlation with most other countries among agricultural products which should be considered as sensitive items. It is also analyzed that soybean should be treated as sensitive item with some other countries. In Brazil, shoungentinag agricufruits, orangen shograph should be paid the

greatest attention, and apples and kiwifruit can be also classified as competitive items. Additionally, it is projected that the level of sensitivity will be lower regarding pears and peaches. Regarding agricultural products, it showed that hot pepper, onion, and tomato will be treated with extreme sensitivity. Furthermore, agricultural negotiations with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stockfarm products will require extra attention. In contrast, for other countries besides the above, it is or some Latin American countries, which have a low possibility to cause additional damage to Korean agricultural sector through the FTA negotiation.

Except for Kuwait, there was no such case where average tariff rate of agricultural products (based on tariff concession) was higher than that of Korea. The countries with relatively high tariff rates are: Turkey 45.8%, Russia 30.4%, Peru 30.4%, four states of MERCOSUR (Argentina, Brazil, Paraguay, Uruguay), Bahrain 37.9%, and Kuwait 100%. It is assumed that the chances for us to export a greater amount will be possible when the countries with high tariff rates, such as Russia, states of GCC, and Latin America, abolish their tariff. The significant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listed as below;

Table. Index of Countries under the FTA negotiations with Korea(2006)

	Unit	Korea	Peru	Turkey	Mexico	Canada
Population	1,000 persons	48,297	27,588	73,921	105,342	32,576
Country Area	1,000ha	9,968	128,522	78,356	196,438	998,467
Arable land and Permanent crops	1,000ha	1,800	4,310	26,606	27,600	52,110
GDP	million\$	887,400	93,269	402,710	839,182	1,251,463
Total Export	million\$	325,465	23,765	85,526	249,961	388,091
Total Import	million\$	309,383	15,312	138,581	256,086	349,906
Agri-Export	million\$	3,395	1,804	6,065	12,757	23,019
Agri-Import	million\$	16,101	1,634	5,347	15,833	19,208
Agri-Export to Korea	million\$	–	12.71	29.88	40.26	443.20
Agri-Export from Korea	million\$	–	0.24	3.80	2.41	25.02
Average Agri-Tariff	%	63.2	30.4	45.8	25.2	4.5
Sensitive Products		–	rice, potato, grape, onion, red pepper, chicken meat	potato, barley, orange, grape, peach, onion, red pepper, tomato	red pepper, orange, grape, leaf tobacco, natural honey, sesame, garlic, tomato, pig meat, cattle meat	pig meat, cattle meat, dairy products, barley
Negotiation stage		–	The Second round of negotiation to be held	in the process of cooperative research	The second round of negotiation to be held	Working level discussion
Expected effect		–	small	small	small	small

(table continue)

	Unit	Russia	China	Japan	Australia	New Zealand
Population	1,000 persons	143,221	1,314,480	127,953	20,530	4,139
Country Area	1,000ha	1,709,824	959,809	37,791	774,122	26,771
Arable land and Permanent crops	1,000ha	123,581	130,039	4,692	49,742	3,406
GDP	million\$	986,940	2,700,462	4,340,133	768,178	103,873
Total Export	million\$	301,551	968,936	646,725	123,323	22,409
Total Import	million\$	137,728	791,461	579,064	132,651	26,424
Agri-Export	million\$	4,365	31,030	2,028	20,870	10,868
Agri-Import	million\$	19,060	31,990	42,120	5,599	2,093
Agri-Export to Korea	million\$	194.39	2,199.15	212.72	1,656.88	697.47
Agri-Export from Korea	million\$	207.47	259.45	651.06	54.48	13.89
Average Agri-Tariff	%	30.4	11.7	4.8	6.9	4.6
Sensitive Products		barley,potato, apple,grape, tomato,onion	cattle meat, plywood board, garlic,kimchi, soybean, red pepper, rice,starch, apple,mandarin, pear,ginseng, pig meat, chicken meat, tomato, pyogo mushroom, potato	rice,apple, mandarin, green tea, dairy products	cattle meat, dairy products, potato, onion, sorts of barley, orange	cattle meat, dairy products, kiwi, cherry, apple, deer antlers
Negotiation stage		CEPA Joint Study Group	The fifth joint study	discontinuance (Working level discussion to resume negotiations)	The first round of negotiation to be held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year 2009	The first round of negotiation to be held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year 2009
Expected effect		small	big	small	medium	medium

(table continue)

	Unit	MERCOSUR			
		Argentina	Brazil	Paraguay	Uruguay
Population	1,000 persons	39,134	189,322	6,015	3,331
Country Area	1,000ha	278,040	851,488	40,675	17,622
Arable land and Permanent crops	1,000ha	29,505	66,600	4,298	1,412
GDP	million\$	214,058	1,067,962	9,110	19,308
Total Export	million\$	46,423	137,806	1,906	3,952
Total Import	million\$	34,160	91,343	5,879	4,775
Agri-Export	million\$	19,620	34,594	1,479	2,209
Agri-Import	million\$	1,062	4,686	364	433
Agri-Export to Korea	million\$	290.50	600.92	5.51	20.43
Agri-Export from Korea	million\$	2.20	2.45	0.36	0.70
Average Agri-Tariff	%	29.5	31.0	33.7	30.3
Sensitive Products		soybean oil, cheese, texture	soybean, orange, leaf tabbaco, coffee, chicken meat, soybean oil	-	-
Negotiation stage		publish the results of joint study			
Expected effect		small	medium	small	small

(table continue)

	Unit	GCC					
		Bahrain	Kuwait	Oman	Qatar	Saudi Arabia	United Arab Emirates
Population	1,000 persons	738	2,778	2,546	821	24,174	4,248
Country Area	1,000ha	71	1,782	30,950	1,100	214,969	8,360
Arable land and Permanent crops	1,000ha	6	154	105	21	3,710	255
GDP	million\$	12,914	80,781	24,284	42,463	309,778	129,702
Total Export	million\$	11,662	–	21,586	34,051	211,306	142,505
Total Import	million\$	8,957	–	11,038	16,440	69,800	97,864
Agri-Export	million\$	46	45	318	13	1,449	1,516
Agri-Import	million\$	503	1,609	1,088	802	8,638	6,868
Agri-Export to Korea	million\$	–	0.00	0.10	1.18	19.46	0.15
Agri-Export from Korea	million\$	0.28	1.55	0.24	1.58	10.85	124.99
Average Agri-Tariff	%	37.9	100.0	18.8	18.2	9.8	17.8
Sensitive Products		–	–	–	–	–	–
Negotiation stage		The third round of negotiation to be held					
Expected effect		small	small	small	small	small	small

Note. GDP of GCC countries are based on the data in 2005, except for Oman, which is extracted from 2004.

Source: Significant statistical data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forestry,

Korea Agricultural Trade Corporation <<http://www.kati.net>>,

Information of FTA i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http://www.fta.go.kr>>,

FAO STAT <<http://faostat.fao.org>>, UNdata <<http://data.un.org>>

Researchers: Sei-Kyun Choi and Myong-Keun Eor and Dae Hee Chung

Research period: 2008. 9. - 2009. 3.

E-mail address: skchoi@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범위	3

1부. FTA 협상 진행 중인 국가

제2장 캐나다

1. 주요 경제지표	7
2. 농산물 관세	24
3. 캐나다의 FTA 농산물 양허안 분석	34
4. 한-캐나다 FTA 협상 전략과 대책	40

제3장 멕시코

1. 역사	47
2. 주요 경제지표	49
3. 농산물 수급	50
4. 농산물 무역	56
5. 농산물 관세	65
6. 한-멕시코 FTA 협상 추진 동향과 전망	77

제4장 페루

1. 역사	80
2. 주요 경제지표	82
3. 농산물 수급	84

4. 농산물 교역	89
5. 농산물 관세	98
6. 한-페루 FTA 협상 추진 동향과 전망	103

제5장 일본

1. 역사	105
2. 주요 경제지표	108
3. 농산물 수급	109
4. 농산물 교역	114
5. 농산물 관세	123
6. 한-일본 FTA 협상 추진 동향과 전망	130

제6장 GCC

1. 역사	132
2. 주요 경제지표	139
3. 농산물 수급	141
4. 농산물 교역	152
5. 농산물 관세율	171
6. 한-GCC FTA 협상 추진 동향과 전망	197

2부. FTA 협상 추진 중인 국가

제7장 중국

1. 주요 경제지표	201
2. 농산물 관세	215
3. 중국의 FTA 체결 사례 분석	220
4. 한-중 FTA 추진 동향과 예상 쟁점	227

5. 농업부문의 한-중 FTA 대응방안	235
-----------------------------	-----

제8장 호주

1. 역사	241
2. 주요 경제지표	243
3. 농산물 수급	246
4. 농산물 교역	257
5. 농산물 관세	264
6. 한-호주 FTA 협상 추진 동향과 전망	269

제9장 뉴질랜드

1. 역사	270
2. 주요 경제지표	271
3. 농산물 수급	273
4. 농산물 교역	285
5. 농산물 관세	291
6. 한-뉴질랜드 FTA 협상 추진 동향과 전망	294

제10장 MERCOSUR

1. MERCOSUR 개요	295
2. MERCOSUR의 농업 개황	297
3. MERCOSUR의 관세	317
4. MERCOSUR의 농산물 무역	324
5. 한-MERCOSUR FTA 논의 동향과 전망	339

제11장 터키

1. 역사	341
2. 주요 경제지표	343

3. 농산물 수급	344
4. 농산물 교역	350
5. 농산물 관세	357
6. 한-터키 FTA 협상 추진 동향과 전망	362

제12장 러시아

1. 역사	363
2. 주요 경제지표	365
3. 농산물 수급	367
4. 농산물 교역	372

참고 문헌	379
-------------	-----

표 차 례

제2장

표 2- 1. 캐나다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8
표 2- 2. 캐나다의 식량작물 수급 현황	10
표 2- 3. 캐나다의 과일 수급 현황	11
표 2- 4. 캐나다의 채소류 수급 현황	12
표 2- 5. 캐나다의 축산물 수급 현황	13
표 2- 6. 캐나다의 교역 지표	15
표 2- 7. 캐나다의 농산물 수출 현황	16
표 2- 8. 캐나다의 농산물 수입 현황	17
표 2- 9. 한국과 캐나다간 교역액	20
표 2-10. 한국-캐나다 농산물 교역 현황	20
표 2-11. 한국-캐나다 농산물 수입 동향	22
표 2-12. 한국-캐나다 농산물 수출 현황	23
표 2-13. 캐나다의 농산물 관세부과 형태별 품목분류 현황	25
표 2-14. 캐나다의 농산물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26
표 2-15. 캐나다의 농산물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28
표 2-16. 캐나다의 비종가세 현황	31
표 2-17. 캐나다의 관세 구간별 품목 분포	32
표 2-18. 캐나다의 고율 관세 현황	33
표 2-19. NAFTA의 단계별 양허안	35
표 2-20. NAFTA에서 캐나다 농산물 양허 내역	36
표 2-21. CCFTA에서 캐나다의 농산물 양허 내역	39

제3장

표 3- 1.	멕시코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49
표 3- 2.	멕시코의 식량작물 수급 현황	51
표 3- 3.	멕시코의 과일 수급 현황	52
표 3- 4.	멕시코의 채소류 수급 현황	54
표 3- 5.	멕시코의 축산물 수급 현황	55
표 3- 6.	멕시코의 특작 수급 현황	56
표 3- 7.	멕시코의 교역지표	57
표 3- 8.	멕시코의 농산물 수입 현황	57
표 3- 9.	멕시코의 농산물 수출 현황	61
표 3-10.	한국-멕시코 농산물 교역현황	64
표 3-11.	멕시코의 관세부과 형태별 농산물 품목분류 현황	67
표 3-12.	멕시코의 비종가세 현황	67
표 3-13.	멕시코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68
표 3-14.	멕시코의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70
표 3-15.	멕시코의 비종가세 및 수입금지 품목 현황	73
표 3-16.	멕시코의 관세 구간별 분포	74
표 3-17.	멕시코의 고율관세 현황	75
표 3-18.	FTA 체결시 수입증가 예상 품목 분류	79

제4장

표 4- 1.	페루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83
표 4- 2.	페루의 식량작물 수급 현황	84
표 4- 3.	페루의 과일 수급 현황	86
표 4- 4.	페루의 채소류 수급 현황	87
표 4- 5.	페루의 축산물 수급 현황	88
표 4- 6.	페루의 특작 수급 현황	89

표 4- 7. 페루의 교역지표	90
표 4- 8. 페루의 농산물 수입 현황	91
표 4- 9. 페루의 농산물 수출 현황	93
표 4-10. 한국-페루 농산물 교역현황	96
표 4-11. 한국-페루 농산물 주요 수입 품목	96
표 4-12. 한국-페루 농산물 주요 수출 품목	97
표 4-13. 페루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98
표 4-14. 페루의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99

제5장

표 5- 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108
표 5- 2. 일본의 식량작물 수급 현황	109
표 5- 3. 일본의 과일 수급 현황	111
표 5- 4. 일본의 채소 수급 현황	112
표 5- 5. 일본의 축산물 수급 현황	113
표 5- 6. 일본의 특작 수급 현황	114
표 5- 7. 일본의 교역지표	115
표 5- 8. 일본의 농산물 수입 현황	116
표 5- 9. 일본의 농산물 수출 현황	118
표 5-10. 한국-일본 농산물 교역현황	120
표 5-11. 한국-일본 농산물 주요 수입 품목	121
표 5-12. 한국-일본 농산물 주요 수출 품목	122
표 5-13. 일본의 농산물 관세부과 형태별 품목분류 현황	123
표 5-14. 일본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124
표 5-15. 일본의 품목군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126
표 5-16. 일본의 비종가세 품목 현황	129
표 5-17. 일본의 관세 구간별 품목 분포	130

제6장

표 6- 1. GCC의 주요 경제지표 (2006년)	140
표 6- 2. 바레인의 농산물 수급 현황	141
표 6- 3. 쿠웨이트의 농산물 수급 현황	142
표 6- 4. 오만의 농산물 수급 현황	144
표 6- 5. 카타르의 농산물 수급 현황	146
표 6- 6. 사우디아라비아의 농산물 수급 현황	148
표 6- 7. 아랍에미리트의 농산물 수급 현황	150
표 6- 9. 한-GCC간의 교역 현황: 2006년	152
표 6-10. 한-GCC간 농산물 교역 현황	153
표 6-11. 한-GCC간 품목별 농산물 수입 현황	155
표 6-12. 한-사우디아라비아 농산물 수입 현황	157
표 6-13. 한-아랍에미리트 농산물 수입 현황	158
표 6-14. 한-오만 농산물 수입 현황	159
표 6-15. 한-카타르 농산물 수입 현황	160
표 6-16. 한-쿠웨이트 농산물 수입 현황	161
표 6-17. 한-바레인 농산물 수입 현황	162
표 6-18. 한-GCC간 품목별 농산물 수출 현황	163
표 6-19. 한-아랍에미리트 농산물 수입 현황	165
표 6-20. 한-사우디아라비아 농산물 수출 현황	166
표 6-21. 한-쿠웨이트 농산물 수출 현황	167
표 6-22. 한-카타르 농산물 수출 현황	168
표 6-23. 한-바레인 농산물 수출 현황	169
표 6-24. 한-오만 농산물 수출 현황	170
표 6-25. 바레인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171
표 6-26. 바레인의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172
표 6-27. 쿠웨이트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175

표 6-28.	쿠웨이트의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176
표 6-29.	오만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179
표 6-30.	오만의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180
표 6-31.	카타르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184
표 6-32.	카타르의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185
표 6-33.	사우디아라비아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188
표 6-34.	사우디아라비아의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189
표 6-35.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종가세 품목 현황	192
표 6-36.	아랍에미리트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193
표 6-37.	아랍에미리트의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194

제7장

표 7- 1.	중국의 국내총생산(GDP)과 농업생산액	201
표 7- 2.	중국의 작물별 경작 면적	202
표 7- 3.	중국의 식량작물 생산량	203
표 7- 4.	중국의 채소 수급 현황	204
표 7- 5.	중국의 과일 수급 현황	205
표 7- 6.	중국의 축산물 수급 현황	206
표 7- 7.	중국의 농산물 교역 동향	207
표 7- 8.	중국의 식량작물 수출입 동향	208
표 7- 9.	중국의 채소 수출입 동향	208
표 7-10.	중국의 과일 수출입 동향	209
표 7-11.	중국의 축산물 수출입 동향	210
표 7-12.	한국-중국 농산물 수출입액	211
표 7-13.	한국-중국 농산물 수출 현황	212
표 7-14.	한국-중국 농산물 수입 현황	214
표 7-15.	중국의 관세부과 형태별 농산물 품목 현황	215
표 7-16.	중국의 농산물 품목류별 수입관세율	216

표 7-17.	중국의 품목군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218
표 7-18.	중·칠레 FTA 관세 철폐 일정	221
표 7-19.	중·칠레 FTA 농수산물 관세 철폐 계획	222
표 7-20.	중국의 관세철폐 계획	225
표 7-21.	중·뉴질랜드 FTA 양허제외 농산품	226
표 7-22.	한-중 FTA 원산지 규정 비교	231

제8장

표 8- 1.	호주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244
표 8- 2.	호주와 뉴질랜드의 산업별 GDP, 고용인구, 수출 비중	245
표 8- 3.	호주의 식량작물 재배현황	247
표 8- 4.	호주의 식량작물 수급 현황	248
표 8- 5.	호주의 축종별 사육두수	249
표 8- 6.	호주의 축산물 생산량 및 수출량	250
표 8- 7.	호주의 젓소사육 및 낙농품 생산현황	251
표 8- 8.	호주의 주요 낙농품 수출 대상국	252
표 8- 9.	호주의 주요 원예작물 재배면적 추이	254
표 8-10.	호주의 과일 수급 현황	255
표 8-11.	호주의 채소 수급 현황	256
표 8-12.	호주의 교역지표	257
표 8-13.	호주의 주요 농산물 교역 대상국 교역 현황	258
표 8-14.	호주의 농산물 수입 현황	259
표 8-15.	호주의 농산물 수출 현황	260
표 8-16.	한국-호주 농산물 교역현황	262
표 8-17.	한국-호주 농산물 주요 수입 품목	263
표 8-18.	한국-호주 농산물 주요 수출 품목	264
표 8-19.	호주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265
표 8-20.	호주의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267

제9장

표 9- 1. 뉴질랜드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272
표 9- 2. 뉴질랜드의 농경지 현황	273
표 9- 3. 뉴질랜드의 품목류별 주요 농산물 수급 현황	274
표 9- 4. 뉴질랜드의 식량작물 수급 현황	275
표 9- 5. 뉴질랜드의 과일 재배면적과 생산량	277
표 9- 6. 뉴질랜드의 과일 수급 현황	278
표 9- 7. 와인포도 재배면적 및 와인수급	279
표 9- 8. 뉴질랜드의 채소 재배면적과 생산량	280
표 9- 9. 뉴질랜드의 채소 수급 현황	280
표 9-10. 뉴질랜드의 축종별 사육두수	282
표 9-11. 뉴질랜드의 축산물 수급 현황	282
표 9-12. 뉴질랜드의 젖소 사육 두수와 우유 생산 현황	283
표 9-13. 뉴질랜드의 낙농품 수출 현황(2007년 3월)	284
표 9-14. 뉴질랜드의 축산물 생산량 및 수출량	285
표 9-15. 뉴질랜드의 교역지표	285
표 9-16.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입국	286
표 9-17. 한국과 뉴질랜드의 농산물 교역현황	287
표 9-18. 한국과 뉴질랜드의 품목별 수입현황	288
표 9-19. 한국-뉴질랜드 농축산물 교역현황	289
표 9-20. 한국-뉴질랜드 농산물 주요 수입 품목	289
표 9-21. 한국-뉴질랜드 농산물 주요 수출 품목	290
표 9-22. 뉴질랜드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291
표 9-23. 뉴질랜드의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292

제10장

표 10- 1. MERCOSUR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2006년 기준)	297
표 10- 2. 브라질의 주요 농업지표	299

표 10- 3.	브라질의 식량작물 수급 동향	300
표 10- 4.	브라질의 과일 수급 현황	301
표 10- 5.	브라질의 채소류 수급 현황	303
표 10- 6.	브라질의 축산물 수급 동향	304
표 10- 7.	아르헨티나의 주요 농업지표	305
표 10- 8.	아르헨티나의 식량작물 수급 현황	306
표 10- 9.	아르헨티나의 과일 수급 현황	307
표 10-10.	아르헨티나의 채소류 수급 현황	308
표 10-11.	아르헨티나의 축산물 수급 현황	309
표 10-12.	우루과이의 주요 농업지표	310
표 10-13.	우루과이의 식량작물 수급 현황	311
표 10-14.	우루과이의 과일 수급 현황	312
표 10-15.	우루과이의 채소류 수급 동향	312
표 10-16.	우루과이의 축산물 수급 현황	313
표 10-17.	파라과이의 주요 농업지표	314
표 10-18.	파라과이의 식량작물 수급 현황	315
표 10-19.	파라과이의 과일 수급 현황	316
표 10-20.	파라과이의 채소류 수급 현황	316
표 10-21.	파라과이의 축산물 수급 현황	317
표 10-22.	MERCOSUR 역내 관세인하 일정	318
표 10-23.	MERCOSUR의 관세부과 형태별 농산물 품목분류 현황	318
표 10-24.	MERCOSUR의 품목류별(HS-2 단위) 평균 관세율	319
표 10-25.	MERCOSUR의 품목류별(HS-4 단위) 평균 관세율	320
표 10-26.	MERCOSUR의 관세 구간별 분포	323
표 10-27.	브라질의 교역지표	324
표 10-28.	브라질의 농산물 수출 현황	325
표 10-29.	브라질의 농산물 수입 현황	326
표 10-30.	아르헨티나의 교역지표	327

표 10-31.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수출 현황	328
표 10-32.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수입 현황	329
표 10-33.	우루과이의 교역지표	330
표 10-34.	우루과이의 농산물 수출 현황	331
표 10-35.	우루과이의 농산물 수입 현황	332
표 10-36.	파라과이의 교역지표	333
표 10-37.	파라과이의 농산물 수출 현황	333
표 10-38.	파라과이의 농산물 수입 현황	334
표 10-39.	한국-MERCOSUR 교역 추이	335
표 10-40.	한국-MERCOSUR 농산물 수출입 현황(2007년)	336
표 10-41.	한국-브라질 농산물 교역현황	336
표 10-42.	한국-아르헨티나 농산물 교역현황	337
표 10-43.	한국-우루과이 농산물 교역현황	338
표 10-44.	한국-파라과이 농산물 교역현황	338

제11장

표 11- 1.	터키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344
표 11- 2.	터키의 식량작물 수급 현황	345
표 11- 3.	터키의 과일 수급 현황	346
표 11- 4.	터키의 채소 수급 현황	348
표 11- 5.	터키의 축산물 수급 현황	349
표 11- 6.	터키의 특작 수급 현황	349
표 11- 7.	터키의 교역지표	350
표 11- 8.	터키의 농산물 수입 현황	351
표 11- 9.	터키의 농산물 수출 현황	354
표 11-10.	한국-터키 농산물 교역현황	356
표 11-11.	국가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357
표 11-12.	터키의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359

제12장

표 12- 1. 러시아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366
표 12- 2. 러시아의 식량작물 수급 현황	367
표 12- 3. 러시아의 과일 수급 현황	369
표 12- 4. 러시아의 과채 수급 현황	370
표 12- 5. 러시아의 축산물 수급 현황	371
표 12- 6. 러시아의 특작 수급 현황	371
표 12- 7. 러시아의 교역지표	372
표 12- 8. 러시아의 농산물 수입 현황	374
표 12- 9. 러시아의 농산물 수출 현황	376
표 12-10. 한국-러시아 농산물 교역현황	378

그 립 차 례

제2장

그림 2-1. 캐나다의 관세 구간별 품목 분포 (HS 4단위 기준 평균 세율)	34
--	----

제3장

그림 3-1. 멕시코의 관세 구간별 품목 분포(HS 4단위 평균 기준)	76
---	----

제10장

그림 10-1. MERCOSUR의 관세 구간별 품목 분포 (HS 4단위 평균 기준)	323
---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거대경제권, 차세대 세계경제 주도국, 자원부국 등을 대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거대경제권 국가는 인구가 많고 국민소득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 시장으로 매우 중요하다. 미국, EU, 일본 등이 대표적인 나라로 우리나라와 이미 협상이 타결되었거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FTA 협상을 타결하였거나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모두 54개국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칠레와 FTA 협상을 개시한 이래 10년간 16개국과 FTA를 타결하였고, 38개국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이 타결된 16개국 가운데 ASEAN 10개국 및 미국은 거대 경제권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 비중도 높다. 나머지 5개국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과 칠레이다.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38개국 가운데에는 유럽연합(EU) 27개국과 걸프협력회의 6개국(GCC)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33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은 인도, 캐나다, 멕시코, 일본, 페루 등이다. EU와의 협상은 2009년 상반기에 타결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인도와의 협상은 실질적으로 타결된 상

태로 법률적 검토가 끝나면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캐나다와의 협상은 타결 가능성이 높았으나, 2009년 4월에 캐나다가 우리나라를 쇠고기 수입 문제로 WTO에 제소함으로써 타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멕시코와 협상 중단 상태에 있는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협상이 단기적으로 종료될 전망이며,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체결 또는 타결한 국가는 50개국에 이를 전망이다.

협상이 추진되고 있는 주요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터키, 남미공동시장 4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러시아, 중국 등이다. 호주, 뉴질랜드,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2009년 중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페루와의 1차 협상은 서울에서 3월에 개최되었고,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도 2009년 상반기에 협상이 개시된다. 남미공동시장 4개국과는 공동연구, 공청회 등의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로 협상 개시 여부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중국과의 FTA를 위한 공동연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협상 개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러시아와의 FTA 협상도 단기간 내에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이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FTA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산업(예, 농업 등)에 대한 대내외 협상전략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협상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양허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러 국가들과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협상 단계에서는 대상국별 경제, 사회, 농업 및 농산물 교역, 소비자 취향 등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 전망하는 것에 소홀할 수 있다. 또한 협상이 장기화되는 데에 대비한 기존 합의 사항 점검과 향후 쟁점 분석 및 대응 전략 수정 등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향후 협상이 예상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농업 및 농산물 교역 동향과 우리나라와의 교역, 그리고 협상 추진 동향과 향후 쟁점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고 전파함으로써 협상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타결되지 않은 FTA의 협상 대상국별 농업부문의 협

상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핵심 쟁점을 사전에 전망함으로써 FTA 관련 연구 및 농정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향후 협상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 대한 농업 및 농산물 교역 등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범위

이 연구는 협상 대상국 농업 및 농산물 무역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 국가는 협상 진행 중인 국가, 협상 예정 국가 그리고 협상 추진 중인 국가로 한정하였다. 이미 협상이 타결되었거나 협상이 타결 단계에 있는 국가는 이 연구와 유사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FTA 대상 국가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 일본, GCC 6개국, 페루 외에 향후 협상 추진이 예상되는 중국, 호주, 뉴질랜드, 터키, 남미 공동체 4개국, 러시아 등 19개 국가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국가별 경제 및 농업 개황, 농산물 무역, 농산물 관세제도, FTA 협상 동향과 전망, 민감품목, 협상 방향 등이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및 협상 관련 자료 분석, 전문가 면담조사 등에 의존하였다. 국가별 현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 자료와 시장정보 등이 충실히 다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1 부

FTA 협상 진행 중인 국가

제2장. 캐나다

제3장. 멕시코

제4장. 페루

제5장. 일본

제6장. GCC

제 2 장

캐나다

1. 주요 경제지표

1.1. 국내총생산과 경제 구조

캐나다의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46배에 달하는 약 998만 5천 km^2 이다<표 2-1>. 경지면적은 약 5,200만 ha로 전체 국토의 5%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약 29배이다. 2006년 인구는 약 3,260만 명이며, 농촌인구는 약 600만 명이지만 농업인구는 70만 명 이하이다.

2006년 캐나다의 국내총생산은 약 1조 2,515억 달러로 2002년 7,243억 달러에 비해 72.8% 성장하였다. 같은 기간 일인당 GDP는 23,465 달러에서 39,138 달러로 약 66.8% 증가하였다. 2006년 수출은 3,880억 달러, 수입은 3,500억 달러, 무역수지는 380억 달러 흑자로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제와 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¹ 첫째,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동시에 지식 집약적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금융

1 <http://www.emb-korea.ottawa.on.ca>

표 2-1. 캐나다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2002	2003	2004	2005	2006
인구(A)	1000명	31,308	31,632	31,955	32,270	32,576
농촌거주인구		6,213	6,164	6,124	6,098	-
농업인구(B)		748	731	715	699	-
농업인구비중(A/B)	%	2	2	2	2	0
국토면적(C)	1000ha	998,467	998,467	998,467	998,467	998,467
경지면적(D)		52,115	52,115	52,110	52,110	52,110
경지면적비중(C/D)	%	5	5	5	5	5
GDP	백만 USD	724,313	854,681	976,756	1,113,810	1,251,463
1인당 GDP	USD	23,465	27,374	31,049	35,164	39,138
농업 GDP	USD	252,584	272,230	317,161	360,475	388,091
수출(E)		222,440	240,376	273,874	314,445	349,906
수입(F)		30,144	31,853	43,287	46,030	38,186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과 정보통신, 전문직 서비스와 행정 및 공공서비스, 교육 및 건강지원 등을 합한 GDP가 서비스 산업 GDP 총액의 2/3에 달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G7 국가 가운데 서비스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 수송장비, 정보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건강관리(health care) 분야 등 제2차 제조 및 가공업(secondary manufacturing and processing)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둘째,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수출액의 약 32%가 천연가스와 석유, 목재, 농축산물 등 1차 생산물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철광석과 금속, 플라스틱 등 산업용 원자재까지 합하면 수출총액의 50% 이상을 원재료용 자원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품목 이외의 캐나다 수출품은 대부분 기계와 장비, 자동차 및 차량부품 등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재 수출은 전체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셋째, 캐나다의 경제 구조는 고도의 개방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

수출이 GDP의 31%, 수입은 28%로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59%나 된다. 뿐만 아니라 호주 및 뉴질랜드와 더불어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Cairns Group)²의 핵심 국가로서 WTO 차원의 농산물 무역 자유화 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캐나다는 천연자원 생산의 1/3, 제조업 제품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분야의 수출도 증가 추세에 있다. 캐나다 기업들도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해외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넷째, 지역적 경제권 편재 현상이 극심한 편이다. 온타리오와 퀘벡, 브리티시 컬럼비아(BC)의 3개 주에 인구와 경제력(GDP)의 4분의 3이 집중되어 있다. 온타리오주의 인구가 1,240만 명, 퀘벡이 750만 명, 그리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420만 명 등 모두 2,413만 명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물론 농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 생산과 경제활동이 남부 지역에 위치한 이들 3개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편중 현상은 미국이라는 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함께 기후와 토질 등 자연조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캐나다 경제는 경제와 무역에서 대미의존도가 극도로 높다.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도 있지만 언어와 종교, 정치적 지향 등이 전통적으로 상호 동질적이고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캐나다 전체 교역의 약 80%(2004년 기준 수출 84.5%, 수입 58.8%), 외국인 투자의 65%를 점유한다.

2 호주 케언즈에서 결성된 수출국 그룹으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우루과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농업 개황

1.2.1. 식량작물 수급 현황

2006년 현재 주요 식량작물별 생산량은 밀이 2,500만 톤으로 단일 작물로는 가장 많으며 보리가 약 960만 톤으로 두 번째, 그리고 옥수수가 약 900만 톤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2-2>. 그 밖에 감자 생산량이 약 500만 톤, 귀리가 390만 톤, 대두가 350만 톤이다.

표 2-2. 캐나다의 식량작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생산량(A)	15,961	23,049	24,796	25,748	25,265
	소비량(B) ¹⁾	3,792	11,395	9,691	11,842	6,794
	자급률(A/B)	421	202	256	217	372
보리	생산량(A)	7,468	12,164	12,557	11,678	9,573
	소비량(B) ¹⁾	6,799	11,546	10,957	9,724	8,101
	자급률(A/B)	110	105	115	120	118
옥수수	생산량(A)	8,999	9,587	8,837	9,332	8,990
	소비량(B) ¹⁾	12,761	13,060	10,544	11,222	10,664
	자급률(A/B)	71	73	84	83	84
귀리	생산량(A)	2,911	3,377	3,467	3,283	3,852
	소비량(B) ¹⁾	2,115	2,289	2,342	1,948	2,023
	자급률(A/B)	138	148	148	168	190
감자	생산량(A)	4,705	5,282	5,235	4,434	5,091
	소비량(B) ¹⁾	4,570	5,055	4,970	4,195	4,853
	자급률(A/B)	103	104	105	106	105
대두	생산량(A)	2,336	2,273	3,044	3,156	3,466
	소비량(B) ¹⁾	2,553	2,053	2,572	2,365	2,298
	자급률(A/B)	91	111	118	133	151

자료: FAO, STAT(<http://faostst.fao.org>)

캐나다는 옥수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량작물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적어 완전 자급은 물론 주요 수출국 지위에 있다. 밀 소비량은 약 680만 톤으로 자급률이 370%를 넘으며 보리 소비량도 800만 톤으로 자급률이 120% 정도이다. 감자 소비량도 생산량보다 약간 적은 490만 톤으로 자급률이 105% 수준이며 귀리 소비량은 200만 톤으로 자급률이 190%에 달하고 있다. 대두 소비량은 230만 톤으로 자급률이 150%이다. 반면 옥수수 소비량은 생산량을 약간 초과한 1,000만 톤으로 자급률이 84% 수준이다.

1.2.2. 과일 수급 현황

캐나다는 기후 조건으로 인해 과일 생산이 저조하며 따라서 자급률도 낮은 편이다. 가장 생산량이 높은 사과를 2006년 약 38만 톤이 생산되었으나 소비량이 약 49만 톤으로 자급률은 78% 수준이다<표 2-3>. 포도 생산량은 8만 6천 톤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소비량이 25만 7천 톤으로 증가율이 더 높으며 자급률은 34%에 불과하다.

표 2-3. 캐나다의 과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사과	생산량(A)	382	379	381	409	376
	소비량(B) ¹⁾	458	472	470	513	485
	자급률(A/B)	83	80	81	80	78
포도	생산량(A)	67	55	78	45	86
	소비량(B) ¹⁾	229	222	244	227	257
	자급률(A/B)	29	25	32	20	34
배	생산량(A)	15	15	14	11	14
	소비량(B) ¹⁾	93	94	84	83	90
	자급률(A/B)	16	16	17	13	15
복숭아	생산량(A)	29	29	30	22	32
	소비량(B) ¹⁾	96	96	93	85	86
	자급률(A/B)	30	31	32	27	37

자료: FAO, STAT(<http://faostst.fao.org>)

복숭아는 3만 2천 톤 생산에 8만 6천 톤 소비로 자급률이 37% 수준이다. 배 생산량은 1만 4천 톤이었으나 소비량이 9만 톤에 달해 자급률은 15%이다. 그 밖에 바나나와 파인애플, 레몬 등 주요 열대과일은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1.2.3. 채소류 수급 현황

과일과 마찬가지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캐나다의 채소 생산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캐나다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채소인 토마토 생산량은 2006년 81만 7천 톤으로 2005년보다 줄었지만 평년 수준보다는 높았다. 하지만 소비량은 85만 7천 톤으로 자급률은 평년 수준인 95%를 보였다<표 2-4>.

표 2-4. 캐나다의 채소류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추	생산량(A)	40	37	37	41	52
	소비량(B) ¹⁾	96	90	88	91	101
	자급률(A/B)	42	41	42	45	51
딸기	생산량(A)	25	25	25	22	25
	소비량(B) ¹⁾	81	84	89	97	110
	자급률(A/B)	31	29	28	23	23
수박	생산량(A)	3	3	4	4	9
	소비량(B) ¹⁾	168	195	217	188	204
	자급률(A/B)	2	2	2	2	4
양파	생산량(A)	168	172	190	170	241
	소비량(B) ¹⁾	268	284	279	266	327
	자급률(A/B)	63	61	68	64	74
오이	생산량(A)	170	178	187	191	217
	소비량(B) ¹⁾	178	177	174	184	213
	자급률(A/B)	96	101	107	104	102
토마토	생산량(A)	792	717	817	839	817
	소비량(B) ¹⁾	856	752	854	865	857
	자급률(A/B)	93	95	96	97	95

자료: FAO, STAT(<http://faostst.fao.org>)

양파 생산량은 2006년 24만 천 톤으로 오이 생산량 21만 7천 톤을 넘어섰다. 그러나 양파 소비량은 32만 7천 톤으로 자급률은 74%에 머물렀다. 오이 소비량은 21만 3천 톤으로 2003년 이래 자급률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고추 생산량은 5만 2천 톤으로 평년 수준을 웃돌았지만 소비량이 10만 톤을 넘어 자급률은 51%이다. 딸기 생산량도 2만 5천 톤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소비량이 11만 톤으로 늘어 자급률은 예년보다 낮은 23%이었다. 같은 과채류인 수박 생산량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인 9천 톤으로 늘었다. 그러나 소비량 역시 20만 4천 톤으로 증가하여 자급률은 4%에 불과하였다.

1.2.4. 축산물 수급 현황

캐나다는 광활한 농지에서 생산되는 사료용 곡물과 넓은 목초지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유지하고 있다. 닭고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육류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100% 이상의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육류는 돼지고기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90만 톤 수준을 생산하고 있다. 소비량은 175만 톤 수준으로 자급률이 105% 정도이다<표 2-5>.

표 2-5. 캐나다의 축산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닭고기	생산량(A)	956	954	970	1,000	997
	소비량(B) ¹⁾	977	974	1,011	1,015	1,018
	자급률(A/B)	98	98	96	99	98
돼지고기	생산량(A)	1,858	1,882	1,936	1,920	1,898
	소비량(B) ¹⁾	1,758	1,757	1,801	1,794	1,741
	자급률(A/B)	106	107	107	107	109
쇠고기	생산량(A)	1,294	1,184	1,496	1,497	1,391
	소비량(B) ¹⁾	1,199	1,153	1,484	1,480	1,365
	자급률(A/B)	108	103	101	101	102
천연꿀	생산량(A)	37	35	34	36	48
	소비량(B) ¹⁾	22	28	29	32	40
	자급률(A/B)	166	122	118	113	122

자료: FAO, STAT(<http://faostst.fao.org>)

2002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쇠고기 생산량은 2005년 150만 톤에 육박하였으며 2006년 현재 139만 톤으로 다소 줄었다. 쇠고기 소비량도 2002년 120만 톤에서 2005년 148만 톤까지 증가하였으나, 2006년 137만 톤으로 감소하여 자급률은 102%에 머물러 있다.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완전 자급이 안되는 육류인 닭고기 생산량은 최근 5년간 96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소비량도 98만 톤에서 102만 톤으로 늘어났다. 그에 따라 자급률은 여전히 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천연꿀 생산과 소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꿀 생산량은 4만 8천 톤으로 2002년 3만 7천 톤에 비해 30% 정도 늘어났다. 천연꿀 소비량은 2만 2천 톤에서 4만 톤으로 더 크게 증가하여 자급률은 166%에서 122%로 낮아졌다.

1.3. 캐나다의 교역 동향

1.3.1. 교역 개요

캐나다의 수출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2,526억 달러에서 2006년 3,881억 달러로 53.6% 늘어났다<표 2-6>. 수입액도 2,224억 달러에서 3,499억 달러로 57.3%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액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 302억 달러에서 2006년 382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농산물 수출액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230억 달러로 2002년 대비 54.3% 증가하였다.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액과 대등한 비율로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수출이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2년 126억 달러에서 2006년 192억 달러로 52.3%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7%에서 5.5%로 약간 낮아졌다.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02년 23억 달러에서 2006년 38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전체 무역수지 흑자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6%에서 10%로 높아졌다.

표 2-6. 캐나다의 교역 지표

단위: 백만 USD, %

	2002	2003	2004	2005	2006
총수출액(A)	252,584	272,230	317,161	360,475	388,091
농업수출액(B)	14,914	16,696	19,949	20,573	23,019
농업수출액 비중(A/B)	5.9	6.1	6.3	5.7	5.9
총수입액(C)	222,440	240,376	273,874	314,445	349,906
농업수입액(D)	12,598	14,120	15,129	16,824	19,208
농업수입액 비중(C/D)	5.7	5.9	5.5	5.4	5.5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 ¹⁾	4	4	5	5	6

주: 1)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 = $\frac{\text{농업수출액} + \text{농업수입액}}{GDP} \times 100$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1.3.2. 농산물 무역

캐나다는 최대 수출 농산물인 밀을 비롯한 곡물류와 카놀라 등 유지종자와 식용유, 그리고 돼지고기와 쇠고기, 산 동물 등 축산물의 주요 수출국이다. 아울러 토마토와 고추, 오이 등 채소류도 수출하고 있다. 2006년 캐나다의 밀 수출액은 32억 2천만 달러로 2002년 19억 6천만 달러에 비해 64%나 늘어났다 <표 2-7>. 수출량도 1,220만 톤에서 1,85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톤당 수출가격은 160.7달러에서 174.1달러로 높아졌다.

카놀라와 유채유는 밀에 이어 제2의 수출품목으로 2006년 수출액은 23억 500만 달러였다. 유채류 수출액은 2005년에 비해 43.8%나 증가하였다. 수출량이 늘었지만 톤당 가격도 329달러에서 342달러로 올랐기 때문이다. 제3위의 수출품목인 돼지고기 수출액은 15억 3,000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약 8% 감소하였다. 쇠고기 수출액은 2006년 11억 8,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1% 감소하였다.

조제 식료품 수출은 2002년 6억 1,400만 달러에서 2006년 11억 4,1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냉동감자 수출액도 같은 기간 4억 5,600만 달러에서 7억 2,400만 달러로 늘었다. 가공식품인 초콜릿 조제품 수출액은 2006년 7억 1,900만 달

리, 빵류 수출액은 6억 달러로 각각 증가했다.

그 밖에 2006년 현재 수출액 1억 달러 이상인 주요 수출 농산물은 대두와 완두콩(각각 4억 1,600만 달러), 토마토(3억 300만 달러), 귀리(2억 9천만 달러), 보리(2억 3,700만 달러), 고추(1억 6천만 달러), 닭고기(1억 900만 달러) 등이다.

표 2-7. 캐나다의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수출량	12,203	11,704	15,119	13,925	18,498
	수출액	1,964	2,023	2,689	2,232	3,221
유채와 유채유	수출량	2,878	3,752	4,110	4,873	6,731
	수출액	843	1,245	1,618	1,603	2,305
돼지고기	수출량	474	532	528	636	612
	수출액	946	1,105	1,349	1,666	1,530
쇠고기	수출량	521	326	457	461	371
	수출액	1,053	1,418	1,493	1,545	1,188
조제 식료품	수출량	430	421	457	479	510
	수출액	614	655	868	1,006	1,141
냉동감자	수출량	734	895	1,044	956	987
	수출액	456	575	695	671	724
초콜릿 제품	수출량	269	302	320	325	315
	수출액	531	712	726	722	719
빵류	수출량	203	229	239	244	247
	수출액	395	463	506	548	600
대두	수출량	549	874	984	1,181	1,470
	수출액	139	237	295	342	416
완두콩	수출량	673	1,002	1,569	2,350	2,333
	수출액	147	205	293	405	416
토마토	수출량	102	132	137	146	142
	수출액	177	234	272	287	303
귀리	수출량	829	1,110	1,147	1,354	1,853
	수출액	127	154	148	185	290
보리	수출량	839	777	1,655	2,021	1,514
	수출액	124	125	255	290	237
고추	수출량	43	47	50	57	66
	수출액	76	91	108	122	161
닭고기	수출량	83	69	64	91	97
	수출액	62	59	81	104	109

자료: FAO, STAT(<http://faostt.fao.org>)

캐나다의 최대 수입 품목은 포도주이며 비스킷과 빵류, 초콜릿 등 가공식품과 열대 과일을 포함한 과일 및 과일 조제품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그 밖에 맥주, 설탕, 개 사료, 커피류 등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 신선 농산물로는 포도와 옥수수, 토마토, 바나나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다. 그 밖에 산 가축 형태의 소와 쇠고기 수입액도 많은 편이다.

2006년 포도주 수입액은 2002년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12억 6,400만 달러에 달했다. 물량은 25%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수입 단가가 톤 당 2,504달러에서 4,157달러로 대폭 올랐다. 쇠고기 수입액은 5억 9,800만 달러에서 5억 6,700만 달러로 오히려 줄었다. 수입 가격이 톤 당 238달러에서 420달러로 인상되었지만 수입량이 거의 절반 수준인 13만 5,000톤으로 줄어들었다.

수입액 3억 달러 이상인 주요 수입 품목은 증류주(5억 3,800만 달러), 초콜릿 조제품(5억 3,400만 달러), 맥주(4억 1,800만 달러), 조당(3억 9,200만 달러), 개 사료(3억 7,800만 달러), 과자류(3억 2,700만 달러), 빵류(3억 2,500만 달러), 포도(3억 2,100만 달러), 과일 조제품(3억 1,200만 달러) 등이다.

수입액이 2억 달러 이상인 품목은 대두박과 옥수수, 토마토와 바나나 등이며 딸기, 닭고기, 고추, 사과, 오렌지 등은 1억 달러 이상 수입되었다. 그 밖에 파인애플과 양파 등 과일과 채소류 수입도 1억 달러에 육박한다.

표 2-8. 캐나다의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조제 식료품	수입량	455	471	447	480	542
	수입액	771	863	961	1,163	1,364
와인	수입량	244	270	267	281	304
	수입액	611	821	908	1,042	1,264
식품재료	수입량	-	-	-	-	-
	수입액	493	535	577	629	645
쇠고기	수입량	251	222	90	110	135
	수입액	598	589	282	389	567
증류주	수입량	40	42	41	55	60
	수입액	276	340	416	456	538

(표 2-8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초콜릿 조제품	수입량	129	130	137	137	145
	수입액	333	378	440	469	534
맥주	수입량	200	220	211	255	269
	수입액	191	240	269	363	418
조당	수입량	1,145	1,414	1,082	1,248	1,251
	수입액	185	245	201	284	392
개 사료	수입량	248	257	267	280	281
	수입액	239	260	291	322	378
과자류	수입량	114	111	106	115	126
	수입액	211	220	239	275	327
빵류	수입량	117	104	107	110	123
	수입액	222	220	248	277	325
포도	수입량	164	167	170	185	175
	수입액	213	235	277	302	321
과일 조제품	수입량	176	179	187	196	203
	수입액	187	211	247	276	312
대두박	수입량	1,095	1,053	1,131	1,155	1,403
	수입액	212	238	302	236	277
옥수수	수입량	4,017	3,740	2,055	2,154	1,899
	수입액	428	386	253	240	247
토마토	수입량	165.7	166.3	174.2	171.7	181.7
	수입액	147.8	168.8	199.5	201.4	228.3
바나나	수입량	417.1	423.2	442.3	449.6	458.0
	수입액	159.2	186.5	180.7	201.9	222.1
딸기	수입량	56.6	59.3	64.3	74.8	84.7
	수입액	97.0	123.2	141.9	166.8	198.6
닭고기	수입량	103.6	88.7	104.9	105.0	117.9
	수입액	139.4	144.1	224.4	169.4	186.8
고추	수입량	98.7	100.2	100.6	107.7	115.0
	수입액	113.1	132.6	153.2	162.9	168.9
사과	수입량	138.9	142.1	133.3	159.1	156.7
	수입액	106.3	117.5	124.7	115.2	148.0
오렌지	수입량	206.6	225.8	214.8	225.2	209.2
	수입액	111.3	110.2	127.9	142.6	137.9
파인애플	수입량	56.0	62.3	70.7	83.9	103.8
	수입액	37.9	51.7	65.5	78.3	89.1
양파	수입량	157.5	166.1	150.6	154.5	149.4
	수입액	59.4	78.3	70.7	80.3	83.9

(표 2-8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감자	수입량	290.9	239.1	163.7	194.6	194.1
	수입액	106.0	68.0	48.1	61.6	83.8
배	수입량	78.9	78.9	70.1	72.2	76.7
	수입액	56.3	59.3	61.9	70.6	76.1
복숭아	수입량	67.1	66.6	63.4	62.3	54.1
	수입액	59.9	59.1	63.9	74.4	71.5
대두	수입량	766.3	653.5	512.4	390.2	302.5
	수입액	137.9	154.1	150.9	90.3	71.3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1.4. 한-캐나다 농산물 무역

한국과 캐나다간 교역액은 1970년대 초반까지 1억 달러 미만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신장하여 2002년 4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의 교역 신장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 속도가 저조하여 한국의 수출상대국 순위에서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전통적으로 캐나다에 대하여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여 왔으나 2008년 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입품목인 곡물과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액은 40억 5,700만 달러로 2002년의 23억 4,100만 달러에 비해 73.3% 증가하였다. 캐나다는 2002년 한국의 11위 수출상대국이었으나 2008년 26위로 순위가 낮아졌다.

같은 기간 대캐나다 수입액은 18억 4,600만 달러에서 44억 400만 달러로 139%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캐나다가 한국의 수입대상국에서 차지하는 순위는 20위에서 한 단계 높은 19위로 올라섰다.

한국과 캐나다간 교역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증가율은 완만한 편이다. 한국의 대캐나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04년 12억 달러에 육박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8년 3억 4,7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표 2-9. 한국과 캐나다간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	2,341	2,682	3,383	3,446	3,620	3,506	4,057
수입	1,846	1,860	2,189	2,604	3,091	3,254	4,404
무역수지	495	822	1,194	842	529	252	-347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KITA.net). 2009.

2008년 한국의 대캐나다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2,980만 달러로 농산물이 2.86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물과 임산물 수출액은 각각 백만 달러 미만으로 낮았다. 2002년의 2,200만 달러에 비해서는 약 35% 증가한 규모이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대캐나다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5억 4,070만 달러로 2002년에 비해 약 2.3배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5년부터 농산물과 축산물 수입이 급증하였다.

대캐나다 농림축산물 수입은 2002년까지 축산물이 가장 많았으나, 2005년부터 농산물이 수입을 주도하였다. 이후 2007년 축산물 수입액이 농산물 수입을 넘어섰지만 2008년에는 다시 농산물 수입액이 2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축산물 수입액을 앞질렀다.

표 2-10. 한국-캐나다 농산물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	농산물	20.8	22.4	26.0	25.5	24.7	26.9	28.6
	축산물	0.8	0.7	0.8	0.6	0.6	0.6	0.8
	임산물	0.5	0.6	0.6	0.7	0.3	0.4	0.5
	계	22.0	23.7	27.4	26.8	25.6	27.9	29.8
수입	농산물	72.0	76.0	95.8	279.8	165.9	148.4	225.2
	축산물	90.6	66.5	79.9	131.4	164.3	182.2	188.0
	임산물	69.0	90.7	91.7	92.4	113.0	153.2	127.4
	계	231.7	233.2	267.3	493.6	443.2	483.8	540.7
무역수지	계	-209.7	-209.5	-239.9	-466.8	-417.6	-455.9	-510.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그 결과 캐나다와의 농림축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8년 5억 달러를 넘어섰다. 2002년 2억 970만 달러에서 2.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이 농산물, 특히 가공농산물 위주로 단순한 구조를 띠고 있는 반면 캐나다산 농림축산물 수입은 농산물과 임산물, 축산물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1.4.1. 한국의 농산물 수입 현황

한국의 캐나다산 농림축산물 수입은 밀과 돼지고기가 주도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최근 7년간 평균 수입액은 밀이 7,558만 달러, 돼지고기가 7,534만 달러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8년 한국이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농산물은 돼지고기로 수입액이 1억 2,660만 달러이었다.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액은 200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대비 4배로 늘어났다.

밀 수입액도 같은 기간 거의 5배 가까운 1억 1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밀 수입액은 2005년 전년 대비 다섯배가 넘는 1억 9,720만 달러로 급증한 이후 2007년 4,100만 달러로 급감하는 등 변동 폭이 크다.

밀, 돼지고기와 더불어 캐나다산 3대 수입농산물이던 쇠고기 수입액은 2000년 약 3천만 달러에서 2003년 10.9백만 달러, 그리고 2004년 0.2백만 달러로 수입이 중단되었다.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재발견됨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침엽수 원목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여 연평균 4,58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침엽수 제재목 수입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08년 수입액이 약 3,100만 달러에 달했다.

그 밖에 2008년 주요 수입 품목들은 유채유(4,660만 달러), 우지(2,500만 달러), 보리(1,200만 달러), 로열젤리(950만 달러) 등이다. 특히 유채유는 2002년 처음 수입된 이후 급속하게 수입액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유조제품도 2002년 이후 매년 수입액이 증가하였으나, 2008년 갑자기 100만 달러 이하로 줄어들었다.

표 2-11. 한국-캐나다 농산물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합계	금액	231.7	233.2	267.3	493.6	443.2	483.8	540.7	384.8
밀	물량	115.8	146.4	191.5	1,280.0	626.3	127.1	172.1	379.9
	금액	20.2	30.5	38.9	197.2	100.0	41.2	101.0	75.6
돼지고기	물량	39.5	35.6	40.5	57.5	63.7	65.1	59.4	51.6
	금액	31.3	23.9	39.0	84.5	104.6	117.4	126.6	75.3
침엽수 원목	물량	110.3	128.8	160.0	202.2	263.3	350.8	235.2	207.2
	금액	22.8	31.4	37.0	43.2	56.6	70.7	58.6	45.8
침엽수 제재목	물량	35.6	48.5	79.6	53.5	72.8	97.9	86.3	67.7
	금액	14.4	18.7	32.7	25.8	35.2	47.2	43.7	31.1
유채유	물량	13.9	15.2	17.8	20.4	21.2	35.3	32.3	22.3
	금액	7.3	9.9	12.5	13.2	13.9	30.7	46.6	19.1
우지	물량	16.3	14.8	36.6	45.8	62.7	47.5	28.8	36.1
	금액	5.6	5.7	15.9	19.2	26.9	25.9	25.2	17.8
우유 조제품	물량	2.0	2.2	7.2	5.8	6.5	7.8	0.2	4.5
	금액	3.6	3.9	13.4	12.7	14.8	19.4	0.8	9.8
보리	물량	34.3	31.8	19.7	36.8	22.8	18.3	24.3	26.8
	금액	9.3	5.7	6.8	12.1	7.4	9.9	12.2	9.1
로열젤리	물량	1.0	1.4	1.8	1.5	2.0	2.2	2.0	1.7
	금액	5.3	6.9	8.1	9.8	11.2	9.9	9.4	8.7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1.4.2. 한국산 농산물의 캐나다 수출

캐나다로 수출하는 한국산 농산물은 주로 가공농산물이며, 그 밖에 감귤과 배 등 일부 과일류만이 신선 농산물이다. 한국의 대캐나다 농산물 수출액은 2002년 이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3천만 달러 미만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라면과 배, 감귤 등 주요 수출품의 수출액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한국이 캐나다로 농산물을 수출한 금액은 2,980만 달러로 2002년 대비 35.5% 증가하였다. 최근 7년간 평균 수출액은 2,610만 달러이다.

라면은 한국이 캐나다로 수출하는 농산물 가운데 가장 금액이 큰 품목이다. 라면 수출액은 2002년 790만 달러에서 2008년 400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7

년간 평균 수출액은 640만 달러였다. 연평균 수출액 200만 달러로 제2의 수출 품인 감귤의 2008년 수출액은 50만 달러에 불과하여 2002년에 비해 2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곡류 조제품은 연평균 160만 달러를 수출하고 있지만 2008년에는 180만 달러로 190만 달러의 기타 파스타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그 밖에 비스킷이 연평균 120만 달러, 국수가 100만 달러로 새로운 수출 농산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2002년까지 3위의 수출 품목이던 배 수출액은 2008년 7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캐나다 농산물 수출은 주력 수출품의 수출이 감소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출품목 개발이 부진하여 전체적으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2-12. 한국-캐나다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합계	금액	22.0	23.7	27.4	26.8	25.0	27.9	29.8	26.1
라면	물량	3.1	3.2	2.9	2.7	1.5	1.1	1.1	2.2
	금액	7.9	8.2	8.0	8.1	4.7	3.9	4.0	6.4
감귤	물량	4.8	5.1	4.2	2.5	0.7	0.4	0.5	2.6
	금액	2.7	2.9	4.0	2.5	1.0	0.6	0.5	2.0
곡류 조제품	물량	0.3	0.4	0.4	0.5	0.7	0.5	0.4	0.4
	금액	1.0	1.2	1.3	1.7	2.6	2.0	1.8	1.6
기타 파스타	물량	0.6	0.7	0.7	0.6	0.8	0.9	1.0	0.8
	금액	0.7	0.9	1.0	1.0	1.3	1.4	1.9	1.2
비스킷	물량	0.3	0.2	0.3	0.4	0.4	0.5	0.4	0.4
	금액	0.6	0.5	0.9	1.1	1.4	1.7	1.8	1.2
국수	물량	0.4	0.5	0.7	0.7	0.6	0.9	0.9	0.7
	금액	0.6	0.6	0.8	1.0	1.0	1.5	1.7	1.0
배	물량	0.6	0.4	0.7	0.5	0.3	0.3	0.3	0.4
	금액	1.5	0.7	1.4	1.2	0.6	0.8	0.7	1.0
기타 식물성 점질물	물량	-	0.1	0.1	0.2	0.1	0.2	0.2	0.1
	금액	0.1	0.4	0.6	1.4	1.2	1.4	1.5	0.9
기타 음료	물량	0.1	0.2	0.2	0.6	1.2	1.6	1.7	0.8
	금액	0.1	0.2	0.3	0.6	1.2	1.5	1.6	0.8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2. 농산물 관세

2.1. 캐나다의 농산물 관세제도³

캐나다는 관세제도를 관세법과 관세율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Customs Act)은 통관과 관세에 관한 기본법으로 수출입 준수사항, 관세평가, 감세 및 환불, 규정의 집행방식 등을 규정한다. 관세율법(Customs Tariff)은 관세 부과와 부과된 관세의 환불에 관한 법률이다. 캐나다의 관세율 기본 구조는 일반특혜관세(GPT)와 최혜국관세(MFN), 특별관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캐나다의 관세구조는 종가세 중심이며 관세율 수준은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다. 섬유, 신발, 식품, 음료와 담배, 식용유와 지방, 동물 관련 제품 등의 관세율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동물 및 채소 관련 제품과 식품, 음료와 담배 일부 품목은 비종가세 부과 대상이다.

캐나다의 관세율 구조는 누진관세 형태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섬유의 경우 원료, 중간재, 최종재의 관세율이 각각 1.1%, 9.3%, 15.4%로 상승한다. 한편 15% 이상 고율관세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이며,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매우 높다.

관세율할당(TRQ) 제도 아래 쿼터 내 관세율(In-Quota Tariff)은 대부분 종가세로 9% 이하이다. 쿼터 초과 관세율도 주로 종가세이나 최소 관세율이 종량세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농산물 2,476개 가운데 비종가세 품목은 전체의 20.5%에 해당하는 508개 품목이다. 시리얼과 맥아 등 조리된 식품은 대부분 비종가세 품목에 포함된다. 쿼터 초과 관세율이 200~300%로 높게 설정된 품목은 가금육(01류와 16류)과 낙농제품(04류, 18류, 19류, 21류) 등이다.

종가세 기준으로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우유와 크림으로 293%이다. 이에 따라 탈지 및 전지분유와 버터 등 낙농제품은 국제가격보다 2.5배 정도 높

3 어명근 외(2006)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은 관세율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반면에 밀, 보리, 쇠고기 등의 쿼터 초과 관세율은 국제가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다. 캐나다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2,476개 품목 가운데 비종가세 부과 품목 508개를 제외한 1,968개 품목만을 대상으로 한 관세율임)은 4.2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캐나다 관세제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관세부과 형태에 있어서는 비종가세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복잡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평균 관세율은 비교적 낮으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수입금지적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가 산업보호적 측면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육류, 낙농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대부분의 품목이 가공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캐나다는 누진관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13. 캐나다의 농산물 관세부과 형태별 품목분류 현황

단위: 개

총품목	종가세 품목	비종가세 품목	평균 관세율
2,476	1,968	508	4.21%

2.2. 품목별 관세율

품목 부류(Chapter)별로 볼 때 관세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은 육류(2류; 평균 7.7%), 곡물(10류; 평균 11.3%), 육가공품(16류; 평균 14.6%), 담배(24류; 평균 7.1%) 등이다. 그 밖에 전체 평균보다 높은 부류별 평균 관세율을 나타내고 있는 품목은 유제품(4류; 평균 6.0%), 동·식물성유지(15류; 평균 5%), 당류(17류; 평균 5.8%), 초콜릿(18류; 평균 4.5%), 채소 및 과일 조제품(20류; 평균 5.3%), 소스류(21류; 평균 6.4%), 주류(22류; 평균 4.7%) 등이다. 품목 부류별 관세율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할 때 캐나다의 관심품목은 육류, 유제품, 곡물 등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담배, 당류, 주류 등은 자국 산업보호 이외의 목적으로 관세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료 농산물에 비해 가공품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표 2-14. 캐나다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분류	실행관세	분류	실행관세
전체 평균	4.21	18류	4.48
1류	0.52	19류	4.05
2류	7.69	20류	5.27
4류	6.04	21류	6.41
5류	0.00	22류	4.70
6류	2.20	23류	1.49
7류	2.02	24류	7.14
8류	0.69	29류	2.75
9류	0.87	33류	0.47
10류	11.32	35류	4.15
11류	3.13	38류	2.75
12류	0.43	41류	0.00
13류	0.00	43류	0.00
14류	0.00	50류	0.00
15류	5.01	51류	0.00
16류	14.62	52류	0.56
17류	5.75	53류	0.00

자료: Canada, Customs Tariff, 2004. 1.

축산물 가운데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품목은 쇠고기, 가금육, 낙농품 등이다. 그 밖의 축산물은 대부분 0%의 관세가 적용된다. 쇠고기의 관세율은 평균 13.25%이고 종가세 부과 품목만을 고려한 낙농품의 평균 관세율은 쇠고기보다 낮다. 그러나 낙농품의 경우 비종가세 부과 품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균 관세율은 쇠고기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 분유제품은 종가세로 295.5%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HS-04022122). 가금육(HS-0207)의 관세율도 비종가세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관세율 또한 높다. 일부 닭고기의 관세율은 종가세로 249%(HS-02071392)가 부과되고 일부 칠면조 고기(HS-02072630)의 관세율은 165%에 달한다. 저율관세 부과 품목이 많은 품목군은 산동물(1

류), 기타 동물성 생산품(5류; 깃털, 장기, 뼈, 수정란 등)이다.

화훼류(6류)의 관세율은 채소에 비해 높다. 화훼류 가운데에서도 절화(HS-0603)의 관세율이 가장 높아 평균 7.55%이다. 그러나 뿌리와 묘목은 평균 관세율이 각각 2.31%와 0.67%로 낮은 편이다. 기타 식물의 잎이나 가지(HS-0604)의 경우 평균 관세율은 2%로 낮은 편이다.

채소류(7류)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절반 이상이다. 주요 무관세 품목은 파, 마늘, 양파, 무, 배추, 상추 등으로 서류(감자, 고구마 등)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선채소이다. 반면 냉동, 건조, 일시저장 처리 등 가공 단계를 거친 품목의 관세율은 신선한 것보다 높다. 예를 들면, 냉동채소, 일시 저장처리채소의 관세율은 각각 평균보다 높은 9%, 4.93%이며, 건조채소의 관세율은 4%이다.

과실류(8류)의 평균 관세율은 0.69%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견과류와 오렌지류의 관세율은 0%이다. 저율이지만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포도, 사과, 배, 버찌, 밤, 대추, 잣 등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자국의 생산이 가능한 품목(예, 버찌)과 냉동 견과류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산업보호 수단으로서의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곡물류(10류)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크다. 주요 곡물 가운데 쌀, 옥수수, 수수 등은 무관세이나 밀의 관세율은 평균 65.5%에 달한다. 밀의 관세율은 비종가세 부과 대상 4품목을 고려하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맥주맥과 보리의 평균 관세율도 45%로 평균 관세율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보리에 대해서도 HS 10단위 기준 2개 품목에 대해서는 비종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곡분(11류) 등 기타 곡물 가공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곡물보다 낮은 수준이다.

주류(22류) 가운데에서는 유사포도주(HS-2206)의 평균 관세율이 16%로 가장 높다. 담배류(24류)에서는 잎담배보다 엽연초와 필터 담배의 관세율이 높다. 담배의 관세율은 평균 관세율의 두 배 수준이다.

표 2-15. 캐나다의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품목군	실행관세	품목군	실행관세	품목군	실행관세
0101류	0.00	0601류	2.31	0905류	0.00
0102류	0.00	0602류	0.67	0906류	1.50
0103류	0.00	0603류	7.55	0907류	1.50
0104류	0.00	0604류	2.00	0908류	1.50
0105류	2.69	0702류	0.00	0909류	1.50
0106류	0.00	0703류	0.00	0910류	1.00
0201류	13.25	0704류	0.00	1001류	65.50
0202류	13.25	0705류	0.00	1002류	0.00
0203류	0.00	0706류	0.00	1003류	45.50
0204류	0.50	0707류	0.00	1004류	0.00
0205류	0.00	0708류	0.00	1005류	0.00
0206류	0.00	0709류	0.00	1006류	0.00
0207류	5.65	0710류	9.00	1007류	0.00
0209류	0.00	0711류	4.93	1008류	0.00
0209류	11.00	0712류	4.00	1102류	3.20
0210류	0.25	0713류	0.60	1103류	1.36
0401류	7.50	0714류	2.59	1104류	3.95
0402류	6.50	0801류	0.00	1105류	9.50
0403류	7.00	0802류	0.00	1106류	1.20
0404류	8.43	0803류	0.00	1107류	0.00
0405류	7.25	0804류	0.00	1108류	4.58
0407류	0.00	0805류	0.00	1109류	7.50
0408류	8.50	0806류	1.50	1201류	0.00
0409류	0.00	0807류	0.00	1202류	0.00
0410류	11.00	0808류	0.42	1203류	0.00
0501류	0.00	0809류	2.30	1204류	0.00
0502류	0.00	0810류	0.00	1205류	0.00
0504류	0.00	0811류	2.92	1206류	0.00
0505류	0.00	0812류	1.50	1207류	0.00
0506류	0.00	0813류	0.75	1208류	3.00
0507류	0.00	0814류	0.00	1209류	0.38
0508류	0.00	0901류	0.00	1210류	0.00
0509류	0.00	0902류	0.00	1211류	0.00
0510류	0.00	0903류	0.00	1212류	1.08
0511류	0.00	0904류	1.00	1213류	0.00

(표 2-15 계속)

품목군	실행관세	품목군	실행관세	품목군	실행관세
1214류	2.50	1704류	8.89	2302류	0.00
1301류	0.00	1801류	0.00	2303류	0.36
1302류	0.00	1802류	0.00	2304류	0.00
1401류	0.00	1803류	0.00	2305류	0.00
1402류	0.00	1804류	0.00	2306류	0.00
1403류	0.00	1805류	6.00	2307류	0.00
1404류	0.00	1806류	5.58	2308류	0.00
1501류	0.00	1901류	5.61	2309류	2.11
1502류	2.50	1902류	3.07	2401류	6.08
1503류	7.50	1903류	0.00	2402류	9.50
1504류	3.00	1904류	4.34	2403류	7.35
1505류	0.00	1905류	3.78	2905류	2.75
1506류	7.00	2001류	3.00	3301류	0.47
1507류	4.67	2002류	11.50	3501류	0.00
1508류	7.00	2003류	14.57	3502류	7.17
1509류	0.00	2004류	9.46	3503류	4.00
1510류	0.00	2005류	6.82	3504류	6.50
1511류	4.25	2006류	6.90	3505류	3.21
1512류	7.25	2007류	7.92	3506류	5.50
1513류	6.80	2008류	4.86	3809류	0.00
1514류	8.50	2009류	2.12	3824류	5.50
1515류	5.86	2101류	0.00	4101류	0.00
1516류	8.56	2102류	4.25	4102류	0.00
1517류	7.40	2103류	10.08	4103류	0.00
1518류	7.42	2104류	7.67	4301류	0.00
1520류	0.00	2105류	7.25	5001류	0.00
1521류	0.00	2106류	7.32	5002류	0.00
1522류	0.00	2201류	2.17	5003류	0.00
1601류	67.50	2202류	8.68	5101류	0.00
1602류	15.70	2203류	0.00	5102류	0.00
1603류	4.50	2205류	16.00	5103류	0.00
1604류	4.93	2206류	3.00	5201류	0.00
1605류	3.36	2207류	6.50	5202류	0.00
1701류	0.00	2208류	0.00	5203류	2.50
1702류	4.11	2209류	9.50	5301류	0.00
1703류	4.17	2301류	0.60	5302류	0.00

자료: Canada, Customs Tariff, 2004. 1.

2.3. 관세 부과 형태

관세는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서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 등으로 구분된다. 캐나다는 네 가지 관세 부과 형태를 모두 취하고 있다. 캐나다의 종가세 비중은 80%이다. 그 밖에 ‘일정한 종량세 범위 내의 종가세’로 형태로 규정된 특수선택세와 ‘일정한 종가세 이하의 종량세’ 형태인 특수복합세가 있다.⁴

종량세는 비종가세 품목 가운데 가장 흔한 형태로 모두 248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종량세 부과 품목이 가장 많은 것은 치즈(HS-0406)와 포도주(HS-2204)에 속하는 품목으로 각각 44개 품목이다. 그 밖에 과일 및 곡물 발효주(HS-2206)에 속하는 품목 가운데 30개 품목에 종량세가 부과되고 있다. 종량세가 적용되는 다른 품목군은 사탕수수당(HS-1701) 16개와 포도당(HS-1702) 품목 12개이다.

선택세는 모두 187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으며, 축산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육류(2류) 가운데 22개 품목에 선택세가 적용되며, 이 가운데 16개 품목은 가금육이다. 낙농품(4류) 가운데 40개 품목에 선택세가 적용되며 치즈(HS-0406) 17개 품목이 포함된다. 서류와 채소(7류)에서는 48개 품목이 선택세 부과 대상이다. 채소류 가운데 선택세 부과 품목이 많은 것은 버섯으로 모두 12개 품목이다. 과일류(8류)에서는 20개 품목에 선택세가 적용된다. 또한 가금육(HS-0207) 15개를 포함하여 모두 21개 품목에 특수선택세가 부과된다.

복합세 부과 대상 품목은 모두 73개이다. 복합세 부과 품목이 가장 많은 부류는 곡물 조제품(19류)이다. 곡물 조제품 가운데 43개 품목이 복합세 부과 대상으로 전체 복합세 대상 품목의 68%에 달한다. 채소류(7류) 10개 품목에는 특수복합세가 적용된다.

4 특수선택세는 ‘x% but not less than y cent/kg or more than z cent/kg’와 같이 표시되며, 특수복합세는 ‘x cent/kg but not less than y% plus z%’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됨.

표 2-16. 캐나다의 비종가세 현황

단위: 개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			
		특수선택세		보통선택세		특수복합세		보통복합세	
0105류	8	0207류	15	0105류	4	0703류	1	0706류	1
0402류	5	0209류	2	0207류	16	0704류	3	1102류	1
0403류	2	0210류	2	0209류	2	0705류	2	1103류	3
0404류	2	1602류	2	0210류	4	0706류	1	1104류	5
0405류	1	-	-	0401류	3	0708류	1	1109류	1
0406류	44	-	-	0402류	7	0709류	2	1901류	7
0407류	3	-	-	0403류	3	-	-	1902류	8
0408류	7	-	-	0404류	5	-	-	1904류	14
0604류	1	-	-	0405류	3	-	-	1905류	14
0701류	1	-	-	0406류	17	-	-	2106류	1
0706류	1	-	-	0407류	2	-	-	2204류	6
0805류	1	-	-	0701류	1	-	-	2302류	2
0910류	1	-	-	0702류	6	-	-	-	-
1001류	4	-	-	0703류	4	-	-	-	-
1002류	1	-	-	0704류	5	-	-	-	-
1003류	2	-	-	0705류	2	-	-	-	-
1008류	1	-	-	0706류	5	-	-	-	-
1101류	1	-	-	0707류	2	-	-	-	-
1102류	1	-	-	0708류	3	-	-	-	-
1103류	1	-	-	0709류	10	-	-	-	-
1106류	1	-	-	0808류	3	-	-	-	-
1107류	6	-	-	0809류	10	-	-	-	-
1108류	11	-	-	0810류	2	-	-	-	-
1517류	1	-	-	0811류	2	-	-	-	-
1601류	3	-	-	0812류	3	-	-	-	-
1701류	16	-	-	1517류	1	-	-	-	-
1702류	12	-	-	1602류	9	-	-	-	-
1902류	3	-	-	1806류	2	-	-	-	-
1905류	2	-	-	1901류	11	-	-	-	-
2106류	2	-	-	2009류	7	-	-	-	-
2202류	2	-	-	2105류	3	-	-	-	-
2203류	1	-	-	2106류	3	-	-	-	-
2204류	44	-	-	2202류	1	-	-	-	-
2205류	5	-	-	2309류	5	-	-	-	-

(표 2-16 계속)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			
		특수선택세		보통선택세		특수복합세		보통복합세	
2206류	30	-	-	-	-	-	-	-	-
2207류	4	-	-	-	-	-	-	-	-
2208류	11	-	-	-	-	-	-	-	-
2240류	1	-	-	-	-	-	-	-	-
2302류	2	-	-	-	-	-	-	-	-
3502류	3	-	-	-	-	-	-	-	-
계	248	계	21	계	166	계	10	계	63

자료: Canada, Customs Tariff, 2004. 1.

2.4. 관세율 분포

증가세 부과 대상 품목만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캐나다의 미소관세(5% 미만의 관세) 품목은 전체 1,968개(HS 8 단위 기준)의 68.4%인 1,346개에 달한다. 반면 100%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은 모두 6개 품목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하다. 세율 5~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은 429개로 전체의 21.8%이다. 따라서 10% 미만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전체의 90% 이상이다. 다만 이는 증가세 부과 대상 품목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는 비증가세 부과 품목이 전체의 20%에 달하며 비증가세 부과 대상 품목의 관세는 일반적으로 증가세 부과 대상 품목의 관세에 비해 높다.

표 2-17. 캐나다의 관세 구간별 품목 분포

단위: 개, %

관세율	0~5% 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20~50% 미만	50~100% 미만	100% 이상	합계
품목 수	1,346 (68.4%)	429 (21.8)	141 (7.2)	42 (2.1)	4 (0.2)	6 (0.3)	1,968 (100)

종가세 부과 품목만을 기준으로 할 때, 캐나다의 100% 이상 고율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6개에 불과하다. 이들 고율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모두 육가공품(16류)으로 소시지(HS-1601) 4개 품목과 조제저장육(HS-1602) 2개 품목 등이다. 최고세율은 238%로 소시지 2개 품목과 조제저장육 1개 품목에 적용된다.

한편 50% 이상 100% 미만 구간에 있는 4개 품목은 모두 곡물(10류)이며 20% 이상 50% 미만 구간에 분포하는 42개 품목은 주로 육류(2류)이며, 곡물(10류)도 2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캐나다의 주요 관심품목이 육류와 곡물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곡물류 가운데에서는 특히 밀과 보리가 중요한 품목으로 취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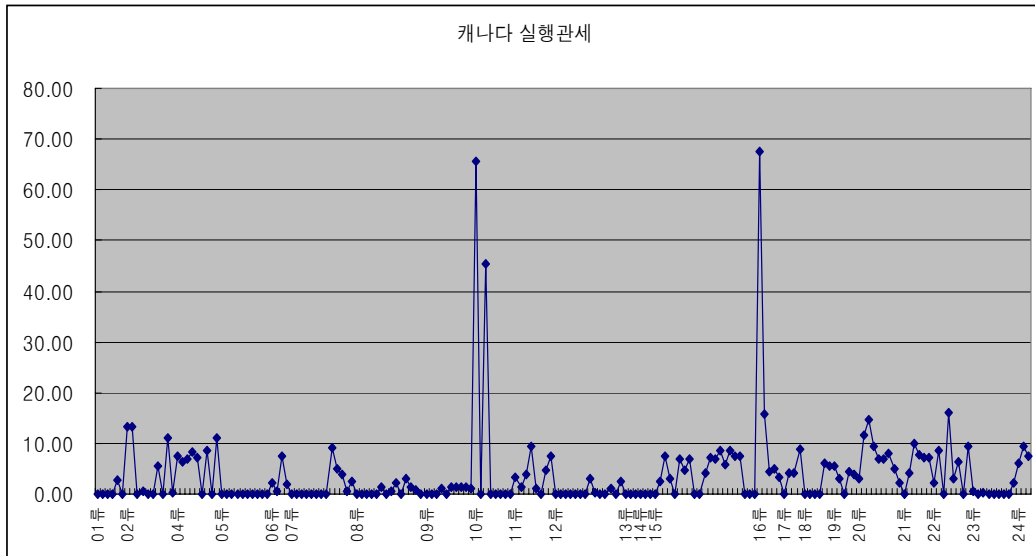
표 2-18. 캐나다의 고율 관세 현황

100% 이상 관세율		최고 관세율(238%)	
HS-160100	4	HS-160100	2
HS-160220	2	HS-160220	1
합 계	6	합 계	3

이러한 현상은 표준 품목 분류상 호(號; HS 4단위) 단위 평균을 기준으로 분석한 관세 구간별 품목 분포에 의해서도 나타난다<그림 2-1 참조>. 그림 1에서 관세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품목군은 16류와 10류이며, 2류와 4류, 15류, 20류부터 22류까지, 그리고 24류 등의 순으로 높다. 그 밖에 다른 대부분의 품목군은 평균 관세율이 0%에 가깝다.

그러나 캐나다는 자국의 농업에 중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비종가세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어 비종가세까지 포함할 경우 캐나다의 고율관세 품목은 크게 증가한다. 예를 들면, 낙농품 가운데 일부 품목(HS-04059010 등)의 관세율은 최소 관세 수준을 종량세로 규정한 가운데 313.5%의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소 관세율 수준을 종량세로 규정한 상태에서 200% 이상의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은 낙농품(4류) 가운데에서만 40개 품목에 달한다. 따라서 캐나다의 고율관세와 평균관세 수준은 종가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계산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1. 캐나다의 관세 구간별 품목 분포(HS 4단위 기준 평균 세율)



3. 캐나다의 FTA 농산물 양허안 분석

3.1. NAFTA의 농산물 양허안

1993년 체결된 NAFTA에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농산물을 다음과 같이 복잡한 단계별 범주(Staging Category)에 따라 양허하였다.

캐나다의 NAFTA에서 농산물 양허안은 대상 품목과 양허 내용이 미국과의 FTA(CUSFTA)에 양허한 내용과 유사하다. 캐나다는 미국과 멕시코에 이미 관세 면제된 370개 품목을 포함하여 HS8 단위 기준 품목 분류 기준으로 모두 1,032개를 양허하였다. 즉시 철폐(카테고리 A) 품목은 전체 양허 품목의 18.3%인 189개로 기존 무관세 품목과 합하면 54.2%인 559개이다. 5년 내 철폐 품목(카테고리 B)은 11개로 전부 22류(2리터 이내 용기의 포도주)이다. 포도주를 제외하면 5년 내 철폐로 양허한 품목은 없다.

표 2-19. NAFTA의 단계별 양허안

범주	철폐 계획
A	1994년부터 관세 완전 철폐
B	1994년부터 5년간 균등 감축(1998년 철폐)
Bg	1994년 FTA 세율로 인하 후 5년간 균등 감축; 캐나다가 멕시코산 특정 농산물에 양허
C	1994년부터 10년간 균등 감축(2003년 철폐)
Ctq	TRQ 조건부 1994년부터 10년간 균등 감축: 특정 농산물
D	기존 면세 품목
Ex	관세 철폐 제외(공급관리 품목)
Sug	설탕과 설탕 제품에 대한 특별 취급

특정 멕시코산 농산물에 대하여 협정 발효 즉시 FTA 관세율 적용 후 5년간 철폐(카테고리 Bg)하는 품목은 전체의 33.6%인 347개이다. 7류(식용 채소)와 8류(과일), 그리고 20류(채소 및 과일 조제품), 22류(발효 음료와 알콜 종류)가 포함된다. 10년 내 철폐(카테고리 C) 품목은 36개이며, 7류의 일부 채소류와 20류의 야채 주스 및 22류의 2리터 이상 용기의 포도주가 이 범주에 해당된다. 또한 TRQ 제공 조건부 10년 내 철폐(카테고리 Ctq) 품목은 모두 8개로 7류의 신선 토마토와 양파, 오이 등 채소류와 6류의 절화류, 8류의 딸기 등이 대상이다.

관세 철폐 제외 품목은 전체의 약 5%인 52개이며 공급관리정책으로 수입을 통제하고 있는 1류의 가금류와 2류의 가금육, 그리고 4류의 대부분(우유, 버터, 치즈 등 낙농품)이 포함된다. 그러나 천연 꿀은 즉시 철폐 품목으로 양허되었다. 또한 특별 취급 대상인 19개 설탕 및 설탕 제품은 주로 17류(당 및 설탕과 자)이며 흰 초콜릿(18류)과 조제식품(21류)도 한 개씩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단풍 시럽과 사탕무 당은 이미 무관세되어 있거나 즉시 철폐 대상이다.

표 2-20. NAFTA에서 캐나다 농산물 양허 내역

부류	A	B	Bg	C	Ctq	D	Ex	Sug	합계
01	4	-	2	-	-	12	3	-	21
02	22	-	3	-	-	24	8	-	57
04	2	-	-	-	-	-	30	-	32
05	2	-	1	-	-	17	-	-	20
06	1	-	11	-	1	17	-	-	30
07	12	-	63	8	4	53	-	-	140
08	2	-	33	1	2	49	-	-	87
09	19	-	1	-	-	30	-	-	50
10	3	-	8	-	-	8	-	-	19
11	11	-	26	-	-	5	-	-	42
12	4	-	7	-	-	42	-	-	53
13	1	-	-	-	-	11	-	-	12
14	-	-	-	-	-	11	-	-	11
15	37	-	20	-	-	12	-	-	69
16	32	-	14	2	-	5	7	-	60
17	3	-	12	4	-	4	-	17	40
18	-	-	6	-	-	6	-	1	13
19	1	-	32	1	-	7	-	-	41
20	10	-	50	5	1	23	-	-	89
21	6	-	13	1	-	5	3	1	29
22	9	11	34	14	-	3	-	-	71
23	4	-	1	-	-	25	1	-	31
24	4	-	10	-	-	1	-	-	15
합계	189	11	347	36	8	370	52	19	1,032

* HS 8 단위 기준 품목 수입.

3.2. 칠레와의 FTA(CCFTA) 농산물 양허안

캐나다는 칠레와 1996년에 체결한 FTA 협정에서 모든 양허대상 품목을 ‘즉시 철폐’ 외에 ‘3년간 균등 감축’부터 ‘7년간 균등 감축’ 및 ‘관세 철폐 제외’까지 관세 감축 기간과 방법에 따라 12개의 단계별 범주(Staging Category)로 구분하여 양허하였다. 그러나 농산물은 7년간 균등 감축(카테고리 B), 칠레의 간

이관세환급 대상 제외 조건부 철폐(X1), 칠레의 간이관세환급 대상 제외 조건부 6년간 균등 감축(X2), 관세환급 대상 제외시 2003년까지 균등 감축(X3) 및 관세 철폐 예외(Y)의 5개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모두 270개의 품목이 포함되었다. 관세 철폐 분류 범주와 철폐 계획은 다음과 같다.

범주	철폐계획	대상품목(HS 8 단위 기준)
B	'97부터 '03까지 7년간 14.3%씩 균등 감축	104개
X1	조건* 충족시 관세 철폐	24개
X2	조건* 충족시 2002년까지 6년간 균등 감축	26개
X3	조건* 충족시 2003년까지 매년 균등 감축	28개
Y	관세 철폐 제외	88개

* 칠레가 해당 품목을 간이관세환급(Symplified Duty Drawback) 대상 품목에서 제외.

캐나다가 칠레에 대하여 협정 발효(1997년)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양허한 품목은 HS 5류(동물성 생산품), 9류(커피와 차), 13류(식물성 수지류), 14류(식물성 섬유) 및 24류(담배) 전 품목과 WTO 농업협정상 대상품목인 29류(마니톨), 33류(정유), 38류(염색제), 41류(원피), 43류(모피), 50류(비단), 51류(양모), 52류(면) 53류(아마) 등이다. 나머지 품목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감축하여 철폐하거나 조건부로 관세를 철폐하였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을 부여하고 초과물량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범주	대상품목
즉시 철폐	5류, 9류, 13류, 14류, 24류, 29류, 33류, 38류, 41류, 43류, 50류, 51류, 52류, 53류 전 품목과 다음 양허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부류의 품목들
B	19류(35개), 20류(19개), 11류(16개), 8류(13개), 7류(11개), 10류(4개), 6류와 21류(각 2개), 22류와 23류(각 1개) 등 104개*
X1	8류(8개), 7류(5개), 20류(4개), 4류와 21류(각 3개), 12류 1개 등 24개
X2	21류(11개), 19류(6개), 17류(4개), 18류(3개), 15류(2개) 등 26개
X3	7류(9개), 20류(8개), 8류(6개), 6류(3개), 21류와 22류(각 1개) 등 28개
Y	4류(35개), 2류(22개), 16류(14개), 21류(5개), 19류와 1류(각 4개), 18류(2개), 22류와 23류(각 1개) 등 88개**

* HS 8 단위 기준 품목 수입.

** 주로 시장접근물량 초과분(over access commitment)이 대상임.

먼저 7년간(1997~2003년) 관세를 균등 감축하여 철폐하는 품목(카테고리 B)은 HS 8 단위 기준 모두 104개로 곡물 조제품(19류)이 35개로 가장 많고, 채소 및 과일 조제품(20류) 19개, 곡분(11류) 16개, 과일(8류) 13개, 채소(7류) 11개 등이었다. 그 밖에 곡물(10류) 4개, 산수목(6류)과 소스류(21류) 각 2개, 와인(22류)과 사료(23류) 각 1개씩이었다.

둘째, 칠레가 해당 품목을 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캐나다에 통보할 경우 관세를 120일 이내에 일시 철폐하는 방식(카테고리 X1)으로 양허한 품목은 모두 25개로 과일 8개, 채소 5개, 채소 및 과일 조제품 4개, 낙농품(4류)과 소스류 각 3개, 유지종자(12류)와 젤라틴(35류) 각 1개씩이었다.

셋째, 칠레가 해당 품목을 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할 경우 1997~2002년간 매년 16.7%씩 균등 감축하여 철폐하는 방식(카테고리 X2)은 모두 26개 품목이다. 품목별로는 소스류 11개, 곡물 조제품 6개, 당류(17류) 4개, 초콜릿(18류) 3개, 유지류(15류) 2개 등이다.

넷째, 칠레가 2003년 이전에 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할 경우, 통보받은 해와 2003년 사이의 기간에 매년 균등 분할하여 감축하는 방식(카테고리 X3)에는 28개 품목이 해당된다. 품목별로는 채소류가 9개로 가장 많고 채소 및 과일 조제품이 8개, 과일 6개, 산수목 3개, 소스류와 와인 각 1개 등이다.

마지막으로 관세 철폐가 면제되는 품목(카테고리 Y)은 모두 88개이며 대부분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관세 철폐를 면제한다. 부류별로는 낙농품이 35개로 가장 많고, 가금류 등 육류(2류)가 22개, 육어류 조제품(16류) 14개, 소스류 5개, 곡물 조제품과 산동물(1류)이 각각 4개, 초콜릿 2개, 그리고 와인과 동물사료 각 1개씩이다.

표 2-21. CCFTA에서 캐나다의 농산물 양허 내역

부류	B	X1	X2	X3	Y	합계
01	-	-	-	-	4	4
02	-	-	-	-	22	22
04	-	3	-	-	35	38
05	-	-	-	-	-	전품목 즉시
06	2	-	-	3	-	5
07	11	5	-	9	-	25
08	13	8	-	6	-	25
09	-	-	-	-	-	전품목 즉시
10	4	-	-	-	-	4
11	16	-	-	-	-	16
12	-	1	-	-	-	1
13	-	-	-	-	-	전품목 즉시
14	-	-	-	-	-	전품목 즉시
15	-	-	2	-	-	2
16	-	-	-	-	14	14
17	-	-	4	-	-	4
18	-	-	3	-	2	5
19	35	-	6	-	4	45
20	19	4	-	8	-	31
21	2	3	11	1	5	22
22	1	-	-	1	1	3
23	1	-	-	-	1	2
24	-	-	-	-	-	전품목 즉시
합계	104	24	26	28	88	270**

* HS 8 단위 기준 품목 수입.

** 즉시 철폐한 품목 제외

4. 한-캐나다 FTA 협상 전략과 대책

4.1. 한-캐나다 FTA 협상 전략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와의 FTA 체결시 한국의 소비자 후생(welfare)은 0.38%인 약 15억 달러가 증가하고 국내총생산은 0.4%, 수출은 0.88%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⁵ 캐나다도 소비자 후생이 0.29%인 16억 3천만 달러, 국내총생산은 0.48%, 수출은 0.53% 늘어나 FTA 체결이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캐나다의 경우 총산출이 1억 4,200만 달러 증가하지만 한국은 약 6,500만 달러 감소하여 한국농가소득이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연구 결과 양국간 FTA 체결시 한국의 농산물 수입은 육류 1,320만 달러, 가축 1,200만 달러, 기타 작물 1,210만 달러, 낙농품 1,060만 달러 등 모두 53.6백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은 낙농품 450만 달러, 기타 작물 330만 달러 등 약 1,000만 달러 증가에 불과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4,360백만 달러나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명근(2006)이 품목별 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여 계측한 주요 품목별 수입액 변화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즉, 수입수요함수 추정에 의한 대캐나다 농산물 수입 증가 예상액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합하여 약 1,200만 달러, 우유조제품 240만 달러, 그리고 맥아와 감자 등 기타 작물 1,020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계측되었다. 추정 작업에 포함되는 농산물 품목의 종류와 수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캐나다의 농업경쟁력이 한국보다 대부분 품목에서 높기 때문에 FTA 체결시 한국의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에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아울러 농산물 수입 증가는 국내 시장가격 하락을 초래하

5 김한호 외(2004) 155쪽

여 농가소득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불리한 효과가 예상되는 캐나다와의 FTA 협상에서 전략은 이득 극대화보다는 피해 최소화 전략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국가 내에서도 농업과 비농업부문의 이해득실에 관한 입장이 다르므로 농업부문만 분리하여 캐나다측과 협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FTA 협상의 첫째 전략은 우선 전체적인 FTA 협상과는 별도의 농업협상을 통해 양국의 농업부문 당사자들이 각자의 관심분야와 취약분야에 대하여 솔직하게 대화하고 타협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농업부문의 FTA 협상 목표 또는 협상이 지향하는 바를 정하고 이를 근거로 현안과 쟁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협상 목표의 하나로 ‘양허 이득의 분야별 상호 균형’을 표방하면서 상대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일방적인 이득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수립할 경우 당사국 모두 이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양허를 추진한다는 명분이 마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근거로 일부 민감 품목의 양허 제외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도 NAFTA 협정에서 농산물 전체의 약 5%에 해당하는 52개 품목을 관세 철폐 예외로 인정받았으며, 칠레와의 FTA에서도 모두 88개의 농산물을 관세 철폐 면제로 양허한 바 있다.

셋째, 농산물 품목별 중요성에 따라 양허율을 조정함으로써 GATT 규정에 합치되면서도 국내 농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양허 이득의 상호 균형’이란 원칙 아래 부분적인 예외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도 다른 모든 품목을 일괄적으로 양허하면 피해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최혜국 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지역무역협정(RTA)을 허용하는 GATT 24조의 규정은 ‘실질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하여(to substantially all the trade)’ 지역무역협정을 형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구상에 현존하는 거의 모든 FTA 협정은 양허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가능한 한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양허하되 이미 자유화가 상당히 진행된 품목 또는 관세를 철폐해도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

는 품목은 대폭 양허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전체적인 양허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단순하고 획일적인 양허 방식을 지양하고 농산물 품목별 민감성에 따라 가능한 한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양허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후 FTA 협정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여러 가지 분쟁에 대비하여 품목별 특성에 맞추어 치밀하게 고안된 양허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국인 캐나다가 실질적인 수출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물량에 대한 TRQ 제공, 일정한 범위내의 관세 인하, 관세 철폐 기한 연장 등 여러 가지 양허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와의 FTA 이전에 체결한 한-칠레 FTA 협정 또는 한-EFTA FTA 협정과의 형평성 또는 양허 수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2004년 현재 수입 돼지고기 시장점유율 1위인 칠레에 대하여 돼지고기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는 것으로 양허하였다. 따라서 캐나다산 돼지고기에 대하여 관세 철폐 기한을 더 늦추거나 예외 취급을 시도함으로써 기 FTA 체결국들과 마찰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 쇠고기와 낙농품, 곡물류 등에 대해서도 기존 FTA 협정에서의 양허수준에 맞추어 협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2. 수출확대 방안

4.2.1. 우리나라의 관심 품목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농산물 수출액은 최근 5년간 약 2천만 달러 규모로 작은 편이며, 주로 라면과 베이커리 제품 등 가공농산물 위주로 수출되고 있다. 신선 농산물로는 감귤과 배 등이 수출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대부분의 수출 농산물이 한인 교포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와의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신선 농산물 가운데 배와 감귤 등 기존 수출액이 많은 과일류의 수출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캐나다 정부의 엄격한 검역 기준이 완화될 경우 밤과 사과도 수출 가능성이 있다. 가공식품으로는 교포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류 및 라면을 비롯하여 즉석 면류와 국수, 파스타, 베이커리 제품과 소스 등의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 품목들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 수준이 높지 않아 관세 철폐의 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고 따라서 수출 증가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최대의 수출 식품인 라면과 국수에 대한 관세율은 4%, 신선 감귤과 식물성 점질물 기타는 무관세, 그리고 신선 배는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 쿼터 초과량은 10.5%가 적용된다. 그 밖에 베이커리 제품의 관세율은 7%, 장류는 8%에서 9%로 사실상 10%를 초과하는 관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아 관세 철폐에 따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세 철폐시 주요 수출 품목별 수출 증가 예상액을 추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캐나다의 농산물 소비 패턴을 잘 파악하여 틈새시장(niche market) 개척과 농업부문 내에서의 산업 내 무역 활성화, 그리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 및 시장화 등 마케팅 전략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2.2. 캐나다 시장 개척 방안

캐나다는 국토가 광활하고 지역에 따라 기후 등 자연조건이 상이하며 여러 민족이 공존하고 있어 시장 자체의 규모는 큰 편이 아니지만 소비자 기호와 소비패턴 등 농산물 시장구조가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퀘벡주는 프랑스계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캐나다 다른 지역과는 상이한 프랑스계의 기호, 성향 및 문화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프랑스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어 상표도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의 소비자는 소득 수준이 높아 고품질 및 편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명 브랜드와 포장 스타일 등 디자인을 구매시 주요 고려요인으

로 보는 전형적인 선진국 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브랜드 파워가 낮은 제품을 할인점 등에서 구입하는 행태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CUSFTA) 및 NAFTA 발효로 미국산 제품과 멕시코산 제품은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저가 농산물 시장과 고품질 농산물 시장이 공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유통 및 물류 네트워크는 방대한 영토에 적은 인구, 그리고 혹독한 기후의 영향으로 중앙집중적인 물류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산업과 지역에 따라 특정 지역 내 판매와 틈새시장 전략, 그리고 주문 생산 등으로 유통 체계가 다양화 되고 있다. 현재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들도 주로 한인교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틈새시장 형태로 수입되고 있어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농산물 수입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캐나다 국민들의 소비시장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다양한 캐나다인들의 특성과 취향을 잘 파악하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캐나다 소비자들은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 품질만 믿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강식으로서의 한국 농산물과 식품을 부각시키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웰빙 풍조를 활용하여 채소와 곡물을 많이 함유한 한국 전통식품 가운데 전략 농산물을 선정하고 한국식 음식 문화 전파라는 차원에서 시장 진출 및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소비자나 구매자 성향에 대한 정보는 각종 조사나 무역 및 산업정보지, 캐나다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통계자료나 무역전람회(Trade Show)에 참가하여 얻을 수 있다. 무역전람회에 참가하면 주요 수입상이나 분배상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도 얻고, 현지 소비자의 선호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내에는 100여개 이상의 무역 및 산업전문 정보지가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캐나다의 산업정보와 품목매자수출입 통계, 주요 수입업자 명단 등 데이터베이스는 캐나다 산업부 웹사이트인 Strategis(www.strategis.gc.ca)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캐나다는 식품의 라벨에 기재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쉽고 명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 라벨의 모든 필수 정보는 영어와 프랑스어의 두 개 공용어로 표기되어야 하나, 생산업체 및 포장업체의 이름과 주소는 공용어 가운데 하나로만 표기 가능하다. 필수 표기 사항은 일반명, 순중량, 회사명과 주소, 유통기한, 표준용기 크기, 성분정보 등이다.

한국산 식품에 대한 캐나다의 수입 규정상 외국산 육류 및 육류 2% 이상 함유 제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육류 함유제품의 수출시 성분 함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황금배와 신고배는 1998년 시범수입 기간을 거쳐 현재 한국의 국립식물검역소에 의해 캐나다 수출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배된 배만 수입 가능하며 해충 발생 금지를 위한 농약 사용과 모니터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캐나다로 수출될 배는 수확 직전까지 봉지를 씌워 재배하고 선적 전 14일 이내에 한국의 국립식물검역소에서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 받아 원본을 캐나다에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는 한국 밤에 대해 시범수입 기간을 거쳐 소량이지만 수입하고 있으며, 사과도 현재 시범수입 중에 있다.

4.3. 한-캐나다 FTA 추진 대책

캐나다와의 FTA 체결에서 캐나다와의 대외적인 협상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 농업부문 내부 및 국내 비농업부문과의 대내적 협상이다. 2003~2004년 칠레, 2007년 미국과의 FTA 협상 및 협정문 비준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내부적인 협상이 결여될 경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므로 국내 농업 및 비농업 부문과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합리적인 국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04년 제정된 「FTA 체결절차규정」에 의해 FTA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공청회 등 규정된 절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거쳐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제(mechanism) 설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FTA 추진에 대한 농업부문의 대책으로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4년 제정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207호) 및 그 시행령(법률 제 1835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농지구입 및 임차 등 영농 규모의 확대, 둘째, 용수공급로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 시설의 정비, 셋째, 우량 종자의 공급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 촉진, 넷째,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촉진, 다섯째, 농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섯째,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 등이다.

아울러 FTA 협정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품목 생산자인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일정 기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무역 또는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은 캐나다에서도 시행되는 제도로서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나 대상 품목 선정 기준, 산출 방법과 절차 등은 앞에서 설명한 캐나다의 제도를 참고하여 규정할 수 있다.

그 밖에 농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탈농하는 한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과수, 시설원예, 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 또는 사육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향후 생업 지원 차원에서 일정 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 3 장

멕시코

1. 역사

멕시코는 1521년 에스파냐인에게 정복되기 훨씬 이전부터 원주민 인디언에 의한 역사가 시작되었다. B.C. 2000년경 옥수수 농사를 기반으로 한 촌락이 각지에 발달하였으며, 기원 전후에는 멕시코 중앙고원의 테오티우아칸에 거대한 피라미드가 구축되었고, 이것을 중심으로 도시가 건설되었다. 남쪽에서는 멕시코만 기슭부터 오악사카계곡에 걸친 일대에 몬테알반의 사포텍문명, 유카탄반도에 마야문명이 꽃피었고, 900년경에는 군국주의적인 국가가 성립되었다.

멕시코 중앙고원의 톨텍, 마야에 뒤이은 치첸이차, 옥스말 등의 후기 고전문명이 융성하였으며, 멕시코분지 일대에서는 아스텍제국이 일어나 1325~1521년의 약 200년간 테스코코호 주변을 도읍으로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1521년 8월 에스파냐 탐험대의 장군 코르테스에게 정복된 후 300년 동안, 에스파냐의 부왕(副王)이 통치한 식민지 시대가 전개되었다. 16세기는 식민과 포교의 시기, 17세기는 혼혈화가 진전된 시기, 그리고 18세기는 고유의 혼혈문화를 형성하여 독립의 기운을 북돋운 시기로 불린다.

에스파냐로부터의 독립이 본격적으로 태동한 것은 1810년경이며 1821년 멕시코의 독립을 인정한 ‘코르도바’ 협정에 의해서 성립되었다. 독립 이후 식민

지시대가 끝나고 전제정치로부터 공화제로 이행하여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나, 중앙집권주의파와 연방주의파의 대립이 심하여 혼란에 빠졌다. 1846년의 실정은 미국과의 전쟁을 초래하여, 2년 후에는 영토의 북부를 상실하는 결과를 빚었다. 독재자 포르피리오 디아스가 등장했으나 대토지소유제 강화가 기폭제가 되어 1910년에 멕시코는 혁명으로 돌입하였다. 1917년에는 국민의 권리와 농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된 신헌법이 시행되었다. 오늘날 멕시코의 근대국가로서의 변형은 이 신헌법을 바탕으로 구축된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집권한 대통령 포르티요 시절에는 주요 산유국 중 하나가 되면서 빠른 경제 발전을 보였다. 그러나 지나친 외채 부담과 198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는 유가 하락으로 포르티요 이후의 대통령들은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후 집권한 대통령들은 재정적 위기상황의 개선과 광범위한 경제부양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1980~1990년대에 걸쳐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 시장 자유화 조치도 그 일환으로 행해졌다.

카를로스 살리나스(1988~1994) 대통령은 과감한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시켰으며 1994년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였다. 1994년 3월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되던 집권 제도혁명당(PRI)의 여당 후보인 콜로시오가 유세 도중 저격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1994년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에서 사파티스타(Zapatista) 원주민 농민들의 무장투쟁이 발생하면서 정치적으로 극도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접어들었으며, 12월에는 외환위기까지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과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의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나 이후 사회양극화와 이에 따른 생활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2000년 7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계 야당인 국민행동당의 빈센테 폭스(Vicente Fox)가 당선되어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71년 만의 역사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⁶

6 두산세계대백과사전

2. 주요 경제지표

멕시코의 인구는 1억 534만 명(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2.2배 이다. 농가인구(FAO의 정의에 따르면 농업인구 즉, agriculture population)는 2,198만 명(200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1%이다. 우리나라의 농가인구 비율 7.1%(2005년 기준)보다 3배 정도 높다.

멕시코의 국토 면적은 196만 km²로 우리나라의 20배에 달하며, 경지면적은 멕시코 국토의 14%인 2,765만 ha로 우리나라의 15배이다. 멕시코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이다. 멕시코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8,391억 달러(2006년 기준)로 2002년에 비해 29%(연평균 7.25%) 증가하였다. 국민 1인당 GDP는 7,969 달러이다.

표 3-1. 멕시코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2002	2003	2004	2005	2006
인구(A)	1000명	101,734	102,524	103,337	104,266	105,342
농촌거주인구		25,571	25,672	25,717	25,658	-
농업인구(B)		22,915	22,615	22,304	21,982	-
농업인구비중(A/B)	%	23	22	22	21	-
국토면적(C)	1000ha	196,438	196,438	196,438	196,438	196,438
경지면적(D)		27,650	27,700	27,700	27,600	27,600
경지면적비중(C/D)	%	14	14	14	14	14
GDP	백만 USD	649,076	639,110	683,486	767,690	839,182
1인당 GDP	USD	6,376	6,231	6,610	7,358	7,969
수출(E)	백만 USD	160,751	164,907	187,980	214,207	249,961
수입(F)		168,651	170,546	196,809	221,819	256,086
경상수지(E-F)		-7,900	-5,639	-8,829	-7,612	-6,125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멕시코의 대외교역 규모는 수출 2,500억 달러(2006년 기준), 수입 2,561억 달러이다. 무역수지(상품수지)는 2002년에는 79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으며 2006년에는 61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대외교역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수출 3,255억 달러, 수입 3,094억 달러이다. 따라서 멕시코의 전체 교역규모는 한국의 0.8배 수준이다.

3. 농산물 수급

멕시코에서 해발 1,000m 이하의 열대우림지역은 코코야자, 바나나, 카카오 등의 열대작물이 재배되며, 해발 1,500m 지역에서는 참외, 귤, 망고 등 열대과일과 커피, 사탕수수 등이 재배된다. 해발 2,000m 지역의 온대에서는 옥수수가 주로 재배된다. 해발 3,000m 이상의 산지는 냉대지역으로 소나무 등 산림이 형성되어 있으며, 농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 밖의 건조지역에서는 선인장류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멕시코는 옥수수의 세계적인 생산국이다. 옥수수는 멕시코인의 주식으로 아즈텍 제국에서는 옥수수를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믿어 일찍부터 재배방식, 저장기술, 요리, 종자개발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2006년 옥수수 재배면적은 720만 ha로 1990년대 중반의 800만 ha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2006년 기준 옥수수 생산량은 1,900만 톤이며, 자급률은 75%이다. 보리 생산량은 87만 톤으로 자급률이 92% 이다. 감자와 고구마도 높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감자의 생산량은 152만 톤으로 자급률이 96%이고 고구마는 생산량이 6만 톤이며 자급률은 98%이다. 밀 생산량은 337만 톤으로 자급률이 54% 수준이고 쌀의 생산량은 33만 톤으로 자급률이 31% 이다. 대두는 생산량이 8만 톤으로 자급률이 2%에 불과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 수입 비중은 3.4% 수준이다. 멕시코는 1960년대 초반까지는 곡물의 완전한 자급을 이루었으나, 이후 공업화의 진전 등으로 곡물 순수입국이 되었다.

표 3-2. 멕시코의 식량작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생산량(A)	3,236	2,716	2,321	3,015	3,378
	소비량(B) ¹⁾	5,936	5,651	5,564	6,338	6,288
	자급률(A/B)	55	48	42	48	54
쌀	생산량(A)	227	273	279	291	337
	소비량(B) ¹⁾	865	982	895	959	1,089
	자급률(A/B)	26	28	31	30	31
보리	생산량(A)	737	1,085	932	761	869
	소비량(B) ¹⁾	786	1,106	973	804	947
	자급률(A/B)	94%	98%	96%	95%	92%
옥수수	생산량(A)	19,298	20,701	21,670	19,339	21,893
	소비량(B) ¹⁾	24,646	26,451	27,182	25,029	29,319
	자급률(A/B)	78	78	80	77	75
귀리	생산량(A)	64	147	103	127	152
	소비량(B) ¹⁾	150	215	196	185	236
	자급률(A/B)	42	68	53	69	65
수수	생산량(A)	5,206	6,462	7,004	5,524	5,519
	소비량(B) ¹⁾	9,923	9,844	10,164	8,545	8,143
	자급률(A/B)	52	66	69	65	68
감자	생산량(A)	1,484	1,735	1,507	1,635	1,523
	소비량(B) ¹⁾	1,501	1,767	1,556	1,700	1,587
	자급률(A/B)	99	98	97	96	96
고구마	생산량(A)	50	62	61	69	61
	소비량(B) ¹⁾	51	63	63	70	63
	자급률(A/B)	97	98%	97	98	98
대두	생산량(A)	87	126	133	187	81
	소비량(B) ¹⁾	4,469	4,300	3,670	3,900	3,847
	자급률(A/B)	2	3	4	5	2
매니옥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	-	1	1	1
	자급률(A/B)	-	-	-	-	-
메밀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	-	-	-	-
	자급률(A/B)	-	-	-	-	-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멕시코는 적도 부근에 위치하여 주로 열대성 과일인 오렌지, 레몬, 바나나 등을 생산한다. 오렌지와 레몬 그리고 바나나는 각각 415만 톤, 186만 톤, 219만 톤 정도가 생산되어 자급을 유지하고 있다. 파인애플 생산량은 63만 톤으로 자급자족을 유지하고 있다. 자몽은 38만 톤 정도가 생산된다.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은 수출 여력이 큰 산업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우리나라 과일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로 볼 수 있는 사과와 포도의 생산량도 많은 편이다. 그러나 배는 생산량이 미미하다. 사과 생산량은 60만 톤 수준이며 사과 소비량은 80만 톤으로 매년 20만 톤 이상 수입된다. 주요 사과 수입선은 미국과 칠레이다. 포도 생산량은 24만 톤, 소비량은 20만 톤으로 자급률은 117%이다. 멕시코는 포도의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나 단경기에는 칠레에서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배와 복숭아는 각각 3만 톤, 22만 톤이 생산된다. 배의 자급률은 25%, 복숭아 자급률은 91% 수준이다. 그러나 감은 생산되지 않는다.

표 3-3. 멕시코의 과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오렌지	생산량(A)	4,020	3,846	3,977	4,113	4,157
	소비량(B) ¹⁾	4,033	3,877	3,979	4,127	4,165
	자급률(A/B)	100	99	100	100	100
레몬	생산량(A)	1,725	1,825	1,928	1,807	1,867
	소비량(B) ¹⁾	1,463	1,494	1,555	1,420	1,440
	자급률(A/B)	118	122	124	127	130
자몽	생산량(A)	269	361	409	350	387
	소비량(B) ¹⁾	274	366	406	352	380
	자급률(A/B)	98	99	101	100	102
바나나	생산량(A)	1,886	2,027	2,361	2,250	2,196
	소비량(B) ¹⁾	1,835	1,985	2,304	2,180	2,130
	자급률(A/B)	103	102	102	103	103
사과	생산량(A)	480	495	573	584	602
	소비량(B) ¹⁾	652	676	727	779	806
	자급률(A/B)	74	73	79	75	75

(표 3-3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파인애플	생산량(A)	660	721	669	552	634
	소비량(B) ¹⁾	636	700	636	519	608
	자급률(A/B)	104	103	105	106	104
포도	생산량(A)	363	457	305	323	244
	소비량(B) ¹⁾	331	374	254	216	209
	자급률(A/B)	110	122	120	150	117
배	생산량(A)	32	29	33	30	30
	소비량(B) ¹⁾	123	119	115	102	119
	자급률(A/B)	26	24	29	30	25
복숭아	생산량(A)	198	224	202	208	222
	소비량(B) ¹⁾	228	259	230	231	243
	자급률(A/B)	87	86	88	90	91
감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	-	-	-	-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채소는 멕시코 농업부문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다. 멕시코의 고추 생산량은 174만 톤으로 우리나라의 14.8배에 달하며 자급률은 141%이다. 양파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1.3배인 115만 톤이며 자급률은 100%로 수출입이 거의 없는 자급 형태이다. 마늘 생산량은 4만 톤으로 우리나라의 12% 수준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양념채소류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 경합할 품목으로 고추를 들 수 있다. 고추는 저장성, 부피, 무게 등에 있어서 운송거리와 시간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

멕시코의 과채류 중 토마토는 연간 70만 톤 이상이 수출되는 대표적인 수출 농산물이다. 토마토 생산량은 290만 톤으로 우리나라의 7.8배에 달하며 토마토의 자급률은 153%이다. 멕시코의 오이 생산량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50만 톤 수준이다. 수박 생산량은 양국이 비슷한 수준으로 연간 98만 톤이다. 멜론 생산량은 멕시코가 57만 톤으로 우리나라의 1.6배 수준이다.

표 3-4. 멕시코의 채소류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추	생산량(A)	1,840	1,910	1,488	1,675	1,739
	소비량(B) ¹⁾	1,476	1,521	1,081	1,230	1,233
	자급률(A/B)	125	126	138	136	141
딸기	생산량(A)	142	150	177	163	155
	소비량(B) ¹⁾	119	119	152	124	103
	자급률(A/B)	120	126	116	131	151
마늘	생산량(A)	41	45	48	46	44
	소비량(B) ¹⁾	46	51	54	52	47
	자급률(A/B)	90	88	89	88	93
생강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	-	-	-	-
	자급률(A/B)	-	-	-	-	-
수박	생산량(A)	858	952	1,003	865	977
	소비량(B) ¹⁾	622	638	652	464	418
	자급률(A/B)	138	149	154	186	234
양파	생산량(A)	1,131	1,142	1,241	1,115	1,151
	소비량(B) ¹⁾	946	920	991	891	1,151
	자급률(A/B)	119	124	125	125	100
오이	생산량(A)	435	475	518	475	496
	소비량(B) ¹⁾	49	52	120	78	62
	자급률(A/B)	892	919	434	610	802
토마토	생산량(A)	1,990	2,171	2,315	2,246	2,899
	소비량(B) ¹⁾	1,171	1,284	1,453	1,359	1,892
	자급률(A/B)	170	169	159	165%	153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축산업은 할리스코와 소노라 등 북부지방이 발달되었다. 축산물 생산과 소비는 쇠고기, 돼지고기에 비해 닭고기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닭고기 생산량은 전체 육류 생산량의 48%인 246만 톤이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161만 톤, 111만 톤 생산된다. 육류는 쇠고기는 수출입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자급자족을 유지하고 있으나,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자급률이 각각 86%, 82%이다. 천연꿀 생산량은 연간 3만 톤 정도이며, 자급률은 184%로 수출비중이 높다.

표 3-5. 멕시코의 축산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닭고기	생산량(A)	2,076	2,116	2,280	2,437	2,464
	소비량(B) ¹⁾	2,323	2,438	2,588	2,792	2,874
	자급률(A/B)	89	87	88	87	86
돼지고기	생산량(A)	1,070	1,035	1,064	1,103	1,109
	소비량(B) ¹⁾	1,241	1,229	1,312	1,331	1,346
	자급률(A/B)	86	84	81	83	82
쇠고기	생산량(A)	1,468	1,504	1,544	1,558	1,613
	소비량(B) ¹⁾	1,494	1,519	1,541	1,553	1,608
	자급률(A/B)	98	99	100	100	100
천연꿀	생산량(A)	59	57	57	51	56
	소비량(B) ¹⁾	25.2	32.0	33.6	31.6	30.5
	자급률(A/B)	234	178	170	160	184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특용작물로는 땅콩(연간 생산량 7만 톤), 참깨(2만 톤) 등이 있다. 녹차는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도 미미하다. 그 밖에 멕시코의 중요한 농산물 및 식품으로는 커피, 설탕, 맥주를 들 수 있다. 커피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35만 톤이나 연도별로 변화가 큰 편이다. 멕시코의 커피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여 1993년 15만 톤에서 1999년에는 6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커피 자급률은 500% 수준이다. 당류의 생산량은 1990년대 초반 연간 400만 톤 수준에서 최근에는 500만 톤으로 증가하여 자급률이 100%를 약간 상회한다. 사탕수수 재배면적은 65만 ha이며 사탕수수 생산량은 5천만 톤으로 멕시코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멕시코의 설탕산업은 특별히 취급된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맥주 생산량은 500만 톤을 넘으며 자급률도 120%에 달하여 연간 수출 규모가 7억 달러에 달한다.

표 3-6. 멕시코의 특작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녹차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	-	-	-	-
	자급률(A/B)	-	-	-	-	-
땅콩	생산량(A)	75	92	99	73	68
	소비량(B) ¹⁾	166	168	198	174	171
	자급률(A/B)	45	54	50	42	40
참깨	생산량(A)	20	31	33	20	21
	소비량(B) ¹⁾	21	34	47	33	32
	자급률(A/B)	94	91	71	62	66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4. 농산물 무역

멕시코의 농산물 수출 규모는 2006년 128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2,500억 달러의 5%를 차지한다. 2002~2006년 기간에 농산물 수출은 1.7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출 증가는 1.5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농산물 수입 규모는 2006년 158억 달러로 2002년에 비해 1.4배 증가하였다. 멕시코는 농산물 무역 구조를 볼 때 만성적인 수입초과 국가다(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표 3-7. 멕시코의 교역지표

단위: 백만 USD, %

	2002	2003	2004	2005	2006
총수출액(A)	160,751	164,907	187,980	214,207	249,961
농업수출액(B)	7,448	8,138	9,232	10,331	12,757
농업수출액 비중(A/B)	5	5	5	5	5
총수입액(C)	168,651	170,546	196,809	221,819	256,086
농업수입액(D)	11,360	12,076	13,353	13,869	15,833
농업수입액 비중(C/D)	7	7	7	6	6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 ¹⁾	3	3	3	4	4

주: 1)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 = $\frac{\text{농업수출액} + \text{농업수입액}}{GDP} \times 100$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멕시코의 주요 수입 농산물은 옥수수, 대두, 밀, 수수 등 곡물류와 사과, 포도 등이다. 주요 수입 농산물은 옥수수(11억 4천만 달러), 대두(9억 3천만 달러), 밀(7억 달러), 수수(3억 4천만 달러), 쌀(1억 8천만 달러) 등이다. 과일은 사과(2억 달러), 포도(1억 달러)를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열대과일은 수입이 없이 자급자족을 이루고 있다. 채소류의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다. 육류의 수입은 닭고기(3억 3천만 달러), 돼지고기(2억 4천만 달러), 등이다. 녹차, 땅콩, 참깨 등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수입된다.

표 3-8. 멕시코의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USD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수입량	3,139.8	3,499.9	3,585.5	3,717.6	3,446.6
	수입액	485.1	565.8	617.8	612.8	691.1
쌀	수입량	637.5	708.7	616.3	667.7	751.8
	수입액	70.8	120.7	159.2	142.1	180.0
보리	수입량	49.3	21.2	41.3	43.7	77.8
	수입액	9.2	4.3	6.6	6.1	15.5
옥수수	수입량	5,512.9	5,764.1	5,518.7	5,743.7	7,609.9
	수입액	668.5	728.3	745.1	714.1	1,138.4

(표 3-8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귀리	수입량	86.6	67.9	92.9	58.3	85.5
	수입액	15.5	11.3	13.6	9.7	17.2
수수	수입량	4,716.8	3,381.4	3,159.3	3,020.5	2,624.6
	수입액	525.9	399.8	424.0	340.2	338.7
감자	수입량	17.3	31.9	51.1	66.1	64.8
	수입액	7.9	11.4	16.5	23.8	29.8
고구마	수입량	1.5	1.3	1.6	1.5	1.6
	수입액	0.4	0.4	0.5	0.5	0.7
대두	수입량	4,382.5	4,175.9	3,539.0	3,714.0	3,765.6
	수입액	925.4	1,068.2	1,108.0	950.0	926.1
매니옥	수입량	0.1	0.3	1.1	0.9	1.2
	수입액	0.2	0.2	0.6	0.5	0.7
메밀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오렌지	수입량	29.5	37.6	16.6	27.7	23.4
	수입액	7.2	9.4	4.3	6.8	5.9
레몬	수입량	1.5	1.7	1.0	0.7	0.6
	수입액	0.5	0.5	0.4	0.4	0.4
자몽	수입량	9.5	11.1	8.0	10.2	5.1
	수입액	1.2	1.3	1.0	3.3	1.0
바나나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사과	수입량	171.7	180.8	154.1	195.2	204.4
	수입액	145.8	147.4	136.9	163.1	206.3
파인애플	수입량	0.4	0.3	0.3	0.4	0.2
	수입액	0.6	0.5	0.4	0.6	0.3
포도	수입량	96.8	84.3	69.4	82.6	77.2
	수입액	109.9	94.0	93.3	96.5	106.9
배	수입량	91.6	89.8	82.3	71.6	89.1
	수입액	70.2	68.3	67.6	64.4	80.5
복숭아	수입량	30.1	35.4	28.3	23.9	21.6
	수입액	33.7	36.5	29.2	26.8	26.2

(표 3-8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감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고추	수입량	23.1	25.8	35.2	43.9	25.0
	수입액	25.9	25.4	43.3	58.8	33.6
딸기	수입량	13.7	11.8	12.3	13.4	19.0
	수입액	15.0	14.4	14.4	18.1	24.5
마늘	수입량	16.7	16.5	15.5	16.9	15.2
	수입액	21.7	18.0	16.7	21.4	19.9
생강	수입량	0.1	0.1	0.1	0.1	0.1
	수입액	0.1	0.1	0.1	0.2	0.2
수박	수입량	8.9	2.1	2.1	1.9	3.8
	수입액	1.7	0.4	0.6	0.5	1.0
양파	수입량	60.3	55.7	45.3	49.0	-
	수입액	17.2	19.2	14.6	15.3	-
오이	수입량	-	-	0.1	-	-
	수입액	-	-	0.1	0.1	0.1
토마토	수입량	29.4	16.4	33.8	13.6	24.2
	수입액	20.4	12.3	23.1	8.9	22.6
닭고기	수입량	247.2	323.2	310.9	357.3	410.4
	수입액	117.9	158.6	182.3	258.8	326.7
돼지고기	수입량	171.7	194.5	248.1	229.0	238.8
	수입액	190.0	231.0	388.2	371.8	378.4
쇠고기	수입량	27.1	16.7	0.5	0.9	4.6
	수입액	67.3	48.9	1.7	2.5	13.0
천연꿀	수입량	0.8	-	-	-	-
	수입액	1.1	-	-	-	-
녹차	수입량	0.3	0.3	0.3	0.3	0.4
	수입액	2.0	1.7	2.5	2.0	2.9
땅콩	수입량	92.4	77.1	98.6	101.4	102.9
	수입액	64.0	61.5	83.0	79.5	77.9
참깨	수입량	13.0	14.3	25.0	22.8	20.7
	수입액	7.6	10.8	24.1	18.3	17.3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주요 수출 농산물은 레몬, 포도, 토마토, 고추, 오이, 양파, 바나나, 커피 등이다. 주요 농산물 교역 상대국은 미국으로 농산물 수출의 80%, 수입의 7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곡물 가운데 밀과 옥수수가 미미한 수준이나 수출이 되나 수입량이 각각 760만 톤, 345만 톤에 달하기 때문에 수출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다른 곡물도 수출이 유의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과일 가운데 수출이 많은 것은 레몬으로 2006년 수출량은 42만 8천 톤이다. 2002년 수출량 26만 4천 톤으로 레몬 수출 증가율이 높다. 포도는 2002년 수출량이 12만 9천 톤이었으나 2006년에는 11만 2천 톤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격년으로 수출량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바나나, 파인애플, 자몽 등을 수출하고 있다.

멕시코의 주요 수출 채소는 토마토로 103만 톤(11억 달러)에 달한다. 오이는 43만 톤(3억 9천만 달러)으로 채소의 수출이 비교적 큰 규모로 이루어진다. 양념채소 중 고추 수출량은 2002년 38만 7천 톤(3억 9천만 달러)에서 2006년 53만 1천 톤(6천 4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양파는 연간 27만 톤 이상 수출된다. 축산물과 특용작물의 수출 실적은 미미하나 천연꿀이 연간 2만 톤 이상 수출된다.

멕시코는 대미국 위주의 농산물 수출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 태평양 연안의 항구 시설을 확충해 아시아 국가들로의 수출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중남미 국가들과는 개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으며, 유럽연합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 다변화 노력은 멕시코 농산물의 미국 시장 수출이 어느 정도 포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요 신선채소류 수입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인 품목들이 많다. 미국 시장에서 이런 품목들의 수출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표 3-9. 멕시코의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USD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수출량	439.6	565.1	343.0	394.6	536.4
	수출액	68.3	102.4	49.3	65.8	82.7
쌀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보리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옥수수	수출량	164.4	14.4	7.1	53.0	183.8
	수출액	26.6	5.7	7.4	14.3	37.2
귀리	수출량	-	-	0.1	0.1	2.0
	수출액	-	-	-	0.2	0.5
수수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감자	수출량	-	0.2	1.5	1.1	0.7
	수출액	-	-	0.4	0.3	0.2
고구마	수출량	0.1	-	-	-	0.1
	수출액	0.0	-	-	-	0.2
대두	수출량	0.3	2.1	2.4	1.0	0.2
	수출액	0.3	1.0	1.7	1.1	0.2
메밀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오렌지	수출량	16.9	7.0	14.8	13.6	15.5
	수출액	4.8	1.6	3.4	3.4	4.1
레몬	수출량	263.7	332.8	373.3	387.2	428.1
	수출액	63.6	117.1	164.8	167.8	212.3
자몽	수출량	4.8	6.6	11.1	8.9	12.9
	수출액	2.2	2.1	6.3	5.6	9.4
바나나	수출량	50.8	41.6	57.2	70.2	66.6
	수출액	13.6	13.6	19.6	25.3	33.4

(표 3-9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사과	수출량	-	0.1	0.2	0.1	0.1
	수출액	-	-	0.2	0.1	0.2
파인애플	수출량	24.6	20.8	33.5	33.1	25.6
	수출액	8.5	8.0	10.8	11.0	11.6
포도	수출량	129.0	166.8	120.0	189.8	112.3
	수출액	129.3	147.9	108.6	157.2	109.2
배	수출량	0.1	-	-	-	-
	수출액	0.1	-	-	-	-
복숭아	수출량	0.1	0.4	0.6	1.1	0.8
	수출액	0.1	0.2	0.7	0.8	0.9
감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고추	수출량	386.6	415.4	442.9	489.2	531.2
	수출액	385.5	442.9	589.4	596.4	636.7
딸기	수출량	37.4	42.6	37.4	52.4	71.0
	수출액	52.4	55.2	59.8	87.1	135.8
마늘	수출량	12.0	10.6	9.4	10.7	11.7
	수출액	26.7	10.4	10.4	14.4	14.5
생강	수출량	-	-	0.1	-	-
	수출액	-	-	0.1	-	-
수박	수출량	244.7	316.1	354.0	402.4	562.4
	수출액	66.0	98.0	151.7	154.5	207.3
양파	수출량	244.7	277.8	295.3	273.2	-
	수출액	159.3	182.5	214.1	286.4	-
오이	수출량	386.1	423.3	399.0	397.6	434.2
	수출액	201.6	261.7	343.1	280.6	394.7
토마토	수출량	848.3	903.4	895.1	900.8	1,031.5
	수출액	632.4	868.5	909.4	983.0	1,104.2
닭고기	수출량	0.3	1.3	2.7	1.8	0.0
	수출액	0.2	0.7	1.2	0.8	0.1

(표 3-9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돼지고기	수출량	1.4	1.3	0.8	1.1	1.3
	수출액	3.7	4.3	3.4	4.7	4.6
쇠고기	수출량	0.6	1.0	2.9	6.1	9.4
	수출액	3.1	5.5	16.2	30.2	50.4
천연꿀	수출량	34.5	25.0	23.4	19.0	25.5
	수출액	65.0	67.9	57.4	31.8	48.4
녹차	수출량	0.1	0.2	0.2	0.4	0.2
	수출액	0.3	0.6	0.6	0.5	0.4
땅콩	수출량	1.3	0.5	-	-	0.2
	수출액	1.4	0.4	-	0.1	0.4
참깨	수출량	11.7	11.4	11.2	10.3	9.6
	수출액	12.4	13.0	19.1	17.1	15.7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한-멕시코 양국의 농산물 교역규모는 전체 교역규모에 비해 매우 작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대멕시코 수출은 2002년 400만 달러에서 2006년 200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수출 규모도 크지 않다.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가 멕시코에서 수입한 농산물은 1,070만 달러에서 1,32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한국과 멕시코의 농산물 교역은 경제 전반의 교역 증가에 비하여 미미한 상태이다.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 장벽, 지리적 장애요인, 열대상품에 있어서 멕시코 농산물의 낮은 국제경쟁력 등이 우리나라 시장개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 현상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멕시코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열대과일과 채소의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열대산 과실류에 적용되는 식물검역법상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식물방역법상 우리나라는 멕시코산 신선 채소류와 과

실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멕시코 과일파리, 감귤뿌리썩이 선충, 담배노균 병, 화상병 등이 수입금지 이유이다. 멕시코는 우선 오렌지류의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열대산 과실류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되면 멕시코의 농산물 수출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축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돼지고기를 일부 수입하고 있다. 그 규모는 100만 달러 이하로 전체 수입의 0.8% 수준이다. 그 밖에 가금육은 조류독감 발생(1995년) 때문에 수입이 금지된 바 있으며, 쇠고기는 멕시코의 가격경쟁력이 낮아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의 소 사육규모가 3,000만두 이상으로 쇠고기 수출의 잠재력은 크다. 현재 쇠고기 수출규모는 연간 2천만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멕시코 북부지역(소노라, 치우아우아 등)에서 사육되는 소는 품질과 위생문제 등에서 수출상품으로 육성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 호주, 캐나다 등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0. 한국-멕시코 농산물 교역현황

단위: 백만 USD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	농산물(A)	4.3	2.9	2.8	1.8	2.0
	축산물(B)	0.2	0.3	0.5	0.5	0.2
	임산물(C)	0.3	0.9	1.1	0.3	0.2
	총계(D=A+B+C)	4.9	4.0	4.4	2.6	2.4
수입	농산물(E)	10.7	13.0	14.3	11.5	13.2
	축산물(F)	0.4	0.1	3.3	18.9	26.9
	임산물(G)	0.1	0.1	-	0.1	0.1
	총계(H=E+F+G)	11.2	13.1	17.6	30.4	40.3
무역 수지	농산물(A-E)	-6.3	-10.1	-11.5	-9.7	-11.2
	축산물(B-F)	-0.2	0.2	-2.9	-18.3	-26.8
	임산물(C-G)	0.3	0.8	1.1	0.3	0.1
	총계(D-H)	-6.3	-9.1	-13.3	-27.8	-37.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우리나라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주요 농산물은 커피(2008년의 경우 약 185만 달러)를 중심으로 치클검(22만 달러 규모) 등이 있다. 가공식품은 캔디류(128만 달러)와 초콜릿, 츄잉검 등이 있다. 주류로는 데킬라와 맥주 등이 연간 527만 달러 정도 수입된다. 소규모이나 수입되고 있는(또는 최근 10년간 수입된 예가 있는) 농산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품목은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망고, 건조포도, 냉동딸기, 고추, 참깨, 열대 과실류 주스, 육류 가공품 등이 있다.

5. 농산물 관세

5.1. 관세제도

멕시코는 대부분의 나라에 최혜국대우(MFN: most-favored-nation treatment)⁷를 부여하고 있으며, 품목 분류 체계는 H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설탕이 포함된 일부 제품을 뺀 대부분의 품목에는 종가세 관세율이 적용된다. 종가세 부과 대상 농산물의 경우 평균 MFN 관세율은 25%이다.

종량세 대상 품목 수는 설탕, 설탕 함유율이 90% 이상인 코코아, 시럽 등 17개이다. 설탕이 포함된 제품은 종량세 또는 혼합세가 적용되는데, 종량세의 수준은 제품에 포함된 설탕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종량세는 멕시코 화폐로 표시된 것(2품목)과 미국 화폐로 표시된 품목(15품목)이 있다. 그리고 종가세에 특별세가 더해지는 형태의 관세를 복합세로 분류할 경우 이러한 형태의 관세 부과 대상은 응축 우유, 과실, 과일주스, 조리된 식품 등 42개 품목이다. 그 밖에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 7개 존재한다. 수입금지 품목, 복합세 부과 품목, 종량세

⁷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

부과 품목 등을 모두 비종가세 부과 품목으로 분류할 경우 멕시코의 비종가세 부과 품목은 모두 66개이며, 전체 농산물 1,215개 품목의 5.4% 수준이다.

관세 평가방식에서 과세가격 계산기준은 운임 및 보험료 포함인도(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⁸ 가격에서 보험조건을 제외한 C&F 가격이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신고한 수입가격이 기준가격(reference price)보다 낮을 경우, 수입업자는 신고가격이 실거래 가격으로 증명될 때까지 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는 국내 공급이 부족한 소비재와 원자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원자재와 중간재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소비재와 식품류의 관세율은 높은 편이다. 다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조약국들과 마찬가지로 섬유, 신발류, 식품, 음료와 담배, 식용유와 지방, 동물 및 채소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이상 또는 고관세의 형태를 나타낸다.

멕시코는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대상국과 관세 인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코스타리카('94), 볼리비아('94), NAFTA('94), 콜롬비아 및 베네수엘라('95), 칠레, 우루과이, 유럽연합 등 43개국에 달하며 협정 체결국이 증가하고 있다.

관세 이외에도 멕시코는 통관절차(customs processing)의 방편으로 수입품에 대해 0.8%의 부과금을 매긴다. NAFTA 회원국과 G3(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볼리비아(2003년부터 적용) 등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 부과금이 면제된다.

멕시코의 TRQ 품목은 68개이며, 이들 품목 가운데 최저세율은 22.5%이고 최고세율은 254%이다. 쿼터 초과 품목의 22%는 종량세 형태인 반면에 쿼터 내 관세율은 모두 종가세이다. 종량세가 적용되는 42개 품목은 밀, 보리, 설탕,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주요 식품들인데 관세율 수준이 높으며 최소 관세율이 100% 이상인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돼지기름의 경우 최소 관세율이 254%로

8 수출업자가 화물을 선적하고 운임료와 보험료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다. 쿼터 내 관세율은 분유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50%가 적용된다. 분유의 경우 쿼터 내 물량의 관세율은 0%이다. 쿼터 내 물량은 100% 충족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물량이 미국에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를 캐나다가 차지한다.

표 3-11. 멕시코의 관세부과 형태별 농산물 품목분류 현황

단위: 개

총품목	종가세 품목	비종가세 품목	종가세 평균(%)
1,215	1,149	66	25.15

주: 수입금지 품목과 종가세와 특별세가 같이 부과되는 품목을 모두 비종가세 품목으로 분류한 결과임.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멕시코 국가정보 내부자료.

표 3-12. 멕시코의 비종가세 현황

구 분	품 목 수
수입금지 품목	7
종가세+특별세(AE)	42
종량세(멕시코 통화 표시)	2
종량세(미국 통화 표시)	15
합 계	66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멕시코 국가정보 내부자료.

5.2. 품목별 관세율

품목류(HS 2단위를 기준으로 하였음)별로 볼 때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것은 육류(HS 02류, 평균 79.7%), 낙농품(HS 04류, 평균 38.8%), 곡물(HS 10류, 평균 49.7%), 당류(HS 17류, 평균 92.3%), 기타 조제 식료품(HS 21류, 평균 32.8%), 음료 및 주류(HS 22류, 평균 28.2%), 담배(HS 24류, 평균 51.3%)이다. 특히 높은 관세율을 나타내고 있는 품목은 육류, 곡물, 기타 조제 식료품, 담배

등으로 평균 관세율보다 2배 이상 높다. 품목류별 관세율 현황을 중심으로 볼 때 멕시코의 관심품목은 육류, 유제품, 곡물, 당류, 조제식품 등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담배, 주류 등은 자국 산업보호 이외에도 국민 건강이나 사치품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세율이 비교적 낮은 품목은 화훼류(HS 06류, 평균 관세율 15.8%), 식물성 생산품 또는 조제품(HS 12~14류), 곡물 조제품(HS 19류, 평균 관세율 15.5%) 등이다. 가공품에 속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HS 11류 이상의 품목군 관세율이 원료 농산물에 속하는 HS 10류까지의 관세율보다 높지 않다. 따라서 멕시코의 농산물 관세율 구조는 누진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역누진적 또는 역관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최세균 외, 2002)에서도 발견된다.

표 3-13. 멕시코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평균 MFN 관세율	구분	평균 MFN 관세율
전체	25.15	18류	18.83
01류	16.51	19류	15.45
02류	79.70	20류	23.28
04류	38.84	21류	32.76
05류	12.37	22류	28.16
06류	15.79	23류	14.15
07류	21.80	24류	51.29
08류	22.46	29류	11.50
09류	25.89	33류	14.86
10류	49.65	35류	15.13
11류	20.86	38류	18.00
12류	6.72	41류	7.88
13류	13.74	43류	13.00
14류	13.00	50류	10.00
15류	22.90	51류	5.65
16류	22.76	52류	8.75
17류	92.25	53류	3.33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멕시코 국가정보 내부자료.

최세균 외(2002)는 한국, 태국,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역누진관세 체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멕시코의 경우 육가공품의 평균 관세율에서 육류의 평균 관세율을 뺀 차이가 -37% 포인트, 채소 및 과일 조제품 관세율에서 채소의 관세율을 뺀 차이는 -1.3% 포인트, 곡물 조제품과 곡물 사이의 평균 관세율 차이는 -15.3% 포인트 등이다.

축산물 가운데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가금육 및 가금육 비계 등 가금육 관련 품목이 대부분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가금육을 제외한 다른 육류의 관세율은 평균 관세율 이하의 비교적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 멕시코 관세율 체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품목간 관세격차가 큰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육류에도 나타난다. 양고기는 관세율 평균이 10%이고 가금육의 관세율 평균은 196%로 관세율 격차가 매우 크다. 낙농품의 평균 관세율은 육류보다 낮다. 낙농품 가운데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분유와 치즈로 평균 관세율이 각각 66.2%와 74.58%이다. 밀크와 크림, 변성유장, 버터 등에는 비교적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

화훼류의 관세율은 전체 평균 관세율보다 10% 포인트 정도 낮다. 특히 수목과 묘목 등은 평균 관세율이 9%로 낮다. 화훼류 가운데에서는 절화(HS0603)의 관세율이 가장 높아 평균 30%이다. 기타 식물의 잎이나 가지(HS 0604)의 경우 평균 관세율은 27.5%로 높은 편이다.

채소류는 감자와 녹두, 팥, 완두콩 등 기타 두류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채소(예: 고추, 마늘, 양파, 파, 토마토, 배추, 무, 버섯, 오이, 당근, 상치 등)에 적용되는 관세율 평균은 13%이다. 반면 감자와 기타 두류의 관세율 평균은 각각 127%와 38%에 달한다. 따라서 채소류에 있어서도 품목별로 관세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과실류(HS 08류)의 평균 관세율은 22.5%로 전체 평균 관세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품목(또는 품목군)별 평균 관세율 분포는 18~34%로 관세격차가 크지 않다. 과실류 가운데 비교적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포도(HS 0808)로 평균 관세율은 34%이다. 국제적으로 교역 비중이 높은 사과, 배, 오렌지, 자두, 복숭아 등 주요 과일의 관세율은 23%로 대부분 동일하다. 일시 저장처리된 버찌와 딸기 등 저차 가공품의 관세율은 18%로 신선 과일에 비해 낮다.

표 3-14. 멕시코의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품목	평균 MFN 관세율	품목	평균 MFN 관세율	품목	평균 MFN 관세율
0101류	18.00	0511류	9.73	0905류	23.00
0102류	7.20	0601류	9.00	0906류	8.00
0103류	17.25	0602류	9.43	0907류	12.00
0104류	9.00	0603류	30.00	0908류	23.00
0105류	17.50	0604류	27.50	0909류	16.00
0106류	19.09	0701류	127.00	0910류	20.14
0201류	20.00	0702류	13.00	1001류	67.00
0202류	25.00	0703류	13.00	1002류	10.00
0203류	20.00	0704류	13.00	1003류	82.00
0204류	10.00	0705류	13.00	1004류	10.00
0205류	10.00	0706류	13.00	1005류	104.00
0206류	13.64	0707류	13.00	1006류	16.00
0207류	195.62	0708류	13.00	1007류	7.50
0208류	10.00	0709류	13.00	1008류	23.75
0209류	260.00	0710류	18.38	1101류	15.00
0210류	10.45	0711류	17.38	1102류	15.00
0401류	10.00	0712류	22.44	1103류	10.00
0402류	66.20	0713류	38.00	1104류	10.00
0403류	20.00	0714류	18.71	1105류	15.00
0404류	15.00	0801류	23.00	1106류	15.00
0405류	15.00	0802류	18.91	1107류	161.00
0406류	74.58	0803류	23.00	1108류	15.00
0407류	33.00	0804류	24.71	1109류	15.00
0408류	20.00	0805류	23.00	1201류	5.00
0409류	20.00	0806류	34.00	1202류	0.00
0410류	20.00	0807류	23.00	1203류	45.00
0501류	23.00	0808류	23.00	1204류	0.00
0502류	8.00	0809류	23.00	1205류	0.00
0503류	13.00	0810류	23.00	1206류	0.00
0504류	13.00	0812류	18.00	1207류	1.54
0505류	13.00	0813류	23.00	1208류	15.00
0506류	13.00	0814류	18.00	1209류	3.51
0507류	13.00	0901류	51.00	1210류	3.00
0508류	13.00	0902류	23.00	1211류	13.00
0509류	30.00	0903류	23.00	1212류	16.67
0510류	13.00	0904류	23.00	1213류	13.00

(표 3-14 계속)

품목	평균 MFN 관세율	품목	평균 MFN 관세율	품목	평균 MFN 관세율
1214류	16.33	1801류	18.00	2303류	11.75
1301류	13.00	1802류	18.00	2304류	18.00
1302류	13.83	1803류	18.00	2305류	18.00
1401류	13.00	1804류	18.00	2306류	18.00
1402류	13.00	1805류	23.00	2307류	13.00
1403류	13.00	1901류	24.14	2308류	13.00
1404류	13.00	1902류	12.00	2309류	11.46
1501류	260.00	1903류	10.00	2401류	52.33
1502류	10.00	1904류	10.00	2402류	59.67
1503류	10.00	1905류	10.00	2403류	45.00
1504류	8.00	2001류	23.00	2905류	11.50
1505류	10.00	2002류	23.00	3301류	14.86
1506류	13.33	2003류	23.00	3501류	16.40
1507류	15.00	2004류	23.00	3502류	15.50
1508류	15.00	2005류	23.00	3503류	15.40
1509류	16.00	2006류	23.00	3504류	13.00
1510류	10.00	2007류	23.00	3505류	18.00
1511류	15.00	2008류	23.96	3809류	18.00
1512류	15.00	2009류	23.00	3824류	18.00
1513류	45.00	2101류	101.67	4101류	7.38
1514류	15.00	2102류	16.33	4102류	5.33
1515류	11.67	2103류	23.00	4103류	9.83
1516류	155.00	2104류	13.00	4301류	13.00
1517류	20.00	2106류	16.08	5001류	10.00
1518류	11.67	2201류	23.20	5002류	10.00
1520류	10.00	2202류	27.50	5003류	10.00
1521류	17.50	2203류	30.00	5101류	2.00
1522류	10.00	2204류	30.00	5102류	10.00
1601류	18.00	2205류	30.00	5103류	7.14
1602류	22.62	2206류	30.00	5201류	10.00
1603류	23.00	2208류	28.05	5202류	10.00
1604류	23.00	2209류	30.00	5203류	10.00
1605류	23.00	2301류	18.00	5302류	3.33
1702류	92.25	2302류	13.00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멕시코 국가정보 자료.

곡물류의 평균 관세율은 전체 평균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고 품목간 관세율 차이도 매우 크다. 곡물 가운데 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옥수수로 평균 관세율은 104%이다. 다음으로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보리, 밀 등으로 평균 관세율은 각각 82%와 67%이다. 멕시코 농업에 있어서 옥수수는 가장 중요한 품목이며 그 밖에 수수, 밀, 보리 등의 생산량이 많다. 생산량에 있어서 곡물 가운데 2위를 나타내고 있는 수수의 관세율은 평균 7.5%로 낮으나 옥수수, 밀, 보리 등 기타 중요한 곡물의 관세율은 전체 평균 관세율에 비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다. 쌀의 평균 관세율은 16%이다.

맥주, 포도주, 과일주 등 대부분의 주류 관세율은 30% 수준이다. 담배의 경우 잎담배와 권련의 관세율 차이가 크지 않다. 잎담배의 평균 관세율은 52.3%이고 권련의 평균 관세율은 59.7%이다.

5.3. 관세부과 형태

멕시코는 종가세, 종량세, 복합세 등 3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복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부과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멕시코의 종가세에 특별세를 더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여기서는 복합세로 취급하였다. 특별세는 물품별로 세법이 정하는 세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내역은 관세율표에서는 파악할 수 없다. 멕시코는 이러한 형태의 복합세를 42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복합세 적용 대상 품목은 신선 농산물에 속하는 것으로 낙농품 6개 품목, 과일 3개 품목이 있으며, 42개 품목 가운데 나머지 품목은 주로 HS 2단위로 17류에서 22류에 속하는 가공식품이다.

수입금지 품목은 모두 7개로 HS 1208류(대두 종자 및 분), HS 1209류(일부 채소 종자), HS 1211(향료, 의료용 식물 등), HS 4103(원피) 등이 각각 1품목, HS 1302(천연검, 수지)이 3품목이다.

표 3-15. 멕시코의 비종가세 및 수입금지 품목 현황

단위 :개

종가세와 특별세의 결합		수입금지		종량세			
				멕시코통화 표시		미국통화 표시	
0402류	4	1208류	1	1601류	1	1701류	12
0404류	1	1209류	1	1602류	1	1702류	1
0405류	1	1211류	1	-	-	1806류	1
0811류	3	1302류	3	-	-	2106류	1
1703류	3	4103류	1	-	-	-	-
1704류	2	-	-	-	-	-	-
1806류	7	-	-	-	-	-	-
1901류	4	-	-	-	-	-	-
1904류	2	-	-	-	-	-	-
1905류	2	-	-	-	-	-	-
2006류	1	-	-	-	-	-	-
2007류	4	-	-	-	-	-	-
2105류	1	-	-	-	-	-	-
2106류	3	-	-	-	-	-	-
2202류	2	-	-	-	-	-	-
2207류	2	-	-	-	-	-	-
계	42	계	7	계	2	계	15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멕시코 국가정보 내부자료.

5.4. 관세율의 분포

종가세 부과 대상 품목만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멕시코의 미소관세(5% 미만의 관세) 품목은 전체의 11.7%인 134개에 불과하다. 멕시코의 농산물은 대부분이 관세율 10~50%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이를 세분화해보면 관세율 10~20% 사이에 있는 품목이 538개로 전체의 46.8%에 달한다. 관세율 20~50%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품목도 409개(전체의 35.6%)이다. 즉, 관세율 10~50% 구간에 분포하는 농산물이 전체의 80% 이상이다. 100% 이상의 고율관세 부과 대상 농산물은 55개로 전체의 4.8%이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멕시코는 대부분의 농산물에 50% 이하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고율관세 품목은 극

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고율관세 품목은 가금육, 감자, 옥수수 등 일부 민감품목에 한하여 부과되고 있다.

멕시코의 농산물 관세율은 0%에서 260%까지 다양하며 종가세 기준 관세율의 단계는 32개이다. 10% 이내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주로 유지작물과 화훼 및 산수목 등이다. 농산물 전체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품목에 적용되는 10~20%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육류, 산수목 및 화훼, 채소, 곡분, 동식물성 유지, 원피, 양모 등이다.

비교적 높은 관세율로 볼 수 있는 20~50%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모두 409개로 전체의 1/3이 넘는다. 여기에 속하는 품목은 육류, 낙농품, 산동물, 과일, 향신료, 동식물성 유지, 육조제품, 채소 및 과일 조제품, 주류 등이다. 관세율이 50~100%의 품목은 13개로 전체의 1% 수준이다. 여기에 속하는 품목은 곡물, 담배, 향신료 등이다.

표 3-16. 멕시코의 관세 구간별 분포

단위: 개, %

	0~10% 미만	10~20% 미만	20~50% 미만	50~100% 미만	100% 이상	합 계
소계	134 (11.7)	538 (46.8)	409 (35.6)	13 (1.1)	55 (4.8)	1,149 (100.0)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멕시코 국가정보 자료.

가장 높은 관세율(260%) 부과 대상은 육류 가운데 가금 비계와 돼지비계(HS 0209류) 각각 1품목, 라드를 포함한 돈지 및 가금지(HS 1501류)에 속하는 1품목, 우지 및 기타 동물성지(HS 151610류)에 속하는 1품목 등이다. 고율관세 품목 가운데 이상의 4품목을 제외한 100%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은 55개이다. 여기에 속하는 주요 품목은 곡물 및 곡분(HS 10류 및 15류) 7개 품목, 낙농품(HS 04류) 8개 품목, 육류(HS 02류) 24개 품목, 채소(HS 07류) 4개 품목, 기타 조제 식료품(HS 21류) 4개 품목, 당류(HS 17류) 5개 품목, 동식물성 유지(HS 17류) 2개 품목 등이다. 멕시코의 고율관세 품목은 대부분 축산물과 곡물에 분포하고 있다.

표 3-17. 멕시코의 고율관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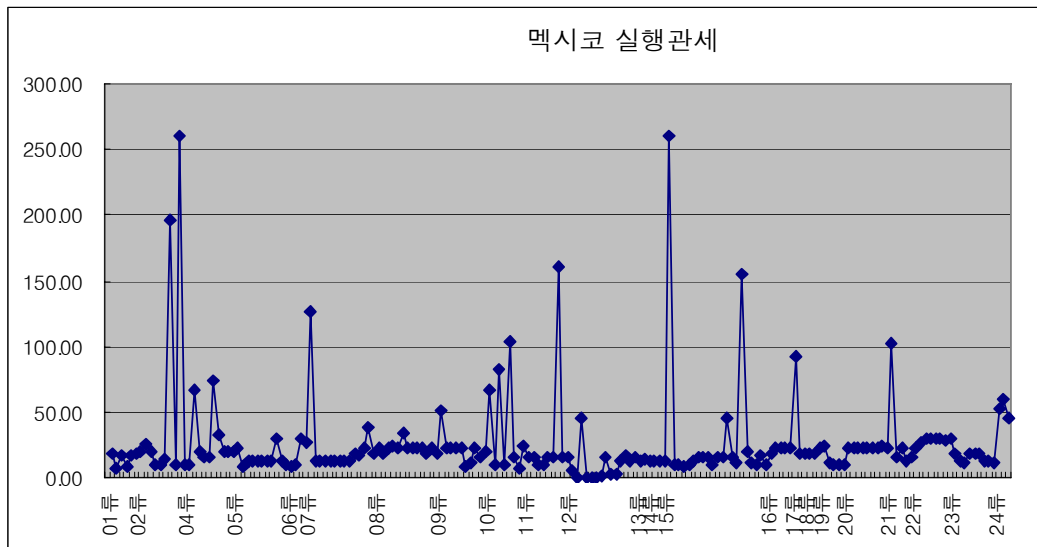
100% 이상 관세율		최고 관세율(260%)	
020711류	1	020900류	2
020712류	1	150100류	1
020713류	4	151610류	1
020714류	4	-	-
020724류	1	-	-
020725류	1	-	-
020726류	3	-	-
020727류	3	-	-
020732류	1	-	-
020733류	1	-	-
020735류	1	-	-
020736류	1	-	-
020900류	2	-	-
040210류	1	-	-
040221류	1	-	-
040610류	1	-	-
040630류	2	-	-
040690류	3	-	-
070190류	1	-	-
071333류	3	-	-
100300류	2	-	-
100590류	3	-	-
110710류	1	-	-
110720류	1	-	-
150100류	1	-	-
151610류	1	-	-
170240류	1	-	-
170250류	1	-	-
170260류	3	-	-
190190류	1	-	-
210111류	3	-	-
210112류	1	-	-
계	55	계	4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멕시코 국가정보 자료.

HS 4단위 평균을 기준으로 관세 구간별 품목분포를 분석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명백하다. 관세율이 높게 나타난 품목군은 HS 02류(육류), 10류 및 11류(곡물 및 곡분), 15류(동식물성 유지) 등이 가장 두드러지며, 다음으로 HS 04류(낙농품)와 17류(당류) 등이다. 그 밖에 많은 품목군은 평균 관세율이 30% 이하에 분포하고 있다.

멕시코의 비종가세 부과 대상 품목이 비교적 적고 종가세 품목 가운데 고율 관세 품목 또한 적어 수입금지적 고율관세에 의한 수입제한은 약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0~50% 구간에 분포하는 품목이 많아 평균 관세율은 높은 수준이다. 평균 관세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진적 관세구조는 산업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 멕시코의 관세 구간별 품목 분포(HS 4단위 평균 기준)



6. 한-멕시코 FTA 협상 추진 동향과 전망

2007년 12월 한-멕시코 FTA 제1차 협상이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되었다. 그 후 2008년 6월 한-멕시코 FTA 제2차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2009년 현재 양국 간의 FTA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한-멕시코 FTA 추진 경과>

- 2000년 5월: 제5차 한·멕시코 경제공동위에서 ‘민간협력 강화-투자 보장협정 체결 -FTA 연구’라는 3단계 FTA 추진방안 합의
- 2000년 11월: 투자보장협정 서명(2002. 8. 발효)
- 2002년 7월: 제6차 한·멕시코 경제공동위에서 FTA개별 타당성 연구 합의
- 2003년 5월: 한국측 연구결과에 대한 멕시코 현지 설명회 개최
- 2003년 11월: 우리나라 총리 멕시코 대통령 예방 시 FTA 공동연구 제의
- 2003년 11월: 멕시코 FTA 모라토리움 선언
- 2004년 4월: 양자 통상장관회담에서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 전문가그룹 구성 합의
- 2004년 10월: 한·멕시코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그룹 제1차 회의 개최(서울)
- 2004년 12월: 전문가그룹 제2차 회의 개최(멕시코)
- 2005년 3월: 전문가그룹 제3차 회의 개최(서울)
- 2005년 4월: 전문가그룹 제4차 회의 개최(멕시코)
- 2005년 6월: 전문가그룹 제5차 회의 개최(서울)
- 2005년 8월: 전문가그룹 제6차 회의 개최 및 공동연구보고서 채택(멕시코)
- 2005년 9월: 한·멕시코 정상회담시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 추진 합의(멕시코)
- 2005년 11월: SECA 협상개시 관련 사전준비회의(멕시코)
- 2006년 2월: 한-멕시코 SECA 제1차 협상 개최(서울)
- 2006년 4월: SECA 제2차 협상 개최(멕시코)
- 2006년 6월: SECA 제3차 협상 개최(서울)

2007년 12월: 한-멕 FTA 제1차 협상 개최(멕시코)

2008년 6월: FTA 제2차 협상 개최(서울)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그로 인한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등은 국가 간의 교역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일부 농산물의 수출증대 효과도 있겠지만, 현재의 농산물 교역 패턴을 고려하면 수입 증가가 더 클 전망이다. 멕시코의 국제경쟁력이 높은 품목으로 수입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고추, 레몬, 오렌지, 포도, 잎담배, 아보카도, 천연꿀, 참깨, 마늘, 과일주스, 주류 등이다. 그 밖에 쇠고기, 돼지고기, 커피, 아스파라거스, 양파, 토마토, 딸기, 망고 등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어느 정도 수입증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공식품 가운데 오렌지주스, 자몽주스 등의 주스류, 냉동브로콜리, 냉동딸기 등 냉동 야채 및 과일류, 데깸라, 메스갈 등 멕시코 전통 주류, 토마토케첩 등 소스류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과수농업 생산성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사과와 배의 경우 재배면적은 멕시코가 5만 8천 ha로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으나 생산량은 60만 톤으로 한국에 비해 1.5배 많다. 배 생산량은 3만 톤으로 한국의 1/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멕시코의 복숭아 재배면적은 우리나라의 2.5배에 달하는 3만 8천 ha이나 생산량은 22만 톤으로 우리나라의 19만 톤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멕시코의 열대과일 생산량은 아보카도 113만 톤, 오렌지 415만 톤, 파인애플 66만 톤, 바나나 220만 톤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중요시하는 3대 채소류는 고추, 마늘, 양파이다. 멕시코의 양념채소류 생산량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많다. 특히 고추 생산량은 174만 톤으로 우리나라의 14.8배에 달한다. 고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의 양파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1.3배인 115만 톤이며 단위면적당 생산성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그러나 마늘 생산량은 4만 톤으로 우리나라의 12% 수준이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양념채소류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 경합할 품목으로 고추를 들 수 있다. 고추는 저장성, 부피, 무게 등에

있어서 운송거리와 시간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

멕시코의 오이 생산량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50만 톤 수준이다. 멕시코는 과채류인 토마토, 수박, 멜론의 생산과 수출이 많은 나라이다. 토마토 생산량은 290만 톤으로 우리나라의 7.8배에 달한다. 수박 생산량은 양국이 비슷한 수준으로 연간 98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멜론 생산량은 멕시코가 57만 톤으로 우리나라의 1.6배 수준이다.

표 3-18. FTA 체결시 수입증가 예상 품목 분류

민감도 (수입증가 우려)	주요 품목
상	고추, 레몬, 오렌지, 포도, 잎담배, 아보카도, 천연꿀, 참깨, 마늘, 과일주스, 주류
중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망고, 신선 딸기, 커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양파
하	멜론, 수박, 신선채소(당근, 호박, 가지, 상추 등), 배, 사과

제 4 장

페 루

1. 역사⁹

페루의 국토면적은 128만 5천 km²로 우리나라의 13배에 달한다. 페루의 북쪽에는 에콰도르와 콜롬비아가 있고, 동쪽에는 브라질, 남동쪽에는 볼리비아, 남쪽으로는 칠레와 접하며, 태평양 연안을 끼고 있다.

안데스 산맥이 페루 전역을 3등분 한다. 해안 지방은 가장 서쪽으로 좁은 평원이 있고 계곡이나 갑작스런 홍수로 생기는 지류를 뺀다면 대개는 건조하다. 안데스 산맥의 고원은 알티플라노 평원을 포함하며 우스카란(Huascarán) 봉우리가 솟아 있다. 6,768m로 페루 전역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셀바(selva)라고 하는 정글이 있는데, 아마존 강의 열대우림으로 뒤덮여 있는 넓은 정글로서 동쪽까지 퍼져 있다. 페루 전체의 60%가 이러한 우림에 속한다.

대부분의 강은 안데스 산맥에서 흘러나와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간다. 아마존 강의 지류가 다른 강에 비해서 유량도 풍부하고 길어도 긴 편인데 평원으로 흘러가는 산은 대개 덜 가파르다. 티티카카 호수로 흘러가는 강도 있는데 수량은 많지만 대개 길이가 짧다. 페루에서 가장 긴 강은 우카얄리 강(Ucayali), 마라논

⁹ 두산세계대백과사전

강(Marañón), 푸투마요 강(Putumayo) 등이 있고 아마존 강을 비롯하여 야바리 강, 우아야가 강, 만타로 강 등이 있다.

페루는 다른 적도 국가와는 다르게 열대 기후가 아니다. 안데스 산맥의 영향과 페루 해류의 영향으로 기후 변화가 다양하다. 해안 지방은 날씨가 온화하고 강수량이 적지만 북쪽 자락을 빼고서는 습한 편이다. 산맥(Sierra) 지역에서는 여름에 비가 잦으며 고도가 올라갈수록 습도가 떨어지고 안데스 산맥은 만년 설이 서려 있다. 정글 지역인 셀바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오고 날씨도 무덥다. 다만 남동부 지역만 추운 겨울이 있고 우기가 있다.

페루에는 B.C. 2만 년에서 B.C. 10세기까지 안데스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몽골계 원주민이 거주하였고, 이후 이들이 고대 토착문화를 형성하였다. 그러다 B.C. 1세기까지 정착 농경문화를 형성해 이들이 만든 토기, 피라미드 등의 신전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이 시기를 차빈문화로 부른다. 이어 B.C. 3세기~A.D. 8세기의 제1기 지역문화시기를 거쳐 8~12세기의 통일국가 형성기를 티아우아나코문화로 부르며, 이후 15세기까지를 제2기 지역문화시기로 부른다.

15세기에 이르러 망고 카파크가 나타나 잉카(태양의 아들)가 페루 전역을 지배함으로써 케추아족의 잉카제국이 탄생하였는데, 전성기에는 콜롬비아 남부에서 칠레 중부에 이르기까지 1,200만 명에 달하는 백성과 광대한 지역을 다스렸다. 1532년 에스파냐의 피사로에게 정복된 후 300년 동안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다. 에스파냐는 1535년 리마에 부왕청(副王廳)을 설치, 인디오를 노예로 삼아 금과 은을 채굴함으로써 남아메리카에서 큰 부를 누렸다. 그러나 에스파냐 귀족들의 영화는 1781년 콘도르캉기(두파크 아마르)가 이끄는 인디오들의 대규모 반란을 계기로 내리막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1814년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나 인디오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1821년 7월 페루의 보호자로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산 마르틴 장군이 리마로 들어와 페루의 독립을 선포한 뒤, 시몬 볼리바르가 다시 리마에 입성해 1824년 아야쿠초 전투에서 에스파냐군을 격파함으로써 독립을 달성하였다.

레기아 독재정권, 산체스 세로와 오스카르 베나비데스 군사정권(1930~1939)

을 거쳐 1939년 마누엘 프라도의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였으나, 1948년 장군 오드리아가 군사혁명을 일으켜 1956년까지 다시 독재정치가 계속되었다. 독재정치로 1965년부터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게릴라전이 일어나기 시작해 급속히 확산되었다. 1975년 베루무데스 장군이 이끄는 군부 온건파가 쿠데타에 성공한 뒤 1980년 5월, 벨라운데테리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12년간 계속된 군정에 종지부를 찍었다. 1990년 7월에 당선된 후지모리는 가르시아 정부의 비동맹외교에서 탈피, 대선진국 외교를 중시하였다. 2001년 6월 원주민 출신으로는 최초로 톨레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톨레도 대통령은 브라질과 함께 남미국가 공동체 출범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6년 6월 가르시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빈곤 축소 및 소득 불균형 완화를 추진하면서도 이전 정부의 시장지향적 경제정책과 안정적 재정정책이라는 기본 정책들을 유지하고 있다. 빈곤 퇴치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남미공동체 창설 추진을 제의하고, 후지모리 전 대통령 문제로 톨레도 대통령 정부 시절 불편했던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일본으로부터 경협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페루 주민은 혼혈(메스티소) 45%, 인디오(원주민) 37%, 유럽계 15%, 아프리카계·아시아계 3%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계는 약 8만 명 정도이고 한국계는 1천 명 정도이다. 공용어는 에스파냐어, 케추아어(1975년부터), 아이마라어(1980년부터)이다. 종교는 로마 가톨릭이 95% 이상이다.

2. 주요 경제지표

페루의 인구는 2,759만 명(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56.5%이다. 농가인구(FAO의 정의에 따르면 농업인구 즉, agriculture population)는 775만 명(200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8%이다. 우리나라의 농가인구 비율 7.1%(2005년 기준)보다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1980년 수준이다. 따라서

농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산업발전 정도는 우리나라의 20~30년 전과 비교할 수 있다.

국토면적은 1억 2,852만 ha이며, 이 가운데 3%인 431만 ha만이 농경지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국토면적은 페루가 13배 정도 넓고, 경지면적은 2.4배 넓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에서 경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페루는 우리나라보다 산림의 면적이 훨씬 넓은 나라이다.

페루는 남미 국가들 가운데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이다. 페루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933억 달러(2006년 기준)로 2002년에 비해 64%(연평균 16%) 증가하였다. 우리나라가 페루와 FTA를 추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페루의 경제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국민 1인당 GDP는 3,350 달러이다.

페루의 대외교역 규모는 수출 238억 달러(2006년 기준), 수입 153억 달러이다. 무역수지(상품수지)는 2002년에는 300만 달러로 적자였으나, 2003년 이후에는 흑자폭이 커지고 있다. 2006년 무역수지 흑자는 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급증하였다.

표 4-1. 페루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2002	2003	2004	2005	2006
인구(A)	1000명	26,321	26,641	26,958	27,274	27,588
농촌거주인구		7,089	7,094	7,099	7,104	-
농업인구(B)		7,799	7,783	7,766	7,747	-
농업인구비중(A/B)	%	30	29	29	28	-
국토면적(C)	1000ha	128,522	128,522	128,522	128,522	128,522
경지면적(D)		4,310	4,310	4,310	4,310	4,310
경지면적비중(C/D)	%	3	3	3	3	3
GDP	백만 USD	57,056	61,494	69,686	79,371	93,269
1인당 GDP	USD	2,157	2,303	2,587	2,914	3,350
수출(E)	백만 USD	7,490	8,749	12,435	17,114	23,765
수입(F)		7,493	8,414	10,101	12,502	15,312
경상수지(E-F)		-3	335	2,334	4,612	8,453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3. 농산물 수급

페루의 주요 곡물은 쌀, 감자, 옥수수 등이다. 쌀 생산량은 247만 톤이며, 수입이 없는 자급상태이다. 감자와 고구마도 자급상태이며, 감자 생산량이 324만 톤으로 고구마 생산량 20만 톤에 비해 많다. 옥수수는 126만 톤 정도가 생산되지만 소비량은 275만 톤으로 자급률이 46%이다. 보리 생산량은 19만 톤이지만 소비량은 27만 톤으로 자급률 70%이다. 밀의 소비량은 166만 톤, 생산량은 19만 톤으로 자급률은 11%이다. 즉, 수입 규모가 큰 곡물은 밀과 옥수수이다.

표 4-2. 페루의 식량작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생산량(A)	187	190	170	178	191
	소비량(B) ¹⁾	1,642	1,488	1,612	1,642	1,664
	자급률(A/B)	11	13	11	11	11
쌀	생산량(A)	2,119	2,132	1,845	2,468	2,468
	소비량(B) ¹⁾	2,119	2,132	1,845	2,468	2,468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보리	생산량(A)	198	194	177	193	192
	소비량(B) ¹⁾	247	275	244	271	273
	자급률(A/B)	80	71	73	71	70
옥수수	생산량(A)	1,291	1,354	1,200	1,241	1,262
	소비량(B) ¹⁾	2,208	2,282	2,290	2,547	2,754
	자급률(A/B)	58	59	52	49	46
귀리	생산량(A)	13	12	12	11	11
	소비량(B) ¹⁾	32	32	36	30	34
	자급률(A/B)	40	38	32	38	34
수수	생산량(A)	0	0.2	0.1	0.1	0.4
	소비량(B) ¹⁾	0.2	0.4	0.3	1.1	0.7
	자급률(A/B)	12	46	35	8	55
감자	생산량(A)	3,298	3,144	3,008	3,290	3,235
	소비량(B) ¹⁾	3,298	3,144	3,008	3,290	3,235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표 4-2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고구마	생산량(A)	224	193	184	184	195
	소비량(B) ¹⁾	224	193	184	184	195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대두	생산량(A)	2	2	3	2	3
	소비량(B) ¹⁾	76	107	23	26	40
	자급률(A/B)	3	2	12	8	8
매니옥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	-	-	-	-
	자급률(A/B)	-	-	-	-	-
메밀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	-	-	-	-
	자급률(A/B)	-	-	-	-	-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페루는 적도의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은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열대성 과일과 온대성 과일이 모두 생산된다. 온대성 과일의 경우 사과와 포도 생산이 많은 반면 배와 복숭아 생산은 미미하다. 사과 생산량은 약 14만 톤, 소비량은 17만 톤으로 자급률은 83%이다. 포도의 생산량은 약 20만 톤, 소비량은 17만 톤으로 자급률은 116%이다. 배와 복숭아는 각각 8천 톤, 1만 4천 톤이 생산되고, 배 자급률은 56%, 복숭아 자급률은 100% 수준이다.

열대성 과일로는 오렌지, 레몬, 파인애플이 주로 생산된다. 오렌지와 레몬, 파인애플은 각각 33만 톤, 23만 톤, 22만 톤 정도가 생산되어 자급을 유지한다. 바나나와 감의 생산과 소비는 거의 없다. 자몽생산량은 4천 톤 정도이다.

페루는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생산과 소비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양파는 58만 톤 정도가 생산되어 자급률 110% 수준이다. 고추의 생산량은 17만 톤, 소비량은 12만 톤으로 자급률은 142% 이다. 마늘은 7만 톤 정도가 생산되어 자급률 100% 수준이다.

표 4-3. 페루의 과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오렌지	생산량(A)	292	306	330	334	334
	소비량(B) ¹⁾	292	306	330	334	334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레몬	생산량(A)	254	250	211	226	226
	소비량(B) ¹⁾	254	250	210	225	225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자몽	생산량(A)	4	4	4	4	4
	소비량(B) ¹⁾	4	4	4	4	4
	자급률(A/B)	98	97	99	99	100
바나나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	-	-	-	-
	자급률(A/B)	-	-	-	-	-
사과	생산량(A)	123	134	147	139	139
	소비량(B) ¹⁾	147	158	173	165	168
	자급률(A/B)	84	85	85	84	83
파인애플	생산량(A)	156	165	177	204	221
	소비량(B) ¹⁾	156	165	177	204	221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포도	생산량(A)	136	146	155	170	197
	소비량(B) ¹⁾	128	134	145	151	170
	자급률(A/B)	106	109	107	112	116
배	생산량(A)	7	8	7	8	8
	소비량(B) ¹⁾	14	14	12	14	14
	자급률(A/B)	54	55	62	53%	56
복숭아	생산량(A)	40	37	36	36	36
	소비량(B) ¹⁾	41	38	36	36	36
	자급률(A/B)	100	99	98	98	99
감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	-	-	-	-
	자급률(A/B)	-	-	-	-	-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과채류 가운데에서는 토마토가 가장 많이 생산된다. 토마토 생산량은 17만 톤으로 자급률 100%이다. 오이 생산량과 소비량은 각각 2만 4천 톤, 딸기 생산량과 소비량은 각각 1만 8천 톤과 1만 7천 톤이다. 수박은 6만 5천 톤 정도가 생산된다. 대외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소류의 교역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표 4-4. 페루의 채소류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추	생산량(A)	87	94	109	170	170
	소비량(B) ¹⁾	72	79	82	115	120
	자급률(A/B)	121	119	134	147	142
딸기	생산량(A)	18	25	21	17	18
	소비량(B) ¹⁾	18	25	20	17	17
	자급률(A/B)	100	100	101	101	102
마늘	생산량(A)	63	58	49	55	74
	소비량(B) ¹⁾	56	57	48	55	73
	자급률(A/B)	112	102	102	100	101
생강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	-	-	-	-
	자급률(A/B)	-	-	-	-	-
수박	생산량(A)	53	46	54	55	65
	소비량(B) ¹⁾	53	46	54	55	64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2
양파	생산량(A)	463	473	515	493	577
	소비량(B) ¹⁾	419	430	460	435	525
	자급률(A/B)	110	110	112	113	110
오이	생산량(A)	16	27	24	19	24
	소비량(B) ¹⁾	16	27	24	19	24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토마토	생산량(A)	131	149	184	159	169
	소비량(B) ¹⁾	131	149	184	159	169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축산물 생산과 소비는 닭고기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닭고기 생산량은 전체 육류 생산량의 75%인 79만 톤이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생산량은 각각 16만 2천 톤, 10만 8천 톤이 생산된다. 육류는 수출입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자급을 유지한다.

그 밖에 페루에서 생산되는 특용작물로는 녹차(연간 생산량 5천 톤), 땅콩(7천 톤), 참깨 등이 있다.

표 4-5. 페루의 축산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닭고기	생산량(A)	609	636	669	733	790
	소비량(B) ¹⁾	613	639	673	739	796
	자급률(A/B)	99	99	99	99	99
돼지고기	생산량(A)	93	93	98	103	108
	소비량(B) ¹⁾	92	93	98	103	108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쇠고기	생산량(A)	134	138	146	153	162
	소비량(B) ¹⁾	137	139	146	153	162
	자급률(A/B)	98	100	100	100	100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표 4-6. 페루의 특작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녹차	생산량(A)	6	6	2	4	5
	소비량(B) ¹⁾	7	6	2	5	5
	자급률(A/B)	96	94	78	90	95
땅콩	생산량(A)	5	5	6	6	7
	소비량(B) ¹⁾	7	7	8	10	10
	자급률(A/B)	76	78	73	63	66
참깨	생산량(A)	0.09	0.05	0.04	0.06	0.06
	소비량(B) ¹⁾	0.21	0.14	0.2	0.25	0.14
	자급률(A/B)	45	35	17	24	44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4. 농산물 교역

페루의 경제 성장에 따른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는 교역에도 투영되고 있다. 농산물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10%에서 2006년 8%로 감소하였다. 농산물 수입 비중도 같은 기간에 14%에서 11%로 감소하였다.

농산물 수출액은 2002년 7억 7천만 달러에서 2006년 18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33%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농산물 수입액은 같은 기간에 11억 5천만 달러에서 16억 3천만 달러로 연평균 13.9% 증가하였다.

표 4-7. 페루의 교역지표

단위: 백만 USD, %

	2002	2003	2004	2005	2006
총수출액(A)	7,490	8,749	12,435	17,114	23,765
농업수출액(B)	771	861	1,135	1,355	1,804
농업수출액 비중(A/B)	10	10	9	8	8
총수입액(C)	7,493	8,414	10,101	12,502	15,312
농업수입액(D)	1,051	1,104	1,353	1,485	1,634
농업수입액 비중(C/D)	14	13	13	12	11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 ¹⁾	3	3	4	5	6

주: 1)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 = $\frac{\text{농업수출액} + \text{농업수입액}}{GDP} \times 100$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페루의 주요 수입 곡물은 밀과 옥수수이다. 2006년의 밀 수입량은 147만 톤(수입액 2억 6천 5백만 달러), 옥수수 수입 규모는 150만 톤(2억 2천만 달러)이다. 그 밖에 귀리, 수수 등이 수입되지만 그 규모는 미미하다. 대두 수입량은 2002~2006년 기간에 많게는 10만 톤에서 적게는 2만 톤으로 변화가 심하다.

과일 가운데 자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품목은 사과와 배이다. 사과 수입량은 2만 9천 톤(1,600만 달러)이고, 배와 복숭아는 각각 6천 톤, 300톤 정도가 수입된다. 대부분의 열대과일은 수입이 없는 자급구조이다.

채소류와 육류, 특작의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다.

표 4-8. 페루의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USD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수입량	1,454.9	1,297.1	1,441.3	1,463.6	1,472.7
	수입액	194.3	210.2	257.4	253.7	265.3
쌀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보리	수입량	48.7	80.9	66.9	78.3	81.4
	수입액	8.1	16.7	13.4	15.6	16.0
옥수수	수입량	923.7	933.2	1,097.0	1,314.3	1,498.0
	수입액	109.8	121.2	159.8	171.6	219.8
귀리	수입량	19.0	19.9	24.8	18.3	22.2
	수입액	2.6	3.2	3.5	3.2	4.4
수수	수입량	0.2	0.2	0.2	1.1	0.3
	수입액	-	-	-	0.1	0.1
감자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고구마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대두	수입량	74.4	104.8	20.6	24.2	37.0
	수입액	16.0	26.4	6.2	6.7	10.1
매니옥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메밀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오렌지	수입량	0.2	0.2	0.1	0.1	0.1
	수입액	0.1	0.1	0.1	0.1	0.1
레몬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자몽	수입량	0.1	0.1	0.1	0.1	-
	수입액	-	0.1	-	-	-
바나나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표 4-8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사과	수입량	24.0	23.4	26.2	25.8	28.5
	수입액	10.6	12.3	14.1	14.0	15.6
파인애플	수입량	-	0.1	-	-	-
	수입액	-	-	-	-	-
포도	수입량	4.2	1.0	0.5	0.8	0.7
	수입액	1.9	0.5	0.3	0.5	0.5
배	수입량	6.4	6.2	4.7	6.7	6.1
	수입액	2.9	3.2	2.7	3.7	3.5
복숭아	수입량	0.2	0.4	0.6	0.6	0.3
	수입액	0.2	0.2	0.4	0.4	0.2
감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고추	수입량	-	-	0.1	-	-
	수입액	0.1	0.1	0.1	-	-
딸기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마늘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생강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수박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양파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오이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토마토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닭고기	수입량	3.9	3.5	4.3	5.7	6.5
	수입액	2.1	1.8	2.6	3.6	4.0
돼지고기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표 4-8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쇠고기	수입량	3.1	0.3	-	-	-
	수입액	6.2	0.3	-	-	-
천연꿀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녹차	수입량	0.3	0.3	0.5	0.5	0.3
	수입액	1.4	1.1	1.4	1.4	1.6
땅콩	수입량	1.7	1.6	2.3	3.8	3.6
	수입액	0.8	1.2	2.0	3.0	2.2
참깨	수입량	0.3	0.2	0.5	0.7	0.5
	수입액	0.2	0.2	0.4	0.5	0.5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곡물 가운데 옥수수가 미미한 수준이나마 수출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나 수입 물량이 150만 톤에 달하기 때문에 수출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다른 곡물도 수출이 유의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과일 가운데 수출이 많은 것은 포도로 2006년에 2만 8천 톤으로 포도 수출 증가율이 높다. 그 밖에 열대성 과일이나 온대성 과일 모두 수출은 거의 없다.

양념채소의 수출은 다른 농산물에 비해 비교적 큰 규모로 이루어진다. 고추 수출량은 2000년대 초반 1만 5천 톤(2천만 달러)에서 2005년 5만 5천 톤(9천 7백만 달러), 2006년 5만 톤(7천 3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마늘 수출 실적은 미미하지만 양파는 연간 5만 톤 이상 수출된다. 축산물과 특용작물의 수출 실적은 미미하다.

표 4-9. 페루의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USD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수출량	-	-	-	-	0.1
	수출액	-	-	-	-	0.1
쌀	수출량	-	-	-	-	0.1
	수출액	-	-	-	-	0.1

(표 4-9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보리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옥수수	수출량	6.9	4.7	7.2	7.8	6.3
	수출액	6.1	3.8	5.8	7.4	6.8
귀리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수수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감자	수출량	0.4	-	-	-	-
	수출액	-	-	-	-	0.1
고구마	수출량	0.1	0.2	0.1	-	0.1
	수출액	0.1	0.1	0.1	-	0.1
대두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매니옥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메밀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오렌지	수출량	0.3	0.1	0.2	0.3	0.9
	수출액	0.1	-	0.2	0.2	0.5
레몬	수출량	0.2	0.2	0.4	0.5	0.8
	수출액	0.1	0.1	0.2	0.3	0.5
자몽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바나나	수출량	-	-	-	-	0.4
	수출액	-	-	-	0.1	0.5
사과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포도	수출량	11.7	12.7	11.1	19.0	27.6
	수출액	21.1	24.3	19.8	35.2	48.1
배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복숭아	수출량	-	-	-	-	-
	수출액	0.1	0.1	-	-	-
감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표 4-9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추	수출량	15.1	15.0	27.6	54.7	50.1
	수출액	19.5	22.4	50.5	96.5	73.8
딸기	수출량	-	0.1	0.2	0.2	0.3
	수출액	-	0.1	0.3	0.4	0.7
마늘	수출량	6.5	1.4	1.0	0.2	0.7
	수출액	2.8	0.7	0.6	0.2	0.5
생강	수출량	-	-	-	-	0.1
	수출액	-	-	-	-	-
수박	수출량	-	-	-	0.1	1.4
	수출액	-	-	-	-	0.4
양파	수출량	43.7	42.5	55.7	58.4	51.9
	수출액	13.2	11.4	13.2	17.3	16.3
오이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토마토	수출량	0.1	-	-	-	-
	수출액	-	-	-	-	-
닭고기	수출량	-	-	-	-	0.2
	수출액	-	-	-	0.1	0.3
돼지고기	수출량	0.1	-	0.2	0.1	-
	수출액	0.1	-	0.4	0.2	-
쇠고기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천연꿀	수출량	0.5	0.9	0.5	-	-
	수출액	0.8	1.7	1.0	0.1	0.1
녹차	수출량	-	-	-	-	-
	수출액	-	-	0.1	-	-
땅콩	수출량	0.1	0.2	0.1	0.2	0.1
	수출액	-	-	0.1	0.1	-
참깨	수출량	0.1	0.1	0.3	0.5	0.4
	수출액	0.2	0.1	0.4	0.6	0.5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우리나라와 페루 사이의 농산물 교역은 미미하다. 수출은 1백만 달러 미만이고, 수입은 2002년 5백만 달러에서 2006년 1천 2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표 4-10. 한국-페루 농산물 교역현황

단위: 백만 USD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	농산물(A)	1.2	0.9	0.7	0.3	0.2
	축산물(B)	-	-	-	-	0.1
	임산물(C)	0.1	0.1	0.1	-	-
	총계(D=A+B+C)	1.3	1.0	0.8	0.3	0.2
수입	농산물(E)	4.6	3.5	7.3	6.3	12.0
	축산물(F)	0.4	0.4	0.3	0.3	0.6
	임산물(G)	-	-	0.2	-	-
	총계(H=E+F+G)	5.0	3.9	7.7	6.6	12.7
무역수지	농산물(A-E)	-3.4	-2.6	-6.5	-6.0	-11.9
	축산물(B-F)	-0.4	-0.4	-0.3	-0.3	-0.6
	임산물(C-G)	0.1	0.1	-0.1	-	-
	총계(D-H)	-3.7	-2.9	-6.9	-6.3	-12.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우리나라가 페루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가운데 커피가 전체의 93.6%에 달한다. 기타 품목은 아스파라거스 등 채소 및 채소 종자와 임산물이다. 우리나라가 페루로 수출하는 농산물은 사료첨가제, 라면 등이지만 수출 실적은 미미하고 감소 추세에 있다.

표 4-11. 한국-페루 농산물 주요 수입 품목

단위: 톤, 1000 USD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총합	물량	3,898	2,723	5,454	2,689	5,249	6,153	8,654	4,974
	금액	4,987	3,915	7,711	6,614	12,710	15,616	24,149	10,815
커피	물량	3,837	2,587	4,685	2,623	5,107	5,867	8,011	4,674
	금액	4,501	3,309	7,035	5,745	11,460	14,411	22,610	9,867
동물의견과근	물량	18	27	16	17	38	26	35	25
	금액	363	392	293	303	632	395	518	414

(표 4-11 계속)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채소 종자	물량	-	0	0	2	1	1	1	1
	금액	-	14	36	287	124	93	44	85
아스파라거스	물량	1	2	8	12	18	10	24	11
	금액	5	20	56	91	128	77	177	79
기타 식물성 점질물	물량	10	15	15	12	16	14	15	14
	금액	47	58	54	57	105	87	135	78
기타 과실	물량	-	-	2	17	23	72	54	24
	금액	-	-	4	47	87	193	132	66
성형 목재	물량	-	-	-	-	20	74	259	50
	금액	-	-	-	-	24	71	219	45
기타 한약재	물량	-	-	-	-	-	17	7	3
	금액	-	-	-	-	-	107	54	23
파티클보드	물량	-	-	692	-	-	-	-	99
	금액	-	-	160	-	-	-	-	23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4-12. 한국-페루 농산물 주요 수출 품목

단위: 톤, 1000 USD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총합	물량	752	540	427	131	159	116	97	317
	금액	1,291	995	826	345	240	114	233	578
사료 첨가제	물량	328	189	176	66	-	-	-	108
	금액	758	461	462	225	-	-	-	272
기타 베이커리 제품	물량	202	153	108	33	80	63	-	91
	금액	201	177	105	21	75	54	-	90
칼판류	물량	26	29	17	4	3	-	-	11
	금액	110	122	81	18	15	-	-	49
라면	물량	7	14	11	5	16	8	12	10
	금액	17	40	39	13	37	23	36	29
쇼트닝	물량	67	52	10	-	-	-	-	18
	금액	59	46	9	-	-	-	-	16
권련	물량	2	0	0	0	0	-	0	0
	금액	46	12	13	16	3	-	4	13
밀	물량	51	53	53	-	-	-	-	22
	금액	29	29	28	-	-	-	-	12

(표 4-12 계속)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웹툰	물량	-	-	-	0	0	-	8	1
	금액	-	-	-	10	20	-	53	12
목재틀	물량	-	-	-	2	-	-	32	5
	금액	-	-	-	2	-	-	70	1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5. 농산물 관세

페루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30.4%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종량세나 복합세는 없으며 모두 종가세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품목이 30%의 관세율이며, 일부 곡물류, 육류 그리고 그 가공품의 관세율이 30% 이상이다. 낙농품 등(HS 04류)의 평균 관세율은 34.9%, 곡물류(HS 10류)의 평균 관세율은 43.1%, 곡분, 전분 등(HS 11류)의 관세율은 32.2%, 곡물 및 곡분의 조제품과 빵(HS 19류)의 관세율은 34.5% 등이다. 그 밖에 당류(HS 17류)의 관세율이 34.8%이다.

표 4-13. 페루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평균 관세율	구분	평균 관세율
전체	30.4	10류	43.1
01류	30.0	11류	32.2
02류	30.0	12류	30.0
04류	34.9	13류	30.0
05류	30.0	14류	30.0
06류	30.0	15류	30.0
07류	30.0	16류	30.0
08류	30.0	17류	34.8
09류	30.0	18류	30.0

(표 4-13 계속)

구분	평균 관세율	구분	평균 관세율
19류	34.5	35류	30.0
20류	30.0	38류	30.0
21류	30.0	41류	30.0
22류	30.0	43류	30.0
23류	30.0	50류	30.0
24류	30.0	51류	30.0
29류	30.0	52류	30.0
33류	30.0	53류	30.0

주: 종가세, 양허 품목 기준임.

자료: WTO, Comprehensive tariff data on the WTO websit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ariffs_e/tariff_data_e.htm)

중심 세율로 볼 수 있는 30%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HS 4단위 수준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낙농품 가운데에서도 분유와 연유(HS 0402)의 관세율이 평균 52.8%로 높으나, 그 밖에 다른 품목은 30% 관세율이 적용된다. 곡물류 중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옥수수, 쌀, 수수 등 세 종류이다. 곡물의 분쇄물과 펠리트(HS 1103)의 관세율도 평균 35.4%로 높은 편이다. 그 밖에 사탕수수의 당류(HS 1701)와 면류(HS 1902)의 평균 관세율이 각각 49.0%와 45.2%이다. 따라서 곡물류 가운데 쌀, 옥수수, 수수, 낙농품 가운데 분유와 연유, 당류 가운데 사탕수수당, 가공식품 가운데 면류 정도가 관세율에 의해 상대적으로 보호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14. 페루의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0101	30.0	0510	30.0	0902	30.0
0102	30.0	0511	30.0	0903	30.0
0103	30.0	0601	30.0	0904	30.0

(표 4-14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0104	30.0	0602	30.0	0905	30.0
0105	30.0	0603	30.0	0906	30.0
0106	30.0	0604	30.0	0907	30.0
0201	30.0	0701	30.0	0908	30.0
0202	30.0	0702	30.0	0909	30.0
0203	30.0	0703	30.0	0910	30.0
0204	30.0	0704	30.0	1001	45.9
0205	30.0	0705	30.0	1002	30.0
0206	30.0	0706	30.0	1003	30.0
0207	30.0	0707	30.0	1004	30.0
0208	30.0	0708	30.0	1005	42.7
0209	30.0	0709	30.0	1006	63.3
0210	30.0	0710	30.0	1007	49.0
0401	30.0	0711	30.0	1008	30.0
0402	52.8	0712	30.0	1101	68.0
0403	30.0	0713	30.0	1102	30.0
0404	30.0	0714	30.0	1103	35.4
0405	36.3	0801	30.0	1104	30.0
0406	30.0	0802	30.0	1105	30.0
0407	30.0	0803	30.0	1106	30.0
0408	30.0	0804	30.0	1107	30.0
0409	30.0	0805	30.0	1108	30.0
0410	30.0	0806	30.0	1109	30.0
0501	30.0	0807	30.0	1201	30.0
0502	30.0	0808	30.0	1202	30.0
0503	30.0	0809	30.0	1203	30.0
0504	30.0	0810	30.0	1204	30.0
0505	30.0	0811	30.0	1205	30.0
0506	30.0	0812	30.0	1206	30.0
0507	30.0	0813	30.0	1207	30.0
0508	30.0	0814	30.0	1208	30.0

(표 4-14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1210	30.0	1604	30.0	2204	30.0
1211	30.0	1605	30.0	2205	30.0
1212	30.0	1701	49.0	2206	30.0
1213	30.0	1702	30.0	2207	30.0
1214	30.0	1703	30.0	2208	30.0
1301	30.0	1704	30.0	2209	30.0
1302	30.0	1801	30.0	2301	30.0
1401	30.0	1802	30.0	2302	30.0
1402	30.0	1803	30.0	2303	30.0
1403	30.0	1804	30.0	2304	30.0
1404	30.0	1805	30.0	2305	30.0
1501	30.0	1806	30.0	2306	30.0
1502	30.0	1901	30.0	2307	30.0
1503	30.0	1902	45.2	2308	30.0
1504	30.0	1903	30.0	2309	30.0
1505	30.0	1904	30.0	2401	30.0
1506	30.0	1905	30.0	2402	30.0
1507	30.0	2001	30.0	2403	30.0
1508	30.0	2002	30.0	2901	30.0
1509	30.0	2003	30.0	2902	30.0
1510	30.0	2004	30.0	2903	30.0
1511	30.0	2005	30.0	2904	30.0
1512	30.0	2006	30.0	2905	30.0
1513	30.0	2007	30.0	2906	30.0
1514	30.0	2008	30.0	2907	30.0
1515	30.0	2009	30.0	2908	30.0
1516	30.0	2101	30.0	2909	30.0
1517	30.0	2102	30.0	2910	30.0
1518	30.0	2103	30.0	2911	30.0
1520	30.0	2104	30.0	2912	30.0
1521	30.0	2105	30.0	2913	30.0
1522	30.0	2106	30.0	2914	30.0
1601	30.0	2201	30.0	2915	30.0
1602	30.0	2202	30.0	2916	30.0

(표 4-14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2918	30.0	3504	30.0	4108	30.0
2919	30.0	3505	30.0	4109	30.0
2920	30.0	3506	30.0	4110	30.0
2921	30.0	3507	30.0	4111	30.0
2922	30.0	3801	30.0	4301	30.0
2923	30.0	3802	30.0	4302	30.0
2924	30.0	3803	30.0	4303	30.0
2925	30.0	3804	30.0	4304	30.0
2926	30.0	3805	30.0	5001	30.0
2927	30.0	3806	30.0	5002	30.0
2928	30.0	3807	30.0	5003	30.0
2929	30.0	3808	30.0	5004	30.0
2930	30.0	3809	30.0	5005	30.0
2931	30.0	3810	30.0	5006	30.0
2932	30.0	3811	30.0	5007	30.0
2933	30.0	3812	30.0	5101	30.0
2934	30.0	3813	30.0	5102	30.0
2935	30.0	3814	30.0	5103	30.0
2936	30.0	3815	30.0	5104	30.0
2937	30.0	3816	30.0	5105	30.0
2938	30.0	3817	30.0	5106	30.0
2939	30.0	3818	30.0	5107	30.0
2940	30.0	3819	30.0	5108	30.0
2941	30.0	3820	30.0	5109	30.0
2942	30.0	3821	30.0	5110	30.0
3301	30.0	3822	30.0	5111	30.0
3302	30.0	3823	30.0	5112	30.0
3303	30.0	3824	30.0	5113	30.0
3304	30.0	4101	30.0	5201	30.0
3305	30.0	4102	30.0	5202	30.0
3306	30.0	4103	30.0	5203	30.0
3307	30.0	4104	30.0	5204	30.0
3501	30.0	4105	30.0	5205	30.0
3502	30.0	4106	30.0	5206	30.0

(표 4-14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5208	30.0	5302	30.0	5308	30.0
5209	30.0	5303	30.0	5309	30.0
5210	30.0	5304	30.0	5310	30.0
5211	30.0	5305	30.0	5311	30.0
5212	30.0	5306	30.0		
5301	30.0	5307	30.0		

주: 종가세, 양허 품목 기준임.

자료: WTO, Comprehensive tariff data on the WTO websit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ariffs_e/tariff_data_e.htm)

6. 한-페루 FTA 협상 추진 동향과 전망

우리나라는 페루의 자원 및 경제성장 잠재력 이외에 남미공동시장과의 FTA 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FTA를 추진하고 있다. 페루는 칠레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페루의 국내총생산(GDP)은 2,200억 달러로 칠레의 2,300억 달러와 비슷하며, 경제성장률은 2006년 8%, 2007년 9%에 달한다. 은(세계 1위), 아연과 주석(3위), 납(4위) 등 광물자원 생산이 세계적으로 상위에 속하며,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도 풍부하다. 우리나라가 페루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수입액 기준으로 93%가 무관세이기 때문에 민감한 협상 이슈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페루의 대한국 수출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은 쌀, 감자, 포도, 양파, 고추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할 경우에는 기존의 수출 품목 이외에도 생산량이 많은 일부 농산물(예: 닭고기)이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

페루와의 FTA는 2005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페루 대통령의 제안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6년 11월에 개최된 APEC 각료회의에서 양국은 민간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에 따라 2007년과 2008년에 한 차례씩 공동연구회의가 개최되었다. 2008년 5월에 민간공동연구가 종료되었으며, 양국의 FTA 협상이 권고되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0월에 한-페루 FTA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공식 협상은 2009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한-페루 FTA 이행시 예상되는 민감품목으로는 쌀, 감자, 포도, 양파, 고추, 닭고기 등이 있다.

<경과>

2005년 11월 APEC 계기 정상회담시 Toledo 페루 대통령이 FTA 제안
 2006년 11월 APEC 합동 각료 회의시 FTA 민간공동연구 시행 합의
 2007년 10월 한-페루 FTA 공동연구 제1차 회의(페루 리마)
 2008년 4월 한-페루 FTA 공동연구 제2차 회의(서울)
 2008년 5월 민간공동연구 종료
 2008년 10월 한-페루 FTA 공청회
 2009년 1월 한-페루 FTA 사전준비회의(페루 리마)
 2009년 3월 제1차 공식 협상 개최

제 5 장

일 본

1. 역사¹⁰

일본은 크게 7개의 섬과 그 부속도서로 이루어진다. 큰 섬 4개는 북쪽으로부터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이다. 면적은 37만 8천 km²이다. 일본은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 및 중부 내륙고지가 아한대다우 기후에 속하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이 온대다우 기후에 속한다. 남쪽(오키나와 현이나 오가사와라 제도)은 아열대 지역이다. 아시아대륙 동쪽의 몬순아시아 지역에 들어 있으나, 해양의 영향을 크게 받아 같은 위도에 있는 대륙 동안보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더위가 심하지 않다. 일본 열도는 남북으로 길어 홋카이도 북단에서 난세이제도 남단까지의 위도차가 22도나 되어 연평균 기온은 홋카이도 6.3℃, 오키나와섬 22.3℃ 등 차이가 16℃에 달한다. 혼슈의 육지 너비는 최대 300km로 중앙부를 척량산맥이 종주한다. 연강수량은 1,600~1,700mm이며, 강수의 원인은 주로 장마와 태풍이다. 장마가 연강수량의 10~40%, 태풍이 10~35%를 가져오며 그 비율은 남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정식 국명은 일본국(日本國/니혼코쿠)으로 ‘해가 뜨는 곳의 나라’라는 의미

¹⁰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이다. 일본이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는 왜 또는 왜국으로 불렸다. ‘일본(日本)’이라는 국호가 성립한 시기는 7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현존하는 문헌에서 등장한 것은 701년의 견당사(遣唐使)가 처음이다. 나라 시대 이후 뜻을 읽는 훈독이 아닌 음을 읽는 음독을 하게 되면서 일본인은 스스로를 ‘니호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무로마치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금의 ‘니혼(Nihon)’ 또는 ‘닛폰(Nippon)’이라는 발음으로 굳어졌다. 일본 정부는 발음을 정식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지폐나 우표 등에서는 ‘NIPPON’으로 표기하는 등, 공식기관에서는 ‘닛폰’으로 읽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고대사회는 야마토조정(大和朝廷)이 지배하는 국가가 성립되고, 뒤이어 율령제도(律令制度)에 입각한 국가체제가 유지된 4세기 초에서 12세기 말에 이르는 시대이다. 4세기 말엽에 백제에서 한자와 유교가 전래되고, 6세기 중엽에는 역시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어 일본의 문화 수준이 높아졌으며, 불교를 정치기조로 삼은 쇼토쿠 태자 등에 의해 각지에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다. 뒤이어 645년에 중앙집권적인 율령국가를 수립할 것을 목적으로 다이카개신(大化改新)이 단행되었으며, 덴무(天武)왕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왕의 신성(神聖)이 강화되어 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율령체제가 확립되었다. 견당사(遣唐使)의 파견에 의해 당문화(唐文化)를 흡수한 조정은 710년 나라(奈良)에 광대한 도읍 헤이조경(平城京)을 건설하였다. 교토(京都)로 천도하기까지의 약 80년을 나라시대라고 부른다. 794년에 간무(桓武)왕은 교토로 도읍을 옮겼다.

1590년에 통일을 완수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1592~1593년, 1597~1598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략하였다.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적대세력을 물리치고 1603년에 바쿠후를 열게 되었다. 도쿠가와 바쿠후는 봉건제도의 강화를 도모하여 쇼군을 정점으로 하는 바쿠한 체제(幕藩體制: 藩은 영지 또는 그 관할조직)를 확립하고 사농공상의 신분질서를 엄중히 하였다. 에도시대 초기의 분란이 수습되자 그 후에는 태평한 세월이 지속되어 상공업도 발달하였다. 도쿠가와 바쿠후 말기는 산업혁명으로 국력이 강화된 구미제국이 내항하여 개국을 요구하였는데, 처음 그것을 거절한 바쿠후도 1853

년과 1854년 2차에 걸쳐 함대를 이끌고 온 미국의 페리는 독의 압력에 굴하여 쇄국정책을 포기하였다. 그 결과 격렬한 내분항쟁이 지속되는 와중에서 반(反)바쿠후 세력이 급속히 형성되어 바쿠후 체제는 내부에서 붕괴되었다. 정권유지의 불가능을 깨달은 바쿠후는 1867년 11월 조정(朝廷)에 대한 정권 반환, 즉 대정봉환(大政奉還)을 제의하고 다음날 그것이 수락됨으로써 에도시대는 끝을 맺었다.

1871년 한(번: 藩)을 폐지하고 현(縣)을 설치한 것(廢藩置縣)과 1872년의 ‘류큐 처분(琉球處分)’을 통해 류큐 왕국을 합병하여 현재의 일본 영토와 같아졌다. 또한 일본제국 헌법 제정으로 군사 정권인 막부가 일본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도쿠가와 막부 체제에서 헌법상 ‘천황이 주권을 갖는’ 일본제국으로 국가체제가 바뀌었다. 일본은 1895년에 타이완 섬,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승전국이 된 후에는 남태평양 제도 위임 통치를 맡고, 만주국을 통해 중국 대륙의 일부와 광, 사이판, 미크로네시아 등을 지배하기도 하였다. 1945년의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함으로써 확대한 영토의 대부분을 잃고, 국호도 ‘대일본제국’에서 ‘일본국’으로 고쳤다.

인종은 고대 조몬인(縄文人)과 야요이인(彌生人)의 혼혈의 야마토계 일본인(야마토민족, 大和民族)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인 류큐인(류큐민족, 琉球民族), 아이누족(아이누민족, Ainu, アイヌ民族), 윌타족(Uilta, ウィルタ民族), 니브히족(Nivkh, ニヴフ民族)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본토에 조몬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4.8%에 불과하며 중국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25.8%, 한국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24.2%이다. 류큐인과 아이누족은 각각 16.1%와 8.1%이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자 수는 2006년 말 현재 약 200만 명으로 한국인(남북한 포함) 598,219명(28.7%), 중국인(대만인 포함) 560,741명(26.9%), 브라질인(일본계 브라질인) 312,979명(15.0%), 필리핀인 193,488명(9.3%), 페루인 58,721명(2.8%), 미국인 51,321명(2.5%) 등이다.

2. 주요 경제지표

일본의 인구는 약 1억 2,800만 명(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2.7배 수준이다. 농가인구(FAO의 정의에 따르면 농업인구 즉, agriculture population)는 370만 명(200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3%이다. 농촌 거주 인구는 4,3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국토면적은 3,779만 ha이며, 이 가운데 12%인 469만 ha가 농경지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국토면적은 일본이 3.8배이고, 경지면적은 2.6배이다.

일본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4조 3,400억 달러(2006년 기준)로 2002년에 비해 11.1% 증가하였다. 국민 1인당 GDP는 34,200달러이다. 일본의 GDP와 1인당 GDP는 각각 우리나라의 4.9배, 1.9배 수준이다.

일본의 대외교역 규모는 수출 6,467억 달러(2006년 기준), 수입 5,790억 달러이다. 무역수지(상품수지)는 80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교역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수출 3,255억 달러, 수입 3,094억 달러이다. 전체 교역규모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크다.

표 5-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2002	2003	2004	2005	2006
인구(A)	1000명	127,482	127,659	127,798	127,896	127,953
농촌거주민구		44,305	44,287	44,189	43,969	-
농업인구(B)		4,383	4,134	3,899	3,676	-
농업인구비중(A/B)	%	3	3	3	3	-
국토면적(C)	1000ha	37,789	37,790	37,791	37,791	37,791
경지면적(D)		4,762	4,736	4,714	4,692	4,692
경지면적비중(C/D)	%	13	13	12	12	12
GDP	백만 USD	3,904,827	4,231,249	4,584,884	4,533,965	4,340,133
1인당 GDP	USD	30,736	33,128	36,041	35,593	34,200
수출(E)	백만 USD	416,715	471,996	565,761	594,941	646,725
수입(F)		337,609	383,452	455,254	515,866	579,064
경상수지(E-F)		79,106	88,544	110,507	79,074	67,661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3. 농산물 수급

일본은 독일과 함께 세계 최대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연간 420억 달러 이상의 농산물을 수입한다. 자급률이 감소하고 있는 육류, 과일, 곡물 등이 수입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쌀 생산량은 연간 1천만 톤 수준이다. 보리와 밀의 생산량은 각각 17만 톤, 80만 톤 정도이다. 쌀의 자급률이 100%로 나타나 있지만 의무수입량(쿼터) 수입과 잉여 재고의 해외원조 등을 함께 고려하면 자급률은 100% 이상으로 볼 수 있다. 사료곡물인 옥수수의 자급률은 0%이며, 밀의 자급률도 14%에 머물고 있다. 보리의 자급률은 2002년 14%에서 2006년 11%로 낮아졌다. 그 밖에 감자 생산량이 260만 톤 정도로 100%의 자급률을 보인다. 대두 소비는 연간 400만 톤을 넘으나 생산은 20만 톤에 그쳐 자급률은 5%에 불과하다. 일본에서 소비량이 많은 곡물은 옥수수(1,700만 톤), 쌀(1천만 톤), 밀(600만 톤), 대두(400만 톤) 순이며, 이 가운데 쌀만 자급하고 나머지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표 5-2. 일본의 식량작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생산량(A)	828	856	860	875	837
	소비량(B) ¹⁾	6,691	6,102	6,349	6,347	6,174
	자급률(A/B)	12	14	14	14	14
쌀	생산량(A)	11,111	9,740	10,912	11,342	10,695
	소비량(B) ¹⁾	11,111	9,740	10,912	11,342	10,695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보리	생산량(A)	217	199	199	183	174
	소비량(B) ¹⁾	1,569	1,640	1,638	1,613	1,557
	자급률(A/B)	14	12	12	11	11
옥수수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16,421	17,064	16,480	16,656	16,883
	자급률(A/B)	-	-	-	-	-
귀리	생산량(A)	3	3	2	2	2
	소비량(B) ¹⁾	86	77	72	66	63
	자급률(A/B)	3	3	3	3	3

(표 5-2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수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1,775	1,490	1,411	1,403	1,354
	자급률(A/B)	-	-	-	-	-
감자	생산량(A)	3,074	2,939	2,884	2,749	2,598
	소비량(B) ¹⁾	3,074	2,939	2,884	2,749	2,598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고구마	생산량(A)	1,030	941	1,009	1,053	989
	소비량(B) ¹⁾	1,036	948	1,018	1,067	1,005
	자급률(A/B)	99	99	99	99	98
대두	생산량(A)	270	232	163	225	229
	소비량(B) ¹⁾	5,309	5,405	4,570	4,406	4,271
	자급률(A/B)	5	4	4	5	5
매니옥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	-	-	-	-
	자급률(A/B)	-	-	-	-	-
메밀	생산량(A)	25	27	20	31	33
	소비량(B) ¹⁾	116	119	110	116	111
	자급률(A/B)	22	23	19	27	30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일본에서 생산되는 주요 과일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사과, 배, 감, 포도, 복숭아 등의 순으로 생산량이 많다. 그러나 소비량이 가장 많은 과일은 바나나이다.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사과 생산량은 80만 톤 이상이다. 사과 자급률은 102%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배와 감의 생산량은 각각 35만 톤, 25만 톤이며 100% 자급한다. 포도는 20만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자급률은 95%이다. 복숭아도 생산량은 15만 톤 정도이고 자급률은 100%이다. 바나나 소비량은 100만 톤을 넘으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과일의 자급률이 낮은 것은 일본의 전통 과일인 사과, 배, 감, 포도, 복숭아 등의 자급률 하락보다는 바나나 등 열대과일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3. 일본의 과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오렌지	생산량(A)	99	90	88	75	63
	소비량(B) ¹⁾	202	207	201	190	184
	자급률(A/B)	49	43	44	39	34
레몬	생산량(A)	-	4	5	5	5
	소비량(B) ¹⁾	91	94	90	84	80
	자급률(A/B)	-	4	6	6	6
자몽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285	274	289	206	171
	자급률(A/B)	-	-	-	-	-
바나나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937	987	1,026	1,067	1,044
	자급률(A/B)	-	-	-	-	-
사과	생산량(A)	926	842	755	819	832
	소비량(B) ¹⁾	916	825	745	802	813
	자급률(A/B)	101	102	101	102	102
파인애플	생산량(A)	13	11	12	10	10
	소비량(B) ¹⁾	136	133	154	166	162
	자급률(A/B)	9	8	7	6	6
포도	생산량(A)	232	221	206	220	210
	소비량(B) ¹⁾	244	233	219	231	219
	자급률(A/B)	95	95	94	95	96
배	생산량(A)	407	366	352	395	319
	소비량(B) ¹⁾	404	364	350	393	318
	자급률(A/B)	101	101	100	101	100
복숭아	생산량(A)	175	157	152	174	146
	소비량(B) ¹⁾	175	157	152	173	146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감	생산량(A)	269	265	233	286	233
	소비량(B) ¹⁾	269	265	232	285	232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양념채소류 가운데 양파의 생산과 소비가 가장 많다. 양파 생산량은 120만 톤 정도이고 소비량은 145만 톤으로 자급률 80% 수준이다. 고추는 15만 톤이 생산되지만 소비량은 18만 톤으로 자급률은 80% 수준이다. 마늘 생산과 소비는 미미하다. 주요 과채류인 오이, 토마토, 딸기 등의 소비량이 많다. 오이와 토마토 생산량은 각각 70만 톤 정도이고 자급률은 100%이다. 딸기는 20만 톤 정도가 생산, 소비되고 있다.

표 5-4. 일본의 채소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추	생산량(A)	161	152	153	154	147
	소비량(B) ¹⁾	195	186	189	193	181
	자급률(A/B)	83	81	81	80	81
딸기	생산량(A)	211	203	198	196	191
	소비량(B) ¹⁾	215	207	202	200	195
	자급률(A/B)	98	98	98	98	98
마늘	생산량(A)	-	17	19	18	19
	소비량(B) ¹⁾	26	44	48	48	45
	자급률(A/B)	-	38	40	38	43
생강	생산량(A)	32	31	38	39	40
	소비량(B) ¹⁾	130	140	139	129	128
	자급률(A/B)	25	22	28	31	31
수박	생산량(A)	527	487	454	450	419
	소비량(B) ¹⁾	528	488	454	450	419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양파	생산량(A)	1,274	1,172	1,128	1,087	1,158
	소비량(B) ¹⁾	1,424	1,414	1,402	1,445	1,449
	자급률(A/B)	89	83	80	75	80
오이	생산량(A)	729	684	673	675	628
	소비량(B) ¹⁾	733	686	674	676	629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토마토	생산량(A)	785	760	755	759	726
	소비량(B) ¹⁾	789	764	760	765	732
	자급률(A/B)	99	99	99	99	99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일본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육류는 닭고기로 130만 톤 정도가 생산된다. 닭고기의 소비량은 170만 톤으로 닭고기 자급률은 80% 이하이다. 돼지고기는 125만 톤 정도가 생산되며 소비량은 148만 톤, 자급률은 84%이다. 쇠고기 소비량은 100만 톤 이상이지만 생산량은 50만 톤 내외로 자급률은 49% 수준이다. 천연꿀 소비량은 4만 3천 톤으로 자급률은 7% 정도이다.

특용작물 가운데 땅콩과 참깨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녹차는 10만 톤 정도가 생산되어 소비의 2/3 정도를 충족시키고 있다. 참깨는 16만 톤 정도가 소비되지만 국내 생산은 거의 없다.

표 5-5. 일본의 축산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닭고기	생산량(A)	1,229	1,240	1,242	1,273	1,337
	소비량(B) ¹⁾	1,751	1,703	1,595	1,690	1,705
	자급률(A/B)	70	73	78	75	78
돼지고기	생산량(A)	1,246	1,274	1,263	1,245	1,247
	소비량(B) ¹⁾	1,382	1,418	1,438	1,460	1,483
	자급률(A/B)	90	90	88	85	84
쇠고기	생산량(A)	537	496	514	499	497
	소비량(B) ¹⁾	1,111	1,184	988	1,011	1,005
	자급률(A/B)	48	42	52	49	49
천연꿀	생산량(A)	3	3	3	3	3
	소비량(B) ¹⁾	48.0	46.9	50.3	46.3	43.3
	자급률(A/B)	7	7	7	7	8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표 5-6. 일본의 특작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녹차	생산량(A)	84	92	101	100	92
	소비량(B) ¹⁾	135	138	156	150	138
	자급률(A/B)	62	66	65	67	66
땅콩	생산량(A)	24	22	21	21	20
	소비량(B) ¹⁾	65	67	63	63	61
	자급률(A/B)	37	33	34	34	33
참깨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153	149	155	163	159
	자급률(A/B)	-	-	-	-	-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4. 농산물 교역

일본의 농산물 수출은 2002년 16억 달러에서 2006년 20억 달러로 25.7% 증가하였다. 수입은 같은 기간에 335억 달러에서 421억 달러로 25.9% 증가하였다. 농산물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0.4%에서 2006년 0.3%로 감소하였고, 농산물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에서 7%로 낮아졌다.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2002년 319억 달러에서 2006년 40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표 5-7. 일본의 교역지표

단위: 백만 USD, %

	2002	2003	2004	2005	2006
총수출액(A)	416,715	471,996	565,761	594,941	646,725
농업수출액(B)	1,614	1,686	1,871	1,940	2,028
농업수출액 비중(A/B)	0.4	0.4	0.3	0.3	0.3
총수입액(C)	337,609	383,452	455,254	515,866	579,064
농업수입액(D)	33,464	36,847	41,325	42,368	42,120
농업수입액 비중(C/D)	10	10	9	8	7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 ¹⁾	1	1	1	1	1

주: 1)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 = $\frac{\text{농업수출액} + \text{농업수입액}}{GDP} \times 100$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일본은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쌀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수입량이 가장 많은 곡물은 옥수수로 1,700만 톤 정도가 수입된다(수입액 26억 달러). 밀과 보리의 수입량은 각각 540만 톤, 140만 톤이다. 수수 수입량은 140만 톤이며, 대두는 400만 톤 이상이다.

과일류는 열대성 과일이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온대성 과일의 수입은 거의 없다. 바나나 수입량이 100만 톤을 넘는다. 오렌지, 레몬, 자몽의 수입량이 각각 12만 톤, 8만 톤, 20만 톤 수준이다. 파인애플은 15만 톤 정도가 수입되고 있다. 반면 온대성 과일은 포도가 1만 톤 정도 수입되고 있을 뿐 사과, 배, 복숭아, 감 등은 거의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추와 마늘은 각각 3~4만 톤 정도가 수입되며, 양파는 30만 톤 정도 수입된다. 딸기, 토마토, 오이 등 과채류 수입도 수천 톤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육류 가운데 수입이 가장 많은 것은 쇠고기로 50만 톤 이상 수입되고 있다. 닭고기와 돼지고기 수입량은 각각 24만 톤, 37만 톤(2006년)이다.

표 5-8. 일본의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USD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수입량	5,862.8	5,246.1	5,490.2	5,472.3	5,337.1
	수입액	1,120.9	1,090.7	1,275.2	1,230.3	1,280.7
쌀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보리	수입량	1,351.6	1,442.0	1,439.0	1,429.9	1,383.0
	수입액	201.2	265.1	265.2	270.0	260.6
옥수수	수입량	16,420.5	17,064.2	16,479.4	16,655.9	16,883.3
	수입액	1,993.3	2,397.2	2,931.9	2,584.2	2,586.6
귀리	수입량	83.2	74.8	69.6	63.7	60.8
	수입액	16.0	17.9	16.9	15.8	15.7
수수	수입량	1,775.2	1,490.1	1,411.0	1,403.3	1,354.4
	수입액	210.6	207.8	248.9	217.5	208.3
감자	수입량	-	-	-	0.1	0.5
	수입액	-	-	-	-	0.3
고구마	수입량	5.9	7.0	9.0	13.9	16.2
	수입액	3.0	3.2	4.1	5.0	6.3
대두	수입량	5,038.9	5,172.5	4,407.1	4,180.6	4,041.9
	수입액	1,223.1	1,517.2	1,774.6	1,426.2	1,282.0
매니옥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메밀	수입량	90.7	92.0	89.5	84.9	78.3
	수입액	21.4	20.5	24.3	29.5	31.0
오렌지	수입량	103.9	117.1	112.9	115.4	120.9
	수입액	86.3	94.7	101.4	105.6	117.4
레몬	수입량	90.5	90.2	84.7	78.9	75.3
	수입액	126.6	105.4	104.9	97.4	107.4
자몽	수입량	284.7	274.3	288.5	206.0	170.9
	수입액	231.5	229.1	258.3	196.7	181.6
바나나	수입량	936.3	986.6	1,026.0	1,066.9	1,043.6
	수입액	519.6	540.8	588.6	588.7	563.8

(표 5-8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사과	수입량	0.1	0.1	-	0.1	-
	수입액	0.2	0.2	-	0.3	-
파인애플	수입량	122.9	122.7	142.3	155.4	152.5
	수입액	61.6	64.3	85.0	89.3	85.8
포도	수입량	12.0	12.8	13.9	11.0	9.9
	수입액	18.3	19.4	24.2	19.9	17.2
배	수입량	0.3	-	0.3	0.2	0.2
	수입액	0.3	0.1	0.5	0.2	0.2
복숭아	수입량	-	-	0.1	-	-
	수입액	0.1	-	0.2	0.1	-
감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고추	수입량	33.6	34.5	35.8	39.0	34.3
	수입액	96.0	109.3	118.3	126.9	123.4
딸기	수입량	4.9	4.2	4.3	3.9	4.0
	수입액	35.9	32.7	35.2	32.5	35.0
마늘	수입량	25.9	27.6	28.8	30.3	26.2
	수입액	16.5	18.6	21.3	24.1	27.0
생강	수입량	97.7	109.2	101.2	89.2	88.5
	수입액	61.2	70.8	126.0	103.0	74.3
수박	수입량	0.6	0.2	0.4	0.3	0.1
	수입액	0.7	0.2	0.5	0.3	0.1
양파	수입량	154.2	243.1	274.0	357.5	291.1
	수입액	39.3	81.4	86.8	100.2	109.9
오이	수입량	3.4	2.0	1.0	0.9	0.3
	수입액	5.0	3.4	1.8	1.4	0.5
토마토	수입량	4.2	4.2	4.9	5.9	5.5
	수입액	9.0	10.0	15.4	16.4	15.5
닭고기	수입량	524.4	466.1	353.8	419.1	370.7
	수입액	876.9	741.3	696.6	843.5	674.3
돼지고기	수입량	136.4	144.4	175.4	215.4	236.9
	수입액	368.4	331.2	510.4	629.8	693.2

(표 5-8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쇠고기	수입량	574.6	687.9	474.6	511.7	508.8
	수입액	2,729.5	1,878.9	2,151.7	2,509.4	2,296.5
천연꿀	수입량	45.0	43.8	47.0	43.2	40.1
	수입액	56.4	62.0	65.0	57.4	62.1
녹차	수입량	51.8	47.4	56.2	51.4	48.1
	수입액	178.9	160.7	193.5	181.3	179.8
땅콩	수입량	41.6	44.8	41.5	41.5	41.5
	수입액	36.2	43.4	44.4	41.6	42.6
참깨	수입량	153.0	149.4	154.9	162.8	159.1
	수입액	92.4	114.2	153.7	154.0	148.4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일본의 신선 농산물 수출 실적은 미미하다. 과일 가운데 사과와 배가 소량 수출되고 있으나 그 양은 많지 않다. 사과 수출량은 2만 톤, 배 수출량은 2천 톤 수준이다. 녹차가 일부 수출되고 있는데 수출량은 2천 톤 미만이다.

표 5-9. 일본의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USD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수출량	-	-	1.1	-	-
	수출액	-	-	0.2	-	-
쌀	수출량	-	-	-	-	0.2
	수출액	-	-	-	-	0.1
보리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옥수수	수출량	-	-	-	0.5	0.3
	수출액	-	-	-	1.2	0.6
귀리	수출량	-	0.1	-	-	-
	수출액	-	-	-	-	-
수수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감자	수출량	0.2	-	0.1	0.1	0.1
	수출액	0.4	-	-	-	0.1

(표 5-9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고구마	수출량	0.1	0.1	0.1	0.3	0.2
	수출액	0.2	0.2	0.4	0.7	0.6
대두	수출량	0.1	0.1	0.2	0.1	-
	수출액	0.3	0.2	0.2	0.4	0.1
매니옥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메밀	수출량	-	-	-	0.1	0.3
	수출액	-	0.1	-	0.1	0.1
오렌지	수출량	0.1	-	-	-	-
	수출액	0.1	-	0.1	-	0.1
레몬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자몽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바나나	수출량	0.2	-	-	-	-
	수출액	0.1	-	-	-	-
사과	수출량	10.2	16.8	10.1	17.1	18.8
	수출액	20.9	37.8	27.6	47.7	49.0
파인애플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포도	수출량	0.1	0.1	0.1	0.2	0.3
	수출액	0.5	0.7	1.0	1.6	2.6
배	수출량	2.7	1.9	2.0	2.1	1.4
	수출액	6.3	5.5	6.2	7.1	4.6
복숭아	수출량	0.5	0.3	0.4	0.7	0.4
	수출액	2.5	1.7	2.1	3.9	3.1
감	수출량	0.5	0.4	0.2	0.6	0.4
	수출액	1.1	1.1	0.8	1.5	1.3
고추	수출량	0.1	0.1	0.1	0.1	0.1
	수출액	0.6	0.6	0.6	0.5	0.8
딸기	수출량	-	-	-	-	0.1
	수출액	0.1	0.2	0.2	0.5	0.9
마늘	수출량	-	0.1	-	0.1	0.6
	수출액	-	0.1	-	0.2	0.9
생강	수출량	-	0.1	0.2	0.1	0.1
	수출액	0.3	0.2	0.3	0.2	0.2
수박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표 5-9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양파	수출량	3.8	0.8	0.3	-	-
	수출액	0.7	0.2	0.1	-	-
오이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토마토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닭고기	수출량	2.9	2.8	0.6	1.9	2.4
	수출액	2.6	2.7	1.0	2.0	2.5
돼지고기	수출량	0.5	0.6	0.4	0.3	0.5
	수출액	1.2	0.9	1.0	0.9	1.0
쇠고기	수출량	0.1	0.2	0.1	0.1	0.1
	수출액	2.8	1.2	5.3	4.4	5.7
천연꿀	수출량	0.3	0.2	-	0.1	0.1
	수출액	0.4	0.3	-	0.4	0.3
녹차	수출량	0.8	0.8	0.9	1.1	1.7
	수출액	11.8	13.8	16.7	20.0	27.5
땅콩	수출량	0.3	0.1	0.1	0.1	0.1
	수출액	0.2	0.1	0.1	0.1	0.2
참깨	수출량	0.1	0.1	0.1	0.1	0.2
	수출액	0.4	0.4	0.6	0.7	0.8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표 5-10. 한국-일본 농산물 교역현황

단위: 백만 USD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	농산물(A)	460	537	627	620	570
	축산물(B)	27	27	39	39	40
	임산물(C)	103	94	62	54	42
	총계(D=A+B+C)	590	657	729	713	651
수입	농산물(E)	153	167	168	145	159
	축산물(F)	40	39	44	48	45
	임산물(G)	9	9	7	7	9
	총계(H=E+F+G)	203	214	219	200	213
무역수지	농산물(A-E)	307	370	459	476	411
	축산물(B-F)	-14	-12	-5	-9	-5
	임산물(C-G)	94	85	55	47	32
	총계(D-H)	387	443	509	513	43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5-11. 한국-일본 농산물 주요 수입 품목

단위: 톤, 1000 USD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합계	물량	47,700	50,908	58,119	40,348	50,612	68,978	93,250	58,559
	금액	202,693	214,275	219,446	200,105	212,719	256,053	307,098	230,341
로열젤리	물량	2,542	2,836	2,852	2,582	2,500	2,284	2,277	2,553
	금액	29,104	27,745	35,106	35,494	32,794	30,653	32,988	31,983
권련	물량	3,724	3,390	1,866	136	26	249	463	1,408
	금액	47,753	49,344	25,173	2,248	583	4,837	7,676	19,659
채소종자	물량	215	242	275	256	247	264	196	242
	금액	11,516	11,089	16,026	17,233	15,780	18,193	18,188	15,432
배합사료	물량	7,496	8,045	6,435	4,674	8,238	6,944	3,302	6,448
	금액	10,143	11,292	10,402	8,304	13,798	13,420	8,479	10,834
향미용 조제품	물량	251	247	324	256	262	246	257	263
	금액	8,298	8,538	11,865	9,460	9,161	8,960	10,359	9,520
기타 소오스제품	물량	1,103	1,242	1,386	1,452	2,398	2,521	2,208	1,759
	금액	3,564	4,615	5,258	5,455	8,144	9,636	10,303	6,711
기타 식물성 액즙	물량	70	64	57	72	73	87	88	73
	금액	4,382	4,154	4,401	6,640	5,977	6,863	8,522	5,848
기타 유지 가공품	물량	156	389	939	1,363	1,518	2,054	1,919	1,191
	금액	2,665	1,766	2,258	4,781	6,683	8,590	11,764	5,501
기타 사료용 조제품	물량	1,106	1,119	1,267	1,223	1,148	1,192	1,247	1,186
	금액	3,401	4,807	6,294	5,895	5,639	5,569	5,263	5,26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5-12. 한국-일본 농산물 주요 수출 품목

단위: 톤, 1000 USD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합계	물량	452,860	462,271	498,066	483,553	440,581	425,355	464,082	460,967
	금액	590,027	657,453	728,594	713,300	651,064	646,235	751,766	676,920
소주	물량	75,016	78,780	88,786	75,599	79,758	73,850	73,343	77,876
	금액	90,109	101,759	120,192	103,417	102,793	90,432	101,749	101,493
김치	물량	27,097	30,584	32,428	29,663	22,793	23,493	23,524	27,083
	금액	74,126	87,169	96,911	86,428	62,637	66,120	75,052	78,349
기타 설탕과자	물량	37,632	32,916	36,314	35,908	33,318	33,081	36,331	35,071
	금액	31,550	30,212	34,635	38,489	39,238	42,919	55,115	38,880
파프리카	물량	-	9,479	15,935	17,839	14,574	14,173	17,040	12,720
	금액	-	24,216	43,171	53,121	45,629	47,089	54,075	38,186
베이커리 반죽	물량	67,740	66,735	63,476	63,737	62,640	50,560	42,518	59,630
	금액	28,520	31,124	31,695	31,785	31,478	26,614	31,425	30,377
로열젤리	물량	34,061	29,191	30,717	33,698	30,338	34,073	35,868	32,564
	금액	15,564	16,556	28,300	24,546	23,827	28,892	37,711	25,057
밤	물량	8,052	4,332	2,840	2,654	2,175	1,606	1,592	3,321
	금액	51,258	43,762	17,586	14,795	11,785	9,696	9,720	22,657
코코아 분말	물량	28,848	31,105	26,988	26,341	18,667	19,543	17,763	24,179
	금액	17,482	21,681	17,705	17,010	14,171	15,186	15,422	16,951
라면	물량	2,473	2,529	3,516	4,159	4,572	4,387	4,829	3,781
	금액	6,785	7,758	12,343	14,527	18,798	15,850	19,542	13,65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5. 농산물 관세

5.1. 관세부과 형태

일본의 농산물 품목수는 HS8 단위 기준으로 1,832개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종가세 부과 대상 농산물 1,523개의 평균 관세율은 10.7%이다. 비종가세 부과 대상 농산물의 평균 관세율은 파악할 수 없다¹¹. 비종가세 부과 형태는 종량세가 170개로 가장 많고 복합관세, 선택세는 각각 58개, 51개이고, 특수 형태 관세는 계절관세, 차액관세, 면세 등을 포괄하며, 여기에는 30개 품목이 해당된다.

표 5-13. 일본의 농산물 관세부과 형태별 품목분류 현황

단위: 개, %

총품목	종가세 품목	비종가세 품목	종가세 평균
1,832	1,523	309	10.7

자료: Japan, Customs Tariff, 2004.

일본은 낙농제품, 쌀과 기타 곡물, 채소 및 서류, 생사 등 다양한 농산물에 할당관세를 운용한다. 탈지분유의 경우 비슷한 지방 함유율의 제품이라도 급식용, 사료용 등 용도에 따라 다른 쿼터가 적용된다. 낙농제품에 대한 쿼터 내 관세율은 0~35% 정도의 종가세 형태로 결정되며, 쿼터 초과 관세율은 종량세 형태로 kg당 400~420엔이 부과된다.

쌀을 제외한 곡물과 채소의 경우 0~40%의 쿼터 내 관세율을 적용한다. 쿼터 초과 관세율은 종량세 형태로 곡물의 경우 kg당 50~120엔, 채소의 경우 350엔이 부과된다. 생사, 땅콩, 서류 등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의 쿼터 내 관

11 비종가세를 종가세로 환산하여 추정할 경우 24.1%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최세균 외.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 및 관세 감축효과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448. 2002.

세율은 7.5~40%이다. 킬터 초과 관세율은 kg 당 600~7,000엔이다.

쌀은 1999년 4월부터 관세화되면서 수입물량 제한이 사라졌다. 적용 관세율은 톤당 1999년에 351,170엔(2,922달러), 2000년에 341,000엔(2,837달러)으로 정해졌다. OECD와 WTO가 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한 세율(ad valorem equivalents, AVEs)에 따르면 HS 6단위 기준으로 낙농제품의 평균 킬터 초과 관세율은 각각 250%와 476%이며, 곡류와 채소의 경우 각각 248%와 490%에 해당된다.

5.2. 농산물 관세율

품목류(HS 2단위 기준)별로 볼 때, 육류, 당류 및 설탕과자의 관세율은 전체 평균 관세율(10.7%)과 비슷한 수준이다. 관세율이 높은 품목류로는 곡물류, 육가공품, 코코아와 조제품, 조제 식료품 등이 있으며, 특히 유제품과 베이커리 제품의 관세율은 20% 정도로 전체 평균 관세율의 약 2배이다. 따라서 품목류별 관세율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할 때 일본의 관심품목은 육류, 유제품, 곡물 등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베이커리 제품, 당류, 조제 식료품 등은 산업보호보다는 국민 건강 등의 목적으로 관세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료 농산물에 비해 가공품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표 5-14. 일본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전 체	10.68	08류	7.07
01류	0.38	09류	3.47
02류	10.85	10류	1.50
04류	21.84	11류	17.38
05류	0.24	12류	2.16
06류	0.43	13류	2.79
07류	6.08	14류	1.94

(표 5-14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15류	3.89	29류	9.90
16류	17.78	33류	1.45
17류	11.99	35류	6.07
18류	18.82	38류	0.00
19류	20.22	41류	3.30
20류	15.88	43류	0.35
21류	17.38	50류	0.00
22류	6.29	51류	0.00
23류	0.52	52류	0.00
24류	5.09	53류	0.00

주: 종가세 기준임.

자료: Japan, Customs Tariff, 2004.

HS 4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보다 높은 관세율을 보이는 품목군은 육류(쇠고기, 식용설육 등), 낙농품(밀크와 크림 등), 과일 및 조제과일(사과, 배, 냉동 및 조제 과실 등), 차류(녹차, 홍차 등), 전분 및 밀가루(곡분, 가공곡물 등), 동식물성유지(마가린 등), 육류 조제품(소시지 등), 당류(당밀, 유당 등), 코코아 조제품, 곡물 및 베이커리 제품 등이다. 일본의 주요 농산물 중에서 축산물과 낙농품 및 곡물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등에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15. 일본의 품목군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품목	MFN 관세율	품목군	MFN 관세율	품목군	MFN 관세율
0101	0.00	0503	0.00	0805	7.33
0102	0.00	0504	0.00	0806	1.20
0103	5.67	0505	0.00	0807	4.67
0104	0.00	0506	0.00	0808	10.90
0105	0.00	0510	1.00	0809	6.63
0106	0.00	0511	0.38	0810	5.80
0201	38.50	0601	0.00	0811	11.46
0202	38.50	0602	0.00	0812	11.27
0203	2.15	0603	0.00	0813	8.19
0204	0.00	0604	3.00	0814	1.50
0205	0.00	0701	3.65	0901	6.00
0206	12.66	0702	3.00	0902	10.38
0207	8.00	0703	4.83	0903	12.00
0208	0.00	0704	3.00	0904	1.71
0209	6.00	0705	3.00	0905	0.00
0210	6.35	0706	2.83	0906	0.00
0401	23.61	0707	3.00	0907	1.20
0402	24.17	0708	3.00	0908	1.20
0403	28.82	0709	3.46	0909	3.00
0404	21.06	0710	8.10	0910	2.33
0405	35.00	0711	8.50	1001	5.00
0406	24.79	0712	8.89	1002	2.80
0407	12.77	0713	5.32	1003	0.00
0408	20.47	0714	8.40	1004	0.00
0409	22.50	0801	2.00	1005	0.50
0410	5.25	0802	4.85	1006	0.00
0501	0.00	0803	3.00	1007	1.00
0502	0.00	0804	5.12	1008	1.71

(표 5-15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군	MFN 관세율	품목군	MFN 관세율
1101	18.75	1503	4.30	2001	11.28
1102	22.10	1505	2.10	2002	9.06
1103	20.04	1506	6.40	2003	11.19
1104	19.41	1509	0.00	2004	13.29
1105	20.00	1510	0.00	2005	13.47
1106	11.41	1511	3.17	2006	16.20
1107	0.00	1513	1.60	2007	21.63
1108	14.58	1515	1.42	2008	14.91
1109	21.30	1516	3.67	2009	20.31
1201	0.00	1517	14.64	2101	18.89
1202	5.00	1518	2.50	2102	6.20
1203	0.00	1520	5.00	2103	10.89
1204	0.00	1521	4.52	2104	9.13
1205	0.00	1522	2.25	2105	24.50
1206	0.00	1601	10.00	2106	18.60
1207	0.00	1602	17.94	2201	1.50
1208	4.20	1701	0.00	2202	11.50
1209	0.00	1702	14.97	2203	0.00
1210	3.87	1703	1.50	2204	22.53
1211	2.75	1704	19.80	2205	19.10
1212	7.86	1801	0.00	2206	0.00
1213	0.00	1802	0.00	2207	11.84
1214	0.00	1803	7.50	2208	1.05
1301	2.83	1804	0.00	2209	7.50
1302	2.77	1805	12.90	2301	0.00
1401	5.00	1806	22.68	2302	0.00
1402	0.00	1901	22.03	2303	0.00
1403	0.00	1902	16.73	2304	0.00
1404	0.67	1903	9.60	2305	0.00
1501	3.20	1904	19.82	2306	0.00
1502	0.00	1905	16.88	2307	0.00

(표 5-15 계속)

품목군	MFN 관세율	품목군	MFN 관세율	품목군	MFN 관세율
2308	0.00	3503	8.80	5003	0.00
2309	1.45	3504	4.37	5101	0.00
2401	0.00	3505	6.80	5102	0.00
2402	6.47	4101	8.40	5103	0.00
2403	7.32	4102	0.00	5201	0.00
2905	9.90	4103	0.30	5202	0.00
3301	1.45	4301	0.35	5203	0.00
3501	2.70	5001	0.00	5301	0.00
3502	5.45	5002	0.00	5302	0.00

주: 종가세 기준임.

자료: Japan, Customs Tariff, 2004.

5.3. 비종가세 현황

일본은 비종가세로 종량세와 복합세 및 선택세 등을 운용하고 있다. 그 밖에 특수 형태의 관세로 세율을 설정한 예가 있다. 비종가세 가운데 가장 많이 부과되는 있는 형태의 관세는 종량세로 170개 품목에 해당된다. 종량세 부과 품목이 많은 것은 산동물, 육과 식용설육, 밀크와 크림, 건조채소, 곡물 등이다. 복합세 적용 품목은 58개이며, 주로 낙농품, 조제식품, 조제사료 등이다. 일정한 관세율을 규정한 기타 품목은 30개이며, 육과 식용설육, 과일 및 견과류, 동식물성 유지 등이다.

표 5-16. 일본의 비종가세 품목 현황

종량세				복합세		선택세		기타	
품목	품목수	품목	품목수	품목	품목수	품목	품목수	품목	품목수
0101	2	1501	1	0401	4	0408	2	0103	1
0102	2	1507	3	0402	12	1005	2	0203	6
0103	1	1508	3	0403	7	1513	2	0206	2
0203	6	1512	8	0404	12	1515	2	0210	4
0206	2	1514	6	0405	5	1702	17	0703	1
0210	2	1515	9	1806	2	2009	15	0803	1
0402	4	1517	1	1901	6	2106	3	0805	1
0712	1	1701	6	2101	4	2204	3	0806	1
0713	7	1702	2	2106	4	2206	1	0812	3
1001	4	1703	4	2309	2	2208	1	1512	2
1003	2	1901	12	-	-	3505	2	1602	3
1005	1	1902	7	-	-	3809	1	5002	5
1006	4	1904	10	-	-	-	-	-	-
1008	1	2008	4	-	-	-	-	-	-
1101	1	2106	4	-	-	-	-	-	-
1102	3	2204	4	-	-	-	-	-	-
1103	8	2205	2	-	-	-	-	-	-
1104	9	2206	3	-	-	-	-	-	-
1107	4	2207	2	-	-	-	-	-	-
1108	7	2208	3	-	-	-	-	-	-
1202	2	2309	2	-	-	-	-	-	-
1212	1	-	-	-	-	-	-	-	-
계	74		96		58		51		30
총계	170				58		51		30

자료: Japan, Customs Tariff, 2004.

5.4. 관세율의 분포

종가세 부과 대상 품목만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10% 미만의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이 843개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가 해당된다. 반면 100% 이상의 고율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분석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율관세는 대부분 종량세 부과 품목임). 나머지 품목에서 20% 미만인 품목은 299개로 약 20%에 해당하고, 20~50%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376개 품목, 50~100%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5개이다.

표 5-17. 일본의 관세 구간별 품목 분포

단위: 개, %

관세율	0~5% 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20~50% 미만	50~100% 미만	100% 이상	합계
품목 수	627 (41.2)	216 (14.2)	299 (19.6)	376 (24.7)	5 (0.3)	0 (0.0)	1,523 (100)

주: 종가세 기준임.

자료: Japan, Customs Tariff, 2004.

6. 한-일본 FTA 협상 추진 동향과 전망

일본과의 FTA 협상은 1998년부터 연구가 진행되었고, 산관학공동연구는 2003년 10월에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장기간의 연구를 거쳐 2003년부터 공식 협상에 들어간 한-일 FTA 협상은 2004년 11월에 개최된 6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협상 중단 이유는 양국 간 관심분야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농수산물 분야의 개방 수준을 매우 낮게 유지하고자 하고, 우리나라는 공산품 분야의 개방에 소극적인 것이 양국 간 이견의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개방, 비관세장벽 해소, 정부조달시

장 개방, 산업협력 등을 주된 관심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비관세장벽 해소와 산업협력(기술이전, 투자, 교육/훈련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얻는 부분이 없으면 FTA에 의한 시장개방에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요약되는 시장개방 협상 이외에 산업협력 및 인력이동 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일본으로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본의 농림수산업 개방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산업협력 문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양국 정치권 또는 정상 수준의 협상 타결 의지가 확고하게 표명되지 않는 한 실무 수준에서 단기간 내에 협상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경과>

- 1998년 11월 양국 통상장관,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 합의
- 1998년 12월 - 2000년 4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일본 아세아경제연구소
공동연구 시행
- 2002년 3월 양국정상,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설치 합의
- 2002년 7월 - 2003년 10월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시행
- 2003년 10월 양국정상, 정부간 공식 협상개시 합의(방콕)
- 2003년 12월 한일 FTA 제1차 협상(서울)
- 2004년 2월 한일 FTA 제2차 협상(동경)
- 2004년 4월 한일 FTA 제3차 협상(서울)
- 2004년 6월 한일 FTA 제4차 협상(동경)
- 2004년 8월 한일 FTA 제5차 협상(경주)
- 2004년 11월 한일 FTA 제6차 협상(동경)
- 2008년 6월 한일 FTA 협상 재개 검토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제1차 실무협의
개최(동경)
- 2008년 12월 한일 FTA 협상 재개 검토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제2차 실무협의
개최(서울)

제 6 장

G C C

1. 역사¹²

GCC(Gulf Cooperation Council)란 우리말로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라고 부르며 걸프협력회의라고도 한다. GCC는 1979년 2월 이란혁명으로 인한 왕정붕괴,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1980년 9월 이란과 이라크 사이의 전쟁 발발 등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걸프만 주변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의 6개국 정상들이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모여서 결성하였다. 상호간의 경제 및 안전보장 협력과 치안·국방에서 결속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GCC 6개국은 석유의 생산·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며 세습왕정체제를 유지하는 동일 민족국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며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를 적대시하는 이란의 반발이 심해지자 동맹국 간의 보조가 흐트러져, 1982년 11월 제3차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통합협정만을 조인하고 집단안전보장에 관한 결정은 유보하였

1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다. 1983년 3월에 역내의 관세장벽 철폐, 여행제한 해제 등을 실시하였다. 2008년 1월 1일에는 공동시장을 출범시켰다. 6개국을 해마다 각국을 돌면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결성 이후 10년 동안 활동의 중심은 정치·군사적인 면보다는 경제협력에 있었다. 그러나 1991년의 걸프전쟁을 계기로 공동방위력의 증강 등 정치·군사적 협력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바레인은 페르시아만을 끼고 아라비아반도, 소아시아, 인도양을 연결하는 중계지에 위치하고 있어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중계무역지로 번성하였다. 7세기경 이후 무슬림 아랍의 통치를 받았으나 일찌기 아프리카 남단을 거쳐 인도양에 이르는 항로를 개척한 포르투갈의 눈에 띄어 1521년 그의 수중에 넘어갔고 1602년 이후 이란의 지배를 받다가 1783년 아라비아반도에서 이주한 할리파 가문이 이란을 축출, 왕국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820년에 영국은 바레인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였고 1880년에 바레인은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 1932년 석유 생산이 시작되면서 근대화가 진행되었으며, 1971년 8월 영국군의 수에즈 이동 철군과 함께 족장겸 왕이었던 세이흐 이사 이븐 살만 알 할리파의 주도로 독립하였다. 19세기부터 이란이 바레인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나 1970년 바레인 주민들의 이란 귀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UN 보고서 내용에 이란이 승복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1973년에는 의회 구성을 승인하는 신헌법이 발효되어 총선을 실시하였으나 종파간의 갈등 때문에 국왕이 1975년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3차에 걸친 왕정 전복 기도가 있었지만 실패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자문위원회가 1993년 1월 구성되었다. 30명의 의원(수니계 15명, 시아계 15명)은 임명직이며 입법권을 갖지 못해 1996년 임기가 종료되었다. 1994년 의회 부활과 시아파 종교지도자 석방 및 시아파 인사의 고위직 등용 확대를 요구하는 반정부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 1996년에 의원은 수니파, 시아파 동수로 40명으로 증원되었다. 38년 동안 바레인을 통치한 세이흐이사 이븐 살만 알-할리파 국왕은 1999년 3월 사망하여 바레인 방위군 총사령관인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쿠웨이트 주민은 7세기경부터 이라크의 바스라 방면에서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아온 듯하나 그 후 10세기 남짓한 역사는 확실치 않다. 16세기 이전에는 오스만투르크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마이자족 등이 주변에서 이주해 오고 1756년 사바후 아브 압둘라가 쿠트에서 요새를 구축하여 지배자가 되었다. 1871년 투르크 제국의 종속국이 되었으나 1897년 투르크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영국에 보호를 요청, 1899년 영국의 압력으로 영국-쿠웨이트 조약을 체결하고 영국의 식민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1900년 독일이 사절단을 파견, 쿠웨이트를 바그다드 철도의 종착점으로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영국은 1904년에 정부 대표를 주재시키는 동시에 1907년에는 영국-쿠웨이트 조약을 개정하여 쿠웨이트를 영국의 보호 하에 두었다. 영국은 지중해와 인도의 무역로 장악이 긴요하였으며 쿠웨이트는 이러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투르크 제국의 붕괴를 계기로 영국은 쿠웨이트를 사실상 보호국으로 하였으며, 1939년에는 헌법에 따라 정식으로 보호국화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석유 개발과 이에 따른 자본주의적 전환에 따라 쿠웨이트에서도 민족주의 풍조가 일기 시작하였다. 중동 최대의 석유 산지 상실을 두려워한 영국은 쿠웨이트 왕족과 타협하여 1960년에는 우선 사법권과 통화관리권을 쿠웨이트에 넘겨주고, 마침내 1961년 6월 1899년 식민 조약을 폐기하였다. 이로써 쿠웨이트는 외교권을 포함한 독립주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독립국가가 된 쿠웨이트는 1962년 11월 신헌법을 공포하였다. 1977년 즉위한 자비르 알 아하마드 알 사바하 수장은 1990년 이라크의 침공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일시 망명하였다가 복귀하였다.

망명 정부는 귀환 후 계엄령을 선포하고 피해복구작업에 착수하였고, 1991년 구성된 새 내각은 사바왕가 인물들이 요직에 포진한 형태여서 국민의 불만을 야기하였다. 1991년 반정부시위가 발생하여 민주화를 즉시 이행할 것을 요구하자 자비르 국왕은 1992년에 의회 선거를 실시할 계획을 발표하고 7월에 계엄령을 해제하였다. 1992년 선거에서 국왕의 권한 축소, 복수정당제 도입, 여성의 참정권 허용 등 정치개혁요구를 내세운 사회 세력은 50석 중 31석을 확보하였다. 이는 이라크의 침공을 받았을 때 사바왕가의 무력한 모습에 대한 국민의 반감과 이들의 주장이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

라 현재까지 정치 개혁이 진행 중이다.

오만은 인도양 무역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오랫동안 번성하였다. AD 630년 경 이슬람교로 개종한 후 16세기 초 포르투갈이 해안의 무스카트를 점령, 약 150년 동안 이 지방을 지배하면서 아라비아만 무역을 제압하였지만 1650년 아랍인은 포르투갈인을 추방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무스카트의 술탄은 그후 한동안 그 세력을 성장시켜 1730년에는 모가디슈, 몸바사, 마피아섬의 잔지바르 등과 동아프리카의 포르투갈 식민지 등을 정복하였다.

한때 이란인이 침입하여 지배하였지만(1741~1743년) 당시 왕조 알 아부 사이드가가 발흥하여 이들을 축출하였다. 이때 영국과 우호적인 조약이 성립되었다. 그후 1856년 술탄의 사후에 영토계승분쟁이 일어났으며 영국의 조정으로 잔지바르가 무스카트의 술탄으로부터 독립하였다. 19세기 초 무스카트는 동아프리카의 무스카트 오만령에서 수입한 흑인노예의 유력한 시장이었지만, 1922년에 이르러 영국은 그의 해외속령과 그리스도교국 간의 노예매매를 금지하는 조약을 맺고 다시 1951년부터 1951년까지 일련의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오만은 영국의 보호국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식민지는 아니었다.

20세기 초에 무스카트의 술탄이 중앙집권적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니즈와의 이맘과 분쟁을 일으켰으나 분쟁 결과 1920년 술탄은 이맘에 대하여 그의 신도(信徒)에 대한 전통적 지배권을 인정하여 한동안 양자의 조화공존(調和共存)이 계속되었다. 1937년 술탄으로부터 오만 영토의 석유이권(石油利權)을 얻은 오만석유회사가 제2차 세계대전 후 탐사(探査)를 개시하였을 때 이맘은 자기의 통치지역에 대한 술탄의 주권 주장을 거부하고 탐사에 항의하였다. 1954년 이맘 칼리브가 무력투쟁을 전개하여 동생 타리부는 카이로로 망명, 오만 이맘청(廳)을 설치하고 분리운동(分離運動)을 시작하였다.

1960년 아랍 10개국은 오만 문제를 영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UN의 의제로 채택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후 오만문제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그 보고서에 근거하여 1965년 12월 영국의 의존으로 인한 오만 국민의 민족자결권과 독립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1970년 7월 족장단이 술탄 사이드의 퇴위를 강요하여 그의 아들 카부스 이븐사이드가 계승하였다. 이 때

국명을 무스카트 & 오먼에서 현재의 오만 술탄(the Sultanate of Oman)으로 개칭하였다.

새로운 술탄은 선더스트 영국사관학교 출신의 계몽군주로서 모든 왕족을 통합하여 지배층의 지지를 받았으며 망명정치가의 귀국을 호소하였다. 또 정치범을 석방하였으며 동시에 국정(國政)의 근대화와 민주화를 도모하였다. 영국과의 우호협력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세기적 쇠국체제에서 탈피한 신체제하의 오만은 국제적 신뢰가 높아져 1972년에 UN에 가입했으며, 1975년 남부 도파르지역 좌익 반군 세력을 평정한 후 1981년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에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 1993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피선되었으며 2000년 WTO에 가입하였다.

카타르는 AD 2세기경 아랍세계가 표시된 지도에 ‘카트라’라는 지명이 표시된 것으로 보아 정주의 역사는 길다. 그후 주변 왕조의 지배를 받았으며 오스만 투르크의 발흥과 함께 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18세기에 카타르는 오늘날의 바레인 토후(土侯) 할리파가(家)의 영토였으나 투르크의 간섭을 받기 않기 위하여, 일찍이 인도양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영국과 1868년에 우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16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터키가 패배한 후 특별조약으로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 1971년 9월 독립할 때까지 영국이 카타르의 외교·군사권을 대행하였다.

1970년 4월 토후 아마드가 잠정 헌법을 공포, 내각을 구성하여 완전 독립 체제를 정비하고 나서 1971년 9월 완전 독립을 선포하였다. 토후 셰이크 아마드 빈 알리 알타니가 즉위하여 영국과의 특별조약을 폐기하고 대신 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그해 카타르는 아랍연맹(Arab League)과 UN에 가입하였다. 1972년 2월 아마드의 이란 여행 중 무혈 궁중 쿠데타가 일어나 추방되고 셰이크 할리파 빈 하마드 알타니(Sheikh Khalifa bin Hamad Al-Thani)가 즉위하였으며, 그의 아들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타니가 1995년 6월 27일 궁정 쿠데타로 국왕이 되었다. 2003년 8월 5일 3남인 왕세자를 폐위시키고 4남을 왕세자로 책봉하였다. 2005년 6월 1일 영구헌법안이 발효되었다. 카타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회원국이다.

통일 사우디아라비아국은 1927년에 건국되었다. 이전에는 사막의 여러 오아시스에 많은 부족이 산재하여 종교적으로는 하나를 이루었지만 통일된 왕국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이 부족들은 홍해 연안의 헤자즈 지방(중심은 메카)과 중앙 고지에서 페르시아만(아라비아만)까지 걸쳐 있는 네지드 지방(중심은 리야드)을 중심으로 양분되고 서로 다투었다. 양대 세력은 리야드 출신의 압둘 아지즈(통칭 이븐 사우드)에 의하여 통일되어 입헌군주국을 건국, 1932년 9월에 현재의 왕국명으로 바꾸었다.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압둘 아지즈가 1953년에 죽은 뒤 사우드와 파이잘로 대표되는 보수·혁신 양파의 대립은 심각한 양상을 빚었으며 외교적·경제적 측면에서 시대적 요구에 따르지 못한 사우드왕 아지즈 자벨은 1964년 왕족회의의 결정으로 물러났다. 그의 뒤를 이은 파이잘왕은 왕정 유지와 석유산업 개발의 친미정책을 기반으로 온건·진보적 보수주의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파이잘왕은 특히 이집트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1967년 북예멘의 내란과 남예멘의 독립운동을 둘러싸고 관계가 악화되었다. 그러나 1967년 3월 제3차 중동전쟁(中東戰爭)에서 패배한 이집트가 북예멘 파견군을 철수시키고 수에즈운하 폐쇄로 인한 손실액의 상당 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원조로 보전되자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는 크게 호전되었다. 1973년 10월의 제4차 중동전쟁에서는 이집트·시리아와 함께 참전하고, 석유 전략을 주도하였다. 그 결과 파이잘왕은 보수주의의 리더로서 아랍 세계에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1975년 3월 조카에게 암살되고, 왕족회의에서는 할리드 황태자가 새 국왕으로 선출되었다. 1982년 6월 할리드왕이 죽고 황태자인 제1부총리 파드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GCC의 의장국으로 중동지역의 평화와 결속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쿠웨이트의 왕족과 피난민을 받아들이고 이라크군 격퇴를 위해 다국적군과 아랍군 주둔을 허용하였다. 외국 군대의 주둔은 왕가와 대중의 마찰을 초래하여 사회 변동을 가져왔다. 미군은 2003년 철수하였지만 그해 테러리스트와 이슬람 원리주의자에 대한 반대입장을 세우며 친서방 노선을 견지하게 되었다.

아랍에미리트의 카와심족(族)은 해양민족으로 예부터 어업과 해운업에 종사해 왔다. 16세기에 포르투갈이 이 나라의 해안에 첫 발을 내딛었으며, 17세기에는 네덜란드와 영국 해군이 인도양의 제해권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 바다를 중심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주민들은 해상에서의 전통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 해적으로 전락하였다. 19세기 초에는 와하비(사우디아라비아의 모체)의 보호 아래 유럽 세력에 대항하는 해적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영국은 1806년부터 무력으로 해적을 격파하기 시작하였으며, 1818년에는 해적의 본거지 라스알카이마항(港)과 당시 ‘해적해안’이라고 불리던 연안 항구들을 정복하였다. 1820년에는 각 토후국의 수장들과 평화조약을 맺어 해적행위와 노예무역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평화조약이 이행되지 않자 영국은 1835년에 6개월 기한으로 해상휴전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후 다시 기한을 갱신하여 이 지역을 ‘휴전해안’이라 불렀다. 결국 협정은 1853년에 이르러서야 항구적인 해상휴전조약으로 바뀌었다. 이 조약으로 각 토후국들은 영국의 실질적인 보호국이 되었지만, 영국은 토후국끼리의 육상교전에는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1820년에 5개국이었던 토후국들은 흥망과 집산을 되풀이하였다. 1892년에는 영국 이외 나라들과의 자유로운 교섭이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아랍의 다른 지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아랍에미리트는 영국령 인도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독립이 결정되던 해인 1948년에는 이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 이에 영국은 1952년 이 지역에 자국 장교가 지휘하는 군대를 창설하고 연방평의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석유 산출로 부유해지기를 꿈꾸는 토후국의 수장들은 정치적 통합에는 관심이 없었다. 1955년 아부다비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일어난 부라이미 오아시스의 영유권 분쟁은 석유에 얽힌 영토 분쟁이었다. 1958년에 아부다비의 석유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1965년에는 영국이 바레인·카타르·아부다비에게 출자하도록 하여 개발기금을 창설하였다.

1965년 아랍연맹에 아랍에미리트 문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당시에는 바레인과 카타르도 포함시킨 연합국이 구상되었다. 1966년에는 ‘연합국 헌법제정 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영국은 아덴을 대신할 군사기지를 샤르자에 설

치하였으나 1968년 초에는 이 지역의 군대를 1971년 말까지 철수하겠다고 발표하고, 그때까지 연합국을 실현시킬 방침을 정하였다. 같은 해에 바레인과 카타르를 포함한 9개 토후국의 수장이 참석한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상호 불신과 대립으로 원활한 교섭 진전이 없었으며, 결국 1971년 여름 바레인과 카타르가 단독으로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해 11월 영국군이 철수하자 때를 같이 하여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의 샤르자와 라스알카이마령의 작은 섬을 점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란과의 협정에서 샤르자는 연합국에 참여할 뜻을 밝혔으나, 라스알카이마는 거부하였다. 따라서 라스알카이마를 제외한 6개 토후국 (Abu Dhabi, Ajman, Fujairah, Sharjah, Dubai, Umm al-Qaiwain)만으로 구성된 아랍에미리트가 1971년 12월에 탄생했다. 라스알카이마는 1972년 2월에 연합국의 일원이 되었다.

2. 주요 경제지표

GCC의 인구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매우 적다. 사우디아라비는 2,417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수준이며 아랍에미리트 424만 명, 쿠웨이트 278만 명, 오만 255만 명이고 카타르, 바레인은 각각 82만 명, 74만 명이다(2006년 기준). 농가인구에 대한 FAO의 공식적인 통계에는 없다. 국토 면적은 사우디아라비아가 2억 1,497만 ha로 가장 넓으며 그 다음으로 오만 3,095만 ha, 아랍에미리트 836만 ha, 쿠웨이트 178만 ha, 카타르 110만 ha, 바레인이 7만 ha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토면적 중 농경지 비율은 쿠웨이트가 9%, 바레인이 8%로 높은 편이고, 아랍에미리트 3.1%, 카타르 1.9%, 사우디아라비아 1.7%, 오만 0.3% 순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3,098억 달러(2006년 기준)로 GCC 국가 중 가장 높고 아랍에미리트가 1,297억 달러, 쿠웨이트 808억 달러, 카타르 425억 달러, 오만 243억 달러, 바레인 129억 달러이다. 그러나 국민 1인당 GDP

는 카타르 69,121 달러, 아랍에미리트 38,806 달러, 쿠웨이트 35,518 달러, 바레인 21,421 달러로 우리나라의 18,401 달러에 비하여 높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은 각각 14,584 달러, 14,031 달러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GCC 국가들의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1~34% 수준으로 작지만 1인당 GDP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두배 이상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외교역 규모는 수출 2,113억 달러(2006년 기준), 수입 698억 달러로 무역수지(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1,415억 달러로 GCC 국가 중 가장 크다. 아랍에미리트의 대외교역 규모는 수출 1,425억 달러, 수입 978억 달러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며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446억 달러이다. 카타르의 대외교역 규모는 수출 340억 달러, 수입 164억 달러이며 무역수지 흑자는 176억 달러이다. 오만은 수출 216억 달러, 수입이 110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105억 달러이며, 바레인은 수출 117억 달러 수입 90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27억 달러이다. GCC 국가들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자료가 없다.

표 6-1. GCC의 주요 경제지표 (2006년)

	단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구(A)	1000명	738	2,778	2,546	821	24,174	4,248
농촌거주인구		-	-	-	-	-	-
농업인구(B)		-	-	-	-	-	-
농업인구비중(A/B)	%	-	-	-	-	-	-
국토면적(C)	1000ha	71	1,782	30,950	1,100	214,969	8,360
경지면적(D)		6	154	105	21	3,710	255
경지면적비중(C/D)	%	8	9	0.3	1.9	1.7	3.1
GDP	백만 USD	12,914	80,781	24,284	42,463	309,778	129,702
1인당 GDP	USD	21,421	35,518	14,031	69,121	14,584	38,806
수출(E)	백만 USD	11,662	-	21,586	34,051	211,306	142,505
수입(F)		8,957	-	11,038	16,440	69,800	97,864
경상수지(E-F)		2,705	-	10,547	17,611	141,506	44,641

주: 1) 2005년 자료임. 단 오만은 2004년 자료임.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3. 농산물 수급

바레인은 농산물을 주로 수입에 의존한다. 곡물 중 밀이 주식이며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 과일 중 오렌지가 1만 톤 이상 소비되고 있으며 그 외 레몬,

표 6-2. 바레인의 농산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66	24	44	83	14
	자급률(A/B)	-	-	-	-	-
오렌지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40	18	11	16	12
	자급률(A/B)	-	-	-	-	-
레몬	생산량(A)	1	1	1	1	1
	소비량(B) ¹⁾	3	3	5	5	6
	자급률(A/B)	35	28	21	18	17
바나나	생산량(A)	1	1	1	1	1
	소비량(B) ¹⁾	11	11	11	11	10
	자급률(A/B)	7	7	7	7	7
사과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14	9	5	8	6
	자급률(A/B)	-	-	-	-	-
양파	생산량(A)	1	1	1	1	1
	소비량(B) ¹⁾	11	2	2	18	8
	자급률(A/B)	12	73	53	6	15
토마토	생산량(A)	2	4	2	2	2
	소비량(B) ¹⁾	40	20	15	16	21
	자급률(A/B)	5	19	14	13	10
닭고기	생산량(A)	5	5	5	5	5
	소비량(B) ¹⁾	25	25	26	33	22
	자급률(A/B)	20	20	20	16	24
쇠고기	생산량(A)	1	1	1	1	1
	소비량(B) ¹⁾	2	2	3	4	3
	자급률(A/B)	64	50	27	23	34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바나나, 사과 등을 소비하고 있으나 레몬은 자급률이 22%, 바나나는 7%로 낮고 오렌지, 사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양파와 토마토가 소량 생산되어 자급률은 각각 2002~2006년 평균 32%, 12%이고 육류 중 닭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다. 닭고기의 생산량은 5천 톤 정도이고 자급률은 20%이다. 쇠고기는 3천 톤 가량을 소비하며 자급률은 40%이다.

쿠웨이트의 주요 곡물은 밀, 보리, 옥수수이다. 생산량은 1천 톤 내외이며 자급률을 각각 0%, 2%, 1%로 수준으로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감자는 2006년 기준으로 2만 2천 톤을 생산하였고 자급률은 33%이다. 과일 중 오렌지와 사과가 주로 소비되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규모는 각각 3만 6천 톤, 1만 7천 톤(2002~06평균)이다. 채소 중 고추, 양파, 오이, 토마토를 주로 소비하며 고추 생산량이 7천 톤, 소비량이 1만 2천 톤으로 자급률은 60%이고 양파 생산량이 7천 톤, 소비량이 6만 4천 톤 자급률은 11%이다(2006년 기준). 오이 생산량은 3만 4천 톤, 소비량 3만 8천 톤, 자급률 88% 수준으로 다른 농산물에 비하여 자급률이 높다. 토마토 생산량은 5만 5천 톤, 소비량 13만 9천 톤, 자급률 40%이다(2006년 기준). 육류 중 주로 닭고기가 소비되며 닭고기의 생산량은 4만 2천 톤, 소비량은 15만 4천 톤, 자급률은 27%이며 소비량이 증가 추세이다(2006년 기준). 쇠고기는 생산량은 2천 톤, 소비량 5천 톤으로 자급률 32% 수준이다(2006년 기준).

표 6-3. 쿠웨이트의 농산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생산량(A)	1	1	1	1	1
	소비량(B) ¹⁾	203	210	334	308	327
	자급률(A/B)	-	-	-	-	-
보리	생산량(A)	3	2	2	2	2
	소비량(B) ¹⁾	181	96	50	212	182
	자급률(A/B)	2	2	4	1	1
옥수수	생산량(A)	1	1	1	1	1
	소비량(B) ¹⁾	107	155	127	144	132
	자급률(A/B)	1	1	1	1	1

(표 6-3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감자	생산량(A)	17	21	21	21	22
	소비량(B) ¹⁾	31	47	58	34	67
	자급률(A/B)	56	45	36	61	33
고추	생산량(A)	6	7	7	7	7
	소비량(B) ¹⁾	13	13	14	11	12
	자급률(A/B)	47	59	51	63	60
양파	생산량(A)	7	8	10	10	7
	소비량(B) ¹⁾	37	47	42	73	64
	자급률(A/B)	20	16	23	13	11
오이	생산량(A)	33	34	34	34	34
	소비량(B) ¹⁾	41	39	38	37	38
	자급률(A/B)	79	86	88	91	88
토마토	생산량(A)	43	64	64	64	55
	소비량(B) ¹⁾	96	100	122	103	139
	자급률(A/B)	44	64	52	62	40
닭고기	생산량(A)	37	37	40	32	42
	소비량(B) ¹⁾	93	116	156	194	154
	자급률(A/B)	40	32	26	17	27
쇠고기	생산량(A)	3	3	3	2	2
	소비량(B) ¹⁾	4	4	6	7	5
	자급률(A/B)	76	60	44	31	32
오렌지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31	25	27	25	70
	자급률(A/B)	-	-	-	-	-
사과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14	15	17	17	21
	자급률(A/B)	-	-	-	-	-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오만의 곡물 중 수수와 감자를 제외한 밀, 보리, 옥수수는 0%에 가깝다. 수수는 소비량이 9천 톤으로 자급률이 약 100%이며 감자는 생산량 5천 톤 소비량 2만 8천 톤 자급률 20%이다(2006년 기준). 곡물 중 소비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밀이며 생산량은 1천 톤으로 미미하며 소비량은 18만 6천 톤이다. 보리는 생산

량 3천 톤, 소비량 4만 8천 톤, 자급률은 7%이다. 옥수수는 생산이 안되고 있으며 연간 약 5만 톤을 수입하고 있다.

오만에서 생산되는 주요 과일은 바나나, 레몬, 수박으로 바나나는 생산량이 2만 6천 톤으로 2002년의 3만 3천 톤에 비하면 감소 추세이지만 소비량은 3만 톤 수준으로 유지되며 자급률은 83%로 가장 높다. 수박은 2006년 생산이 2만 7천 톤 소비량이 3만 5천 톤으로 200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자급률은 78%이다. 레몬은 2006년 6천 톤 생산되고 있으며 소비량은 8천 톤 정도로 200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자급률은 78%이다. 오렌지의 소비량은 3만 5천 톤으로 많은 편이나 생산이 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양념채소로는 양파가 주로 생산되나 2002년 1만 6천 톤에서 2006년 4천 톤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양파 소비량은 4만 2천 톤이고 자급률은 10%이다(2006년 기준). 토마토는 4만 톤을 생산하고 4만 3천 톤을 소비하여 자급률은 94%로 높은 편이다.

오만은 육류 중 주로 닭고기를 소비하며 생산량은 6천 톤, 소비량은 5만 2천 톤, 자급률은 11%이다(2006년 기준). 쇠고기 생산량은 4천 톤, 소비량은 1만 8천 톤이다. 특히 소비량은 2002년 8천 톤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자급률은 2002년의 54%에서 24%로 감소하였다.

표 6-4. 오만의 농산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생산량(A)	1	1	1	1	1
	소비량(B) ¹⁾	187	180	204	112	186
	자급률(A/B)	0.8	0.7	0.6	0.8	0.4
보리	생산량(A)	-	-	4	3	3
	소비량(B) ¹⁾	6	38	34	46	48
	자급률(A/B)	-	-	10.8	7.3	6.7
옥수수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20	41	75	133	48
	자급률(A/B)	-	-	-	-	-
수수	생산량(A)	10.8	11.5	13.0	9.5	8.8
	소비량(B) ¹⁾	10.8	11.5	13.0	9.5	8.8
	자급률(A/B)	100.0	100.0	100.0	100.0	99.9

(표 6-4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감자	생산량(A)	15	15	16	6	5
	소비량(B) ¹⁾	39	38	39	31	28
	자급률(A/B)	39.6	41.0	39.9	19.4	19.0
오렌지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37	39	32	34	35
	자급률(A/B)	-	-	-	-	-
레몬	생산량(A)	8	7	6	6	6
	소비량(B) ¹⁾	10	10	9	8	8
	자급률(A/B)	80.1	69.5	66.0	76.4	77.5
바나나	생산량(A)	33	29	34	27	26
	소비량(B) ¹⁾	34	33	36	30	31
	자급률(A/B)	95.6	86.4	93.8	88.8	82.9
수박	생산량(A)	27	27	27	27	27
	소비량(B) ¹⁾	35	31	33	33	35
	자급률(A/B)	77.6	86.1	82.0	80.8	77.8
양파	생산량(A)	16	18	18	5	4
	소비량(B) ¹⁾	56	51	47	41	42
	자급률(A/B)	27.9	34.8	37.1	13.0	10.1
토마토	생산량(A)	43	42	44	39	40
	소비량(B) ¹⁾	47	45	46	41	43
	자급률(A/B)	92.5	92.8	96.4	96.5	94.0
닭고기	생산량(A)	6	6	6	6	6
	소비량(B) ¹⁾	68	67	56	51	52
	자급률(A/B)	8.2	8.6	10.5	11.5	11.2
쇠고기	생산량(A)	4	4	4	4	4
	소비량(B) ¹⁾	8	6	15	15	18
	자급률(A/B)	53.6	64.4	28.0	28.3	23.6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카타르의 곡물 자급률은 매우 낮다. 밀은 생산량이 거의 없으며 소비량은 2만 1천 톤이다(2006년 기준). 보리는 생산량 5천 톤 소비량 4만 4천 톤으로 자급률은 11%이다(2006년 기준). 옥수수는 생산량이 2002년 2천 톤에서 2006년 1천 톤으로 줄었으나 소비량은 2002년 2천 톤에서 2006년 1만 4천 톤으로 상승하여 자급률은 68%에서 6%로 급감하였다. 과일 중 오렌지, 바나나, 사과가 주로 소비되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소비량은 각각 1만 6천 톤, 1만 5천 톤, 1만 1천 톤이다(2006년 기준). 수박은 소량 생산되며 소비량은 7천 톤 수준이다(2006년 기준). 양념채소 중 양파가 3천 톤 생산되며 소비량은 3만 4천 톤으로 자급률이 9%이고 토마토는 생산량 중 5천 톤이고 소비량 3만 1천 톤으로 자급률 18%이다(2006년 기준). 육류 중 주로 닭고기가 소비되며 생산량 5천 톤으로 큰 변화가 없으며 소비량은 2006년 3만 2천 톤으로 큰 변화가 없다. 자급률은 16%이다.

표 6-5. 카타르의 농산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45	47	35	59	21
	자급률(A/B)	0.1	0.1	0.1	-	0.1
보리	생산량(A)	4	5	3	5	5
	소비량(B) ¹⁾	40	44	27	13	44
	자급률(A/B)	9.8	11.6	11.5	37.1	11.2
옥수수	생산량(A)	2	1	1	1	1
	소비량(B) ¹⁾	2	9	5	12	14
	자급률(A/B)	67.8	16.0	24.2	7.1	6.2
오렌지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14	13	11	15	16
	자급률(A/B)	-	-	-	-	-
바나나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10	11	7	13	15
	자급률(A/B)	-	-	-	-	-

(표 6-5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사과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7	10	7	8	11
	자급률(A/B)	-	-	-	-	-
수박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10	9	23	10	7
	자급률(A/B)	2.5	3.0	1.2	3.1	4.5
양파	생산량(A)	4	1	2	3	3
	소비량(B) ¹⁾	29	10	57	28	34
	자급률(A/B)	13.7	14.1	2.7	10.8	8.7
토마토	생산량(A)	6	5	7	5	5
	소비량(B) ¹⁾	30	27	31	30	31
	자급률(A/B)	19.5	18.2	24.1	17.9	17.5
닭고기	생산량(A)	6	5	5	5	5
	소비량(B) ¹⁾	32	41	41	30	32
	자급률(A/B)	17.2	11.9	12.1	16.2	15.4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식은 밀이다. 밀의 자급률은 약 100%이며 생산량은 240만 톤, 소비량도 240만 톤으로 GCC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이다(2006년 기준). 수수는 생산량이 244만 톤, 소비량은 244만 2천 톤으로 자급률 약 100%이다(2006년 기준). 감자는 생산량 50만 톤, 소비량은 49만 6천 톤으로 자급률이 100%를 약간 상회하며 수출도 한다(2006년 기준). 보리와 옥수수의 소비량도 많은데, 특히 보리는 2002년 392만 톤에 비해 2006년 763톤으로 약 2배에 가까이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나, 생산량이 거의 없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보리수요가 급증한 이유는 이 지역에서는 사료원료로 보리가 선호되기 때문이다. 옥수수의 소비량은 143만 톤으로 자급률은 미미한 수준이다(2006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는 과일 중 오렌지, 바나나, 사과, 포도 등을 주로 소비하며 포도 이외에는 생산이 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포도의 생산량은

13만 톤이고 소비량은 16만 톤이다. 2002년의 생산량 9만 톤 소비량 12만 톤에 비해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2006년의 포도 자급률은 82%이다. 오렌지는 32만 톤, 바나나는 23만 톤, 사과는 15만 톤을 소비한다(2006년 기준).

수박은 생산량 36만 5천 톤, 소비량 34만 5천 톤, 자급률 106%이고 오이도 생산량이 21만 2천 톤, 소비량 21만 1천 톤으로 자급률 100%이다. 토마토는 생산량이 50만 톤, 소비량이 70만 톤이고 자급률은 71%이다(2006년 기준). 양파는 생산량 7만 3천 톤, 소비량 29만 6천 톤, 자급률 25%로 낮은 편이다(2006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는 육류 중 주로 닭고기가 소비되며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쇠고기 소비량도 꾸준한 증가추세이다. 닭고기 생산량은 2002년 46만 7천 톤에서 2006년 54만 8천 톤으로 증가하였고, 소비량도 63만 9천 톤에서 70만 7천 톤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닭고기 자급률은 2002년 62%에서 2006년 58%로 소폭 감소하였다. 쇠고기의 생산량은 2002년과 2006년이 각각 2만 2천 톤, 2만 3천 톤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소비량은 2002년 2만 4천 톤에서 2006년 5만 2천 톤으로 증가하여 자급률이 2002년 91%에서 2006년 44%로 감소하였다.

표 6-6. 사우디아라비아의 농산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생산량(A)	2,436	2,524	2,776	2,648	2,400
	소비량(B) ¹⁾	2,438	2,525	2,780	2,651	2,402
	자급률(A/B)	99.9	100.0	99.8	99.9	99.9
보리	생산량(A)	138	138	67	47	47
	소비량(B) ¹⁾	3,927	4,171	2,949	6,021	7,635
	자급률(A/B)	3.5	3.3	2.3	0.8	0.6
옥수수	생산량(A)	29	36	54	91	91
	소비량(B) ¹⁾	1,194	922	841	1,317	1,429
	자급률(A/B)	2.5	3.9	6.4	6.9	6.4

(표 6-6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수	생산량(A)	240.2	242.0	283.9	205.3	244.0
	소비량(B) ¹⁾	240.2	242.1	284.1	205.7	244.2
	자급률(A/B)	100.0	99.9	99.9	99.8	99.9
감자	생산량(A)	315	318	387	441	502
	소비량(B) ¹⁾	324	312	420	440	496
	자급률(A/B)	97.1	101.8	92.1	100.3	101.2
오렌지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230	317	278	314	317
	자급률(A/B)	-	-	-	-	-
바나나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177	199	210	231	232
	자급률(A/B)	-	-	-	-	-
사과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125	125	126	145	146
	자급률(A/B)	-	-	-	-	-
포도	생산량(A)	93	97	114	132	132
	소비량(B) ¹⁾	126	129	142	160	161
	자급률(A/B)	73.5	75.3	80.0	82.7	81.9
수박	생산량(A)	272	283	331	364	365
	소비량(B) ¹⁾	267	277	312	335	345
	자급률(A/B)	102.1	102.4	106.3	108.8	105.8
양파	생산량(A)	86	92	92	73	73
	소비량(B) ¹⁾	274	249	285	303	296
	자급률(A/B)	31.6	36.8	32.1	24.0	24.7
오이	생산량(A)	176	180	217	212	212
	소비량(B) ¹⁾	175	182	217	212	211
	자급률(A/B)	100.6	98.8	99.9	99.9	100.6
토마토	생산량(A)	409	424	480	496	500
	소비량(B) ¹⁾	639	676	694	708	707
	자급률(A/B)	64.0	62.8	69.2	70.0	70.7
닭고기	생산량(A)	467	468	480	537	548
	소비량(B) ¹⁾	745	806	828	970	945
	자급률(A/B)	62.6	58.1	57.9	55.3	58.0
쇠고기	생산량(A)	22	22	22	22	23
	소비량(B) ¹⁾	24	36	37	49	52
	자급률(A/B)	91.2	61.9	59.4	46.0	44.1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소비 곡물은 밀과 보리이다. 밀은 생산이 미미하며 소비량 90만 톤을 거의 수입에 의존한다(2006년 기준). 보리는 생산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량은 22만 9천 톤이다(2006년 기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과일 중 주로 오렌지가 소비되나 생산이 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비량은 10만 5천 톤 정도이다(2006년 기준). 레몬 생산량은 1만 2천 톤, 소비량 4만 9천 톤으로 자급률은 25%이다(2006년 기준).

아랍에미리트는 양념채소 중 양파는 생산이 되지 않지만 소비량은 23만 3천 톤 규모이다. 고추는 연간 6천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소비량은 2006년에 크게 증가하여 4만 2천 톤이다. 자급률은 2006년 기준으로 13%이다. 마늘은 생산이 되지 않고 있으며 2006년 소비량은 3만 톤이다.

아랍에미리트는 과채류 중 토마토 생산량이 22만 톤이고 소비량은 34만 3천 톤으로 자급률은 64%이다(2006년 기준). 오이는 생산량 1만 6천 톤, 소비량 2만 7천 톤, 자급률 61%이다(2006년 기준).

아랍에미리트는 육류 중 주로 닭고기가 소비되고 있다. 닭고기의 소비량은 21만 톤 규모이고 생산량은 3만 6천 톤으로 수입에 의존하며 자급률은 17%로 미미하다(2006년 기준). 쇠고기는 1만 톤 가량 생산되어 자급률은 81%로 닭고기에 비해 높은 편이다(2006년 기준).

표 6-7. 아랍에미리트의 농산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1,051	1,164	806	1,574	902
	자급률(A/B)	-	-	-	-	-
보리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77	175	52	145	229
	자급률(A/B)	-	-	-	-	-

(표 6-7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감자	생산량(A)	10	7	7	7	8
	소비량(B) ¹⁾	88	64	45	17	77
	자급률(A/B)	11.4	11.2	15.7	42.3	9.8
오렌지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74	87	44	20	105
	자급률(A/B)	-	-	-	-	-
레몬	생산량(A)	15	11	11	12	12
	소비량(B) ¹⁾	36	23	37	14	49
	자급률(A/B)	42.1	48.9	30.2	80.7	24.5
고추	생산량(A)	5	5	6	6	6
	소비량(B) ¹⁾	23	23	26	26	42
	자급률(A/B)	23.3	23.2	22.8	22.7	13.1
마늘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18	12	14	8	30
	자급률(A/B)	-	-	-	-	-
수박	생산량(A)	7	2	3	3	4
	소비량(B) ¹⁾	76	66	36	78	80
	자급률(A/B)	8.8	3.4	8.4	3.8	4.9
양파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138	188	126	127	233
	자급률(A/B)	-	-	-	-	-
오이	생산량(A)	26	11	26	27	16
	소비량(B) ¹⁾	41	18	37	31	27
	자급률(A/B)	62.6	63.8	71.2	84.5	60.5
토마토	생산량(A)	231	134	240	240	220
	소비량(B) ¹⁾	310	210	330	308	343
	자급률(A/B)	74.7	63.8	72.8	78.0	64.1
닭고기	생산량(A)	29	41	35	34	36
	소비량(B) ¹⁾	159	200	177	193	210
	자급률(A/B)	17.9	20.5	19.6	17.4	17.1
쇠고기	생산량(A)	9	25	26	10	10
	소비량(B) ¹⁾	12	31	28	11	12
	자급률(A/B)	76.8	81.6	90.8	90.0	80.9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4. 농산물 교역

4.1. 한-GCC 간 농산물 무역동향

4.1.1. 한-GCC간의 교역 규모

한국의 전체 교역 규모에서 GCC와의 무역 비중은 2006년 618억 4,400만 달러로 9.7%를 차지한다. GCC에서의 수입은 540억 7,100만 달러로 17.5%, 수출은 77억 7,300만 달러로 수입이 2.4% 더 많다. 한국과 GCC간의 교역 규모를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교역 금액이 235억 3,000만 달러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아랍에미리트가 158억 2,600만 달러이다. GCC 모든 국가는 무역수지 적자인데, 원유수입이 큰 데 기인한다.

표 6-9. 한-GCC간의 교역 현황: 2006년

단위: 백만 달러, %

회원국	총수출		총수입		총교역		수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325,464	100.0	309,382	100.0	634,847	100.0	
사우디아라비아	2,978	0.9	20,552	6.6	23,530	3.7	-17,573
아랍에미리트	2,895	0.9	12,930	4.2	15,826	2.5	-10,034
쿠웨이트	669	0.2	8,133	2.6	8,803	1.4	-7,463
오만	344	0.1	5,128	1.7	5,473	0.9	-4,784
카타르	760	0.2	6,985	2.3	7,745	1.2	-6,225
바레인	125	-	341	0.1	466	0.1	-215
합계	7,771	2.4	54,069	17.5	696,226	9.7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6-10>는 한국과 GCC간의 농산물 무역 현황이다. 한국과 GCC간의 농산물 교역 규모는 2006년 기준 1억 5,790만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0.2%를 차지하

며 농산물 수입액은 1,973만 달러이고 농산물 수출액은 13,824만 달러로 수출의 비중이 더 크다. 이는 전체 수입 비중(17.5%)이 전체 수출 비중(2.4%)보다 높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표 6-10. 한-GCC간 농산물 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

회원국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비중
사우디아라비아	총수입	14,450	12,942	16,831	19,774	19,484	16,696	97.4
	총수출	7,246	7,777	8,499	8,474	10,975	8,594	8.1
	총교역	21,696	20,719	25,330	28,248	30,459	25,290	20.4
아랍에미리트	총수입	236	236	241	272	127	222	1.3
	총수출	50,265	103,353	82,052	117,834	124,942	95,689	89.7
	총교역	50,501	103,589	82,293	118,106	125,069	95,912	77.5
쿠웨이트	총수입	-	-	-	1	-	0.2	-
	총수출	419	1,191	3,262	3,224	1,492	1,918	1.8
	총교역	419	1,191	3,262	3,225	1,492	1,918	1.5
오만	총수입	186	170	273	298	119	209	1.2
	총수출	64	111	149	138	192	131	0.1
	총교역	250	281	422	436	311	340	0.3
카타르	총수입	-	-	-	2	-	0.4	-
	총수출	25	2	63	46	365	100	0.1
	총교역	25	2	63	48	365	101	0.1
바레인	총수입	21	18	-	-	-	8	-
	총수출	190	229	303	234	280	247	0.2
	총교역	211	247	303	234	280	255	0.2
합계	총수입	14,893	13,366	17,345	20,347	19,730	17,136	
	총수출	58,209	112,663	94,328	129,950	138,246	106,679	
	총교역	73,102	126,029	111,673	150,297	157,976	123,815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한국과 GCC간의 농산물 무역 비중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수입 비중이 97.4%로 매우 높은 반면, 수출은 89.7%로 아랍에미리트에 치우쳐 있다. 총교역 비중은 아랍에미리트가 77.5%로 가장 높으며 사우

디아라비아는 20.4%이고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등은 우리와의 농산물 교역이 미미한 수준이다.

2002~2006년 우리나라가 GCC 회원국에서 수입한 농산물 수입액은 평균 1,714만 달러로 사우디아라비아 1,670만 달러, 아랍에미리트 22만 달러, 쿠웨이트 200달러, 오만 21만 달러, 카타르 400달러, 바레인 8천 달러이다. 동 기간 동안의 평균 수출액은 1억 668만 달러로 아랍에미리트가 9,569만 달러로 가장 많고 사우디아라비아 859만 달러, 쿠웨이트 192만 달러, 바레인 25만 달러, 오만 13만 달러, 카타르 10만 달러이다. GCC의 농산물 생산이 미미하므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의 수입이 많고 아랍에미리트는 수출이 많은 국가이다.

4.2. 한국의 GCC 농산물 수입 실태

4.2.1. 품목별 GCC 농산물 수입 실태

<표 6-11>은 우리나라가 GCC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이다. 에틸알코올(96%)이 주를 이루며, 기타 품목으로 자당, 권련, 비스킷, 초콜릿 등이 일부 수입되고 있다. 에틸알코올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평균 수입액은 1,609만 달러이며 2002년 1,444만 5천 달러에서 2008년 1,609만 5천 달러로 소폭 증가하였다. 자당, 권련은 주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수입이 거의 없다가 최근에 수입이 되고 있다. 비스킷, 초콜릿 등은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비스킷은 2002년 21만 2천 달러를 수입했으나 근래에 수입이 계속 줄어 2008년에는 수입이 거의 없다. 초콜릿도 2002년 10만 4천 달러를 수입하였으나 2008년에는 수입액이 3만 달러로 수입액이 줄고 있다. 말, 타피오카, 기타사료, 빵 등도 수입되고 있으나 금액이 미미하고 수입도 불규칙하다.

표 6-11. 한-GCC간 품목별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톤, 1000 USD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합계	물량	48,291	43,411	55,266	60,095	46,465	24,519	33,452	44,500
	금액	14,865	13,327	17,209	20,336	20,901	14,461	19,374	17,210
에틸 알코올	물량	47,816	43,005	54,717	58,691	46,208	20,439	28,069	42,706
	금액	14,445	12,878	16,753	19,753	19,460	13,249	16,095	16,090
자당	물량	-	-	-	-	-	961	4,253	745
	금액	-	-	-	-	-	339	1,611	279
권련	물량	-	-	-	-	-	-	26	4
	금액	-	-	-	1	-	-	1,221	175
말	물량	-	-	-	-	1	-	-	-
	금액	-	-	-	-	1,183	-	-	169
비스킷	물량	272	105	411	167	81	30	-	152
	금액	212	109	322	148	57	19	-	124
초콜릿	물량	62	85	51	140	50	12	14	59
	금액	104	150	85	241	89	24	30	103
타피 오카	물량	-	-	-	-	-	2,860	-	409
	금액	-	-	-	-	-	593	-	85
기타 사료	물량	-	-	-	1,024	-	-	1,036	294
	금액	-	-	-	118	-	-	317	62
빵	물량	112	68	-	8	-	-	-	27
	금액	91	102	-	8	-	-	-	2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4.2.2. 국가별 GCC 농산물 수입 실태

우리나라가 GCC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선 GCC 6개 회원국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수입이 총 수입액의 9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표 6-10>.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에틸아코올로 2002~2008년 평균 수입액은 약 1,472만 달러(99.2%)이다. 그러나 변성 에틸알콜 및 기타 변성주정은 주로 브라질과 중국에서 수입하며 수입비중은 각각 37%, 23%이다.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수입비중은 7% 수준이다. 그 밖에 품목으로는 타피오카(매니옥), 비스킷, 기타 식물성 액즙 등이 있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2002~2008년 평균 수입액은 69만 5천 달러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비스킷, 버터이다. 최근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자당과 권련 등이며, 특히 자당은 2006년까지는 수입이 거의 없었으나 2007년 약 34만 달러에서 2008년에는 161만 달러로 수입이 급증하였다.

오만으로부터 수입은 2002년 18만 6천 달러에서 2008년 2만 9천 달러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2~2008년 평균 수입액은 14만 1천 달러에 불과하다. 오만에서 수입하는 주요 농산물은 초콜릿, 비스킷이며 2002~2008년 평균 수입액은 초콜릿 9만 2천 달러, 비스킷 4만 3천 달러 수준이다.

카타르와 쿠웨이트에 대한 2002~2008년 평균 수입액은 각각 17만 1천 달러와 6천 200달러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2006년 말 수입으로 인한 수입 증가를 제외하면 카타르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다.

바레인에 대한 수입은 2006년까지는 거의 없었으나 2007년부터는 에틸알코올이 수입이 되고 있다. 바레인으로부터의 에틸아코올 수입은 2007년 94만 4천 달러에서 2008년 865만 1천 톤으로 급증하였다.

표 6-12. 한-사우디아라비아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톤, 1000 USD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합계	물량	47,832	43,117	54,844	58,713	46,209	21,704	13,196	40,802
	금액	14,449	12,943	16,832	19,776	19,462	12,902	7,452	14,831
에틸 알코올	물량	47,816	43,005	54,717	58,691	46,208	18,843	13,193	40,353
	금액	14,445	12,878	16,753	19,753	19,460	12,304	7,440	14,719
타피 오카	물량	-	-	-	-	-	2,860	-	409
	금액	-	-	-	-	-	593	-	85
비스킷	물량	15	-	56	16	-	-	-	13
	금액	4	-	48	18	-	-	-	10
기타 식물성 액즙	물량	-	1	-	-	-	-	-	-
	금액	-	37	-	-	-	-	-	5
미강유	물량	-	-	72	-	-	-	-	10
	금액	-	-	30	-	-	-	-	4
도토리	물량	-	93	-	-	-	-	-	13
	금액	-	23	-	-	-	-	-	3
로열 젤리	물량	-	-	-	-	-	1	1	-
	금액	1	-	-	-	1	4	4	1
포도주	물량	-	-	-	-	-	-	2	-
	금액	-	-	-	-	-	-	6	1
간장	물량	-	17	-	-	-	-	-	2
	금액	-	4	-	-	-	-	-	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6-13. 한-아랍에미리트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톤, 1000 USD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합계	물량	306	180	277	1,221	194	1,188	5,367	1,247
	금액	228	214	195	305	150	541	3,233	695
자당	물량	-	-	-	-	-	961	4,253	745
	금액	-	-	-	-	-	339	1,611	279
권련	물량	-	-	-	-	-	-	26	4
	금액	-	-	-	1	-	-	1,221	175
비스킷	물량	156	71	263	114	70	30	-	101
	금액	105	67	180	85	42	18	-	71
기타 사료	물량	-	-	-	1,024	-	-	1,036	294
	금액	-	-	-	118	-	-	317	62
빵	물량	112	68	-	8	-	-	-	27
	금액	91	102	-	8	-	-	-	29
버터	물량	-	-	10	25	25	29	16	15
	금액	-	-	11	27	29	39	20	18
초콜릿	물량	10	5	-	17	-	-	-	5
	금액	21	23	-	33	-	-	-	11
기타 베이커리 제품	물량	26	1	-	23	15	-	-	9
	금액	10	1	-	23	15	-	-	7
쇼트닝	물량	-	-	-	-	-	95	-	14
	금액	-	-	-	-	-	46	-	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6-14. 한-오만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톤, 1000 USD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합계	물량	152	114	144	160	61	30	14	96
	금액	186	170	180	253	104	68	29	141
초콜릿	물량	52	80	51	123	50	12	14	55
	금액	83	128	85	208	89	24	29	92
비스킷	물량	100	34	93	37	12	-	-	39
	금액	103	42	94	45	15	-	-	43
커민씨	물량	-	-	-	-	-	18	-	3
	금액	-	-	-	-	-	44	-	6
로열젤리	물량	-	-	-	-	-	-	-	-
	금액	-	-	-	-	-	-	-	-
기타 설탕과자	물량	-	-	-	-	-	-	-	-
	금액	-	-	-	-	-	-	-	-
대추	물량	-	-	-	-	-	-	-	-
	금액	-	-	-	-	-	-	-	-
오렌지	물량	-	-	-	-	-	-	-	-
	금액	-	-	-	-	-	-	-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6-15. 한-카타르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톤, 1000 USD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합계	물량	1.7	-	0.3	0.3	0.5	0.3	0.1	0.5
	금액	1.4	-	1.7	1.6	1,184	5.8	6.9	171.7
말	물량	-	-	-	-	0.5	-	-	0.1
	금액	-	-	-	-	1,183	-	-	169.0
신변장식용품 상자	물량	-	-	0.3	-	-	0.1	-	0.1
	금액	-	-	1.7	-	-	4.5	2.8	1.3
목재틀	물량	-	-	-	-	-	-	-	-
	금액	-	-	-	-	0.9	0.2	3.2	0.6
음료 베이스	물량	-	-	-	0.3	-	-	-	-
	금액	-	-	-	1.6	-	-	-	0.2
과실 혼합물	물량	0.1	-	-	-	-	-	-	-
	금액	1.4	-	-	-	-	-	-	0.2
로열젤리	물량	-	-	-	-	-	0.2	-	-
	금액	-	-	-	-	-	0.7	-	0.1
커피 조제품	물량	-	-	-	-	-	-	-	-
	금액	-	-	-	-	-	0.1	0.6	0.1
물	물량	-	-	-	-	-	-	-	-
	금액	-	-	-	-	-	-	0.3	-
마요네즈	물량	-	-	-	-	-	0.1	-	-
	금액	-	-	-	-	-	0.3	-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6-16. 한-쿠웨이트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톤, 1000 USD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합계	물량	-	-	-	0.08	0.05	0.01	0.03	0.02
	금액	0.02	-	-	1.04	0.24	0.48	2.56	0.62
기타 목제품	물량	-	-	-	-	-	-	0.01	-
	금액	-	-	-	-	-	-	1.83	0.26
개	물량	-	-	-	0.03	-	-	0.01	0.01
	금액	-	-	-	0.67	-	-	0.22	0.13
로열젤리	물량	-	-	-	0.03	-	-	-	-
	금액	-	-	-	0.29	-	0.19	0.23	0.10
신변 장식용품상자	물량	-	-	-	-	-	-	0.01	-
	금액	-	-	-	-	0.07	-	0.28	0.05
커피 조제품	물량	-	-	-	-	-	0.01	-	-
	금액	-	-	-	-	-	0.24	-	0.03
쌀	물량	-	-	-	-	0.02	-	-	-
	금액	-	-	-	0.05	0.04	-	-	0.01
초콜릿	물량	-	-	-	-	-	-	-	-
	금액	-	-	-	-	0.09	-	-	0.01
권련	물량	-	-	-	-	-	0.01	-	-
	금액	-	-	-	-	-	0.05	-	0.01
밀	물량	-	-	-	-	0.02	-	-	-
	금액	-	-	-	-	0.04	-	-	0.0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6-17. 한-바레인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톤, 1000 USD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합계	물량	-	-	-	-	-	1,596	14,876	2,353
	금액	-	-	-	-	-	944	8,651	1,371
에틸알코올	물량	-	-	-	-	-	1,596	14,876	2,353
	금액	-	-	-	-	-	944	8,651	1,371
개	물량	-	-	-	-	-	-	0.02	-
	금액	-	-	-	-	-	-	0.30	0.04
보리	물량	-	-	-	-	-	-	-	-
	금액	-	-	-	-	-	-	-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4.3. 한국의 GCC 농산물 수출 현황

4.3.1. 한-GCC간 품목별 농산물 수출 현황

<표 6-18>은 우리나라가 GCC에 수출하는 농산물 현황이다. 권련의 2002~2008년 평균 수입액이 9,721만 5천 달러(82.7%)로 가장 크며, 그 밖에 검, 조제분유, 단일과실 조제품, 비스킷, 라면 등이 있다. 주요 수출국은 아랍에미리트(89.7%)이며, 그 밖에 사우디아라비아(8.1%), 쿠웨이트(1.8%), 오만(0.1%), 바레인(0.2%), 카타르(0.1%) 등은 수출이 미미하다.

GCC로의 농산물 수출액은 2002년 6,053만 달러에서 2008년 1억 4,414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그 중 권련의 수출은 2002년 4,729만 8천 달러에서 2008년 1억 1,195만 9천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주로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에 수출하고 있다. 검은 2002년 368만 5천 달러에서 561만 8천 달러로 증가하였고 특히 조제분유, 단일과실 조제품, 커피 조제품의 수출증가세가 두드러진다<표 6-18 참조>.

표 6-18. 한-GCC간 품목별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톤, 1000 USD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합계	물량	17,542	27,436	29,374	33,614	25,602	23,506	27,236	26,330
	금액	60,534	112,994	96,406	130,335	139,478	138,955	144,147	117,550
권련	물량	10,779	21,270	15,502	21,454	16,777	15,489	15,071	16,620
	금액	47,298	99,726	76,447	108,613	119,937	116,526	111,959	97,215
검	물량	1,340	1,501	1,368	1,462	1,672	1,945	1,752	1,577
	금액	3,685	4,153	3,782	4,139	4,847	5,510	5,618	4,533
조제분유	물량	481	429	556	684	786	788	902	661
	금액	2,267	2,147	2,936	3,647	4,427	4,516	6,200	3,734
단일과실 조제품	물량	203	1,598	4,846	5,768	1,076	555	2,820	2,409
	금액	128	969	2,911	4,335	799	498	2,447	1,727
비스킷	물량	286	341	352	272	439	450	475	374
	금액	1,166	1,378	1,457	1,169	1,967	1,927	2,354	1,631
라면	물량	289	382	438	301	300	343	449	358
	금액	1,095	1,377	1,668	1,270	1,315	1,543	2,200	1,495
커피 조제품	물량	1	11	14	91	19	215	444	114
	금액	9	12	15	579	38	1,487	3,698	834
합관	물량	424	380	493	896	1,626	945	864	804
	금액	318	241	371	683	1,236	765	755	624
유아용 조제식품	물량	37	26	44	87	63	92	95	64
	금액	260	195	325	634	413	703	593	446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4.3.2. 한-GCC간 국가별 농산물 수출 현황

우리나라의 GCC 회원국별 농산물 수출액을 살펴보면 <표 6-10>과 같다. 우선 GCC 회원국 중에서 아랍에미리트로의 수출액이 총수출액의 8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수출은 8.1%이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수출은 권련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2002~2008년 평균 수출액은 9,698만 9천 달러로 전체의 93.6%에 달한다. 수출액은 2002년 4,724만 2천 달러에서 2008년 1억 1,098만 4천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 외에 수출품으로는 검, 단일과실 조제품, 커피 조제품, 비스킷, 라면, 초콜릿 등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주로 수출하는 품목으로는 조제분유, 검, 비스킷, 라면, 유아용 조제 식료품 등이 있다. 조제분유의 2002~2008년 평균 수출액은 369만 달러이며 2002년 217만 1천 달러에서 2008년 616만 8천 달러로 수출 증가추세에 있다. 검의 2002~2008년 평균 수출액은 234만 3천 달러이며 비스킷의 2002~2008년 평균 수출액은 107만 6천 달러, 라면의 2002~2008년 평균 수출액은 104만 6천 달러인데, 이 중 비스킷과 라면은 수출 증가 추세이다. 쿠웨이트로의 2002~2008년 평균 수출액은 187만 1천 달러이며 2002년 44만 2천 달러에서 2008년 214만 2천 달러로 수출이 증대하는 추세이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검, 권련, 빵, 비스킷 등이 있으며 그 중에 검, 빵, 비스킷이 꾸준히 수출되고 있으며 각각의 2002~2008년 평균 수출액은 24만 2천 달러, 8만 4천 달러, 7만 7천 달러이다. 최근에는 권련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권련 수출은 22만 6천 달러에서 2008년에는 96만 달러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카타르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2002~2008년 평균 수출액은 72만 3천 달러이나 합관을 제외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국수와 백삼 조제품은 2004~2005년까지 꾸준히 수출하고 있으나 라면, 단일과실 조제품, 쌀 등은 불규칙적이고 그 금액이 매우 작다. 바레인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2002~2008년 평균 수출액이 30만 9천 달러로 매우 작으며 주요 수출품으로는 커피 조제품, 권련, 라면, 돼지고기 등이 있다. 오만으로의 수출 역시 2002~2008년 평균 수출액이 25만 5천 달러로 그 수준이 매우 낮으며 물, 권련 등이 주요 수출품이다.

표 6-19. 한-아랍에미리트 품목별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톤, 1000 USD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합계	물량	12,657	24,221	21,627	29,367	19,713	17,948	20,463	20,857
	금액	50,794	103,427	82,546	117,972	124,985	122,978	122,982	103,669
권련	물량	10,777	21,268	15,499	21,453	16,733	15,435	15,034	16,600
	금액	47,242	99,678	76,396	108,577	119,695	116,348	110,984	96,989
검	물량	393	372	264	890	640	629	1,038	604
	금액	1,145	1,061	815	2,563	2,009	1,885	3,448	1,847
단일과실 조제품	물량	203	1,559	4,846	5,603	1,076	351	2,198	2,262
	금액	128	949	2,911	4,224	799	305	1,931	1,606
커피 조제품	물량	1	1	0	0	5	201	257	66
	금액	9	2	0	0	17	1,469	2,199	528
비스킷	물량	72	65	90	75	114	72	129	88
	금액	328	289	387	349	533	340	688	416
라면	물량	86	113	143	89	40	29	91	84
	금액	358	381	594	419	209	126	489	368
초콜릿	물량	2	1	36	61	121	125	130	68
	금액	193	2	68	146	280	436	554	240
캔디	물량	55	42	45	58	36	1	1	34
	금액	489	273	267	360	193	5	3	227
물	물량	21	150	113	263	228	148	275	171
	금액	9	112	83	202	190	125	265	14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6-20. 한-사우디아라비아 품목별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톤, 1000 USD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합계	물량	4,636	2,508	6,421	2,490	3,384	3,837	4,700	3,997
	금액	9,009	7,881	9,849	8,123	10,847	13,188	16,155	10,722
조제분유	물량	461	429	531	676	775	788	897	651
	금액	2,171	2,147	2,804	3,614	4,408	4,516	6,168	3,690
검	물량	874	983	963	426	919	1,216	582	852
	금액	2,336	2,690	2,594	1,152	2,520	3,344	1,764	2,343
비스킷	물량	195	262	245	187	254	336	306	255
	금액	754	1,023	990	772	1,127	1,409	1,455	1,076
라면	물량	173	242	274	208	245	287	315	249
	금액	674	920	1,027	837	1,058	1,301	1,508	1,046
유아용조제 식료품	물량	37	26	44	87	63	92	95	64
	금액	260	195	325	634	413	703	593	446
빵	물량	85	111	56	127	78	76	126	94
	금액	248	287	175	401	252	275	474	302
간장	물량	1,480	101	268	340	313	309	404	459
	금액	394	71	159	211	229	283	391	248
칼판류	물량	1,031	-	-	-	-	-	-	147
	금액	1,647	-	-	-	-	-	-	235
커피 조제품	물량	-	10	14	9	14	14	183	35
	금액	-	10	15	15	18	17	1,487	223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6-21. 한-쿠웨이트 품목별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톤, 1000 USD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합계	물량	164.8	361.7	829.2	805.0	406.5	442.8	548.4	508.3
	금액	442.0	1,203.7	3,310.3	3,254.8	1,545.6	1,204.4	2,142.0	1,871.9
검	물량	59.2	108.3	76.4	106.5	89.2	62.7	92.2	84.9
	금액	164.2	299.0	205.0	316.9	250.7	175.0	282.5	241.9
쌀	물량	-	-	244.0	-	-	-	-	34.9
	금액	-	-	1,363.3	-	-	-	-	194.8
권련	물량	-	-	0.3	-	43.8	53.4	37.4	19.3
	금액	-	-	4.6	-	225.5	157.1	960.4	192.5
기타 베이커리 제품	물량	-	-	-	118.0	-	-	-	16.9
	금액	-	-	-	915.4	-	-	-	130.8
흡연용 담배	물량	-	-	-	73.7	19.8	-	-	13.4
	금액	-	-	-	506.9	104.4	-	-	87.3
빵	물량	31.2	26.1	14.8	27.6	19.7	46.9	39.3	29.4
	금액	96.0	83.5	46.5	74.3	55.7	123.0	108.4	83.9
커피 조제품	물량	-	-	-	82.4	0.4	-	-	11.8
	금액	-	-	-	563.9	3.3	-	0.1	81.0
기타 단백질 농축물	물량	-	94.2	10.1	-	-	-	-	14.9
	금액	-	506.2	50.8	-	-	-	-	79.6
비스킷	물량	4.7	3.2	4.0	5.8	64.5	12.8	21.8	16.7
	금액	21.5	14.8	18.5	27.1	279.5	59.6	116.1	76.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6-22. 한-카타르 품목별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톤, 1000 USD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합계	물량	23.6	193.9	274.5	758.7	1,852	993.3	991.5	726.8
	금액	34.9	130.5	241.9	615.0	1,576	997.1	1,466	723.1
합관	물량	-	192.9	235.8	750.2	1,607	923.4	519.5	604.2
	금액	-	126.5	178.7	569.4	1,206	747.9	452.4	468.8
국수	물량	1.5	-	-	0.4	9.8	34.9	64.3	15.8
	금액	3.6	-	-	0.8	46.0	143.7	306.0	71.4
물	물량	-	-	-	-	215.8	-	-	30.8
	금액	-	-	-	-	246.4	-	-	35.2
라면	물량	0.9	-	-	0.2	-	9.7	26.2	5.3
	금액	1.8	-	-	0.6	-	40.1	138.4	25.8
건축용목 제품	물량	-	-	-	-	-	-	100.4	14.3
	금액	-	-	-	-	-	-	128.8	18.4
단일과실 조제품	물량	-	-	-	-	-	-	150.3	21.5
	금액	-	-	-	-	-	-	124.9	17.8
쌀	물량	-	-	-	-	-	-	40.0	5.7
	금액	-	-	-	-	-	-	74.1	10.6
초콜릿	물량	-	-	-	6.9	6.6	-	-	1.9
	금액	-	-	-	32.1	37.2	-	-	9.9
백삼 조제품	물량	-	-	0.9	0.7	0.9	0.9	1.7	0.7
	금액	-	-	9.9	7.3	9.3	16.3	18.1	8.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6-23. 한-바레인 품목별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톤, 1000 USD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합계	물량	54	78	105	82	97	137	178	104
	금액	191	241	310	236	281	409	494	309
커피 조제품	물량	14	38	64	39	24	37	29	35
	금액	40	102	168	107	67	107	91	98
권련	물량	12	9	22	31	41	34	35	26
	금액	29	29	55	83	112	90	122	74
라면	물량	13	11	13	4	6	28	11	12
	금액	62	51	62	21	27	112	48	55
돼지고기	물량	5	12	-	4	14	8	14	8
	금액	16	29	-	13	44	28	52	26
곡류 조제품	물량	-	-	-	-	-	0	22	3
	금액	-	-	-	-	-	0	69	10
로열젤리	물량	-	-	-	-	3	4	10	2
	금액	-	-	-	-	8	13	32	8
단일과실 조제품	물량	-	-	-	-	0	13	28	6
	금액	-	-	-	-	0	13	28	6
물	물량	0.20	0.23	-	0.11	0.10	0.09	-	0.10
	금액	9	3	-	4	4	18	-	5
빵	물량	4	2	2	-	-	-	-	1
	금액	18	9	9	-	-	-	-	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6-24. 한-오만 품목별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톤, 1000 USD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합계	물량	7	73	117	113	149	148	355	137
	금액	64	111	148	134	242	179	908	255
물	물량	-	62	110	110	76	-	-	51
	금액	-	50	83	82	67	-	-	40
기타 목제품	물량	-	-	-	-	-	-	14	2
	금액	-	-	-	-	-	-	239	34
권련	물량	2	2	2	1	0.3	0.5	0.4	1
	금액	56	47	46	36	16	22	15	34
단일과실 조제품	물량	-	-	-	-	-	-	217	31
	금액	-	-	-	-	-	-	181	26
코르크	물량	-	-	-	-	43	14	29	12
	금액	-	-	-	-	50	22	44	17
김치	물량	-	-	-	-	-	-	14	2
	금액	-	-	-	-	-	-	115	16
건축용목 제품	물량	-	-	-	-	-	127	-	18
	금액	-	-	-	-	-	108	-	15
초콜릿	물량	-	-	-	-	28	-	-	4
	금액	-	-	-	-	90	-	-	13
기타 채소	물량	-	-	-	-	-	-	28	4
	금액	-	-	-	-	-	-	80	1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5. 농산물 관세율

바레인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미양허 품목 제외)은 37.9%로 높은 수준이다. 미양허 품목이 많지만 비종가세 품목이 없는 단순한 관세체계이다. HS 2단위 기준으로 평균 관세율이 100% 이상인 품목군은 음료, 주류, 식초류(HS 22류)이며 다음으로 높은 관세율 품목군은 연초(HS 24류)이다. 그 밖에는 평균 관세율보다 낮은 35% 수준이다.

표 6-25. 바레인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전체	37.9	18류	35.0
01류	35.0	19류	35.0
02류	35.0	20류	35.0
04류	35.0	21류	35.0
05류	35.0	22류	147.5
06류	35.0	23류	35.0
07류	35.0	24류	56.7
08류	35.0	29류	35.0
09류	35.0	33류	35.0
10류	35.0	35류	35.0
11류	35.0	38류	32.5
12류	35.0	41류	35.0
13류	35.0	43류	35.0
14류	35.0	50류	35.0
15류	35.0	51류	35.0
16류	35.0	52류	35.0
17류	35.0	53류	35.0

주: 종가세, 양허 품목 기준임.

자료: WTO, Comprehensive tariff data on the WTO websit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ariffs_e/tariff_data_e.htm)

주류 가운데 맥주, 와인, 위스키, 보드카 등이 관세율 200%로 매우 높으며 연초 중에서는 담배가 100%로 높다.

표 6-26. 바레인의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0101	35.0	0507	35.0	0811	35.0
0102	35.0	0508	35.0	0812	35.0
0103	35.0	0509	미양허 품목	0813	35.0
0104	35.0	0510	35.0	0814	35.0
0105	35.0	0511	35.0	0901	35.0
0106	35.0	0601	35.0	0902	35.0
0201	35.0	0602	35.0	0903	35.0
0202	35.0	0603	35.0	0904	35.0
0203	35.0	0604	35.0	0905	35.0
0203	35.0	0701	35.0	0906	35.0
0204	35.0	0702	35.0	0907	35.0
0205	35.0	0703	35.0	0908	35.0
0206	35.0	0704	35.0	0909	35.0
0207	35.0	0705	35.0	0910	35.0
0208	35.0	0706	35.0	1001	35.0
0209	35.0	0707	35.0	1002	35.0
0210	35.0	0708	35.0	1003	35.0
0401	35.0	0709	35.0	1004	35.0
0402	35.0	0710	35.0	1005	35.0
0403	35.0	0711	35.0	1006	35.0
0404	35.0	0712	35.0	1007	35.0
0405	35.0	0713	35.0	1008	35.0
0406	35.0	0714	35.0	1101	35.0
0407	35.0	0801	35.0	1102	35.0
0408	35.0	0802	35.0	1103	35.0
0409	35.0	0803	35.0	1104	35.0
0410	35.0	0804	35.0	1105	35.0
0501	35.0	0805	35.0	1106	35.0
0502	35.0	0806	35.0	1107	35.0
0503	35.0	0807	35.0	1108	35.0
0504	35.0	0808	35.0	1109	35.0
0505	35.0	0809	35.0	1201	35.0
0506	35.0	0810	35.0	1202	35.0

(표 6-26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1203	35.0	1601	35.0	2205	200.0
1204	35.0	1602	35.0	2206	200.0
1205	35.0	1603	미양허 품목	2207	35.0
1206	35.0	1604	미양허 품목	2208	200.0
1207	35.0	1605	미양허 품목	2209	35.0
1208	35.0	1701	35.0	2301	35.0
1209	35.0	1702	35.0	2302	35.0
1210	35.0	1703	35.0	2303	35.0
1211	35.0	1704	35.0	2304	35.0
1212	35.0	1801	35.0	2305	35.0
1213	35.0	1802	35.0	2306	35.0
1214	35.0	1803	35.0	2307	35.0
1301	35.0	1804	35.0	2308	35.0
1302	35.0	1805	35.0	2309	35.0
1401	35.0	1806	35.0	2401	100.0
1402	35.0	1901	35.0	2402	35.0
1403	35.0	1902	35.0	2403	35.0
1404	35.0	1903	35.0	2901	35.0
1501	35.0	1904	35.0	2902	미양허 품목
1502	35.0	1905	35.0	2903	미양허 품목
1503	35.0	2001	35.0	2904	미양허 품목
1504	미양허 품목	2002	35.0	2905	35.0
1505	35.0	2003	35.0	2906	미양허 품목
1506	35.0	2004	35.0	2906	미양허 품목
1507	35.0	2005	35.0	2907	미양허 품목
1508	35.0	2006	35.0	2908	미양허 품목
1509	35.0	2007	35.0	2909	미양허 품목
1510	35.0	2008	35.0	2910	미양허 품목
1511	35.0	2009	35.0	2911	미양허 품목
1512	35.0	2101	35.0	2912	미양허 품목
1513	35.0	2102	35.0	2913	미양허 품목
1514	35.0	2103	35.0	2914	미양허 품목
1515	35.0	2104	35.0	2915	미양허 품목
1516	35.0	2105	35.0	2916	미양허 품목
1517	35.0	2106	35.0	2917	미양허 품목
1518	35.0	2201	35.0	2918	미양허 품목
1520	35.0	2202	35.0	2919	미양허 품목
1521	35.0	2203	200.0	2920	미양허 품목
1522	35.0	2204	200.0	2921	미양허 품목

(표 6-26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2922	미양허 품목	3801	35.0	4302	미양허 품목
2923	미양허 품목	3802	미양허 품목	4303	미양허 품목
2924	미양허 품목	3803	미양허 품목	4304	미양허 품목
2925	미양허 품목	3804	미양허 품목	5001	35.0
2926	미양허 품목	3805	미양허 품목	5002	35.0
2927	미양허 품목	3806	미양허 품목	5003	35.0
2928	미양허 품목	3807	미양허 품목	5004	35.0
2929	미양허 품목	3808	미양허 품목	5005	35.0
2930	미양허 품목	3809	35.0	5006	35.0
2931	미양허 품목	3810	미양허 품목	5007	35.0
2932	미양허 품목	3811	미양허 품목	5101	35.0
2933	미양허 품목	3812	미양허 품목	5102	35.0
2934	미양허 품목	3813	미양허 품목	5103	35.0
2935	미양허 품목	3814	미양허 품목	5104	35.0
2936	미양허 품목	3815	미양허 품목	5105	35.0
2937	미양허 품목	3816	미양허 품목	5106	35.0
2938	미양허 품목	3817	미양허 품목	5107	35.0
2939	미양허 품목	3818	0.0	5108	35.0
2940	미양허 품목	3819	35.0	5109	35.0
2941	미양허 품목	3820	미양허 품목	5110	35.0
2941	미양허 품목	3821	미양허 품목	5111	35.0
2942	미양허 품목	3822	35.0	5112	35.0
3301	35.0	3823	35.0	5113	35.0
3302	35.0	3824	35.0	5201	35.0
3303	미양허 품목	4101	35.0	5202	35.0
3304	미양허 품목	4102	35.0	5203	35.0
3305	미양허 품목	4103	35.0	5204	35.0
3306	35.0	4104	35.0	5205	35.0
3307	미양허 품목	4105	35.0	5206	35.0
3501	35.0	4106	35.0	5207	35.0
3502	35.0	4107	35.0	5208	35.0
3503	35.0	4108	35.0	5208	35.0
3504	35.0	4109	35.0	5209	35.0
3505	35.0	4110	35.0	5210	35.0
3506	미양허 품목	4111	35.0	5211	35.0
3507	미양허 품목	4301	35.0	5212	35.0

(표 6-26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5301	35.0	5305	35.0	5309	35.0
5302	35.0	5306	35.0	5310	35.0
5303	35.0	5307	35.0	5311	35.0
5304	35.0	5308	35.0		

주: 종가세, 양허 품목 기준임.

자료: WTO, Comprehensive tariff data on the WTO websit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ariffs_e/tariff_data_e.htm)

쿠웨이트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미양허 품목 제외)은 100%로 높은 수준이다. 미양허 품목과 비종가세 품목이 없으며 모든 품목의 관세율이 100%로 매우 단순한 관세체계이다.

표 6-27. 쿠웨이트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전체	100.0	18류	100.0
01류	100.0	19류	100.0
02류	100.0	20류	100.0
04류	100.0	21류	100.0
05류	100.0	22류	100.0
06류	100.0	23류	100.0
07류	100.0	24류	100.0
08류	100.0	29류	100.0
09류	100.0	33류	100.0
10류	100.0	35류	100.0
11류	100.0	38류	100.0
12류	100.0	41류	100.0
13류	100.0	43류	100.0
14류	100.0	50류	100.0
15류	100.0	51류	100.0
16류	100.0	52류	100.0
17류	100.0	53류	100.0

주: 종가세, 양허 품목 기준임.

자료: WTO, Comprehensive tariff data on the WTO websit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ariffs_e/tariff_data_e.htm>

표 6-28. 쿠웨이트의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0101	100.0	0510	100.0	0902	100.0
0102	100.0	0511	100.0	0903	100.0
0103	100.0	0511	100.0	0903	100.0
0104	100.0	0601	100.0	0904	100.0
0105	100.0	0602	100.0	0905	100.0
0106	100.0	0603	100.0	0906	100.0
0201	100.0	0604	100.0	0907	100.0
0202	100.0	0701	100.0	0908	100.0
0203	100.0	0702	100.0	0909	100.0
0203	100.0	0703	100.0	0910	100.0
0204	100.0	0704	100.0	1001	100.0
0205	100.0	0705	100.0	1002	100.0
0206	100.0	0706	100.0	1003	100.0
0207	100.0	0707	100.0	1004	100.0
0208	100.0	0708	100.0	1005	100.0
0209	100.0	0709	100.0	1006	100.0
0210	100.0	0710	100.0	1007	100.0
0401	100.0	0711	100.0	1008	100.0
0402	100.0	0712	100.0	1101	100.0
0403	100.0	0713	100.0	1102	100.0
0404	100.0	0714	100.0	1103	100.0
0405	100.0	0801	100.0	1104	100.0
0406	100.0	0802	100.0	1105	100.0
0407	100.0	0803	100.0	1106	100.0
0408	100.0	0804	100.0	1107	100.0
0409	100.0	0805	100.0	1108	100.0
0410	100.0	0806	100.0	1109	100.0
0501	100.0	0807	100.0	1201	100.0
0502	100.0	0808	100.0	1202	100.0
0503	100.0	0809	100.0	1203	100.0
0504	100.0	0810	100.0	1204	100.0
0505	100.0	0811	100.0	1205	100.0
0506	100.0	0812	100.0	1206	100.0
0507	100.0	0813	100.0	1207	100.0
0508	100.0	0814	100.0	1208	100.0
0509	100.0	0901	100.0	1209	100.0

(표 6-28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1210	100.0	1604	100.0	2205	100.0
1211	100.0	1605	100.0	2206	100.0
1211	100.0	1701	100.0	2207	100.0
1212	100.0	1702	100.0	2208	100.0
1213	100.0	1703	100.0	2209	100.0
1214	100.0	1704	100.0	2301	100.0
1301	100.0	1801	100.0	2302	100.0
1302	100.0	1802	100.0	2303	100.0
1401	100.0	1803	100.0	2304	100.0
1402	100.0	1804	100.0	2305	100.0
1403	100.0	1805	100.0	2306	100.0
1404	100.0	1806	100.0	2307	100.0
1501	100.0	1901	100.0	2308	100.0
1502	100.0	1902	100.0	2309	100.0
1503	100.0	1903	100.0	2401	100.0
1504	100.0	1904	100.0	2402	100.0
1505	100.0	1905	100.0	2403	100.0
1506	100.0	2001	100.0	2901	100.0
1507	100.0	2002	100.0	2902	100.0
1508	100.0	2003	100.0	2903	100.0
1509	100.0	2004	100.0	2904	100.0
1510	100.0	2005	100.0	2905	100.0
1511	100.0	2006	100.0	2906	100.0
1512	100.0	2007	100.0	2906	100.0
1513	100.0	2008	100.0	2907	100.0
1514	100.0	2009	100.0	2908	100.0
1515	100.0	2101	100.0	2909	100.0
1516	100.0	2102	100.0	2910	100.0
1517	100.0	2103	100.0	2911	100.0
1518	100.0	2104	100.0	2912	100.0
1520	100.0	2105	100.0	2913	100.0
1521	100.0	2106	100.0	2914	100.0
1522	100.0	2201	100.0	2915	100.0
1601	100.0	2202	100.0	2916	100.0
1602	100.0	2203	100.0	2917	100.0
1603	100.0	2204	100.0	2918	100.0

(표 6-28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2919	100.0	3506	100.0	4110	100.0
2920	100.0	3507	100.0	4111	100.0
2921	100.0	3801	100.0	4301	100.0
2922	100.0	3802	100.0	4302	100.0
2923	100.0	3803	100.0	4303	100.0
2924	100.0	3804	100.0	4304	100.0
2925	100.0	3805	100.0	5001	100.0
2926	100.0	3806	100.0	5002	100.0
2927	100.0	3807	100.0	5003	100.0
2928	100.0	3808	100.0	5004	100.0
2929	100.0	3809	100.0	5005	100.0
2930	100.0	3809	100.0	5006	100.0
2931	100.0	3810	100.0	5007	100.0
2932	100.0	3811	100.0	5101	100.0
2933	100.0	3812	100.0	5102	100.0
2934	100.0	3813	100.0	5103	100.0
2935	100.0	3814	100.0	5104	100.0
2936	100.0	3815	100.0	5105	100.0
2937	100.0	3816	100.0	5106	100.0
2938	100.0	3817	100.0	5107	100.0
2939	100.0	3818	100.0	5108	100.0
2940	100.0	3819	100.0	5109	100.0
2941	100.0	3820	100.0	5110	100.0
2942	100.0	3821	100.0	5111	100.0
3301	100.0	3822	100.0	5112	100.0
3302	100.0	3823	100.0	5113	100.0
3303	100.0	3824	100.0	5201	100.0
3304	100.0	4101	100.0	5202	100.0
3305	100.0	4102	100.0	5203	100.0
3306	100.0	4103	100.0	5204	100.0
3307	100.0	4104	100.0	5205	100.0
3501	100.0	4105	100.0	5206	100.0
3502	100.0	4106	100.0	5207	100.0
3503	100.0	4107	100.0	5208	100.0
3504	100.0	4108	100.0	5209	100.0
3505	100.0	4109	100.0	5210	100.0

(표 6-28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5211	100.0	5304	100.0	5309	100.0
5212	100.0	5305	100.0	5310	100.0
5301	100.0	5306	100.0	5311	100.0
5302	100.0	5307	100.0		
5303	100.0	5308	100.0		

주: 종가세, 양허 품목 기준임.

자료: WTO, Comprehensive tariff data on the WTO websit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ariffs_e/tariff_data_e.htm>

오만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미양허 품목 제외)은 18.8%로 낮은 수준이다. 미양허 품목은 없고 비종가세 품목도 없는 단순한 관세체계이다. 관세율이 100% 이상인 품목류는 음료, 주류, 식초(HS 22류), 연초(HS 24류)이며 산동물(HS 01류), 육류(HS 02류), 육·어류 조제품(HS 16류)가 각각 45.3%, 57.6%, 52.7%로 높다. 그 외 평균 이상인 품목류는 채소(HS 07류), 과일 및 견과류(HS 08류), 동물성유지(HS 15류) 등이다.

표 6-29. 오만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전체	18.8	12류	14.5
01류	45.3	13류	15.0
02류	57.6	14류	15.0
04류	17.4	15류	22.7
05류	15.3	16류	52.7
06류	14.2	17류	13.4
07류	25.3	18류	15.0
08류	21.6	19류	12.9
09류	15.0	20류	14.2
10류	10.9	21류	13.4
11류	15.0	22류	141.1

(표 6-29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23류	15.2	41류	15.0
24류	150.0	43류	15.0
29류	5.0	50류	15.0
33류	9.9	51류	13.3
35류	12.2	52류	14.9
38류	7.2	53류	15.0

주: 종가세, 양허 품목 기준임.

자료: WTO, Comprehensive tariff data on the WTO websit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ariffs_e/tariff_data_e.htm)

표 6-30. 오만의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0101	15.0	0409	10.0	0709	25.7
0102	5.0	0410	15.0	0710	10.0
0103	200.0	0501	15.0	0711	15.0
0104	5.0	0502	15.0	0712	15.0
0105	15.0	0503	15.0	0713	10.0
0106	15.0	0504	15.0	0714	28.3
0201	5.0	0505	15.0	0801	25.6
0202	5.0	0506	15.0	0802	15.0
0203	200.0	0507	15.0	0803	100.0
0203	200.0	0508	15.0	0804	37.3
0204	7.2	0509	15.0	0805	29.3
0205	15.0	0510	15.0	0806	12.5
0206	76.7	0511	16.7	0807	46.7
0207	13.8	0601	15.0	0808	5.0
0208	15.0	0602	15.0	0809	13.8
0209	200.0	0603	10.0	0810	9.2
0210	126.0	0604	15.0	0811	15.0
0401	75.0	0701	32.5	0812	15.0
0402	5.0	0702	63.3	0813	15.0
0403	15.0	0703	55.0	0814	15.0
0404	10.0	0704	31.1	0901	15.0
0405	5.0	0705	27.1	0902	15.0
0406	5.0	0706	55.0	0903	15.0
0407	45.0	0707	63.3	0904	15.0
0408	15.0	0708	47.2	0905	15.0

(표 6-30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0906	15.0	1402	15.0	1901	11.7
0907	15.0	1403	15.0	1902	13.0
0908	15.0	1404	15.0	1903	15.0
0909	15.0	1501	200.0	1904	15.0
0910	15.0	1502	15.0	1905	12.0
1001	5.0	1503	200.0	2001	15.0
1002	15.0	1504	15.0	2002	7.5
1003	5.0	1505	15.0	2003	15.0
1004	15.0	1506	15.0	2004	10.0
1005	12.5	1507	15.0	2005	14.4
1006	10.0	1508	15.0	2006	15.0
1007	15.0	1509	12.5	2007	13.3
1008	12.5	1510	15.0	2008	15.0
1101	15.0	1511	15.0	2009	15.0
1102	15.0	1512	15.0	2101	15.0
1103	15.0	1513	15.0	2102	13.3
1104	15.0	1514	15.0	2103	13.8
1105	15.0	1515	15.0	2104	15.0
1106	15.0	1516	15.0	2105	10.0
1107	15.0	1517	10.0	2106	10.0
1108	15.0	1518	15.0	2201	15.0
1109	15.0	1520	15.0	2202	15.0
1201	15.0	1521	15.0	2203	200.0
1202	15.0	1522	15.0	2204	200.0
1203	15.0	1601	102.5	2205	200.0
1204	15.0	1602	98.3	2206	200.0
1205	15.0	1603	15.0	2207	15.0
1206	15.0	1604	18.9	2208	200.0
1207	15.0	1605	20.0	2209	15.0
1208	15.0	1701	10.0	2301	17.5
1209	14.2	1702	15.0	2302	15.0
1210	15.0	1703	15.0	2303	15.0
1211	15.0	1704	12.5	2304	15.0
1212	15.0	1801	15.0	2305	15.0
1213	15.0	1802	15.0	2306	15.0
1214	10.0	1803	15.0	2307	15.0
1301	15.0	1804	15.0	2308	15.0
1302	15.0	1805	15.0	2309	15.0
1401	15.0	1806	15.0	2401	150.0

(표 6-30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2402	150.0	2937	0.0	3817	6.5
2403	150.0	2938	6.5	3818	0.0
2901	0.0	2939	0.0	3819	6.5
2902	0.0	2940	6.5	3820	6.5
2903	5.5	2941	0.0	3821	6.5
2904	5.5	2940	6.5	3822	0.0
2905	6.9	2941	0.0	3823	15.0
2906	5.4	2942	6.5	3824	7.4
2906	5.4	3301	15.0	4101	15.0
2907	5.5	3302	6.5	4102	15.0
2908	5.5	3303	6.5	4103	15.0
2909	5.5	3304	6.5	4104	15.0
2910	5.5	3305	6.5	4105	15.0
2911	5.5	3306	6.5	4106	15.0
2912	5.5	3307	6.5	4107	15.0
2913	5.5	3501	15.0	4108	15.0
2914	5.5	3502	15.0	4109	15.0
2915	5.5	3503	15.0	4110	15.0
2916	6.5	3504	15.0	4111	15.0
2917	6.5	3505	15.0	4301	15.0
2918	6.5	3506	6.5	4302	15.0
2919	6.5	3507	6.5	4303	15.0
2920	6.5	3801	6.5	4304	15.0
2921	6.5	3802	6.5	5001	15.0
2922	6.5	3803	6.5	5002	15.0
2923	6.5	3804	6.5	5003	15.0
2924	6.5	3805	6.5	5004	15.0
2925	6.5	3806	6.5	5005	15.0
2926	6.5	3807	6.5	5006	15.0
2927	6.5	3808	6.5	5007	15.0
2928	6.5	3809	8.6	5101	9.0
2929	6.5	3809	8.6	5102	15.0
2930	6.5	3810	6.5	5103	15.0
2931	6.5	3811	6.5	5104	15.0
2932	6.5	3812	6.5	5105	9.0
2933	6.5	3813	6.5	5106	15.0
2934	6.5	3814	6.5	5107	15.0
2935	6.5	3815	6.5	5108	15.0
2936	0.0	3816	6.5	5109	15.0

(표 6-30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5110	15.0	5206	15.0	5303	15.0
5111	15.0	5207	15.0	5304	15.0
5112	15.0	5208	15.0	5305	15.0
5113	15.0	5209	15.0	5306	15.0
5201	5.0	5210	15.0	5307	15.0
5202	15.0	5211	15.0	5308	15.0
5203	15.0	5212	15.0	5309	15.0
5204	15.0	5301	15.0	5310	15.0
5205	15.0	5302	15.0	5311	15.0

주: 종가세, 양허 품목 기준임.

자료: WTO, Comprehensive tariff data on the WTO websit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ariffs_e/tariff_data_e.htm)

카타르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미양허 품목 제외)은 18.2%로 오만, 아랍에미리트와 유사한 낮은 수준이다. 미양허 품목이 없고 비종가세 품목이 없는 매우 단순한 관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관세율이 100% 이상인 품목류는 음료, 주류, 식초(HS 22류), 연초(HS 24류)이며 육류(HS 02류)가 69.7%로 높다. 그 외 평균 이상인 품목류는 커피 및 향신료(HS 09류), 당류 및 설탕과자(HS 17류), 코코아(HS 18류), 기타 조제 식료품(HS 21류), 조제사료(HS 23류), 원피, 가죽(HS 41류) 등이다.

표 6-31. 카타르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전체	18.2	18류	19.6
01류	15.0	19류	15.8
02류	69.7	20류	17.2
04류	15.1	21류	25.6
05류	15.0	22류	109.3
06류	15.0	23류	22.0
07류	15.0	24류	200.0
08류	14.9	29류	6.3
09류	20.0	33류	16.1
10류	11.8	35류	13.9
11류	12.0	38류	8.3
12류	13.9	41류	20.0
13류	15.0	43류	15.0
14류	15.0	50류	15.0
15류	15.0	51류	15.0
16류	15.0	52류	15.0
17류	20.0	53류	15.0

주: 종가세, 양허 품목 기준임.

자료: WTO, Comprehensive tariff data on the WTO websit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ariffs_e/tariff_data_e.htm)

표 6-32. 카타르의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0101	15.0	0510	15.0	0902	20.0
0102	15.0	0511	15.0	0903	20.0
0103	15.0	0601	15.0	0904	20.0
0104	15.0	0602	15.0	0905	20.0
0105	15.0	0603	15.0	0906	20.0
0106	15.0	0604	15.0	0907	20.0
0201	15.0	0701	15.0	0908	20.0
0202	11.7	0702	15.0	0909	20.0
0203	200.0	0703	15.0	0910	20.0
0204	15.0	0704	15.0	1001	12.0
0205	115.0	0705	15.0	1002	12.0
0206	117.8	0706	15.0	1003	12.0
0207	17.8	0707	15.0	1004	12.0
0208	15.0	0708	15.0	1005	10.0
0209	200.0	0709	15.0	1006	12.0
0210	126.0	0710	15.0	1007	12.0
0401	15.0	0711	15.0	1008	12.0
0402	15.0	0712	15.0	1101	12.0
0403	15.0	0713	15.0	1102	12.0
0404	15.0	0714	15.0	1103	12.0
0405	15.8	0801	15.0	1104	12.0
0406	15.0	0802	15.0	1105	12.0
0407	15.0	0803	15.0	1106	12.0
0408	15.0	0804	15.0	1107	12.0
0409	15.0	0805	15.0	1108	12.0
0410	15.0	0806	15.0	1109	12.0
0501	15.0	0807	15.0	1201	12.0
0502	15.0	0808	12.5	1202	12.0
0503	15.0	0809	15.0	1203	12.0
0504	15.0	0810	15.0	1204	15.0
0505	15.0	0811	15.0	1205	15.0
0506	15.0	0812	15.0	1206	15.0
0507	15.0	0813	15.0	1207	15.0
0508	15.0	0814	15.0	1208	15.0
0509	15.0	0901	20.0	1209	15.0

(표 6-32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1210	12.0	1604	15.0	2204	200.0
1211	13.0	1605	15.0	2205	200.0
1212	12.3	1701	20.0	2206	15.0
1213	12.0	1702	20.0	2207	15.0
1214	12.0	1703	20.0	2208	120.7
1301	15.0	1704	20.0	2209	15.0
1302	15.0	1801	20.0	2301	14.5
1401	15.0	1802	20.0	2302	14.0
1402	15.0	1803	20.0	2303	14.0
1403	15.0	1804	20.0	2304	14.0
1404	15.0	1805	20.0	2305	14.0
1501	15.0	1806	19.2	2306	14.0
1502	15.0	1901	14.0	2307	200.0
1503	15.0	1902	14.0	2308	20.0
1504	15.0	1903	14.0	2309	14.0
1505	15.0	1904	14.2	2401	200.0
1506	15.0	1905	20.0	2402	200.0
1507	15.0	2001	15.0	2403	200.0
1508	15.0	2002	15.0	2901	0.0
1509	15.0	2003	15.0	2902	0.0
1510	15.0	2004	14.0	2903	5.5
1511	15.0	2005	15.0	2904	5.5
1512	15.0	2006	15.0	2905	6.9
1513	15.0	2007	15.0	2906	5.5
1514	15.0	2008	15.0	2906	5.5
1515	15.0	2009	25.0	2907	5.5
1516	15.0	2101	20.0	2908	5.5
1517	15.0	2102	20.0	2909	5.5
1518	15.0	2103	20.0	2910	5.5
1520	15.0	2104	20.0	2911	5.5
1521	15.0	2105	20.0	2912	5.5
1522	15.0	2106	65.0	2913	5.5
1601	15.0	2201	25.0	2914	5.5
1602	15.0	2202	25.0	2915	5.5
1603	15.0	2203	200.0	2916	6.5

(표 6-32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2917	6.5	3506	15.0	4302	15.0
2918	6.5	3507	6.5	4303	15.0
2919	6.5	3801	6.5	4304	15.0
2920	6.5	3802	6.5	5001	15.0
2921	6.5	3803	6.5	5002	15.0
2922	6.5	3804	6.5	5003	15.0
2923	6.5	3805	6.5	5004	15.0
2924	6.5	3806	6.5	5005	15.0
2925	6.5	3807	6.5	5006	15.0
2926	6.5	3808	10.9	5007	15.0
2927	6.5	3809	8.6	5101	15.0
2928	6.5	3810	6.5	5102	15.0
2929	6.5	3811	6.5	5103	15.0
2930	6.5	3812	12.0	5104	15.0
2931	6.5	3813	12.0	5105	15.0
2932	6.5	3814	6.5	5106	15.0
2933	6.5	3815	6.5	5107	15.0
2934	6.5	3816	6.5	5108	15.0
2935	6.5	3817	6.5	5109	15.0
2936	15.0	3818	6.5	5110	15.0
2937	6.5	3819	6.5	5111	15.0
2938	6.5	3820	6.5	5112	15.0
2939	6.5	3821	6.5	5113	15.0
2940	6.5	3822	14.4	5201	15.0
2941	15.0	3823	15.0	5202	15.0
2942	6.5	3824	7.4	5203	15.0
3301	15.0	4101	20.0	5204	15.0
3302	41.0	4102	20.0	5205	15.0
3303	30.0	4103	20.0	5206	15.0
3304	30.0	4104	20.0	5207	15.0
3305	6.5	4105	20.0	5208	15.0
3306	9.3	4106	20.0	5209	15.0
3307	6.5	4107	20.0	5210	15.0
3501	15.0	4108	20.0	5211	15.0
3502	15.0	4109	20.0	5212	15.0
3503	15.0	4110	20.0	5301	15.0
3504	15.0	4111	20.0	5302	15.0
3505	15.0	4301	15.0	5303	15.0

(표 6-32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5304	15.0	5307	15.0	5310	15.0
5305	15.0	5308	15.0	5311	15.0
5306	15.0	5309	15.0		

주: 종가세, 양허 품목 기준임.

자료: WTO, Comprehensive tariff data on the WTO websit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ariffs_e/tariff_data_e.htm)

사우디아라비아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미양허 품목 제외)은 9.8%로 다른 GCC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양허 품목 수는 적은 편이지만 육류, 낙농품, 연초는 선택세가 적용된다. HS 2단위에서 평균 관세율이 100% 이상되는 품목군은 연초(HS 24류)로 200%이다. 그 외 품목류는 최대 15%에서 최소 4.9%에 분포되어 있다.

표 6-33. 사우디아라비아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전체	9.8	18류	11.3
01류	12.0	19류	11.9
02류	11.4	20류	11.2
04류	12.2	21류	10.3
05류	14.4	22류	8.8
06류	11.8	23류	12.7
07류	12.0	24류	200.0
08류	12.4	29류	4.9
09류	10.9	33류	8.8
10류	11.1	35류	10.8
11류	14.8	38류	6.5
12류	11.5	41류	12.9
13류	13.0	43류	15.0
14류	13.5	50류	13.5
15류	12.2	51류	14.9
16류	9.1	52류	14.3
17류	12.4	53류	13.7

주: 종가세, 양허 품목 기준임.

자료: WTO, Comprehensive tariff data on the WTO websit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ariffs_e/tariff_data_e.htm)

표 6-34. 사우디아라비아의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0101	7.5	0510	15.0	0902	6.5
0102	6.0	0511	12.0	0903	15.0
0103	수입금지 품목	0511	12.0	0903	15.0
0104	7.0	0601	15.0	0904	11.7
0105	13.3	0602	13.2	0905	15.0
0106	14.9	0603	5.0	0906	15.0
0201	6.3	0604	11.7	0907	12.0
0202	6.3	0701	12.5	0908	11.0
0203	수입금지 품목	0702	15.0	0909	13.0
0203	수입금지 품목	0703	13.1	0910	12.1
0204	6.7	0704	15.0	1001	25.0
0205	15.0	0705	12.8	1002	15.0
0206	6.4	0706	15.0	1003	5.0
0207	18.1	0707	15.0	1004	10.0
0208	16.3	0708	15.0	1005	5.5
0209	15.0	0709	13.1	1006	6.0
0210	15.0	0710	11.5	1007	10.0
0401	19.2	0711	10.5	1008	13.3
0402	11.5	0712	14.2	1101	25.0
0403	11.3	0713	6.0	1102	12.3
0404	10.0	0714	15.0	1103	16.5
0405	10.3	0801	10.3	1104	15.0
0406	6.0	0802	12.9	1105	15.0
0407	10.0	0803	5.0	1106	14.9
0408	20.0	0804	16.5	1107	15.0
0409	6.0	0805	11.5	1108	13.3
0410	15.0	0806	5.0	1109	15.0
0501	15.0	0807	14.8	1201	6.0
0502	15.0	0808	5.5	1202	12.5
0503	15.0	0809	13.8	1203	15.0
0504	15.0	0810	13.7	1204	15.0
0505	15.0	0811	12.3	1205	6.0
0506	15.0	0812	12.5	1206	10.0
0507	15.0	0813	13.0	1207	13.9
0508	15.0	0814	15.0	1208	6.0
0509	15.0	0901	6.4	1209	9.1

(표 6-34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1210	15.0	1604	7.4	2204	수입금지 품목
1211	12.0	1605	9.6	2205	수입금지 품목
1212	13.6	1701	11.6	2206	수입금지 품목
1213	15.0	1702	13.5	2207	9.3
1214	15.0	1703	12.5	2208	11.0
1301	12.0	1704	9.3	2209	6.0
1302	13.3	1801	8.0	2301	15.0
1401	11.9	1802	13.0	2302	14.4
1402	15.0	1803	10.5	2303	15.0
1403	15.0	1804	13.0	2304	6.0
1404	14.2	1805	8.0	2305	15.0
1501	15.0	1806	12.2	2306	12.0
1502	6.0	1901	7.7	2307	15.0
1503	10.0	1902	12.6	2308	15.0
1504	15.0	1903	15.0	2309	6.0
1505	15.0	1904	15.9	2401	선택세
1506	15.0	1905	10.4	2402	선택세
1507	13.5	2001	12.4	2403	200.0
1508	15.0	2002	10.0	2901	0.0
1509	12.0	2003	15.0	2902	0.0
1510	12.0	2004	6.0	2903	5.5
1511	13.5	2005	11.5	2904	5.5
1512	8.5	2006	15.0	2905	6.4
1513	9.8	2007	10.3	2906	5.5
1514	13.5	2008	10.9	2907	5.5
1515	12.4	2009	11.1	2907	5.5
1516	12.5	2101	10.0	2908	5.5
1517	8.0	2102	12.7	2909	5.5
1518	10.0	2103	9.3	2910	5.5
1520	12.0	2104	11.5	2911	5.5
1521	15.0	2105	15.0	2912	5.5
1522	15.0	2106	6.0	2913	5.5
1601	8.7	2201	10.9	2914	5.5
1602	10.0	2202	6.4	2915	5.5
1603	15.0	2203	수입금지 품목	2916	6.5

(표 6-34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2917	6.5	3503	6.0	4106	15.0
2918	6.5	3504	10.5	4107	10.7
2919	6.5	3505	14.5	4112	15.0
2920	6.5	3506	6.5	4113	15.0
2921	6.5	3507	6.5	4114	15.0
2922	6.5	3801	6.5	4115	10.0
2923	6.5	3802	6.5	4301	15.0
2924	6.5	3803	6.5	4302	15.0
2925	6.5	3804	6.5	4303	15.0
2926	6.5	3805	6.5	4304	15.0
2927	6.5	3806	6.5	5001	15.0
2928	6.5	3807	6.5	5002	15.0
2929	6.5	3808	6.5	5003	15.0
2930	6.5	3809	8.6	5004	15.0
2931	6.5	3810	6.5	5005	15.0
2932	6.5	3810	6.5	5006	15.0
2933	6.5	3811	6.5	5007	10.0
2934	6.5	3812	6.5	5101	15.0
2935	6.5	3813	6.5	5102	15.0
2936	0.0	3814	6.5	5103	15.0
2937	0.0	3815	6.5	5104	15.0
2938	6.5	3816	6.5	5105	15.0
2939	0.0	3817	6.5	5106	15.0
2940	6.5	3818	0.0	5107	15.0
2941	0.0	3819	6.5	5108	15.0
2942	6.5	3820	6.5	5109	15.0
2942	6.5	3821	6.5	5110	15.0
3301	12.3	3822	5.0	5111	14.4
3302	6.5	3823	6.5	5112	15.0
3303	6.5	3824	7.4	5113	15.0
3304	6.5	3825	5.8	5201	6.0
3305	6.5	4101	10.0	5202	15.0
3306	6.5	4102	15.0	5203	15.0
3307	6.5	4103	15.0	5204	15.0
3501	12.0	4104	10.0	5205	14.8
3502	15.0	4105	15.0	5206	15.0

(표 6-34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5207	12.5	5212	14.5	5306	15.0
5208	13.3	5301	15.0	5307	10.0
5208	13.3	5302	15.0	5308	15.0
5209	14.4	5303	12.5	5309	15.0
5210	13.7	5304	15.0	5310	12.5
5211	14.4	5305	11.6	5311	15.0

주: 종가세, 양허 품목 기준임.

자료: WTO, Comprehensive tariff data on the WTO websit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ariffs_e/tariff_data_e.htm)

육류, 낙농품, 연초에는 각각 7개, 2개, 19개의 선택세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연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세가 많은 편이다.

표 6-35.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종가세 품목 현황

종량세		복합세		선택세	
품목	품목수	품목	품목수	품목	품목수
-	-	-	-	0207	7
-	-	-	-	0407	2
-	-	-	-	2401	4
-	-	-	-	2402	4
-	-	-	-	2403	11

자료: WTO, Comprehensive tariff data on the WTO websit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ariffs_e/tariff_data_e.htm)

아랍에미리트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미양허 품목 제외)은 17.8%이다. 미양허 품목과 비종가세 품목이 없는 단순한 관세체계이다. 관세율이 100% 이상인 품목류는 음료, 주류, 식초(HS 22류), 연초(HS 24류)이며 육류(HS 02류)는 관세율 46.4%로 높은 편이다. 그 외 평균 이상인 품목류는 동물성유지(HS 15류), 육·어류 조제품(HS 16류), 당류 및 설탕과자(HS 17류) 등이다.

표 6-36. 아랍에미리트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전체	17.8	18류	15.0
01류	15.0	19류	15.0
02류	46.4	20류	15.0
04류	15.0	21류	15.0
05류	15.0	22류	158.0
06류	15.0	23류	15.0
07류	15.0	24류	200.0
08류	15.0	29류	6.3
09류	15.0	33류	11.5
10류	15.0	35류	13.9
11류	15.0	38류	8.2
12류	15.0	41류	15.0
13류	15.0	43류	15.0
14류	15.0	50류	15.0
15류	23.0	51류	15.0
16류	22.1	52류	15.0
17류	15.0	53류	15.0

주: 종가세, 양허 품목 기준임.

자료: WTO, Comprehensive tariff data on the WTO websit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ariffs_e/tariff_data_e.htm)

표 6-37. 아랍에미리트의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0101	15.0	0510	15.0	0902	15.0
0102	15.0	0511	15.0	0903	15.0
0103	15.0	0511	15.0	0903	15.0
0104	15.0	0601	15.0	0904	15.0
0105	15.0	0602	15.0	0905	15.0
0106	15.0	0603	15.0	0906	15.0
0201	15.0	0604	15.0	0907	15.0
0202	15.0	0701	15.0	0908	15.0
0203	200.0	0702	15.0	0909	15.0
0203	200.0	0703	15.0	0910	15.0
0204	15.0	0704	15.0	1001	15.0
0205	15.0	0705	15.0	1002	15.0
0206	35.6	0706	15.0	1003	15.0
0207	15.0	0707	15.0	1004	15.0
0208	15.0	0708	15.0	1005	15.0
0209	200.0	0709	15.0	1006	15.0
0210	52.0	0710	15.0	1007	15.0
0401	15.0	0711	15.0	1008	15.0
0402	15.0	0712	15.0	1101	15.0
0403	15.0	0713	15.0	1102	15.0
0404	15.0	0714	15.0	1103	15.0
0405	15.0	0801	15.0	1104	15.0
0406	15.0	0802	15.0	1105	15.0
0407	15.0	0803	15.0	1106	15.0
0408	15.0	0804	15.0	1107	15.0
0409	15.0	0805	15.0	1108	15.0
0410	15.0	0806	15.0	1109	15.0
0501	15.0	0807	15.0	1201	15.0
0502	15.0	0808	15.0	1202	15.0
0503	15.0	0809	15.0	1203	15.0
0504	15.0	0810	15.0	1204	15.0
0505	15.0	0811	15.0	1205	15.0
0506	15.0	0812	15.0	1206	15.0
0507	15.0	0813	15.0	1207	15.0
0508	15.0	0814	15.0	1208	15.0
0509	15.0	0901	15.0	1209	15.0

(표 6-37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1210	15.0	1604	15.0	2204	200.0
1211	15.0	1605	15.0	2205	200.0
1211	15.0	1605	15.0	2205	200.0
1212	15.0	1701	15.0	2206	200.0
1213	15.0	1702	15.0	2207	200.0
1214	15.0	1703	15.0	2208	200.0
1301	15.0	1704	15.0	2209	15.0
1302	15.0	1801	15.0	2301	15.0
1401	15.0	1802	15.0	2302	15.0
1402	15.0	1803	15.0	2303	15.0
1403	15.0	1804	15.0	2304	15.0
1404	15.0	1805	15.0	2305	15.0
1501	200.0	1806	15.0	2306	15.0
1502	15.0	1901	15.0	2307	15.0
1503	200.0	1902	15.0	2308	15.0
1504	15.0	1903	15.0	2309	15.0
1505	15.0	1904	15.0	2401	200.0
1506	15.0	1905	15.0	2402	200.0
1507	15.0	2001	15.0	2403	200.0
1508	15.0	2002	15.0	2901	0.0
1509	15.0	2003	15.0	2902	0.0
1510	15.0	2004	15.0	2903	5.5
1511	15.0	2005	15.0	2904	5.5
1512	15.0	2006	15.0	2905	6.9
1513	15.0	2007	15.0	2906	5.5
1514	15.0	2008	15.0	2906	5.5
1515	15.0	2009	15.0	2907	5.5
1516	15.0	2101	15.0	2908	5.5
1517	15.0	2102	15.0	2909	5.5
1518	15.0	2103	15.0	2910	5.5
1520	15.0	2104	15.0	2911	5.5
1521	15.0	2105	15.0	2912	5.5
1522	15.0	2106	15.0	2913	5.5
1601	15.0	2201	15.0	2914	5.5
1602	33.5	2202	15.0	2915	5.5
1603	15.0	2203	200.0	2916	6.5

(표 6-37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2917	6.5	3503	15.0	4107	15.0
2918	6.5	3504	15.0	4108	15.0
2919	6.5	3505	15.0	4109	15.0
2920	6.5	3506	15.0	4110	15.0
2921	6.5	3507	6.5	4111	15.0
2922	6.5	3801	6.5	4301	15.0
2923	6.5	3802	6.5	4302	15.0
2924	6.5	3803	6.5	4303	15.0
2925	6.5	3804	6.5	4304	15.0
2926	6.5	3805	6.5	5001	15.0
2927	6.5	3806	6.5	5002	15.0
2928	6.5	3807	6.5	5003	15.0
2929	6.5	3808	10.9	5004	15.0
2930	6.5	3809	8.6	5005	15.0
2931	6.5	3809	8.6	5006	15.0
2932	6.5	3810	6.5	5007	15.0
2933	6.5	3811	6.5	5101	15.0
2934	6.5	3812	12.0	5102	15.0
2935	6.5	3813	12.0	5103	15.0
2936	15.0	3814	6.5	5104	15.0
2937	6.5	3815	6.5	5105	15.0
2938	6.5	3816	6.5	5106	15.0
2939	6.5	3817	6.5	5107	15.0
2940	6.5	3818	6.5	5108	15.0
2941	15.0	3819	6.5	5109	15.0
2941	15.0	3820	6.5	5110	15.0
2942	6.5	3821	6.5	5111	15.0
3301	15.0	3822	11.2	5112	15.0
3302	8.7	3823	15.0	5113	15.0
3303	15.0	3824	7.4	5201	15.0
3304	15.0	4101	15.0	5202	15.0
3305	6.5	4102	15.0	5203	15.0
3306	6.5	4103	15.0	5204	15.0
3307	6.5	4104	15.0	5205	15.0
3501	15.0	4105	15.0	5206	15.0
3502	15.0	4106	15.0	5207	15.0

(표 6-37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5208	15.0	5302	15.0	5308	15.0
5209	15.0	5303	15.0	5309	15.0
5210	15.0	5304	15.0	5310	15.0
5211	15.0	5305	15.0	5311	15.0
5212	15.0	5306	15.0		
5301	15.0	5307	15.0		

주: 종가세, 양허 품목 기준임.

자료: WTO, Comprehensive tariff data on the WTO websit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ariffs_e/tariff_data_e.htm)

6. 한-GCC FTA 협상 추진 동향과 전망

우리나라는 GCC의 에너지 자원 및 경제성장 잠재력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FTA를 추진하고 있다. 2007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중동 방문시 우리나라와 GCC간의 FTA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2007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예비협의를 개최되었다. 2008년 7월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경제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아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지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GCC와의 FTA는 농산물 부문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에틸알코올을 제외하면 큰 쟁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GCC는 중동의 사막 지대에 위치해 있어 농산물 생산이 극히 적어 우리나라가 GCC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는 규모는 계속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아랍에미리트의 농산물 수출은 1억 2500억 달러 수준으로 GCC 국가 중 가장 많으며, FTA 이후 GCC 국가로의 농산물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GCC>

- 2007.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중동 방문시 한-GCC FTA의 추진 필요성에 양측이 공감
- 2007. 4월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GCC 사무총장 앞 서한 송부
- 2007. 7월 대외경제장관회의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확인
- 2007.11월 예비협의를 개최(리야드)
- 2008. 1월 한-GCC FTA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 2008. 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 출범 공식 의결
- 2008.4.5-7 제1차 협상준비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리야드)
- 2008.7.9-7.10 제1차 협상 개최(서울)

2 부

FTA 협상 추진 중인 국가

제7장. 중국

제8장. 호주

제9장. 뉴질랜드

제10장. MERCOSUR

제11장. 터키

제12장. 러시아

제 7 장

중 국

1. 주요 경제지표

1.1. 농업 생산

중국의 농업 생산액은 증가추세에 있지만 제조업 등 다른 부문의 성장률에 비해 증가율이 낮아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추세에 있다. 농업 GDP는 1990년 7,662억 위안에서 2006년 4조 2,424억 위안으로 약 5.5배 증가하였다<표 7-1>. 그러나 같은 기간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에서 20%로 낮아졌다.

표 7-1. 중국의 국내총생산(GDP)과 농업생산액

	1990	1995	2000	2005	2006
GDP(억 위안)	18,548	60,794	99,215	183,868	210,871
GDP(억 달러)	3,910	7,281	11,982	22,592	26,446
농업생산액(억 위안)	7,662	20,341	24,916	39,451	42,424
농업생산액 비중	41%	33%	25%	21%	20%

자료: 『중국농촌통계연감』, 각 연도.

중국의 농작물 전체 파종 면적은 1990년 1억 4,836만 ha에서 2006년 1억 5,550만 ha로 5.8% 증가하였다<표 7-2>. 그러나 작물별 파종면적 구조상 농경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곡물 파종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채소와 과수, 두류와 유지류 등 경제성이 있는 다른 작물들의 재배면적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7-2. 중국의 작물별 경작 면적

단위: 천 ha

구분	농작물 파종면적	곡물류	두류	서류	유지류	면화	채소	과수
1990	148,362	94,073*	9,193*	9,121	10,900	5,588	6,338	5,179
1995	149,879	89,309	11,232	9,519	13,101	5,422	9,515	8,098
2000	156,300	85,264	12,660	10,538	15,400	4,041	15,237	8,932
2005	155,488	81,874	12,901	9,503	14,318	5,062	19,928	10,035
2006	157,021	83,126	12,434	9,929	13,736	5,409	20,512	10,042

* 1991년 자료임.

자료: 「중국농촌통계연감」, 각 연도.

주요 품목별 생산량은 파종 면적의 변화와 비슷한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에 따른 수량(收量) 증가로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품목은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2006년 곡물류 생산량은 4억 4,240만 톤으로 1990년에 비해 5.6% 늘어났다<표 7-3>. 재배면적은 줄었지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곡물류 가운데 쌀과 소맥은 2005년까지 생산량이 감소하다가 2006년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옥수수 와 대두는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쌀 생산량은 1990년 1억 3,250만 톤에서 2006년 1억 8,26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중·단립종 쌀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 중·단립종 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북 3성의 쌀 생산량은 같은 기간 970만 톤에서 2,13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동북 3성의 쌀 생산량 비중도 7.3%에서 11.7%로 늘어났다. 중·단립종 쌀 재배는 전통적으로 장립종 쌀 생산지역인 양자강 중하류 지역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소맥 생산량은 1990년 9,820만 톤에서 2005년 9,740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나 2006년 1억 45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 옥수수 생산량은 1990년에 비해 61.7% 증가한 1억 4,550만 톤으로 나타났다. 대두 생산량은 같은 기간 1,100만 톤에서 1,600만 톤으로 45.5% 증가하였다.

표 7-3. 중국의 식량작물 생산량

단위: 천 ha, 백만 톤

품 목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쌀	재배면적	33,064 (1,635)	30,744 (1,737)	29,962 (2,680)	28,847 (2,872)	29,295 (3,216)
	생산량	132.5 (9.7)	129.7 (10.3)	131.5 (17.9)	126.4 (20.1)	182.6 (21.3)
소맥	재배면적	30,753	28,860	26,653	22,793	22,962
	생산량	98.2	102.2	99.6	97.4	104.5
옥수수	재배면적	21,401	22,776	23,056	26,358	26,971
	생산량	90.0	112.0	106.0	139.4	145.5
대두	재배면적	7,560	8,127	9,307	9,591	9,280
	생산량	11.0	13.5	15.4	16.4	16.0
곡물 전체*	파종면적	94,073**	89,309	85,264	81,874	83,126
	생산량	418.8	429.6	420.6	444.1	442.4

주: 쌀은 정곡 기준. ()속은 동북3성의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임.

* 곡물류는 식량작물에서 서류를 제외한 통계치임.

** 1991년 자료임.

자료: 「중국농촌통계연감」, 각 연도.

「2005 전국농업통계적요」.

중국의 채소 생산량은 2002년 5억 2,861만 톤에서 2006년 6억 5,966만 톤으로 증가하였다<표 7-4>.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관심품목인 5종 채소(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가운데 무를 제외한 4개 품목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모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배추 재배면적은 1990년 35만 헥타르에서 2006년 262만 헥타르로 6.5배 늘어났으며 생산량은 820만 톤에서 1억 310만 톤으로 11.8배 증가하였다. 생산량이 재배면적보다 더 크게 늘어난 이유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고추 재배면적은 같은 기간 25만 헥타르에서 48만 헥타르로 88.9% 늘어났고 생산량은 480만 톤에서 884만 톤으로 84.2% 증가하였다. 양파 생산량도 재배면적이 1.5배 늘어난 결과 생산량이 500만 톤에서 1,900만 톤으로 2.8배 증가하였다. 재배면적이 2.4배로 늘어난 마늘 생산량은 1,832만 톤으로 1990년 대비 4.8배 늘어났다.

표 7-4. 중국의 채소 수급 현황

단위: 천 ha, 천 톤

품 목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배추	재배면적	354	580	1,220	2,609	2,624
	생산량	8,203	14,151	23,149	103,083	105,063
무	재배면적	-	-	1,566	1,181	1,220
	생산량	-	-	52,010	39,352	40,032
고추	재배면적	252	326	442	476	-
	생산량	4,801	6,242	8,199	8,844	-
마늘	재배면적	347	402	652	774	837
	생산량	3,923	5,374	12,357	16,541	18,324
양파	재배면적	248	376	666	873	-
	생산량	5,031	8,205	14,105	18,912	-
전체 채소	재배면적	6,338	9,515	15,237	19,928	20,512
	생산량	-	-	528,606*	564,515	659,662

* 2002년 자료임.

자료: 「중국농촌통계연감」, 각 연도.

과일 생산량도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재배면적 증가율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05년 과일 전체 생산량은 9,599만 톤으로 1990년의 1,874만 톤에 비해 4.1배 증가하였다<표 7-5>. 과일 소비는 소득 탄력적 품목으로, 국내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사과 생산량은 2006년 2,606만 톤으로 1990년에 비해 5.0배 증가하였다.

감귤 생산량은 1990년 486만 톤에서 2006년 1,790만 톤으로 2.7배 늘어났으며, 배 생산량도 같은 기간 235만 톤에서 1,197만 톤으로 약 4.1배 증가하였다. 포도는 1990년 이후 생산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여 2006년 생산량은 1990년

대비 6.3배 이상 증가한 579만 톤이었다. 복숭아 생산량도 128만 톤에서 822만 톤으로 늘어났다.

표 7-5. 중국의 과일 수급 현황

단위: 천 ha, 천 톤

품 목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사과	재배면적	1,636	2,954	2,254	1,890	1,899
	생산량	4,319	14,008	20,431	24,011	26,059
배	재배면적	490	869	1,015	1,112	1,087
	생산량	2,353	4,942	8,412	11,324	11,986
포도	재배면적	127	158	283	408	419
	생산량	859	1,742	3,282	5,794	6,270
감귤	재배면적	1,327	1,459	1,272	1,717	1,815
	생산량	4,855	8,225	8,783	15,919	17,898
복숭아	재배면적	518	557	467	677	670
	생산량	1,279	2,770	3,852	7,624	8,215
전체 과일	재배면적	5,179	8,098	8,932	10,035	10,042
	생산량	18,744	42,146	62,251	88,355	95,992

자료: 「중국농촌통계연감」, 각 연도.

중국의 2006년 육류 생산량은 8,050만 톤으로 세계 전체의 30%를 차지하였다.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체 육류 생산량의 64.5%에 해당하는 5,197만 톤이었다<표 7-6>. 그러나 생산 증가율은 다른 육류보다 낮아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쇠고기 생산량은 돼지고기나 가금육에 비해 적지만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쇠고기 생산량은 750만 톤으로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가금육 생산량도 1990년 323만 톤에서 1,507만 톤으로 약 3.6배 늘어났다.

표 7-6. 중국의 축산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품 목	1990	1995	2000	2005	2006
돼지고기	22,811	36,484	40,314	50,106	51,972
쇠고기	1,256	4,154	5,328	7,115	7,500
가금육	3,229	9,347	12,075	14,643	15,066
육류 합계	28,364*	52,000*	61,254	77,431	80,515

* 기타 육류 가운데 양고기만 합산한 물량임.

자료: 어명근 외(2006b).

1.2. 농산물 교역

1.2.1. 농산물 수출입

2006년 중국의 농산물 수출 총액은 310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9,691억 달러의 3.2%를 차지하였다<표 7-7>. 농산물 수출액 비중은 1995년 9.8%에서 2000년 6.3%로 감소하였으며 2004년부터 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농산물 수입총액은 2006년 약 320억 달러로 1995년 122억 달러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수입총액에서 농산물 비중은 9.2%에서 4%로 감소하였다.

중국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1995년 24억 5천만 달러에서 2000년 44억 5천만 달러로 늘어났으나 2004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었다. 2006년 농산물 무역수지는 약 10억 달러 적자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다.

채소류는 2000년 이후 중국 최대의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다. 2006년 채소류 수출액은 약 39억 8천만 달러로, 축산물(12억 2천만 달러)과 곡물류(11억 5천만 달러) 수출액을 합한 액수보다 많았다.

2000년 이후 중국의 주요 수출농산물은 옥수수, 돼지고기(생축 포함), 차(茶), 땅콩 등이었다. 그러나 옥수수 수출액은 작황에 따라 연도별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액도 질병 발생 등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채소류와 과일류, 축산물 등 노동집약적 품목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토지사용적인 곡물류 수출액은 감소하고 있다.

표 7-7. 중국의 농산물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1995	2000	2004	2005	2006
수출총액	1,487.8	2,492.0	5,933.7	7,620.0	9,690.7
농산물 수출액	146.2	157.0	230.9	275.8	310.3
농산물수출비중(%)	9.8	6.3	3.9	3.6	3.2
수입총액	1,320.8	2,250.9	5,614.2	6,601.2	7,916.1
농산물 수입액	121.7	112.5	279.4	287.1	319.9
농산물수입비중(%)	9.2	5.0	5.0	4.4	4.0
농산물 무역수지	24.5	44.5	-48.5	-11.3	-9.6

자료: 어명근 외(2008b) 및 농수산물유통공사(2007).

1.2.2. 농산물 품목별 수출입 동향

곡물류 수출입 물량은 연도별로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쌀은 1995년 164만 톤을 수입한 이후 2000년 295만 톤을 수출하였으며 2007년에도 130만 톤 이상을 수출하였다<표 7-8>. 소맥은 1995년까지 1,000만 톤 이상을 수입하였으나 이후 작황에 따라 수입량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2007년에는 8만 여 톤을 수입한 반면 70만 톤 이상을 수출하였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인 옥수수는 1990년대 후반까지 수입이 많았으나 이후 순수출국으로 전환되어 2000년 수출량은 1,000만 톤을 넘어선 바 있다. 2007년에는 480만 톤을 수출하였다.

대두는 2000년대 중국의 최대 수입농산물이 되었다. 대두는 1995년까지 수출량이 더 많았으나 2000년 수입량이 1,000만 톤을 넘어선 이래 2005년 2,660만 톤, 그리고 2007년 3,000만 톤 이상을 수입하였다. 주로 착유용과 사료용으로

로 소비되는 대두 관련 품목의 수입은 대두박과 대두유를 포함할 경우 중국의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7-8. 중국의 식량작물 수출입 동향

단위: 천 톤

품목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쌀	수출	405.0	47.0	2,953.0	672.0	1,236.9	1,339.7
	수입	63.0	1,642.0	240.0	520.0	730.0	471.5
소맥	수출	6.0	16.0	263.0	260.0	395.1	735.0
	수입	13,487.0	11,586.0	876.0	3,540.0	610.0	83.4
옥수수	수출	3,405.0	108.0	10,485.0	8,611.0	3,073.9	4,847.5
	수입	5,440.0	5,181.0	3.0	4.0	65.1	35.1
대두	수출	940.0	375.0	213.0	396.0	379.0	430.3
	수입	1.0	294.0	10,419.0	26,590.0	28,284.2	30,818.3

주: 쌀은 정곡 기준임.

자료: 어명근 외(2008b)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중국의 채소류 교역은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고추와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 수출이 많으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7-9>. 마늘 수출은 1990년 11만 7천 톤에서 2007년 136만 톤으로 늘어났으며, 고추 수출량도 같은 기간 천 톤에서 7만 6천 톤으로 증가하였다.

표 7-9. 중국의 채소 수출입 동향

단위: 천 톤

품목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배추	수출	26.8	60.2	77.7	90	-	-
	수입	7.3	14.3	14.1	12	-	-
무와 당근	수출	-	37	62.3	389.9	430.9	418.6
	수입	-	-	-	0.3	-	1.5
고추	수출	1.1	4.5	5.3	92.2	93.1	76.3
	수입	0.4	0.5	1.8	1.1	0.2	2.6
마늘	수출	117	141.1	362.9	1,155.60	1,161.0	1,362.6
	수입	-	-	0.1	0.4	0.3	0.3
양파	수출	20.1	58.2	165.7	535.3	531.1	616.8
	수입	31.2	42.4	0.6	0.2	2.4	0.4

자료: 어명근 외(2008b)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과일류 역시 수입보다는 수출이 많으며, 특히 사과와 배, 감귤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과 수출량은 1990년 약 6만 톤에서 2007년 100만 톤을 넘었다<표 7-10>. 배 수출도 같은 기간 4만 4천 톤에서 4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감귤 수출량은 1990년까지 전혀 없었으나 1995년 13만 톤, 그리고 2007년 약 40만 톤이 수출되었다. 한편 전통적으로 순수입 품목인 포도 수출도 늘어나고 있어 2007년 수출은 5만 5천 톤으로 4만 3천 톤에 그친 수입량보다 많아 순수출국으로 전환되었다. 복숭아도 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복숭아 수출량은 약 2만 4천 톤이었다.

표 7-10. 중국의 과일 수출입 동향

단위: 천 톤

품목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사과	수출	62.4	108.9	297.7	824.1	804.3	1,019.1
	수입	98.0	13.7	25.5	33.2	31.1	36.4
배	수출	44.3	90.1	146.4	368.3	375.3	404.9
	수입	3.6	0.2	0.6	0.1	-	-
포도	수출	0.7	4.9	1.6	34.6	34.3	55.4
	수입	14.4	5.0	53.2	68.8	46.0	42.8
감귤	수출	-	131.8	191.4	426.1	335.8	397.6
	수입	-	2.2	53.3	53.9	-	-
복숭아	수출	0.8	1.6	2.4	17.1	20.2	24.4
	수입	-	0.2	1.0	0.1	-	0.1

자료: 어명근 외(2008b)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 수출은 돼지고기와 생축(돼지 및 가금류)이 주도하고 있다. 돼지고기 수출은 1990년 12만 톤에서 2006년 27만 톤까지 늘었으나 2007년 13만 톤으로 줄었다<표 7-11>. 돼지 생축 수출도 1990년 300만 마리에서 2007년 160만 마리로 감소하였다. 가금 생축 수출량은 1995년 5천만 마리를 넘었으나 이후 조류 독감 발생 등으로 2006년 1,900만 마리 수준으로 줄었다.

중국의 축산물 수입은 가금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수입량은 87만 톤까지 증가하였으나, 2007년 77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표 7-11. 중국의 축산물 수출입 동향

단위: 천 톤, 만 마리

품목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돼지고기	수출	120.0	150.0	50.0	250.0	270.0	133.6
	수입	-	3.0	177.0	200.0	-	85.8
쇠고기	수출	100.0	20.0	20.0	20.0	30.0	29.9
	수입	-	4.0	10.0	14.0	-	-
가금육	수출	38.0	249.0	357.0	216.0	236.6	239.9
	수입	68.0	264.0	871.0	384.0	572.9	774.5
산돼지	수출	300.0	253.0	203.0	176.0	172.0	160.9
산가금	수출	4,784.0	5,263.0	4,890.0	2,502.0	1,899.0	-

자료: 어명근 외(2008b)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1.2.3.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

한국과 중국간 교역은 1992년 수교 이래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총액은 약 820억 달러로 2000년보다 3.4배 증가하였다<표 7-12>.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같은 기간 1.5배 증가한 2억 9,500만 달러에 그쳐 농림축산물 수출이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에서 0.4%로 낮아졌다.

2007년 한국의 대중 수입총액은 630억 달러로 2000년 128억 달러의 4.9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중국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6억 3,700만 달러에서 31억 달러로 늘었지만 농림축산물 수입이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서 4.9%로 하락하였다.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2000년 56억 5,600만 달러에서 2007년 19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림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같은 기간 12억 8,700만 달러에서 28억 600만 달러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국가 전체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액은 2005년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농림축산물 무역수지 적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7-12. 한국-중국 농산물 수출입액

단위: 백만 달러

연도		1995	2000	2001	2003	2005	2007
구분							
수출	국가 전체	9,144	18,455	18,190	35,110	61,915	81,985
	농림축산물	95.3	117.6	108.7	166.1	231.2	294.6
	(비율 %)	(1.0)	(0.6)	(0.6)	(0.5)	(0.4)	(0.4)
수입	국가 전체	7,401	12,799	13,303	21,909	38,648	63,028
	농림축산물	637.2	1,405.0	1,111.2	2,061.6	2,216.5	3,100.7
	(비율 %)	(8.6)	(11.0)	(8.4)	(9.4)	(5.7)	(4.9)
무역 수지	국가 전체	1,743	5,656	4,887	13,201	23,267	18,957
	농림축산물	-541.9	-1,287	-1,003	-1,896	-1,985.3	-2,806.1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연도

2007년 한국의 대중 최대 수출 농산물은 5,400만 달러 수출된 자당이다. 라면 수출액은 2,490만 달러, 난초는 2,180만 달러였다. 2000년 4,000만 달러 이상 수출되던 합판은 2007년 40만 달러로 수출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섬유판도 같은 기간 68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로 수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였다<표 7-13>.

대중 수출액이 1,000만 달러를 넘는 품목은 2000년 합판과 자당 두 개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자당, 라면, 난초, 소스류, 밤, 커피 조제품 등 여섯 개로 늘었다. 그 밖에 비스킷과 곡류 조제품도 1,000만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대중 농산물 수출이 점차 고급화, 고가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수출액 상위 10개 수출품목 가운데 2000년 10대 수출품에 포함되었던 품목은 자당과 라면, 밤, 베이커리 제품 등 4개에 불과하여 대중 농산물 수출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수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한 품목은 자당, 라면, 난초, 소스류, 커피 조제품, 캔디 등 소수에 불과하다. 다른 품목들은 증가세를 보인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거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산 농림축산물의 대중 수

출은 고가의 가공식품과 고급화된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품목 구성이나 수출액 규모가 불안정한 실정이다.

표 7-13. 한국-중국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품명	1995	2000	2001	2003	2005	2007
농림축산물 합계	95.3	117.6	108.7	166.1	231.2	294.6
자당	14.8	12.0	19.7	24.0	36.8	53.9
라면	0.5	2.2	2.9	12.9	12.6	24.9
난초	-	1.2	2.2	9.6	13.9	21.8
소스류	0.1	-	4.5	8.2	11.2	18.6
밤	1.5	1.9	3.1	21.6	20.7	16.7
커피 조제품	-	0.7	0.8	6.5	13.4	16.0
비스킷	-	1.2	1.7	2.0	18.3	9.6
곡류 조제품	-	1.8	1.1	0.8	7.7	9.4
기타 베이커리 제품	1.6	2.5	1.9	3.6	1.1	8.3
캔디	3.6	0.2	0.3	1.8	3.9	7.2
권련	15.8	0.4	0.7	3.6	6.8	6.7
기타 소스 제품	-	0.8	1.7	1.3	1.4	5.4
인스턴트면	0.5	0.2	0.7	0.8	2.3	3.9
쇼트닝	0.1	2.0	1.8	3.0	2.6	3.4
채소종자	0.9	3.0	2.2	2.6	3.4	2.9
위스키	0.3	1.9	2.0	3.0	1.6	2.9
홍삼	1.9	2.5	2.5	2.0	4.1	2.8
된장	0.4	0.1	0.2	0.9	3.1	2.1
혼합조미료	0.4	0.9	1.1	3.4	2.2	2.1
밀가루	0.3	2.8	2.3	1.8	2.1	1.5
검	3.3	0.7	0.7	3.6	9.2	1.4
기타 채소	2.2	0.5	0.8	0.7	3.0	0.8
합관	43.1	40.4	20.3	15.3	4.4	0.4
섬유관	0.5	6.8	4.2	2.4	1.6	0.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한편 한국의 농림축산물 수입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더 빠르게 늘어나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2007년 한국의 농림축산물 수입총액은 약 161억 8,300만 달러로 2000년의 84억 5,000만 달러에 비해 약 92% 정도 늘어났다<표 7-14>. 같은 기간 중국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약 1.8배 정도 증가하여 중국의 한국 농림축산물 수입 시장 점유율은 13.1%에서 19.2%로 높아졌다.

2007년 현재 한국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에서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옥수수이다. 옥수수 수입액에 따라 중국산 농산물 수입총액이 크게 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수수는 대중 수교 이후 줄곧 최대 수입품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 수입액은 6억 1,360만 달러로 2001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중국산 옥수수 수입액은 중국 내 작황과 가격에 따라 급변하는 양상을 보여 2001년 2억 9,900만 달러에서 2003년 9억 790만 달러로 증가한 바 있다.

중국산 밀 수입액은 2007년 2억 2,590만 달러로 합판을 제치고 제2의 수입품목으로 부상하였다. 2005년 3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밀 수입액이 2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2007년 이후 지속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합판 수입액도 1억 6,000만 달러로 증가하여 제3의 수입품에 올랐다. 최근 수입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김치는 수입액이 1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쌀과 대두, 고추 수입액도 각각 8,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2007년 쌀과 고추, 대두, 당근 등 대부분 품목의 수입액은 2001년에 비해 평균 5~6배 늘어났으며 김치 수입은 500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수입액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품목은 기타 한약재 외에 거의 없다. 최근 국제 곡물류 가격 상승에 따라 옥수수와 쌀, 밀, 대두 등 4대 곡물류 수입이 2000년 7억 660만 달러에서 2007년 10억 500만 달러로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산 농산물 수입에서 곡물류 비중은 32.4%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옥수수와 밀 등 일부 품목의 수입액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양상이지만, 대부분 품목은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수출과 달리 안정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중 농산물 수입액과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14. 한국-중국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품명	1995	2000	2001	2003	2005	2007
농림축산물 합계	637.2	1,405.0	1,111.2	2,061.6	2,216.5	3,100.8
옥수수	4.1	659.9	299.0	907.9	820.0	613.6
밀	-	-	37.5	94.8	3.1	225.9
합관	5.3	41.4	44.3	67.0	80.3	159.5
김치	-	0.2	0.2	10.3	51.3	110.8
쌀	-	37.0	18.3	36.0	33.5	83.1
대두	0.1	9.7	12.5	20.1	28.5	82.9
고추	12.6	10.4	14.0	39.4	49.7	80.7
기타 과일	10.5	15.9	19.4	26.0	41.6	58.8
전분박	3.5	5.4	5.1	3.8	25.7	54.5
기타 채소	10.6	21.1	20.1	26.8	31.0	45.2
당근	-	3.1	4.8	14.0	27.9	36.8
참깨	44.0	26.0	16.1	42.9	31.3	34.2
땅콩	6.9	21.0	18.9	21.7	22.8	33.3
마늘	5.7	9.1	15.5	14.6	21.2	31.7
설탕박	3.6	9.3	15.3	16.0	16.1	31.0
대두박	69.2	2.8	3.3	24.4	4.2	26.5
기타 사료	23.5	2.3	4.9	11.9	14.5	25.9
들깨	10.5	4.8	1.3	11.4	12.5	23.5
고사리	7.2	15.9	14.8	16.2	18.4	22.8
팥	7.9	12.5	12.7	12.3	17.3	21.0
앞담배	-	-	1.2	10.2	14.0	18.8
보리	-	2.3	2.3	1.7	5.4	17.5
기타 근채류	-	9.5	10.3	17.6	17.3	16.1
한약재	43.1	35.9	37.0	32.4	35.2	9.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2. 농산물 관세

2.1. 관세 부과 형태

중국의 관세는 수입관세와 수출관세로 구분된다. 수입관세는 대상국가에 따라 보통세율, 최혜국세율, 아태무역협정(방콕협정)세율, 특혜세율로 나누어진다. 중국이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품목을 양허함에 따라 수입관세율은 최혜국세율(실행세율)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수입 물품에는 관세 이외에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증치세는 일반적으로 13%가 부과되지만 의약품 엑스, 조제저장 처리된 채소 및 과일, 유제품 등 식품류에는 17%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의 관세 부과 형태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되며 대부분 종가세 형태를 갖는다. HS 분류상 10단위 기준으로 1,399개의 농산물 가운데 8개의 종량세 부과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종가세가 부과되고 있다<표 7-15>. 종량세 적용 품목은 가금육(HS-0207) 6개와 닭의 내장(HS-0504) 1개, 맥주(HS-2203) 등이다. 종가세 대상 품목 1,391개이며, 평균 양허세율은 15.0%이다.¹³

표 7-15. 중국의 관세부과 형태별 농산물 품목 현황

단위: 개

총 품목수	종가세 품목수	종량세 품목수	종가세 평균양허세율(%)
1,399	1,391	8	15.0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china.kita.net> (2008)

13 WTO 규정상 농산물로 분류되는 것은 어패류인 HS 03류를 제외한 HS 01류(산동물)~HS 24류(담배)와 29류(유기화합물)와 33류(향료·화장품), 35류(카세인·알부민·변성전분·효소), 41류(원피·가죽), 43류(모피, 모피제품), 50류(견·견사, 견직물), 51류(양모·수모), 52류(면·면사·면직물), 53류(마류의 사와 직물) 중 농산물로 분류된 일부 품목임.

품목군별 양허세율은 설탕 및 당류가 평균 27.4%로 가장 높다<표 7-16>. 음료와 담배, 곡물 및 곡물 가공품의 양허세율도 시장접근쿼터 외 관세율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무관세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군은 기타 농업생산물과 육류이다. 반면 유제품, 차류, 설탕 및 당류, 면화 품목군에는 무관세 품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6. 중국의 농산물 품목류별 수입관세율

단위: %

품목군	양허세율(final bound tariff)			수입비중
	평균	무관세 비중	최고세율	
육류	14.8	9.4	25	0.1
유제품	12.2	0	20	0.1
과일, 채소	15.0	4.8	30	0.3
차류	14.9	-	32	-
곡물 및 곡물 가공품	23.7	2.6	65	0.2
유지작물 및 유지	11.7	6.2	30	1.7
설탕 및 당류	27.4	0	50	0.1
음료 및 담배	24.1	2.5	65	0.2
면화	22.0	0	40	0.7
기타 농업 생산물	11.9	10.2	38	0.6

자료: WTO(http://www.wto.org/english/thewto_e/countries_e/china_e.htm)

2.2. 농산물 품목별 관세율

중국의 관세율은 HS-8 단위로 표기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쿼터 내 관세율을 제외한 총 1,391개의 종가세를 HS-4 단위인 호(heading)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의 HS-4 단위 기준 품목군별 평균 관세율은 베르못과 기타 포도주(2205호)가 65%로 가장 높았으며 과실주(2206호)가 두번째로 높은 53.6%였다.

중국의 곡물류 관세는 상당히 특이한 구조를 띤다. 같은 곡물류지만 주로 식용인 밀(1001호)과 쌀(1006)은 45%에 가까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옥수

수(1005호)의 관세율도 30%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료용으로 소비되는 잡곡류인 호밀(1002호), 보리(1003호), 귀리(1004호), 수수(1007호) 등의 관세율은 1% 내외의 무관세 수준으로 나타났다. 축산업의 주요 원료인 목초종자(1209호)는 무관세로 양허되었다.

그 밖에 고율관세 품목군으로 파이프 담배(2403호)에 57%의 세율이 부과되며 사탕수수당(1701호)도 40.67%로 높았다. 또한 초본 딸기(0811호와 0812호)와 곡분(1104호) 및 곡물 가공품(1104호), 그리고 과일채소 가공품(2006호)에도 30% 내외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말, 소, 양과 같은 산 동물 또는 종축(0101~0106호)과 사료 원료인 박류(2301~2308호)에는 5% 안팎의 낮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종자용 완두, 녹두(0713호)와 채유용 및 사료용 대두(1201호)에도 3% 이하의 저율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농산물 관세체계는 자국민의 식량안보에 핵심적인 주곡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동시에 필수식품인 육류 등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사료용 작물에 대해서는 영세율에 가까운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유연한 구조를 띤다.

또한 종우와 종돈, 정액과 수정란, 종자류 등에도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축산업과 사료제조업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생산 농가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술과 담배 등 기호품은 품목 분류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여 국민의 소비생활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파이프 담배나 베르뭇과 기타 포도주 등 사치성 물품에는 고율관세를 적용하지만 입담배와 권련, 일반 포도주에는 평균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표 7-17. 중국의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품목군(호)	평균 관세율	품목군(호)	평균 관세율	품목군(호)	평균 관세율
0101	5.00	0504	19.14	0804	18.24
0102	5.00	0505	10.00	0805	14.29
0103	7.50	0506	12.00	0806	11.50
0104	5.00	0507	9.20	0807	17.20
0105	6.00	0508	12.00	0808	12.00
0106	6.67	0509	15.00	0809	13.75
0201	14.67	0510	5.10	0810	22.21
0202	16.33	0511	4.00	0811	30.00
0203	17.00	0601	6.40	0812	30.00
0204	17.22	0602	6.11	0813	23.67
0205	20.00	0603	16.50	0814	25.00
0206	16.74	0604	14.33	0901	14.33
0207	19.80	0701	13.00	0902	15.00
0208	21.20	0702	13.00	0903	10.00
0209	21.71	0703	13.00	0904	20.00
0210	25.11	0704	12.00	0905	15.00
0401	15.00	0705	11.50	0906	10.85
0402	13.26	0706	13.00	0907	3.00
0403	15.00	0707	13.00	0908	6.33
0404	13.00	0708	13.00	0909	15.83
0405	15.00	0709	12.76	0910	13.14
0406	12.60	0710	12.60	1001	44.67
0407	15.71	0711	13.00	1002	1.50
0408	20.00	0712	13.00	1003	1.50
0409	15.00	0713	2.97	1004	1.00
0410	19.17	0714	10.33	1005	29.83
0501	15.00	0801	12.26	1006	44.97
0502	20.00	0802	19.27	1007	1.00
0503	15.00	0803	10.00	1008	1.80

(표 7-17 계속)

품목군(호)	평균 관세율	품목군(호)	평균 관세율	품목군(호)	평균 관세율
1101	46.30	1508	10.00	2003	25.00
1102	27.36	1509	10.00	2004	19.00
1103	29.28	1510	10.00	2005	23.10
1104	32.80	1511	25.19	2006	30.00
1105	15.00	1512	9.48	2007	17.50
1106	16.67	1513	10.00	2008	17.81
1107	10.00	1514	27.10	2009	17.43
1108	17.50	1515	14.67	2101	28.58
1109	18.00	1516	15.00	2102	25.00
1201	2.40	1517	26.25	2103	20.17
1202	10.00	1518	10.00	2104	23.50
1203	15.00	1520	20.00	2105	19.00
1204	15.00	1521	20.00	2106	18.10
1205	18.22	1522	20.00	2201	18.13
1206	7.50	1601	15.00	2202	31.25
1207	8.44	1602	14.45	2204	20.50
1208	12.00	1603	23.60	2205	65.00
1209	0.00	1604	11.07	2206	53.60
1210	15.00	1605	8.65	2207	33.00
1211	7.61	1701	40.67	2208	18.36
1212	17.11	1702	26.00	2209	20.00
1213	12.00	1703	8.00	2301	3.50
1214	7.00	1704	11.00	2302	4.60
1301	12.60	1801	8.00	2303	5.00
1302	14.84	1802	10.00	2304	5.00
1401	10.00	1803	10.00	2305	5.00
1402	15.00	1804	22.00	2306	5.00
1403	15.00	1805	15.00	2307	5.00
1404	8.00	1806	8.20	2308	5.00
1501	10.00	1901	16.67	2309	10.48
1502	8.00	1902	17.63	2401	10.00
1503	10.00	1903	15.00	2402	25.00
1504	12.80	1904	28.75	2403	57.00
1505	20.00	1905	18.33	2905	11.00
1506	21.00	2001	25.00	3301	19.15
1507	27.10	2002	20.80	3501	10.00

(표 7-17 계속)

품목군(호)	평균 관세율	품목군(호)	평균 관세율	품목군(호)	평균 관세율
3502	10.00	4102	10.20	5102	9.00
3503	12.00	4103	19.64	5103	13.19
3504	5.50	4301	19.64	5201	20.50
3505	16.00	5001	6.00	5202	10.00
3809	10.00	5002	9.00	5203	20.20
3824	14.00	5003	9.00	5301	6.00
4101	6.09	5101	19.50	5302	5.00

자료: 중국 해관총서. 2004. 1.

3. 중국의 FTA 체결 사례 분석¹⁴

3.1. 중·칠레 FTA

중국과 칠레는 2005년 10월 28일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타결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협정을 발효토록 하였다. 양국은 상품 분야의 포괄적인 관세 철폐에 합의하고 중국이 전체 7,550개의 품목 가운데 97.2%인 7,336개, 칠레가 7,902개 품목의 98.1%인 7,750개 품목의 관세를 각각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표 7-18>.

중국의 양허안에 따르면 즉시 철폐가 전체 품목의 37.2%인 2,806개, 2년간 균등 철폐가 25.8%인 1,947개, 5년간 철폐는 12.9%인 973개, 10년간 철폐 21.3%인 1,610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전체의 2.8%인 214개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칠레 양허안은 즉시 철폐가 전체의 74.6%인 5,891개, 5년 철폐가 13.3%인 1,048개, 10년간 철폐가 10.3%인 811개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의 1.9%인 152개는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4 어명근 외(2008a)의 관련 내용을 인용하였음.

표 7-18. 중·칠레 FTA 관세 철폐 일정

단위: 개

구분	이행 기간별 관세 철폐 계획					예외 품목	총계
	즉시 철폐	2년간 균등 철폐	5년간 균등 철폐	10년간 균등 철폐	소계		
중국	2,806 (37.2)	1,947 (25.8)	973 (12.9)	1,610 (21.3)	7,336 (97.2)	214 (2.8)	7,550 (100.0)
칠레	5,891 (74.6)	-	1,048 (13.3)	811 (10.3)	7,750 (98.1)	152 (1.9)	7,902 (100.0)

주: () 속은 비중(%)임.

중국이 10년간 관세를 철폐하는 농수산물 1,101개로 전체 농수산물 1,151개의 95.7%이다<표 7-19>. FTA 발효 즉시 철폐는 220개로 전체 농수산물의 19.1%, 2년간 균등 철폐는 245개로 21.3%에 달한다, 또한 5년간 철폐가 23.3%인 268개, 10년간 철폐 품목은 32%인 368개로 구성되어 있다. 10년간 철폐 품목에는 조제분유와 포도, 혼합주스 등 중국이 칠레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농산물은 4.3%인 50개로 옥수수, 쌀, 밀, 사탕수수당, 기타 가공곡물류 등 현행 관세율 40% 이상인 품목들이 대부분이다.

칠레는 전체 농수산물 1,427개의 98.2%인 1,402개를 10년간 철폐한다. 즉시 철폐 품목은 전체의 95%인 1,356개나 되어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품목을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5년간 철폐 품목은 43개로 전체 농산물의 3%, 10년간 철폐는 3개로 0.2%에 불과하다.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쌀과 밀, 사탕수수당 등 칠레의 관세율이 높은 25개 품목으로 전체 농수산물의 1.8%에 불과하다.

표 7-19. 중·칠레 FTA 농수산물 관세 철폐 계획

단위: 개

구분	이행 기간별 관세 철폐 계획					예외 품목	총계
	즉시 철폐	2년간 균등 철폐	5년간 균등 철폐	10년간 균등 철폐	소계		
중국	220 (19.1)	245 (21.3)	268 (23.3)	368 (32.0)	1,101 (95.7)	50 (4.3)	1,151 (100.0)
칠레	1,356 (95.0)	-	43 (3.0)	3 (0.2)	1,402 (98.2)	25 (1.8)	1,427 (100.0)

주: () 속은 비중(%)임.

중국과 칠레 양국의 FTA 협정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일반 세이프가드(Global Safeguard Measures) 등에 대한 WTO 규정을 따르되 양자간 세이프가드(Bilateral Safeguard Measures)는 국제 FTA 협정의 관례를 참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간 FTA에서 서비스 무역과 투자 분야는 제외하였다.

먼저 원산지 규정 분야에서는 원산지 판정 기준을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과 함께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을 채택하였으며 실질적 변형 여부는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역내 부가가치(RVC) 포함 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원산지로 인정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RVC 50%를 적용하거나 세번변경 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TC)으로 HS-2 단위인 부류(部類; Chapter)의 변경(Change in Chapter; CC) 또는 HS 4 단위인 호(號; Heading)의 변경(Change in Tariff Heading; CTH)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른 국가들의 FTA 원산지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이다. 역내 부가가치 계산 방식은 FOB 가격에서 역외재료가치(VNM)를 뺀 값의 비율을 계산하는 공제법(Build-down Method)을 적용한다.

중국과 칠레간 FTA 협정의 첫 번째 특징은 양국 모두 농업강국이면서도 양허 제외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칠레는 10년간 관세 철폐 비율이 각각 95.7%와 98.2%로 높지만 자국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를 허용

하고 있다. 중국은 농산물 전체의 4.3%인 50개, 칠레는 1.8%인 25개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칠레 FTA의 두 번째 특징은 농산물 수출보조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협정문 제12조는 WTO 차원의 다자간 농산물 수출보조 철폐 계획에 공동 참여하는 동시에 상대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에 보조를 신설하거나 기존 보조를 유지하지 않기로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칠레의 FTA 협정은 무역구제(Trade Remedies) 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4장 44조와 45조는 양자간 긴급관세 발동 조건과 최초 발동 기간, 그리고 기간 연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한-중 FTA 체결시 중국산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가격 하락과 생산 감소에 대비한 ‘양자간 긴급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2. 중·홍콩 경제동반자 협정(CEPA)

중국은 2003년 홍콩 및 마카오와 경제동반자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을 체결하였다. 2004년 1월 1일 발효된 CEPA는 2008년 12월 현재 다섯 차례의 추가협상을 통해 서비스와 건설 부문을 포함한 각 분야의 협정을 구체화하였다.

중국과 홍콩간 CEPA 체결의 배경에는 홍콩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국 정부의 결정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화권 경제공동체 정책인 ‘한 국가, 네 지역(一國四制)’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조치로 간주된다.

중·홍콩 CEPA 협정의 주요 내용은 중국이 발효 즉시 374개(HS-8 단위 기준)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2008년까지 관세 감축 대상품목을 1,503개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관세 철폐 대상 품목에 농산물은 43개 가공식품만이 포함되어 있다. 관세 철폐 가공식품 가운데 2004년 관세율 30%인 품목이 7개, 29~11%인 품목은 27개, 나머지는 10% 미만이었다.

중·홍콩 CEPA는 상품교역 위주의 다른 FTA 협정과 달리 금융과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내용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WTO 가입과 FTA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홍콩과 CEPA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낙후된 본토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중·홍콩 CEPA는 중국이 유가공품과 동물성 가공품, 그리고 당류 등을 포함한 43개 가공식품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 철폐로 양허한 사실 외에 농업부문에 대해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FTA 체결시 신선농산물 수출보다는 가공식품의 수출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3. 중·뉴질랜드 FTA

중국은 홍콩, 마카오, ASEAN, 칠레, 파키스탄 등 개도국과의 FTA를 통해 상품분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기존 FTA는 서비스와 투자 협정은 유보하는 낮은 수준의 FTA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8년 4월 타결되어 10월 1일부터 발효된 뉴질랜드와의 FTA는 서비스와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로 중국이 선진국과 체결한 최초의 FTA라는 의미를 갖는다. 중국의 기존 FTA와 달리 자연인 이동, 지식재산권, 기술규정의 상호 인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이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외교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대미 견제와 차별화를 위한 전략적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역내 리더십 강화와 수출시장의 다변화, 그리고 해외 에너지 및 원자재 확보 등의 동기도 작용하였다. 또한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뉴질랜드의 최근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FTA 체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호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반면 뉴질랜드는 주요 교역국 가운데 호주 외에 FTA 체결한 사례가 없

어 외교통상 정책적으로 고립된 형국을 보여왔다.

중·뉴 FTA에서 중국은 뉴질랜드가 수출하는 품목의 약 96%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였다. 나머지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라디에타 소나무(Radiata pine)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뉴질랜드산 모직물에 대해서는 국별 쿼터(Country-specific Tariff Rate Quota)를 적용하였다<표 7-20>. 쿼터량은 2009년 25,000톤에서 2017년까지 매년 5%씩 증량한다. 뉴질랜드는 국별쿼터와는 별도로 중국의 전체 모직물 쿼터에도 참여 가능하다. 그러나 가공목재 및 종이제품에 관해서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산 버터, 액상우유 및 치즈의 관세는 2017년까지 철폐한다. 중국은 특정품목에 대해 특별세이프가드 및 중간심사조치(Mid-term review mechanism)를 도입하였다. 탈지 및 전지분유(2019년까지 관세 철폐)는 중간심사조치를 적용하여 최대 1년 동안 관세 삭감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관세 철폐 기간이 10년에서 12년인 품목들은 관세 철폐 후 5년간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7-20. 중국의 관세철폐 계획

관세범위	관세철폐 시기	비고
0%~5%	즉시철폐	NZ 대중 수출의 약 35%
5%~20%	2012년까지 철폐	NZ 대중 수출의 약 31%
20% 초과	2013년까지 철폐	20% 이상인 상품은 발효첫날에 20%로 시작
기타	2019년까지 철폐	
모직물(Wool) 및 모직 상의(Wool tops)	국별쿼터 (Country-Specific Tariff Quota)	

중국은 뉴질랜드산 쇠고기와 양고기, 식용 부속고기에 대해 2016년까지 관세를 철폐한다. 그 밖에 사과는 2012년, 키위는 2016년까지 관세를 철폐한다. 수산물에는 현행 관세 5% 이하의 즉시 철폐, 5% 이상은 2012년까지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편 양허 제외 품목은 HS-8 단위 기준 214개 품목이다. 그 가운데 농산물은 동식물성 유지류 19개와 곡물류 15개, 곡분 10개 등 52개이다<표 7-21>.

표 7-21. 중·뉴질랜드 FTA 양허제외 농산품

품목명	HS 8단위 개수
곡물	15
곡물의 분과조분·밀가루·전분	10
동식물성 유지	19
당류·설탕 과자	6
면사, 면직물	2

중·뉴 FTA의 첫 번째 특징은 원산지 규정에서 중국이 체결한 기존 FTA와 달리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부속서 5). 농산물 품목특정적 원산지 규정은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or Produced Criterion)과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부류는 산 동물(01류)과 곡물(10류), 그리고 음료와 주류(22류)의 일부 품목뿐이며 나머지는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부가가치기준(Regional Value Contents; RVC)은 농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동식물 검역(SPS) 분야에서 양국이 위해성 분석(risk analysis) 제도와 함께 동식물 유병의 지역화 개념을 도입하기로 이행약속(Implementing Arrangements)¹⁵하였다. 특히 양국은 SPS 분야의 효과적인 정보 교환과 원활한

15 뉴질랜드-중국 FTA 협정문 제80조(Adaptation to Regional Conditions) 1항은 “양국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 당사국이 어느 지역 또는 국토의 일부가 병해충이나 질병이 없다고 입증할 경우 또는 상대국의 평가에 의거, 병해충 발생이 낮은 지역으로 판명될 경우 이러한 상태를 인정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항은 지역화 적용에 관한 원칙과 기준 및 절차를 양국 공동으로 마련하여 제77조 이행약속의 제7장 C항의 1에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음(「NZ-China FTA; specific in agriculture」).

업무 협조 등을 위해 공동관리위원회(Joint Management Committee)를 구성하기로 명시하였다(제88조).

중·뉴 FTA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중국만 일방적으로 관세 철폐 예외 품목을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 중국에 관세 철폐 예외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농업분야의 무역구제 수단으로 특별농산물 SG(Specific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ment; SASM)를 명시한 ‘부속서 2’를 참고할 수 있다. FTA 협정의 SASM는 WTO 규범상 농산물 SSG 규정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FTA 체결시 특별농산물 SG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식물 검역(SPS) 분야에서 중국 측이 동식물 유병 지역화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뉴질랜드는 양국이 동식물 유병의 지역화를 검토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대해 지역화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

4. 한-중 FTA 추진 동향과 예상 쟁점¹⁶

4.1.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동향

우리나라의 FTA 일정표에서 2004년까지는 중국이 미국, EU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협상을 추진할 거시경제권 대상국으로 분류되었으며 중국도 우리나라와의 FTA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2003년 일본, ASEAN 등과 FTA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중국이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였으며, 우리나라도 경제와 교역이 활목할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던 중국과의 FTA

16 어명근 외(2008b)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2001년 11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관세장벽이 높은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산업계에 확산되면서 민간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 결과 한-중 양국은 2004년 11월 FTA 체결을 위한 민간 공동연구에 합의하고 2005년 3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공동연구 결과 양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양국 모두 국내총생산(GDP)과 무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양국은 정부간 공식 협상의 전 단계로서 FTA 체결에 관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2007년 3월 중국 북경에서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된 이래 2008년 6월까지 본회의 5회, 농업전문가 회의 3회 등 모두 8차례 회의를 가졌다. 산관학 공동연구는 정부가 참여하는 만큼 양국 모두 민간 공동연구와 달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 양국이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한 이래 4년 이상 경과되었지만 아직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산관학 공동연구에서 양국은 제조업과 서비스, 투자 등 비농업 분야는 대부분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농업 분야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 합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한-중 FTA 체결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농업 생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 측은 양국간 농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 측은 농업부분 민감품목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중국은 그러한 문제는 정부간 공식 협상에서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이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정부간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이미 타결된 한-미 FTA의 양국 의회 비준과 한-EU FTA 타결 및 비준이라는 선결과제가 해결된 이후에나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양국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료급 이상 고위층의 획기적인 타결의지가 요구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향후 추진될 FTA 협상의 예상 쟁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4.2. 한-중 FTA의 예상 쟁점

4.2.1. 원산지 규정(ROO)

중국과의 FTA 협상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쟁점으로 먼저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 ROO)과 관련된 분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규정이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의 효과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산지 규정에 의해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 확인,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를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원산지 규정 협상에서 주요 관심 사항은 가공식품의 원재료와 생산품이 충분히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가공공정이 원산지를 부여할 정도로 포괄적인지의 여부 등이다. 그 밖에 품목별로는 가축의 도축 공정, 설탕의 정제과정, 커피의 볶음과정, 우유조제품 생산, 정제유 생산 등이 민감한 관심 사항이다.

원산지 규정은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판정기준 등 실체적 규정과 원산지 증명서 작성과 제출, 세관의 확인 과정 등 절차적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존하는 FTA 협정에 적용되는 원산지 판정의 기본적 기준은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or Produced Criterion)과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구분된다. 또한 실질적 변형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Regional Value-added Criterion; RVC)과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이 활용되고 있다. 그 밖에 기본적 기준을 보완하는 보충적 기준으로 최소허용기준(De-minimis)과 누적기준(Accumulation), 특정공정(Specific processing)기준 등이 적용된다.

중국이 산관학 공동연구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기존 FTA 협정상의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함께 적용하고 있다<표 7-22>. 실질적 변형기준은 부가가치 기준에 따라 역내 부가가치 비중이 40%를 넘으면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보충적 기준으로는 특정 품목

에 대해 완전생산기준과 주요공정(processing operations) 기준(중·ASEAN FTA)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여러 가지 기준을 조합, 적용하는 칠레와의 FTA에서는 농산물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1류(산 동물)부터 16류(육어류조제품)까지와 22류(음료와 주류)에는 HS-2 단위인 부류(Chapter)의 변경(Change in Chapter; CC) 기준을 적용하며, 17류(당류)부터 19류(곡물 조제품과 빵류)까지는 HS-4 단위인 호(Heading)의 변경(Change in Tariff Heading; CTH) 기준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 협정상 원산지 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보완적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기준은 FTA 대상국별로 부가가치 계산 방식과 원산지 인정 부가가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칠레와는 45%, 싱가포르는 45~55%, EFTA는 30~60%를 적용하고 있다.

칠레와의 FTA에서 채분(11류)과 동식물성 유지(15류), 설탕(17류), 가공식품(18류), 곡물 조제품(19류), 과일채소 가공품(20류), 음료와 술(22류) 등 일부 품목은 호(號)의 변경(CTH)을 세번변경기준으로 채택하되 부가가치기준도 충족되어야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만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FTA 협정에서 기본적인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한 데 비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품목별(product-specific)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 비해 중국은 칠레 및 파키스탄과의 FTA에서만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¹⁷. 따라서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기본적인 원산지 판정 기준과 보충적 기준에 대해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기본적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기준이 계산상의 어려움과 부가가치 인정 비율의 차이, 그리고 품목 특성에 따라

17 조미진 외(2008). 66쪽.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FTA에서 적용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적 판정기준으로 채택하되 품목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기준이나 주요공정기준을 보충적 기준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표 7-22. 한-중 FTA 원산지 규정 비교

구분		한국 FTA				중국 FTA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파키스탄	ASEAN	칠레	홍콩
원산지 판정 기준	기본 기준	CC	CC	CC	RVC(40)	RVC (40)	RVC(40)	RVC (40)	실질 변형
	보충 기준	RVC (45)	RVC (45~55) +SP	RVC (30~60)	CTH +SP	SP; 완전 생산	주요공정	SP+ CC+ CTH	주요 공정+ RVC(30)
	최소 허용	8% + CTSH	10% +CTSH	10% +CTSH	-	-	-	8%	-
	개성 공단	-	직수입 RVC (45)	RVC (60)	RVC(60)				
원산지 증명 발급절차		자율+ 직접 검증	기관+ 직접 검증	자율+ 간접 검증	기관 +직접 또는 간접검증	기관 증명	기관증명+ 간접검증	기관 증명 +간접 검증	-

자료: 어명근 외(2008b).

4.2.2. 동식물 검역(SPS)

한-중 FTA 협상에서 예상되는 또 다른 쟁점으로 동식물 검역 분야가 있다. 한-중 양국은 모두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으로서 동식물 검역 분야는 산관학 공동연구 과정에서 WTO의 SPS 협정상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는 조치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합의하였다. 하지만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 협정문은 상당히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국이 파키스탄 및 칠레와 체결한 FTA 협정은 WTO/SPS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 준수, 투명성과 조화성, 동등성, 지역화(regionalization), 상호 인정, SPS 소위원회 등 여러 가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¹⁸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 FTA 협정에서 SPS 관련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WTO/SPS 협정을 준수한다는 간단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싱가포르 및 EFTA와 체결한 FTA의 SPS 규정은 “SPS 조치는 WTO/SPS 협정과 합치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는 단 한 문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공식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SPS 분야에서는 동식물 질병 발생의 지역화(regionalization) 인정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파키스탄 및 칠레와 체결한 FTA 협정에 지역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 발효된 뉴질랜드와의 FTA 협정문에는 위해성 분석(risk analysis) 제도와 함께 동식물 유병 지역화 개념 도입을 이행약속(Implementing Arrangements)에 포함하고 있다¹⁹. 특히 양국은 SPS 분야의 효과적인 정보 교환과 원활한 업무 협조 등을 위해 공동관리위원회(Joint Management Committee)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제88조).

WTO/SPS 협정에 지역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검역규정을 개정하여 지역화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구제역과 과실파리 등 동식물 검역상의 이유로 국가 단위의 수입 제한지역으로 간주해 왔다. 하지만 FTA 협상을 시작되면 중국 측이 다른 국가와의 FTA 협정 전례를 들어 동식물 질병 발생의 지역화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하여 먼저 중국은 특정 지역이 강이나 바다, 산맥 등 공간적으로

18 지역화란 동식물 병충해 발생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로 간주하여 국가 전체를 유병지역으로 간주하는 국가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임.

19 뉴질랜드-중국 FTA 협정문 제80조(Adaptation to Regional Conditions) 1항은 “양국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 당사국이 어느 지역 또는 국토의 일부가 병해충이나 질병이 없다고 입증할 경우 또는 상대국의 평가에 의거, 병해충 발생이 낮은 지역으로 판명될 경우 이러한 상태를 인정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항은 지역화 적용에 관한 원칙과 기준 및 절차를 양국 공동으로 마련하여 제77조 이행약속의 제7장 C항의 1에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음(「NZ-China FTA; specific in agriculture」).

완전히 격리되어 있지 않은 지리적 특성상 동식물 질병 발생의 지역화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내 동식물 병해충 종류별 분포와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화에 따른 국내 병해충 반입 가능성 등에 대해 사전 조사와 연구를 통해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축적하여 지역화 주장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4.2.3. 세이프가드(Safeguard; SG)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은 대부분 SG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된 SG의 종류와 범위는 FTA 상대국에 따라 일반적 SG와 양자간 SG, 농산물 SG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농업경쟁력이 높은 칠레 및 미국과 체결한 FTA 협정에는 일반적 SG 외에 농산물 SG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칠레 FTA 협정의 일반적인 SG 조항은 WTO 협정의 SG 조항에 제시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며 그에 따른 SG 조치는 양국간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농산물 SG 규정은 당사국 농산물이 상대국의 동종 또는 경쟁관계 상품 시장에 심각한 피해나 혼란을 야기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정도로 수입물량이 증가할 경우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즉, 당해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인하를 중지하거나 또는 그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혜국 대우 관세율과 기본관세율 가운데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농산물 SG 조치는 발동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예외적인 상황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자유무역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채 120일 동안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3.12조 4항).

한-미 FTA 협정은 양자간 SG(제10.1~10.4조)와 다자간 SG(제10.5조) 외에 농업 SG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3.3조). 농업 SG의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마늘, 고추, 사과, 인삼, 참깨, 참기름, 설탕 등이며 발동 기준물량은 매년 관세율 인하에 따라 늘어나게 되어 사실상 SG 조치 적용 가능성은 낮

은 실정이다.

농산물 SG 조치에 따른 관세율은 현행 최혜국 실행세율이나 한-미 FTA 협정 발효 전날의 최혜국 실행세율, 또는 부속서 3-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중 낮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발동 후 60일 이내에 상대국에 서면으로 발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농업 SG 조치는 무관세 쿼터 물량에 대해서는 발동할 수 없으며 동일 품목에 대해 다른 SG 조치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한-미 양국간에는 WTO 농업협정의 특별세이프가드(SSG)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FTA 협정 양허표의 농업 SG 규정에 명시된 품목별 SG 적용기간이 지나면 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체결한 FTA 협정은 당초 SG 조치를 중시하지 않았다. 초기에 체결한 중·ASEAN FTA와 홍콩과의 인접경제동반자협정(CEPA)은 WTO 규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SG 규정이다. 칠레 및 파키스탄과의 FTA는 양자간 SG와 다자간 SG 및 기타 무역구제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만 농산물 SG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뉴질랜드와의 FTA 협정에는 일반적인 무역구제 수단으로서의 다자간 SG(제64조)와 양자간 SG 조치(제66조)는 물론 특별농산물 SG(SSM)도 명시되어 있다(부속서 2).

중·뉴질랜드 FTA에서 특별농산물 SG 규정의 대상품목은 우유와 크림, 분유, 버터, 치즈 등 모두 낙농제품이다. 낙농업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면서 자국의 낙농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중·뉴질랜드 FTA 협정상 특별농산물 SG 조치는 부속서 2에 명시된 품목별 기준 수입물량을 초과할 경우 발동되며 SSM 발동 직전의 최혜국 대우세율과 기본세율 가운데 낮은 것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발동기한은 SSM을 발동한 당해 연도의 연말까지이며, 낙농품 양허가 완료되는 2023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다. 또한 특별농산물 SG와 WTO 규범상 농산물 SSG 규정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되면 농산물 SG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기존 FTA 협정에서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농산물 특별 SG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먼저 농업

부문의 특별 SG 조항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WTO 협정에서도 일반적인 SG 규정과 별도로 농산물 특별 SG(SSG)를 제정한 것은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산물의 경우 복잡한 발동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농산물 SG 조항의 본래 취지가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로 예상치 못한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관련 산업의 돌발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TA 협정상 농산물 SG 조치는 발동요건을 간소화하는 대신 발동기간은 가능한 한 단기적으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SG 조항의 취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SG 조치는 양국간 분쟁해결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과거 마늘 SG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셋째, 중국과의 FTA 체결시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국한하여 농산물 SG 대상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에서는 농산물 SG 대상품목을 규정하지 않은 반면 미국과의 FTA에는 대상품목을 부속서에 명시하였다. 농산물 전 품목에 대한 SG 규정보다 수입 급증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각각의 발동 기준 물량과 기간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뉴질랜드와의 FTA 협정에서 일부 낙농품에 특별 SG를 도입한 전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농업부문의 한-중 FTA 대응방안

5.1. 민감농산물 선정과 특별 취급

지금까지 한-중 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한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양허 제외 품목의 범위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공통

점이 나타났다(남영숙 외; 2004 및 어명근 외; 2006a). 특히 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과 FTA를 체결할 때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양허할 경우, 민감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비해 농업생산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산관학 공동연구를 비롯하여 정부간 공식협상 이전 단계에서부터 국내 농업에서 비중이 큰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 제외하는 ‘제한적 양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경쟁제한적 정책으로 국유기업의 주요 곡물 수출입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곡물류 수출규제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 식량안보 등을 위하여 상호 민감품목의 양허 제외 허용을 정부간 공식협상 개시 이전 단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에서 곡물과 곡분, 식용유와 당류 등 경쟁력이 낮은 품목을 일방적으로 양허 제외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 제외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양허 제외 대상품목은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특별품목(SP)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선정해야 한다. 만일 DDA에서 특별품목으로 관세 감축 의무가 면제된 농산물을 중국과의 FTA에 양허할 경우 개도국 특혜가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DDA에서 양허한 품목이라도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국과의 FTA에서 양허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업부문 내부적으로는 양허 제외 우선 순위를 정하여 대상 품목을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농산물 품목간 높은 우선 순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2. 위생 및 식품안전성 강화

중국산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FTA 협상 단계에서는 물론 협상 이전에도 중국산 농식품에 대한 검사와 검역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양국은 식품안전성 관련 통상 마찰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입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가공 및 선적 단계까지 위생조건을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미국과 같이 중국 현지에 우리나라의 농산물 품질검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중국 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동식물 검역(SPS) 분야에서는 동식물 유병 지역화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파키스탄, 칠레 및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 협정에 지역화를 명시하고 있고, WTO/SPS 협정에 지역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세계적으로 검역규정에 지역화 개념을 포함시키는 추세이다. 따라서 예상되는 중국 측의 지역화 요구에 대비하여 중국 내 동식물 병해충 종류별 분포와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화에 따른 국내 병해충 반입 가능성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철저한 연구와 현지 조사를 통해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축적할 필요가 있다.

5.3.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SG) 도입

중국과의 FTA 체결 협상시 반드시 농산물 특별 SG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기존 FTA 협정과 달리 뉴질랜드와의 FTA 협정에 특별농산물 SG(SASM)를 별도로 규정하였다. SASM의 대상 품목은 중국의 민감품목인 우유와 버터, 치즈 등 낙농품 11개 품목이며 최장 2023년까지 SG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품목별 발동기준(trigger level)을 명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칠레 및 미국과의 FTA 협정에 별도의 농산물 SG 조항을 설치하고 있다. WTO 협정에도 별도의 농산물 특별 SG(SSG)를 제정한 것은 농산물의 경우 복잡한 발동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수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에서 농업부문의 특별 SG 조항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산물 SG 조항의 도입 취지가 FTA 체결에 따른 양허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입 급증으로 국내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는 돌발적인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중 FTA 협정의 SG 조치에 대해서는 발동요건을 간소화하는 대신 발동기간은 가능한 한 단기간으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농산물 특별 SG 조치는 양국간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과거 마늘 파동과 같은 통상 마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5.4. 중국시장에 대한 농산물 수출 확대

중국에 대한 국산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 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국 사회의 공식적인 제도와 법령은 물론 비공식적인 관행과 규제 배경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사회의 핵심계층인 당 및 관료사회와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한국산 신선 및 가공농산물의 목표시장을 중국 내 고소득 계층으로 구분하고 품질 및 안전성 제고와 기능성 확충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또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중국 내 소비자 신뢰를 확산, 축적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 제고와 신제품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산관학 공동으로 시장조사와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국 소비자들의 고급화 선호 취향을 감안하여 광고와 마케팅 전략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중국 내에서 명품 반열에 오른 국내 가전업체들의 고급품 이미지가 한국산 농산물에 이입될 수 있도록 마케팅 기법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도덕경영과 친환경적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 유통망을 확충하여 소비자들이 한국산 농산물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중국에 진출한 한국 유통업체의 중국 내 점포망을 활용하는 동시에 중국의 고급 백화점 등 유통회사와 제휴하여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고소득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면 친숙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5.5. 양국간 농업협력 확대와 신뢰구축

한-중 FTA 체결 이후 양국 농업이 공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양국 농업구조와 부존자원의 제약으로 농업부문 내에서 수평적, 수직적 분업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의 완전한 시장 개방이 불가능한 만큼 양국간 농업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는 농업경쟁력이 높은 편이지만 토지사용적인 곡물과 유지류 등의 경쟁력은 주요 수출국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농지와 물, 에너지, 노동력, 환경오염과 사막화 등 농업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식량자급과 농가소득 격차 완화, 자원 조달 등 해결이 요구되는 산적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양국간 농업부문의 자본과 기술이 효과적으로 이동, 배분될 수 있도록 정부간은 물론, 학계와 산업계의 협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중 양국은 그동안 상호 신뢰 부족으로 마늘 파동과 기생충 알 김치 등 많은 문제를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양국간 상호 신뢰구축(confidence building)을 통해 여러 가지 난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 교역과 관련해서도 민감품목에 대한 특별 취급, 원산지 문제, 동식물 검역과 수입 농산물 안전성 문제,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호 신뢰가 없을 경우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간은 물론

민간부문도 상호 신뢰가 결여될 경우 엄청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국은 FTA 체결을 위한 협상 착수에 앞서 신뢰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 8 장

호 주

1. 역사²⁰

1606년 네덜란드의 두이프겐호가 호주 대륙 북부의 카편테리아만에 도착하였으며, 이것이 유럽인 최초의 호주 대륙 방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네덜란드의 배가 호주를 가끔 방문하게 되었고, 네덜란드인들은 이 대륙의 북안·서안 및 테즈메이니아섬 등을 묶어 ‘신홀란드’라고 부르게 되었다. 영국인으로서 이 대륙에 최초로 온 사람은 뎀피어였다(1688년). 그러나 동해안 전체를 조사하고 문명인이 살 수 있는 땅임을 밝혀 영국 영유의 길을 연 사람은 제임스 쿡이었다. 제임스 쿡은 1777년 뉴질랜드에서 호주 대륙의 요크곶 부근의 한 섬에 영국 국기를 게양하고 호주 대륙 동부의 영유를 선언하였다.

1776년 미국독립혁명이 발발하여 그때까지 미국으로 보내고 있던 죄수를 처리하지 못하게 된 영국은 호주 대륙을 새로운 유형식민지로 이용하게 되었다. 1788년 1월 11척의 영국 선단이 1,030명(그중 유형수는 726명)을 태우고 보터니만에 도착하였고, 개발의 근거지로서 시드니가 건설되었다. 1793년에는 최초의 자유이민 11명이 도착하였다.

20 출처

이민과 인구의 자연증가로 인구가 늘어나고 자유이민이 증가함에 따라 유형을 중지하라는 요구가 높아져서 1840년에는 태즈메이니아섬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하고는 유형이 중지되었다.

1기 목축업의 발전에 따른 대륙개발을 지나 2기의 대륙 개발은 금광에 의하여 촉진되었다. 금광 종사자에 대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밀의 재배 및 기타 농업도 발달하였다. 1880년대부터 백호주의정책이 제창되기 시작하였고, 1888년에는 중국인 이민 제한, 1896년에는 모든 유색인종의 배척 등이 결정되었다.

1900년에 연방헌법이 제정되었고, 1901년 1월 1일에 영국의 자치령으로서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이 발족되었다. 호주는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퀸즐랜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니아 등 6개의 주와 주 수준인 노던 테리토리, 수도특별 지역인 캔버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 의회가 있으며 각 주마다 주 의회가 있다. 국가형태는 입헌군주제이며 정부는 의원내각제이다. 국가원수는 엘리자베스2세 여왕이나 실제로 연방총독이 정부를 이끌고 있다. 연방헌법에 따라 연방의 수도가 잠정적으로 멜버른으로 정해졌으나 1911년에 호주 수도지역이 결정되었고, 그 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을 1913년에 캔버라로 명명하였다.

호주의 면적은 768만 2천 km^2 로 한반도의 약 35배,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 본토의 면적과 유사하다. 호주는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면적이 넓다. 기후는 서부의 40%, 북부의 80%가 열대성 기후이고 나머지는 온대성 기후로 온화한 대륙성 기후를 가진다.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은 높아지며, 봄은 9~11월, 여름은 12~2월, 가을은 3~5월, 겨울은 6~8월이다.

지형은 평균해발 300m 이하인 평지가 많고 연평균 강수량은 600mm 내외로 건조한 편이다. 호주는 뉴질랜드와 지리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으나 강수량이 적어 뉴질랜드와 달리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 국토의 60% 이상이 연강수량 50mm 이하인 사막기후 지대이며, 나머지 10%는 연강수량 100mm 정도인 반건조기후 지역이다. 내륙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메마른 불모지이거나 반사막이어서 인구의 대부분이 해안지대에 살고 있다.

2. 주요 경제지표

호주의 인구는 2,053만 명(2006년 기준)으로 인구밀도는 km^2 당 3명으로 낮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4,830만 명으로 호주의 2.4배에 달하며, 인구밀도는 km^2 당 485명이다. 호주의 인구증가율은 1.2%로 한국보다 3배 높다. 농촌 거주 인구는 148만 명이고, 농업인구는 85만 명으로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로 낮은 편이다.

호주의 경지면적은 약 5천만 ha로 전체 국토의 6%이다. 호주는 사막과 불모지가 많기 때문에 경지면적 비중이 낮다. 2006년 호주의 GDP는 7,682억 달러, 1인당 GDP는 38,379달러이다. 총 GDP는 한국이 호주보다 16% 많으나 1인당 GDP는 호주가 한국보다 2배 이상 높다.

호주의 산업은 19세기 광산의 발견과 낙농업의 도입으로 1차 산업이 주축을 이루는 구조였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950년대 이후 적극적인 외자유치와 제조업 보호정책을 실시하였다.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산품 수출 증대에 대한 경쟁심화와 위기의식의 확산에 자극되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산업구조전환 정책을 실시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에는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정책과 더불어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을 병행하였다. 2000년대에는 시장개방의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여 전반적인 시장개방 정책과 이에 따른 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대외적으로도 시장의 완전개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호주의 산업은 양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농업의 발달로 1차 산업의 수출이 활발한 개발도상국 구조를 가지는 반면, 서비스업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선진국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호주는 고용인구의 3.8%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며, 0.8%가 광업, 11.3%가 제조업, 84.1%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호주는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2002~2006년 동안 연평균 무

역수지 적자는 117억 달러이며, 2006년 무역수지 적자는 93억 달러이다. 호주가 장기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는 이유는 에너지, 광물, 농산물 수출은 활발하나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기 때문이다. 자원 가격의 상승으로 무역적자 폭은 축소되고 있다. 수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대 80% 수준에서 2006년 17%로 감소하였다.

표 8-1. 호주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2002	2003	2004	2005	2006
인구(A)	1000명	19,603	19,843	20,080	20,310	20,530
농촌거주인구		1,598	1,526	1,480	1,476	-
농업인구(B)		862	858	853	849	-
농업인구비중(A/B)	%	4%	4%	4%	4%	0%
국토면적(C)	1000ha	774,122	774,122	774,122	774,122	774,122
경지면적(D)		48,124	47,575	49,080	49,742	49,742
경지면적비중(C/D)	%	6%	6%	6%	6%	6%
GDP	백만 USD	425,295	543,648	655,629	732,779	768,178
1인당 GDP	USD	21,664	27,497	32,875	36,376	38,379
수출(E)	백만 USD	65,008	70,246	86,437	105,751	123,323
수입(F)		69,241	84,492	103,759	118,922	132,651
경상수지(E-F)		-4,233	-14,246	-17,322	-13,170	-9,328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표 8-2. 호주와 뉴질랜드의 산업별 GDP, 고용인구, 수출 비중

단위: %,

	농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계
GDP비중					
1950-1954	22	2	29	47	100
1960-1964	16	2	28	54	100
1970-1974	9	3	26	62	100
1980-1984	5	6	20	69	100
1990-1994	3	5	15	78	100
2005-2006	3	4	11	82	100
고용비중					
1968-1963	10	1	26	63	100
1978-1973	7	1	24	68	100
1988-1983	6	1	19	74	100
1993-1994	5	1	14	80	100
2005-2006	3	1	10	85	100
수출비중					
1950-1951	86	6	3	5	100
1968-1963	66	8	13	13	100
1978-1973	44	28	12	16	100
1988-1983	39	34	11	16	100
1993-1994	26	41	14	19	100
2005-2006	21	35	22	22	100

자료: Kym Anderson 외(2007).

3. 농산물 수급

3.1. 곡물

호주의 농경지는 1995년 4천만 ha에서 2006년 5천만 ha로 증가 추세이다. 수원지도 같은 기간 동안 20만 ha에서 30만 ha로 증가하였지만 농경지의 규모에 비해 수원지가 부족하다. 호주의 곡물류 재배면적은 1995년 1,464만 ha에서 2005년 1,952만 ha로 33%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에 과일류는 17만 ha에서 26만 ha로 53% 증가하였고, 채소류는 7만 9천 ha에서 7만 3천 ha로 약간 감소하였다.

호주에서 생산되는 주요 곡물은 밀, 보리, 수수, 귀리, 쌀 등이다. 그 밖에 감자, 옥수수, 대두 등도 생산되고 있으나 옥수수와 대두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호주의 곡물은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나뉜다. 밀, 귀리, 호밀은 목초지와 교대로 재배되는 겨울작물이며 그 밖의 겨울작물로 유채, 콩 등이 있다. 쌀, 옥수수, 사탕수수는 여름작물로 종종 겨울작물과 교대로 재배된다.

호주에서 생산되는 쌀의 75% 정도는 중립종이며 생산농가의 호당 평균경작면적은 300ha 정도로 5~7년 주기의 윤작을 실시한다. 윤작형태는 주로 목초지가축 방목(1~2년) → 쌀 재배(2년) → 맥류 경작 → 휴경과 같은 순환으로 이루어진다. 밀 생산량은 2002~2006년 기간에 연도별로 2,600만 톤에서 1,000만 톤 사이의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수출이 1,500만 톤에 이른다. 밀 다음으로 생산이 많은 것은 보리로 연간 생산량은 최대 1,000만 톤에서 최소 400만 톤 수준이다. 2002~2006년 기간 연평균 수출량은 430만 톤이다. 수수는 200만 톤 정도가 생산되나 수출입 실적은 미미하다. 2006년 쌀 생산량은 97만 톤으로 자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2년 쌀 생산량이 120만 톤에 달했을 때는 13만 톤이 수출되기도 하였다. 호주의 쌀 생산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생산 증가 및 수출 잠재력은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밀은 호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곡물로 호주 전역에서 생산되지만 주로

중부 퀸즈랜드,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등 밀벨트(wheat belt) 지역에서 생산된다. 수출이 이루어지는 곡물은 주로 밀과 보리로 볼 수 있다.

표 8-3. 호주의 식량작물 재배현황

단위: 천 ha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쌀	177	144	46	66	51	99
밀	12,141	11,529	11,170	13,067	13,399	12,543
보리	3,454	3,707	3,864	4,477	4,645	4,447
옥수수	74	83	50	70	72	76
대두	33	33	10	33	26	24

자료: ABARE, Agricultural Commodities, Australia(2006).

3.2. 축산

호주에서 사육되는 주요 축종은 소, 양, 돼지, 닭 등이다. 소는 호주의 전역에서 사육되지만 젖소는 주로 남부와 해안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소 사육두수는 1960년대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976년에 3,200만 두로 최고를 기록하였다. 1980년대 초의 가뭄은 1984년까지 소 사육두수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그 후 5년간 소 사육두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1989년과 1998년 사이 소 사육두수는 점차 증가하였다. 1999년 이후 소의 사육두수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2002년에 2,800만 두로 증가하였다. 가뭄 등으로 한때 2,670만 두까지 감소하였으나 일부 지역의 자연 조건이 개선되면서 2005년에 2,780만 두로 다시 증가하는 등 자연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돼지는 매우 집약적인 산업으로 최근 호주의 양돈 산업은 소규모 생산자들이 이탈하면서 기존의 생산자들은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3년 초까지의 가뭄으로 인한 사료 곡물의 비용 증가로 2004년 돼지의 사육두수는 255만 두로 하락하였으나 2005년 다시 사육두수가 273만 두로 증가하였다.

양 사육두수는 1970년에 1억 8천만 두로 최고치를 나타냈고, 그 후로는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1990년 이후 양모 시장의 불안정으로 양 사육두수가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1999년도까지는 점진적인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2003년 6월까지 호주 전역에 발생한 가뭄으로 양의 사육두수는 9,925만 두까지 하락하였다. 2004년 이후 상황이 개선되어 양 사육두수는 소폭 증가하여 1천만 두 수준이 되었다.

표 8-4. 호주의 식량작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생산량	10,132	26,132	21,905	25,090	10,822
	수출량(A)	14,697	9,503	18,451	13,915	14,976
	수입량(B)	0.1	299.1	0.1	0.03	0.02
	순수출량(A-B)	14,697	9,204	18,451	13,914	14,976
쌀	생산량	1,192	438	553	339	973
	수출량(A)	134	-	0.02	0.01	0.00
	수입량(B)	0.06	0.03	0.02	-	0.05
	순수출량(A-B)	134	-0.03	-0.00	0.01	-0.05
보리	생산량	3,865	10,382	7,740	9,869	4,257
	수출량(A)	3,688	2,205	6,710	3,928	4,799
	수입량(B)	0.02	0.04	0.06	0.04	0.03
	순수출량(A-B)	3,688	2,205	6,710	3,928	4,799
옥수수	생산량	454	310	395	420	240
	수출량(A)	72	22	11	6	4
	수입량(B)	0.90	48.49	1.75	0.35	0.52
	순수출량(A-B)	71	-27	9	5	3
귀리	생산량	957	2,018	1,283	1,416	748
	수출량(A)	203	98	215	135	186
	수입량(B)	0.03	0.07	0.02	-	-
	순수출량(A-B)	203	98	214	135	186
수수	생산량	2,021	1,465	2,009	2,011	1,932
	수출량(A)	10	6	79	62	50
	수입량(B)	0.03	-	0.01	-	-
	순수출량(A-B)	10	6	79	62	50

(표 8-4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감자	생산량	1,333	1,247	1,310	1,288	1,100
	수출량(A)	38	47	52	50	35
	수입량(B)	0.01	0.39	0.05	0.01	0.11
	순수출량(A-B)	38	46	52	50	35
대두	생산량	63	9	60	45	55
	수출량(A)	7	3	8	6	3
	수입량(B)	0.59	74.26	9.41	0.63	0.75
	순수출량(A-B)	7	-71	-2	5	2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닭은 육계와 산란계로 나뉘며 육계의 사육비중이 산란계보다 높다. 1995년 이후 닭의 사육마리 수는 증가하였으나 2002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5년에는 7,600만 마리 수준이 되었다. 2001년 9,000만 마리였던 닭 사육두수는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과 지속되는 가뭄으로 육계 사육두수가 빠르게 감소하여 2001년 대비 2005년 닭 사육마리 수는 약 17% 감소하였다.

표 8-5. 호주의 축종별 사육두수

단위: 천 두

품목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소 ¹⁾	육우	23,569	24,448	24,504	24,739	23,615	24,410
	젖소	2,808	3,139	3,217	3,131	3,049	3,055
	계	26,377	27,587	27,722	27,870	26,664	27,465
돼지	2,653	2,511	2,748	2,940	2,658	2,547	2,729
양	120,862	118,552	110,928	106,166	99,252	101,287	102,482
닭	산란계	-	-	14,276	12,858	12,913	12,669
	육계	-	-	76,697	72,739	70,913	65,004
	계	66,004	85,928	90,973	85,597	83,826	77,673

주: 1) 1995년 소의 사육두수는 1996년 자료임.

자료: ABARE, commodity statistics. 가금류는 FAO STAT(2006).

축산물 가운데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은 쇠고기로 연간 200만 톤 이상이 생산되고 있다. 닭고기 생산량은 2006년 77만 톤이며 2만 톤 정도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돼지고기 생산량은 40만 톤 정도에 불과하다. 천연꿀은 1만 8천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자급률도 187%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고기 생산량은 연간 60만 톤 수준으로 그 가운데 50% 이상이 수출된다.

쇠고기 생산은 2003년 가뭄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3년 이후 200만 톤 이상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자본투자와 인수합병으로 몇 개의 큰 회사가 호주 돼지고기 생산의 대부분을 유통시키고 있다. 2000년 이후 돼지고기 생산량은 평균 39만 톤으로 유지되고 있다. 양고기의 생산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5년 양고기(Mutton)는 24만 톤, 어린 양고기(Lamb)는 37만 5천 톤으로 각각 전년 대비 3%, 8% 증가하였다.

2005년 기준 쇠고기 수출은 91만 톤으로 총생산량의 44%를 차지하며 양고기 수출은 36만 톤으로 총생산량의 58%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돼지고기의 수출은 6만 4천 톤으로 총생산량의 16%, 가금육 수출은 2만 9천 톤으로 총생산량의 3%를 차지한다. 호주는 주로 쇠고기와 양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호주의 쇠고기 수출은 일본, 미국, 한국 등의 순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의 쇠고기 수출에서 일본, 미국,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이다.

표 8-6. 호주의 축산물 생산량 및 수출량

단위: 천 톤

항목	품목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생산량	쇠고기	1,719	2,053	2,079	2,090	1,998	2,113	2,090
	돼지고기	351	364	379	407	419	395	390
	양고기	575	714	678	634	543	573	616
	가금육	489	658	662	737	719	758	803
수출량	쇠고기	890	902	945	920	841	914	910
	돼지고기	-	56	77	91	87	69	64
	양고기	271	374	366	350	289	323	360
	가금육	-	24	31	28	27	25	29

자료: ABARE, commodity statistics. FAO STAT(2006).

호주의 젖소 사육두수는 1995~1996년 188만 두에서 2000~2001년 218만 두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뭄 등의 원인으로 2006~2007년 180만 두로 감소하였다. 사육두수는 감소하였으나 젖소 한 마리당 우유 생산은 1995~1996년 4,627리터에서 2006~2007년 5,324리터로 증가하였다. 우유 생산량은 2001~2002년에 113억 리터로 가장 많았으나 2006~2007년에 96억 리터로 감소하였다. 우유 생산이 감소한 원인은 자연조건의 악화와 우유 산업의 규제완화로 인한 경쟁 심화 때문이다. 우유 생산의 감소로 버터, 치즈, 분유 등 유제품 생산도 감소하였다.

치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영국이며, 버터 및 버터지방의 주요 수출 시장은 이집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이다. 탈지분유의 수출은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비중이 높으며 전지분유는 대만, 싱가포르, 태국으로의 수출비중이 높다.

표 8-7. 호주의 젖소사육 및 낙농품 생산현황

단위: 천 톤

연도	사육 두수 (천 두)	마리당 생산량 (L)	생산량								
			우유 (백만 L)	버터	치즈			전지 분유	탈지 분유	카세인	버터 밀크 분유
1995-1996	1,884	4,627	8,718	154	268	-	-	-	-	-	-
2000-2001	2,176	4,847	10,547	172	376	161	215	205	244	8	16
2001-2002	2,123	5,309	11,271	178	412	192	220	239	239	14	18
2008-2003	2,050	5,038	10,328	164	379	166	213	198	197	13	17
2003-2004	2,038	4,944	10,076	149	384	176	208	187	182	14	17
2004-2005	1,942	5,215	10,127	147	388	193	196	189	189	13	17
2005-2006	1,881	5,395	10,089	146	373	181	192	158	205	12	16
2006-2007	1,800	5,324	9,583	133	364	185	179	135	191	8	14

자료: Australia commodity statistics(2007).

표 8-8. 호주의 주요 낙농품 수출 대상국

단위: 백만 호주 달러

품목	수출국	2000-2001	2001-2002	2008-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치즈	일본	339	429	272	300	379	298	338
	필리핀	19	20	16	11	18	14	13
	사우디아라비아	124	148	99	69	82	103	87
	영국	39	21	15	18	21	20	15
	미국	39	48	36	34	45	54	53
	기타	392	367	362	307	332	347	319
	소계	951	1,035	800	739	877	837	825
버터 및 버터지방	이집트	35	24	19	6	11	12	14
	말레이시아	15	14	13	14	12	16	11
	필리핀	9	5	4	2	3	5	3
	싱가포르	17	20	16	18	17	21	14
	태국	20	23	13	13	13	12	10
	기타	197	211	160	130	133	158	126
	소계	291	297	224	183	188	225	179
탈지분유	일본	49	54	30	13	11	13	11
	말레이시아	87	88	51	53	64	77	72
	필리핀	181	143	72	60	49	72	46
	싱가포르	52	53	38	42	58	56	67
	태국	67	69	33	20	22	77	51
	기타	258	290	184	199	216	234	257
	소계	694	698	408	388	420	529	505
카세인	일본	20	27	21	23	23	30	32
	미국	57	80	81	69	57	27	32
	기타	23	15	26	30	36	31	49
	소계	100	123	128	123	116	89	113
전지분유	말레이시아	27	39	22	29	33	24	15
	싱가포르	32	30	25	21	31	45	41
	대만	55	54	45	40	31	23	13
	태국	25	23	14	12	9	11	12
	기타	442	426	273	220	220	232	193
	소계	580	571	380	322	324	334	275

자료: ABS, International Trade, Australia(2007).

3.3. 원예

호주는 국토가 넓고 기후대가 다양하여 열대성 과일과 온대성 과일이 고르게 생산되고 있다. 열대성 과일 가운데 오렌지, 레몬, 바나나, 파인애플이 주로 생산된다. 오렌지 생산량은 2006년 57만 톤으로 자급률은 125%이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각각 28만 톤, 11만 톤이 생산되고 자급률은 100%이다. 온대성 과일은 포도, 사과, 배, 복숭아 등이 생산되고 있다. 포도 생산량은 200만 톤에 달하며 자급률은 102% 수준이다. 사과 생산량은 약 30만 톤, 자급률은 106% 수준이다. 배와 복숭아 생산량도 각각 15만 톤, 11만 톤 수준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도는 주로 와인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된다. 2005년 와인포도 재배면적은 15만 7천 ha로 2000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포도 생산량은 2000년 142만 톤에서 2005년 192만 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체 포도생산의 90%가 와인 생산에 이용되고 있다. 포도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와인 수출량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0년 와인 수출량은 3억 4천 리터에서 2005년에는 7억 2천 리터로 증가하였다.

채소와 과채 가운데 생산량이 많은 것은 토마토와 양파로 각각 45만 톤, 25만 톤 정도가 생산되며 양파는 자급률이 120%를 넘는다. 반면 고추, 마늘, 딸기, 오이 등의 생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2004년 채소의 재배면적은 12만 3천 ha이며 전년 대비 2% 증가하였다. 감자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채소 재배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남부의 태즈메이니아 빅토리아가 감자 생산의 75% 정도를 차지한다. 토마토는 두 번째로 생산이 많은 작물로 2004년 41만 톤이 생산되었다.

표 8-9. 호주의 주요 원예작물 재배면적 추이

단위: 천 ha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당근	8	8	7	7	7	7
양파	5	6	5	6	6	6
상추	6	6	6	6	6	6
감자	40	38	36	36	37	37
호박	8	7	7	6	5	5
토마토	10	9	7	9	8	8
버섯	0.1	0.1	0.1	0.2	0.2	0.2
사과	25	22	21	21	20	20
배	6	8	7	6.9	6.9	6.8
오렌지	24	24	25	22	22	22
복숭아	18	20	22	19	20	20
파인애플	3	3	2.6	2.6	2.7	2.7
바나나	12	12.6	11	11	10	10
아보카도	6.5	6	6.5	6.5	6.5	6.5
키위	0.4	0.4	0.2	0.2	0.2	0.2

자료: ABARE, Agricultural Commodities, Australia. FAO STAT(2006).

표 8-10. 호주의 과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오렌지	생산량(A)	451	599	395	498	571
	소비량(B) ¹⁾	323	510	305	380	456
	자급률(A/B)	140	118	130	131	125
레몬	생산량(A)	40	34	28	29	38
	소비량(B) ¹⁾	39	35	30	33	41
	자급률(A/B)	104	98	93	88	93
자몽	생산량(A)	14	18	15	20	11
	소비량(B) ¹⁾	14	18	15	20	11
	자급률(A/B)	99	98	98	99	98
바나나	생산량(A)	313	265	257	266	275
	소비량(B) ¹⁾	313	265	257	266	275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사과	생산량(A)	321	326	255	327	276
	소비량(B) ¹⁾	295	294	245	313	269
	자급률(A/B)	109	111	104	104	103
파인애플	생산량(A)	119	105	110	104	108
	소비량(B) ¹⁾	120	105	111	105	109
	자급률(A/B)	100	99	100	99	99
포도	생산량(A)	1,754	1,497	2,015	2,027	1,981
	소비량(B) ¹⁾	1,697	1,459	1,973	1,981	1,938
	자급률(A/B)	103	103	102	102	102
배	생산량(A)	145	136	139	151	142
	소비량(B) ¹⁾	128	125	134	146	139
	자급률(A/B)	113	108	104	103	103
복숭아	생산량(A)	117	127	99	130	110
	소비량(B) ¹⁾	107	118	94	123	102
	자급률(A/B)	110	107	106	106	107
감	생산량(A)	1	1	1	1	1
	소비량(B) ¹⁾	1	1	1	1	1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표 8-11. 호주의 채소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추	생산량(A)	43	41	56	47	38
	소비량(B) ¹⁾	45	43	59	51	41
	자급률(A/B)	95	95	96	94	92
딸기	생산량(A)	20	23	20	24	25
	소비량(B) ¹⁾	18	21	18	21	21
	자급률(A/B)	113	107	112	110	119
마늘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7	8	9	8	9
	자급률(A/B)	-	-	-	-	-
생강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1	1	1	1	1
	자급률(A/B)	-	-	-	-	-
수박	생산량(A)	100	111	127	108	100
	소비량(B) ¹⁾	98	109	125	106	98
	자급률(A/B)	102	102	101	102	102
양파	생산량(A)	283	229	233	256	230
	소비량(B) ¹⁾	231	180	168	207	192
	자급률(A/B)	123	127	139	124	120
오이	생산량(A)	14	15	15	16	13
	소비량(B) ¹⁾	14	15	15	16	13
	자급률(A/B)	101	100	102	102	101
토마토	생산량(A)	425	364	474	408	449
	소비량(B) ¹⁾	423	362	472	407	448
	자급률(A/B)	101	101	101	100	100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4. 농산물 교역

호주의 교역 규모는 2006년 2,560억 달러로 국내 총생산의 33.3%이다. 이 가운데 수출이 1,233억 달러이고, 수입이 1,32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3억 달러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2006년 농산물 수출액은 209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이른다.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은 56억 달러로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이다. 농산물 무역수지는 15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표 8-12. 호주의 교역지표

단위: 백만 USD, %

	2002	2003	2004	2005	2006
총수출액(A)	65,008	70,246	86,437	105,751	123,323
농업수출액(B)	15,406	14,549	20,260	19,658	20,870
농업수출액 비중(A/B)	24	21	23	19	17
총수입액(C)	69,241	84,492	103,759	118,922	132,651
농업수입액(D)	3,179	3,832	4,487	5,395	5,599
농업수입액 비중(C/D)	5	5	4	5	4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 ¹⁾	4	4	6	6	6

주: 1)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 = $\frac{\text{농업수출액} + \text{농업수입액}}{GDP} \times 100$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호주의 주요 농산물 수출 시장은 일본, 중국, 한국, 미국 등이다. 2005년의 경우 일본으로의 수출비중이 2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 12.2%, 한국 8.3%, 미국 7.1%, 뉴질랜드가 6.9% 순이다. 수입 비중은 미국 16.3%, 중국 16.2%, 일본 13%, 독일 6.6% 등이다. 호주의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한국

의 비중은 4%로 9위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의 농산물 주요 교역국에 대한 비중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6년 인도와의 교역은 수출이 67억 달러, 수입이 1억 달러로 증가하여 인접국가인 뉴질랜드보다 교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3. 호주의 주요 농산물 교역 대상국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03			2004			2005			2006		
	국가	수출	수입	국가	수출	수입	국가	수출	수입	국가	수출	수입
1	일본	12,840	11,666	일본	16,095	13,489	일본	21,305	14,375	일본	23,865	14,028
2	미국	6,141	14,906	중국	7,946	14,501	중국	12,075	17,920	중국	14,987	21,061
3	중국	5,929	10,274	미국	6,995	16,842	한국	8,252	4,355	한국	9,187	5,693
4	한국	5,253	3,415	한국	6,665	3,973	미국	7,053	18,205	미국	7,547	20,668
5	뉴질랜드	5,220	3,600	뉴질랜드	6,361	4,209	뉴질랜드	6,822	4,547	인도	6,739	1,058

자료: 한국무역협회(2007).

곡물류 가운데 수출 규모가 큰 품목은 밀, 보리, 귀리, 감자 등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수출 규모가 큰 품목은 밀로 2006년 1,500만 톤(25억 달러) 수출되었다. 다음으로 수출 규모가 큰 것은 보리로 480만 톤(7억 달러) 수출되었다. 그 밖에 귀리와 감자도 수출 품목에 속한다.

호주의 신선 농산물 수입 규모는 크지 않다. 과일은 포도와 오렌지가 각각 1,900만 달러, 1,300만 달러 정도 수입되었다(2006년). 축산물 가운데 수입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돼지고기로 4만 5천 톤(1억 2천만 달러) 수입되었다. 곡물 수입은 거의 없으며, 특용작물 가운데 녹차 수입액이 7천만 달러 정도된다.

표 8-14. 호주의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USD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추	수입량	2.8	3.4	3.9	4.3	4.6
	수입액	7.1	8.7	9.9	14.9	12.2
딸기	수입량	-	0.2	0.4	0.3	0.2
	수입액	0.1	0.5	1.1	0.9	0.7
마늘	수입량	7.2	8.0	9.5	8.2	9.5
	수입액	4.4	3.8	4.7	7.2	9.3
생강	수입량	0.9	0.8	0.8	0.8	0.9
	수입액	0.9	0.8	1.3	1.4	1.7
수박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양파	수입량	3.2	8.4	5.6	5.1	7.9
	수입액	2.5	3.7	2.7	3.9	4.6
오이	수입량	-	-	-	-	0.1
	수입액	-	-	-	-	-
토마토	수입량	0.7	1.5	1.8	3.2	3.4
	수입액	0.8	2.1	3.2	4.8	3.8
닭고기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돼지고기	수입량	43.5	52.8	61.0	46.9	45.2
	수입액	104.1	124.2	173.7	137.0	121.8
쇠고기	수입량	-	0.2	0.2	0.2	0.1
	수입액	0.1	0.4	0.5	0.4	0.4
천연꿀	수입량	4.5	8.8	2.6	1.2	0.7
	수입액	7.8	25.0	9.0	5.0	4.6
녹차	수입량	15.2	14.0	14.7	14.5	13.4
	수입액	54.6	62.8	67.2	75.6	70.8
땅콩	수입량	22.5	20.4	9.6	6.3	10.7
	수입액	15.2	15.5	8.1	5.5	8.3
참깨	수입량	7.0	5.5	6.7	6.6	6.6
	수입액	6.2	5.2	8.5	8.8	7.6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표 8-15. 호주의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USD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수출량	14,697.2	9,503.4	18,450.8	13,914.5	14,975.5
	수출액	2,249.6	1,574.0	3,089.0	2,280.5	2,540.7
쌀	수출량	133.9	-	-	-	-
	수출액	16.7	-	-	-	-
보리	수출량	3,687.7	2,205.1	6,710.0	3,928.0	4,799.5
	수출액	457.3	354.0	957.7	566.9	698.9
옥수수	수출량	71.5	21.9	10.8	5.5	3.6
	수출액	7.8	4.9	4.5	3.5	2.9
귀리	수출량	202.9	97.9	214.5	134.9	185.6
	수출액	28.1	20.1	30.2	25.4	35.3
수수	수출량	9.7	6.5	79.5	62.3	50.0
	수출액	1.7	1.3	13.4	9.5	8.2
감자	수출량	38.2	46.8	52.3	50.4	34.8
	수출액	11.5	16.1	20.0	18.7	14.9
고구마	수출량	-	0.1	0.1	0.1	-
	수출액	-	0.1	0.1	0.1	-
대두	수출량	7.1	3.2	7.5	5.5	3.1
	수출액	2.7	1.4	3.9	2.7	1.6
매니옥	수출량	-	-	-	-	-
	수출액	-	-	0.1	-	-
메밀	수출량	1.2	0.6	0.9	1.1	0.9
	수출액	0.8	0.6	0.9	0.9	0.7
오렌지	수출량	135.9	99.3	102.6	130.6	127.5
	수출액	81.7	72.6	83.6	97.6	100.3
레몬	수출량	3.9	2.6	1.1	0.7	0.2
	수출액	3.2	2.5	1.0	0.6	0.2
자몽	수출량	0.3	0.5	0.5	0.4	0.5
	수출액	0.3	0.5	0.4	0.3	0.4
바나나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사과	수출량	25.7	32.1	10.2	13.5	7.6
	수출액	19.1	25.6	11.6	12.8	9.3
파인애플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0.1
포도	수출량	57.6	38.7	46.0	50.5	48.1
	수출액	74.7	61.6	62.9	82.1	87.7

(표 8-15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배	수출량	18.2	14.2	9.5	9.2	6.9
	수출액	12.7	11.8	9.0	8.1	6.9
복숭아	수출량	10.6	8.6	5.2	7.4	7.6
	수출액	17.7	16.4	12.4	15.7	14.7
감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고추	수출량	0.7	1.3	1.4	1.1	1.2
	수출액	1.1	1.8	2.5	2.2	2.8
딸기	수출량	2.3	1.6	2.5	2.6	4.1
	수출액	6.6	6.0	8.5	8.5	12.1
마늘	수출량	0.1	0.1	0.2	0.2	0.1
	수출액	0.1	0.1	0.2	0.3	0.2
생강	수출량	0.2	0.2	0.2	0.2	0.2
	수출액	0.3	0.4	0.5	0.7	0.6
수박	수출량	1.8	1.6	1.9	2.0	2.0
	수출액	0.6	0.7	0.8	1.1	1.3
양파	수출량	55.2	56.6	70.7	54.1	45.6
	수출액	15.8	16.0	17.7	16.4	16.7
오이	수출량	0.1	-	0.3	0.3	0.2
	수출액	0.1	0.1	0.4	0.4	0.4
토마토	수출량	3.0	4.2	4.3	3.7	4.3
	수출액	3.6	5.2	5.3	4.8	6.8
닭고기	수출량	16.9	15.8	14.5	17.5	16.1
	수출액	9.4	10.0	10.7	12.8	11.1
돼지고기	수출량	61.9	58.0	46.1	41.6	44.9
	수출액	145.6	141.2	122.3	100.6	113.7
쇠고기	수출량	39.5	32.2	34.8	53.8	53.0
	수출액	76.3	75.1	96.4	167.9	167.2
천연꿀	수출량	8.5	5.2	6.6	7.2	8.9
	수출액	16.3	18.1	22.8	20.4	21.6
녹차	수출량	0.8	0.8	0.7	0.7	0.4
	수출액	3.3	3.8	2.9	3.9	3.3
땅콩	수출량	4.0	4.0	15.7	3.2	2.2
	수출액	3.2	3.9	18.0	3.7	2.6
합계	수출량	-	-	-	0.1	0.2
	수출액	-	-	0.1	0.3	0.3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우리나라의 호주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7천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나 호주로부터의 수입은 18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호주에 대한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쇠고기 수입 증가로 축산물의 무역수지 적자가 농산물보다 크다.

우리나라의 호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2003년 쇠고기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호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규모는 1995년 6억 2천만 달러 수준에서 2008년 18억 5천만 달러로 3배 증가하였다.

표 8-16. 한국-호주 농산물 교역현황

단위: 백만 USD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	농산물(A)	14.7	17.0	20.8	34.8	49.0
	축산물(B)	2.9	2.8	3.7	4.9	5.0
	임산물(C)	0.2	0.2	0.2	0.4	0.5
	계(D)	17.8	20.0	24.7	40.1	54.5
수입	농산물(E)	430.7	457.7	665.4	615.1	762.6
	축산물(F)	285.7	276.3	461.4	661.3	815.2
	임산물(G)	85.4	70.1	72.6	83.1	79.0
	계(H)	801.7	804.1	1,199.4	1,359.5	1,656.9
무역수지	농산물(A-E)	-416.0	-440.7	-644.6	-580.4	-713.6
	축산물(B-F)	-282.7	-273.5	-457.7	-656.3	-810.2
	임산물(C-G)	-85.2	-69.8	-72.4	-82.7	-78.5
	계(D-H)	-783.9	-784.0	-1,174.6	-1,319.4	-1,602.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우리나라가 호주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쇠고기, 사탕수수당, 밀, 보리, 낙농품 등 농산물과 원목, 섬유판 등 임산물이다. 2008년 주요 품목별 수입액은 쇠고기 6억 8천만 달러, 사탕수수당 3억 8천만 달러, 밀 3억 4천만 달러, 보리 1억 달러, 치즈 3,300만 달러 등이다. 임산물 가운데 수입 규모가 큰 것은

원목 4,500만 달러, 칩 5천만 달러, 섬유판 1,800만 달러 등이다.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주요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가 호주로 수출하는 농산물은 주로 가공식품이다. 대표적인 수출 품목은 커피 조제품, 라면, 비스킷 등이다. 그러나 신선 농산물 수출은 거의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

표 8-17. 한국-호주 농산물 주요 수입 품목

단위: 톤, 1000 USD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합계	물량	3,377,754	3,028,694	3,893,058	3,502,756	3,534,010	3,232,662	3,123,241	3,384,596
	금액	801,713	804,070	1,199,383	1,359,489	1,656,883	1,692,616	1,847,071	1,337,318
쇠고기	물량	93,877	78,018	99,071	139,808	180,386	179,942	151,918	131,860
	금액	209,707	197,438	355,378	539,803	693,673	761,560	679,945	491,072
사탕수수당	물량	648,906	858,415	992,979	1,010,406	959,863	1,003,171	1,165,750	948,498
	금액	117,301	165,438	196,650	245,082	357,877	290,343	378,809	250,214
밀	물량	1,045,899	882,935	1,255,972	998,252	1,042,595	824,739	663,915	959,187
	금액	167,677	169,888	249,231	196,724	224,681	235,846	339,491	226,220
침엽수원목	물량	609,600	449,915	410,333	405,518	375,109	461,146	336,730	435,479
	금액	42,191	33,688	40,657	40,595	39,867	60,971	44,667	43,234
보리	물량	167,106	153,653	155,228	144,837	114,808	104,256	98,410	134,043
	금액	40,225	39,469	43,052	39,228	32,078	44,932	56,462	42,207
치즈	물량	13,648	14,758	12,056	9,822	7,554	9,073	6,868	10,540
	금액	32,535	34,004	32,283	31,305	24,580	31,863	33,524	31,442
루핀종자	물량	176,226	106,108	339,929	208,649	220,963	52,500	31,434	162,258
	금액	26,776	18,879	65,763	39,225	36,324	10,610	12,581	30,023
칩	물량	226,539	214,096	271,322	264,240	219,119	344,588	407,558	278,209
	금액	13,674	13,322	22,021	23,618	17,750	31,004	50,850	24,606
섬유판	물량	81,685	75,912	22,173	54,314	49,336	34,282	44,076	51,683
	금액	20,499	18,454	6,498	16,498	15,555	13,475	18,250	15,60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8-18. 한국-호주 농산물 주요 수출 품목

단위: 톤, 1000 USD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합계	물량	9,784	12,727	13,642	15,226	19,543	22,747	21,920	16,513
	금액	17,781	20,046	24,747	40,098	54,479	68,482	71,550	42,455
커피 조제품	물량	220	181	387	1,470	1,951	2,883	2,857	1,421
	금액	638	255	1,108	7,458	12,355	20,983	23,700	9,500
라면	물량	2,211	2,309	1,750	1,947	1,964	1,946	2,372	2,071
	금액	4,760	4,959	4,647	7,104	6,038	6,671	8,388	6,081
비스킷	물량	551	288	703	420	535	748	950	599
	금액	1,374	876	3,264	2,511	3,608	4,658	5,234	3,075
젤라틴	물량	659	480	367	371	563	743	679	552
	금액	2,227	1,678	1,477	1,640	2,493	3,619	3,528	2,380
기타 베이 커리 제품	물량	113	611	164	302	602	589	685	438
	금액	297	1,647	582	1,601	3,945	3,449	3,644	2,166
기타 파스타	물량	736	1,032	938	782	734	791	945	851
	금액	1,231	1,694	1,683	2,038	2,226	2,257	2,298	1,918
발효유	물량	598	1,043	1,743	1,641	2,076	1,627	1,204	1,419
	금액	526	915	1,625	1,713	2,189	1,862	1,579	1,487
기타 음료	물량	57	177	696	1,297	1,690	2,181	2,964	1,295
	금액	50	177	624	1,054	1,405	2,076	2,891	1,182
과실 혼합물	물량	1	0	0	0	1,812	2,419	11	606
	금액	1	0	0	0	3,288	4,572	17	1,126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5. 농산물 관세

관세는 호주의 중요한 무역정책 수단이지만 총 조세수입에서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관세율도 낮다. 관세부과 방식은 99% 이상 종가세 형태를 나타낸다. 종량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낙농품(04류) 5품목, 당류 및 설탕과자(17류) 7품목, 담배(24류) 2품목이 있다. 또한 일부 품목은 누진관세의 특성이

있다. TRQ는 치즈 5개 품목과 가공되지 않은 담배에 적용되고 있다.

호주의 농산물(HS 3류를 제외한 24류까지) MFN 관세율은 평균 3.7%로 낮은 수준이다.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류는 가공도가 높은 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육류 조제품(16류), 당류 및 설탕과자(17류), 코코아 및 초콜릿(18류), 곡물 조제품 및 빵류(19류), 채소 및 과일 조제품(20류), 주류(22류), 담배(24류) 등의 관세율이 신선 농산물보다 높다. 신선 농산물보다 가공도가 높은 식품의 관세율이 높은 것은 관세의 누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19. 호주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전체	3.7	13류	2.0
01류	0.4	14류	0.7
02류	0.1	15류	3.5
04류	0.7	16류	6.4
05류	2.0	17류	7.3
06류	0.8	18류	7.8
07류	3.3	19류	6.4
08류	2.1	20류	8.5
09류	0.1	21류	3.3
10류	0.8	22류	8.5
11류	2.8	23류	0.7
12류	1.7	24류	14.9

주: 종가세, 양허 품목 기준임.

자료: WTO, Comprehensive tariff data on the WTO websit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ariffs_e/tariff_data_e.htm)

HS 2단위 품목류에서 HS 4단위(호)로 더 세분화하여 관세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채소(07류)의 평균 관세율은 낮으나 채소 가운데 관세율이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것도 있다. 이러한 품목은 감자(0701호), 냉동채소(0710호), 건조채소(0712호) 등이다. 과일 가운데에서는 포도(0806호)의 관세율이 10%로

다른 과일에 비해 매우 높다. 건조과일(0813호)과 일시저장처리된 체리와 딸기(0812호)도 신선 과일에 비해 관세율이 높다. 감자의 관세율이 높은 것과 같이 감자분이나 감자플레이크(1105호)의 관세율도 높게 책정되어 있다(평균 29%).

호주는 식물성 기름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두유, 낙화생유, 해바라기씨유 등에 8%의 관세가 적용된다. 설탕 및 설탕과자 가운데에서는 사탕수수당(1701호), 유당(1702호), 설탕과자류(1704호) 등이 고율관세 품목이다. 18류 가운데에서는 초콜릿(1806호)의 관세율이 높다. 채소와 과일 조제품 가운데 고율관세 품목은 조제토마토(페이스트, 저장처리 등, 2002호)와 오렌지주스(2009호)가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10%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포도주(2204호)와 유사포도주(2205호)의 관세율이 각각 13.5%와 15.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관세율 체계로 볼 때 호주가 관세를 통해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품목은 감자, 포도, 사탕수수, 오렌지, 토마토, 포도주 등으로 볼 수 있다. 포도는 신선 상태는 물론 포도주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채소는 신선보다 건조 상태의 채소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식물검역 등의 이유로 신선 상태보다는 가공 상태의 교역이 많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토마토와 오렌지의 경우도 교역 여건으로 볼 때 신선보다는 가공 상태의 상품을 보호할 필요성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8-20. 호주의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0101	1.0	0510	1.0	0902	0.0
0102	1.0	0511	1.0	0903	0.0
0103	0.0	0601	1.0	0904	0.0
0104	0.0	0602	1.0	0905	0.0
0105	0.0	0603	0.0	0906	0.0
0106	1.0	0604	1.0	0907	0.0
0201	0.0	0701	5.0	0908	0.0
0202	0.0	0702	1.0	0909	0.0
0203	0.0	0703	1.0	0910	0.0
0204	0.0	0704	1.0	1001	0.0
0205	0.0	0705	1.0	1002	1.0
0206	0.0	0706	1.0	1003	0.0
0207	0.0	0707	1.0	1004	0.0
0208	1.0	0708	1.0	1005	1.0
0209	0.0	0709	4.1	1006	1.0
0210	0.0	0710	6.3	1007	1.0
0401	0.0	0711	1.6	1008	1.0
0402	1.0	0712	11.0	1101	1.0
0403	1.0	0713	1.8	1102	1.0
0404	1.0	0714	4.5	1103	0.0
0405	2.0	0801	0.0	1104	0.0
0406	0.0	0802	1.6	1105	29.0
0407	0.0	0803	0.0	1106	1.0
0408	0.0	0804	0.0	1107	1.0
0409	1.0	0805	1.0	1108	4.2
0410	1.0	0806	10.0	1109	1.0
0501	1.0	0807	0.0	1201	1.0
0502	1.0	0808	1.0	1202	5.0
0503	15.0	0809	1.0	1203	1.0
0504	0.0	0810	0.7	1204	1.0
0505	1.0	0811	2.0	1205	1.0
0506	1.0	0812	6.7	1206	1.0
0507	1.0	0813	7.4	1207	1.0
0508	1.0	0814	1.0	1208	1.0
0509	5.0	0901	0.4	1209	1.7

(표 8-20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1210	8.0	1521	0.5	2009	11.6
1211	1.3	1522	1.0	2101	1.5
1212	1.3	1601	8.0	2102	1.0
1213	1.0	1602	11.2	2103	3.0
1214	1.0	1603	1.0	2104	4.0
1301	0.0	1604	5.0	2105	4.0
1302	2.7	1605	0.0	2106	9.8
1401	1.0	1701	8.0	2201	7.0
1402	1.0	1702	7.5	2202	10.0
1403	1.0	1703	1.0	2203	0.0
1404	0.0	1704	12.5	2204	13.5
1501	0.0	1801	1.0	2205	15.0
1502	1.0	1802	1.0	2206	7.0
1503	0.0	1803	0.0	2207	9.0
1504	3.3	1804	0.0	2208	6.1
1505	1.0	1805	0.0	2209	1.0
1506	1.0	1806	16.8	2301	3.0
1507	8.0	1901	6.0	2302	1.0
1508	8.0	1902	8.0	2303	1.0
1509	0.0	1903	0.0	2304	0.0
1510	0.0	1904	7.3	2305	0.0
1511	1.5	1905	5.8	2306	0.0
1512	8.0	2001	8.0	2307	0.0
1513	0.5	2002	11.0	2308	1.0
1514	8.0	2003	5.0	2309	1.0
1515	3.7	2004	8.0	2401	19.3
1516	0.5	2005	7.2	2402	10.0
1517	8.0	2006	7.0	2403	12.2
1518	9.5	2007	8.0		
1520	1.0	2008	7.3		

주: 종가세, 양허 품목 기준임.

자료: WTO, Comprehensive tariff data on the WTO websit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ariffs_e/tariff_data_e.htm)

6. 한-호주 FTA 협상 추진 동향과 전망

우리나라와 호주와의 FTA에 관한 민간공동연구가 2007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진행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정부간 FTA 협상을 위한 예비 협의가 개최되었다. 정부간 공식협상은 2009년 5월부터 시작되어 9월까지 두 차례 개최되었다. 협상은 빠르면 2010년 상반기까지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호주가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부 농산물도 있으나, 협상에서 주로 쟁점이 될 부분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개방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출국인 호주와의 FTA로 수입 증가와 그로 인한 농업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이 높은 나라로 쇠고기, 낙농품, 돼지고기 등의 수입 증가가 우려된다. 따라서 축산물과 일부 원예작물(오렌지, 포도 등)의 시장개방 폭이 협상을 타결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 9 장

뉴 질 랜 드

1. 역사

뉴질랜드를 처음으로 찾은 유럽인은 1642년 남섬 서해안에 도착한 네덜란드의 아벨 타스만(Abel Tasman)이었다. 타스만 이후 뉴질랜드를 찾은 사람은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James Cook)이었다. 쿡은 1769~1777년에 걸쳐 여러 차례 이 지역을 답사하였다. 1800년대 초에는 뉴사우스웨일스(오스트레일리아)의 식민지로서, 고래와 바다표범잡이의 기지로 이용되었다. 1840년 마오리족은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뉴질랜드의 통치권을 영국에 양도하는 와이탕기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부터 영국 각지에서 이민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880년대 초 냉동선이 개발되자 오지에서도 농목업이 발전하였고, 1852년에는 뉴질랜드 헌법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식민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마오리족과 영국 간에 분쟁이 생겼고, 1843~1870년 사이에는 두 차례에 걸쳐 마오리전쟁이 일어났다. 이에 영국은 마오리족의 반영국 감정 완화를 위해 힘썼고, 1870년부터는 인종분쟁이 끝나고 마오리족의 영국화가 시작되었다. 마오리족과의 공존관계 설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 노력은 다른 식민지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해법이어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1907년 영국의 자치국이

되었다가 1947년 독립하였다.

뉴질랜드의 면적은 북섬 11.6만 km^2 , 남섬 15.1만 km^2 , 기타도서 등 총 27만 km^2 이다. 이는 한반도의 1.2배, 남한의 2.7배에 해당하는 넓이이다. 전 국토의 52%가 농경지 및 목장이며 29%는 삼림(조림 5%, 자연림 24%)이다. 적도와 남극의 중간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크지 않은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은 12도 정도이다. 겨울인 7~8월이 우기이고 여름인 1~2월이 건기에 해당한다. 연평균 강수량은 1,200mm 정도이다. 지리적으로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해 연중 활발한 화산활동과 지진의 영향을 받으며 진도 6을 넘는 지진이 연평균 한 차례씩 발생하고 진도 7을 넘는 강진도 10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²¹

뉴질랜드 국가형태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의원내각제이며,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국가의 원수이나 실제로 뉴질랜드 내각의 제청에 의해 여왕이 임명하는 총리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수도는 웰링턴이며, 인구는 4백만을 조금 넘는다.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은 50%로 높은 편이다.

2. 주요 경제지표

뉴질랜드의 인구는 400만 명을 약간 넘으며 인구밀도는 km^2 당 15명으로 한국의 485명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인구증가율은 0.9%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다.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8%인 33만 명, 농촌 거주 인구는 56만 명이다(2006년). 농경지는 전체 국토면적의 13%인 340만 ha로 2002년에 비해 3만 2천 ha가 증가하였다.

뉴질랜드의 경제는 1980년대 중반 경제개혁 이전에는 정부의 간섭이 심하였으나 1984년 노동당 정부의 집권을 계기로 시장기능 활성화와 개방화를 위한

21 외교통상부(2006).

적극적인 규제완화 및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뉴질랜드의 GDP는 1,000억 달러, 1인당 GDP는 2만 6,000 달러(2006년) 수준으로 각각 우리나라의 11%, 1.4배 수준이다. 교역 규모는 490억 달러로 이 가운데 수출이 224억 달러, 수입이 264억 달러이다. 무역수지는 2006년에 40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전체 수출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이른다.

뉴질랜드 경제는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고 농산물 수출은 영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에 9%로 1970년대 10%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의 EC 가입을 계기로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1차 산업 중심의 생산 및 수출에서 벗어나 시장 다변화, 산업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의 산업별 고용구조는 총고용인구의 7.5%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0.2%는 광업, 14.5%는 제조업, 77.8%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표 9-1. 뉴질랜드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2002	2003	2004	2005	2006
인구(A)		3,948	3,999	4,050	4,097	4,139
농촌거주인구	1000명	556	560	563	564	-
농업인구(B)		333	332	332	331	-
농업인구비중(A/B)	%	8	8	8	8	-
국토면적(C)		26,771	26,771	26,771	26,771	26,771
경지면적(D)	1000ha	3,372	3,372	3,406	3,406	3,406
경지면적비중(C/D)	%	13	13	13	13	13
GDP	백만 USD	60,520	80,846	98,467	109,291	103,873
1인당 GDP	USD	15,345	20,289	24,409	26,955	25,907
수출(E)		14,382	16,527	20,345	21,730	22,409
수입(F)	백만 USD	15,044	18,557	21,308	26,219	26,424
경상수지(E-F)		-662	-2,030	-963	-4,489	-4,015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3. 농산물 수급

뉴질랜드는 국토의 52%가 목초지이다. 농축산업 등 1차 산업 생산의 90% 정도가 수출되며 이는 뉴질랜드 총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농업은 수출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세계최대의 양고기와 낙농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 제조업 수출의 절반가량은 농업 기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선진국보다도 총수출 대비 농업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뉴질랜드의 농민들은 국제시장신호를 주시하고 수출과 관련된 국가의 소비자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984년부터 단행한 뉴질랜드 정부의 농업개혁 프로그램은 농업부문에 지불하는 보조금을 철폐하여 농가 스스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의 다양화를 추진함은 물론 수익성이 높은 관광농업과 같은 소득원을 창출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농축산물 중 목축업이 가장 중요한 수출산업이며 육류, 양모, 원피 및 낙농제품의 생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곡물은 내수용으로 소량 재배되고 있다. 농산물 중에는 사과와 키위가 주요 수출품이고 와인, 양파, 가공채소, 호박, 견과류도 수출하고 있다.

표 9-2. 뉴질랜드의 농경지 현황

단위: 백만 ha, %

항목	지표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면적	총면적	27	27	27	27	27	27	27
	토지면적	26.8	26.8	26.8	26.8	26.8	26.8	26.8
	농경지	3	3	3	3	3	3	3
	경지	1.6	1.5	1.5	1.5	1.5	1.5	1.5
	수원지	1.6	1.8	1.8	1.8	1.8	1.8	1.8
	비농경지	23	23	23	23	23	23	23
	토지면적 중 농경지 비중	11	11	11	11	11	11	11

자료: FAO, STAT(2006).

뉴질랜드의 국토 면적은 2,680만 ha이며, 이 가운데 농경지는 약 300만 ha로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이다. 수원지는 187만 ha로 호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원지가 많은 편으로 부족 현상이 심하지 않다.

뉴질랜드의 곡물류 재배면적은 1995년 14만 5천 ha에서 2005년 11만 7천 ha로 24% 감소하였다. 채소류 재배면적은 1995년 6만 1천 ha에서 2005년 4만 5천 ha로 26%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4만 2천~4만 6천 ha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일류 재배면적은 1995년 4만 6천 ha에서 2005년 6만 1천 ha로 25% 증가하였다.

곡물류의 생산량은 1995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00년 이후 평균 9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량 또한 1995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2000년 이후 평균 49만 톤 수준으로 연평균 40만 톤 이상 수출되었다.

표 9-3. 뉴질랜드의 품목류별 주요 농산물 수급 현황

단위: 천 ha, 천 톤

분류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재배면적	곡물류	145	136	145	145	132	114	117
	과일류	46	50	47	52	54	56	61
	채소류	61	48	45	42	44	45	45
곡물류	생산량	752	854	938	936	899	866	894
	소비량	430	499	483	473	500	484	515
	자급률	174.9	171.1	194.1	197.8	179.7	178.7	173.4
과실류	생산량	984	1,106	954	1,046	982	1,182	1,126
	소비량	523	558	562	547	574	561	542
	자급률	188.2	198.3	169.8	191.2	170.9	210.8	207.8
채소류	생산량	1,114	995	991	922	942	1,001	1,003
	소비량	509	428	442	451	472	484	511
	자급률	219.0	232.3	224.5	204.3	199.5	206.9	196.0
육류	생산량	1,342	1,293	1,353	1,314	1,439	1,489	1,406
	소비량	313	321	334	338	362	366	354
	자급률	428.2	402.5	405.1	388.6	397.4	406.3	397.3
유지류	생산량	6	5	5	5	5	5	5
	소비량	189	207	196	218	217	235	248
	자급률	3.0	2.4	2.6	2.3	2.3	2.1	2.0

자료: FAO(2006).

육류의 생산은 최근 1백 40만 톤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소비량은 35만 톤 수준이기 때문에 자급률이 400%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과일류와 채소류는 90만 톤에서 110만 톤 정도 생산되며 연평균 50만 톤 정도가 수출되었다.

3.1. 곡물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주요 곡물은 밀, 보리, 감자 등이다. 밀과 보리는 각각 30만 톤 정도 생산된다. 보리의 재배면적은 2002년 7만 8천 ha에서 2005년 5만 ha로 감소하였으며, 밀 또한 같은 기간 5만 3천 ha에서 3만 5천 ha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밀과 보리 생산은 국내 자급을 이루지 못하는 수준이다. 감자의 생산량은 50만 톤, 소비량은 47만 톤으로 자급률은 100%를 조금 넘는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곡물 산업은 자급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 산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표 9-4. 뉴질랜드의 식량작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생산량(A)	301	321	319	319	262
	소비량(B) ¹⁾	634	593	668	714	617
	자급률(A/B)	48	54	48	45	42
보리	생산량(A)	441	378	303	302	277
	소비량(B) ¹⁾	442	378	328	305	282
	자급률(A/B)	100	100	92	99	98
옥수수	생산량(A)	149	197	168	210	227
	소비량(B) ¹⁾	170	211	171	210	227
	자급률(A/B)	88	93	98	100	100
귀리	생산량(A)	35	30	29	25	28
	소비량(B) ¹⁾	36	30	29	25	29
	자급률(A/B)	98	99	100	99	99
수수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38	11	32	32	33
	자급률(A/B)	-	-	-	-	-

(표 9-4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감자	생산량(A)	500	500	500	500	501
	소비량(B) ¹⁾	467	470	473	473	474
	자급률(A/B)	107	106	106	106	106
고구마	생산량(A)	16	18	20	18	18
	소비량(B) ¹⁾	16	18	20	18	18
	자급률(A/B)	100	99	98	98	100
대두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1	1	1	1	1
	자급률(A/B)	-	-	-	-	-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3.2. 원예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주요 과일은 사과, 키위, 포도 등이다. 뉴질랜드의 과일 재배면적은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이다. 사과의 경우 2000년 1만 4천 ha에서 2005년 1만 1천 ha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 이는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증가하는 브레이번(Braeburn)과 로열갈라 품종(Royal Gala)²²에서 소득이 높은 품종으로 재배를 전환하기 위해 기존의 과수를 제거하기 때문이다.²³ 2000년도 사과 생산량은 62만 톤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52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사과의 생산량 감소 원인은 뉴질랜드 사과 재배면적의 감소와 더불어 유럽시장에서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사과 가격의 하락, 기상환경의 악화로 볼 수 있다.²⁴ 사과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EU(특히 영국)와 미국 등이다. 사과 생산량은 연간 50만 톤 수준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출된다. 포도 생산량은 2006년 18만 5천 톤에 달하지만 자급률은 95% 수준이다. 키위 생산량은 30만 톤을 넘는

22 실제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품종임.

23 농수산물유통공사(2007).

24 농수산물유통공사(2007).

다. 그 밖에 체리, 배, 복숭아 등이 생산되지만 생산량은 미미하다.

뉴질랜드는 세계 2위의 키위 생산국으로 세계 키위 생산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키위의 재배면적은 2005년 1만 2천 ha이다. 키위의 생산량은 2000년 이후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32만 톤을 생산하였다. 키위는 품종별로 제스프리그린, 제스프리 골드, 유기농 제스프리로 구분된다. 2006년도 이들의 재배면적 비중은 각각 79%, 17%, 4% 등이다. 뉴질랜드 키위 생산량의 90%가 수출되고 있으며 키위산업의 마케팅보드 자회사인 제스프리사가 키위 수출권을 독점하고 있다. 키위의 주요 수출국은 EU, 일본, 한국 등이다.

표 9-5. 뉴질랜드의 과일 재배면적과 생산량

단위: 천 ha, 천 톤

항목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재배면적	사과	14	13	12	11	11	11
	배	1.1	1.0	1.0	0.9	1.0	0.7
	오렌지	0.6	0.6	0.6	0.6	0.6	0.5
	복숭아	1.3	1.3	1.3	1.3	1.3	1.0
	파인애플	-	-	-	-	-	-
	바나나	-	-	-	-	-	-
	아보카도	2.6	1.6	3.1	2.2	2.6	2.9
	키위	12.2	10.1	12.0	10.6	10.9	11.5
생산량	사과	620	474	531	501	546	524
	배	42	34	42	40	40	32
	오렌지	5	8	8	6	7	7
	복숭아	17	15	11	7	9	9
	파인애플	-	-	-	-	-	-
	바나나	-	-	-	-	-	-
	아보카도	13	12	13	11	12	23
	키위	262	271	248	238	309	318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FAO STAT(2006).

표 9-6. 뉴질랜드의 과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오렌지	생산량(A)	8	6	7	7	7
	소비량(B) ¹⁾	16	20	20	21	22
	자급률(A/B)	47	31	36	33	32
레몬	생산량(A)	4	5	5	5	5
	소비량(B) ¹⁾	3	4	5	5	4
	자급률(A/B)	145	111	108	104	116
바나나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67	67	66	77	81
	자급률(A/B)	-	-	-	-	-
사과	생산량(A)	531	501	546	524	354
	소비량(B) ¹⁾	212	179	188	207	90
	자급률(A/B)	250	280	290	254	395
포도	생산량(A)	119	76	166	142	185
	소비량(B) ¹⁾	125	85	175	153	194
	자급률(A/B)	95	90	95	93	95
배	생산량(A)	42	40	40	32	33
	소비량(B) ¹⁾	35	42	36	31	31
	자급률(A/B)	120	96	110	105	105
복숭아	생산량(A)	11	7	9	9	9
	소비량(B) ¹⁾	12	9	11	10	10
	자급률(A/B)	91	78	86	88	88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뉴질랜드는 와인용 포도 생산량이 많으며 포도 재배면적은 2000년 1만 ha에서 2005년도에는 2만 ha로 두 배 증가하였다. 포도 생산량 역시 2000년 7만 8천 톤에서 2005년에 14만 톤으로 급증하였다. 와인농원(winery)의 수는 같은 기간 358개에서 516개로 증가하였다. 와인의 생산량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와인 생산량은 5천 5백만 리터에서 2005년 1억 2백만 리터로 증가하였다. 소비량은 2000년에 국내 생산의 68% 수준이었으나 2005년 44%로 와인 생산은 수출 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와인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영국, 미국, 호주이다.

표 9-7. 와인포도 재배면적 및 와인수급

단위: ha, 톤, 백만 리터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재배면적(ha)	10,197	11,648	13,787	15,800	17,809	21,002
포도 생산량(톤)	78,069	68,986	116,686	74,821	162,100	139,406
와인 생산량	60.2	53.3	89.0	55.0	119.2	102.0
국내 소비량	41.3	36.2	32.6	35.3	35.5	45.0
와인수출량	19.2	19.2	23.0	27.1	31.1	51.4

자료: 뉴질랜드 와인생산자협회(<http://www.nzwine.com>.)

뉴질랜드에서 주로 생산되는 채소는 양파, 호박, 토마토 등을 들 수 있다.

뉴질랜드의 주요 채소로는 양파가 있다. 양파는 연간 20만 톤 정도가 생산된다. 그 밖에 채소류 생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고추, 마늘 등의 생산은 불과 수천 톤에 불과하다. 뉴질랜드의 채소 작물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호박을 제외하고는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9-8. 뉴질랜드의 채소 재배면적과 생산량

단위: 천 ha, 천 톤

항목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재배면적	당근	2.5	2.5	1.8	1.8	1.8	1.9
	양파	7	7	5	6	5	5
	상추	1.5	1.4	1.3	1.3	1.4	1.2
	감자	12	11	11	11	11	11
	호박	7	7	7	8	8	10
	토마토	0.7	0.7	0.6	0.8	0.7	0.7
	버섯	0.04	0.04	0.04	0.04	0.04	0.04
생산량	당근	77	78	57	65	65	65
	양파	240	245	210	210	250	165
	상추	37	33	30	31	35	38
	감자	500	500	500	500	500	500
	호박	155	155	156	126	108	124
	토마토	87	87	87	100	95	90
	버섯	9	9	9	9	9	9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FAO STAT(2006).

표 9-9. 뉴질랜드의 채소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추	생산량(A)	5	5	5	5	5
	소비량(B) ¹⁾	2	2	2	1	-
	자급률(A/B)	210	246	262	459	1,567
딸기	생산량(A)	7	6	5	5	5
	소비량(B) ¹⁾	6	5	4	4	5
	자급률(A/B)	115	117	110	109	105
마늘	생산량(A)	1	1	1	1	2
	소비량(B) ¹⁾	2	2	2	2	3
	자급률(A/B)	89	66	70	60	52
생강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1	1	1	1	1
	자급률(A/B)	-	-	-	-	-

(표 9-9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박	생산량(A)	3	3	3	3	3
	소비량(B) ¹⁾	5	5	5	5	4
	자급률(A/B)	55	55	52	55	60
양파	생산량(A)	-	-	-	-	210
	소비량(B) ¹⁾	-	-	-	-	210
	자급률(A/B)	-	-	-	-	100
오이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	-	-	-	-
	자급률(A/B)	-	-	-	-	-
토마토	생산량(A)	87	100	95	90	92
	소비량(B) ¹⁾	88	101	97	90	92
	자급률(A/B)	98	99	98	100	100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3.3. 축산

뉴질랜드 소 사육두수는 1995년 518만 두수에서 2005년 443만 두수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젖소의 사육두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가 낙농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돼지 사육두수는 1995년 43만 두에서 2005년 39만 두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에 양 사육두수는 4,900만 두에서 4,000만 두로 크게 감소하였다. 닭은 2002년 이후에 사육두수가 급증하여 2004년에 2천만 수가 되었다. 축산업에서 낙농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10. 뉴질랜드의 축종별 사육두수

단위: 천 두

품목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소	젖소	4,090	4,599	4,846	5,162	5,102	5,152	5,070
	육우	5,183	4,670	4,791	4,491	4,627	4,447	4,431
	소계	9,272	9,269	9,637	9,653	9,728	9,600	9,501
돼지		431	369	355	342	355	389	389
양		48,816	42,845	40,010	39,572	39,552	39,271	39,928
닭		12,700	13,000	13,000	17,128	18,049	20,000	-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Meat and Wool New Zealand Limited Economic Service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닭 사육 자료는 FAO STAT(2006)에 의함.

표 9-11. 뉴질랜드의 축산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닭고기	생산량(A)	135	144	147	157	149
	소비량(B) ¹⁾	134	143	144	153	144
	자급률(A/B)	101	101	102	103	103
돼지고기	생산량(A)	47	47	52	50	51
	소비량(B) ¹⁾	48	49	55	53	53
	자급률(A/B)	97	96	94	94	96
쇠고기	생산량(A)	576	660	709	652	643
	소비량(B) ¹⁾	562	640	679	617	616
	자급률(A/B)	103	103	104	106	104
천연꿀	생산량(A)	5	12	9	10	10
	소비량(B) ¹⁾	2.1	9.1	6.1	6.1	6.3
	자급률(A/B)	219	135	145	160	165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낙농업은 뉴질랜드의 핵심적인 농업 분야로 농업 부문 중 GDP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산업이다. 뉴질랜드의 낙농업은 폰테라(Fonterra)라 불리는 협동조합이 중심 역할을 한다. 폰테라는 1만 1,600명의 낙농업자가 소유하는 유한기업형태의 협동조합으로 뉴질랜드의 낙농제품을 140개국으로 수출하는 핵심 조직이다. 이 회사는 130억 뉴질랜드 달러의 자산과 연간 200억 리터의 우유를 생산

하여 뉴질랜드 우유 생산의 97%를 점유하고 있다.²⁵ 뉴질랜드의 젖소 사육두수는 2005년도에 약 500만 두수로 1995년에 비해 1백만 두 정도가 증가하였다.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유 생산량도 1995년 929만 톤에서 2005년 1,45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표 9-12. 뉴질랜드의 젖소 사육두수와 우유 생산 현황

단위: 천 두, 천 톤

연도	젖소사육두수	우유 생산량
1995	4,090	9,285
2000	4,599	12,235
2001	4,846	13,162
2002	5,162	13,925
2003	5,102	14,346
2004	5,152	15,000
2005	5,070	14,500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2006).

뉴질랜드의 낙농품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3.4%(200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나 세계 낙농품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EU에 이은 제2위의 낙농품 수출국이다. 2007년 3월을 기준으로 뉴질랜드의 낙농품 수출은 전지분유 70만 톤, 버터 42만 톤, 탈지분유 37만 톤, 치즈 30만 톤, 카세인 21만 톤 등이다. 주요 수출국은 수출액 기준으로 동아시아가 38%를 차지하고 북미국가가 14%, 중남미 10%, EU 8% 순이다. 뉴질랜드의 1위 치즈 수출시장은 일본으로 전체 치즈 수출량의 19%를 차지하며 2위는 호주로 약 17%를 차지한다. 한국은 뉴질랜드의 6위 치즈 수출시장이다. 2005년 한국으로 수출된 치즈는 1만 2천 톤이며, 이 가운데 67%가 신선치즈이며 32%가 체다 치즈와 콜비 등 가공치즈이다²⁶.

²⁵ 농수산물유통공사(2007).

²⁶ 농수산물유통공사(2007).

표 9-13. 뉴질랜드의 낙농품 수출 현황(2007년 3월)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품목	수출량	비중(%)
전지분유	682	29
버터	420	18
탈지분유	368	16
치즈	303	13
카세인	206	9
기타	351	15

자료: Situation and outlook for New Zealand agriculture and forestry(August 2007)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육우 사육을 목초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쇠고기 시장이 작아 생산량의 80% 정도를 세계 90여국에 수출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쇠고기 수출은 전체 수출의 92%가 냉동육이다. 냉동육의 50%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미국시장에 수출되는 쇠고기는 주로 햄버거용으로 사용되는 가공육이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뉴질랜드의 두 번째 수출 시장이다. 일본이 뉴질랜드 쇠고기 수출의 3위 수입국이다. 한국은 90% 이상을 냉동육으로 수입하며 일본은 냉장육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뉴질랜드의 쇠고기 생산량은 세계 생산의 1% 수준으로 생산량 자체는 많지 않으나 세계 쇠고기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로 높은 편이다. 뉴질랜드의 쇠고기 생산량은 65만 톤, 돼지고기 생산량은 5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양고기의 생산량은 연도별로 변화가 있지만 1995년 이후 5백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축산물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쇠고기 수출은 2003년도에 42만 톤으로 급증하다가 소폭 하락하여 2005년도에는 37만 톤을 나타내고 있다. 양고기 수출은 2003년 이후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37만 톤으로 안정된 추세를 나타낸다.

표 9-14. 뉴질랜드의 축산물 생산량 및 수출량

단위: 천 톤

항목	품목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생산량	쇠고기	623	568	592	576	660	710	652
	돼지고기	51	47	47	47	48	52	46
	양고기	533	533	562	521	546	509	520
	닭고기	89	105	114	127	136	147	NA
	가금육	91	107	116	129	138	149	NA
수출량	쇠고기	NA	331	325	374	423	391	373
	양고기	NA	357	342	354	352	360	368

NA: not available.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FAO STAT(2006).

4. 농산물 교역

뉴질랜드의 교역 규모는 2006년 224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48%인 109억 달러가 농산물 수출에 의한 것이다. 반면 수입 규모는 264억 달러로 수출보다 크지만 농산물 수입 규모는 21억 달러로 전체의 8%에 불과하다. 뉴질랜드의 농산물 수출은 1995년 54억 달러에서 2006년 109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9-15. 뉴질랜드의 교역지표

단위: 백만 USD, %

	2002	2003	2004	2005	2006
총수출액(A)	14,382	16,527	20,345	21,730	22,409
농업수출액(B)	6,670	7,866	9,876	10,678	10,868
농업수출액 비중(A/B)	46	48	49	49	48
총수입액(C)	15,044	18,557	21,308	26,219	26,424
농업수입액(D)	1,277	1,507	1,764	1,974	2,093
농업수입액 비중(C/D)	8	8	8	8	8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 ¹⁾	13	15	19	21	21

주: 1)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 = $\frac{\text{농업수출액} + \text{농업수입액}}{GDP} \times 100$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 농산물은 양모, 키위, 낙농품, 쇠고기 등이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유럽,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등이다. 뉴질랜드의 2005년 주요 수출대상국 호주,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각각 20.1%, 14.2%, 11.7%, 5.3%, 4.7%, 3.7% 등이다.

표 9-16.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입국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03			2004			2005			2006		
	국가	수출	수입	국가	수출	수입	국가	수출	수입	국가	수출	수입
1	호주	3,546	4,109	호주	4,259	5,164	호주	4,657	5,460	호주	4,598	5,399
2	미국	2,371	2,188	미국	2,926	2,618	미국	3,067	2,882	미국	2,947	3,107
3	일본	1,788	2,173	일본	2,287	2,588	일본	2,301	2,880	일본	2,303	2,417
4	중국	792	1,669	중국	1,150	2,249	중국	1,104	2,843	중국	1,220	3,238
5	영국	785	618	영국	961	783	영국	1,012	844	영국	1,103	724
6	한국	572	495	한국	779	661	한국	769	727	한국	881	778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뉴질랜드로의 수출은 2006년 농산물이 1,200만 달러, 축산물이 200만 달러로 총 1,400만 달러이다. 수입은 농산물이 7,500만 달러, 축산물 2억 9,400만 달러, 임산물 3억 2,900만 달러로 총 6억 9,800만 달러로 총 6억 8,400만 달러의 농산물 무역적자를 나타낸다. 또한 수출 증가에 비하여 수입 증가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무역수지 적자폭은 확대되는 추세이며 농축산물의 적자폭이 임산물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표 9-17. 한국과 뉴질랜드의 농산물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항목	품목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	농산물	2	5	5	6	8	9	10	12
	축산물	-	1	0	2	2	2	2	2
	임산물	-	-	-	-	-	-	-	-
	총계	2	5	5	8	11	11	12	14
수입	농산물	12	16	20	29	34	60	70	75
	축산물	132	98	116	134	160	255	312	294
	임산물	317	226	255	287	296	309	297	329
	총계	460	340	391	450	489	624	680	698
무역수지	농산물	-10	-11	-15	-23	-25	-50	-60	-63
	축산물	-132	-97	-116	-132	-158	-253	-310	-292
	임산물	-317	-226	-255	-287	-296	-309	-297	-329
	총계	-459	-335	-386	-442	-479	-612	-668	-68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참고

뉴질랜드로부터의 주요 농산물 수입 품목은 유제품, 쇠고기, 키위 등이다. 우리나라의 유제품 시장, 특히 치즈 시장이 확대되면서 2005년 뉴질랜드 치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33%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4~2006년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금지되면서 냉동육과 냉장육을 포함한 뉴질랜드 쇠고기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36% 수준으로 증가하여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표 9-18. 한국과 뉴질랜드의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톤

항목	품목	비고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입	키위	수입액	-	7	8	14	18	38	43
		수입량	-	4,186	5,762	8,714	9,803	19,139	19,469
	와인	수입액	0.008	0.091	0.057	0.072	0.07	0.141	0.238
		수입량	2	63	34	12	10	14	28
	쇠고기	수입액	64	26	22	38	65	131	167
		수입량	28,052	11,022	10,248	17,458	26,110	44,885	47,995
	낙농	치즈	수입액	4	21	29	27	26	39
			수입량	1,574	9,814	12,545	10,983	11,163	13,215
		소계	수입액	15	27	36	34	46	53
			수입량	8,705	12,682	15,212	14,275	14,792	18,447
수출	키위	수출액	-	-	-	-	-	-	-
		수출량	-	-	-	-	-	-	-
	와인	수출액	-	-	-	-	-	-	-
		수출량	-	-	-	-	-	-	-
	쇠고기	수출액	-	-	-	-	-	-	-
		수출량	-	-	-	-	-	-	-
	낙농	치즈	수출액	-	-	-	-	-	-
			수출량	-	8	-	-	15	37
		소계	수출액	-	0.1	-	-	0.1	0.1
			수출량	60	82	19	34	63	127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9-19. 한국-뉴질랜드 농산물 교역현황

단위: 백만 USD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	농산물(A)	6.0	8.2	9.4	9.9	12.0
	축산물(B)	1.9	2.4	1.7	1.8	1.9
	임산물(C)	-	-	0.1	0.1	-
	총계(D=A+B+C)	7.9	10.6	11.2	11.8	13.9
수입	농산물(E)	29.1	33.5	59.7	70.1	74.8
	축산물(F)	133.8	160.1	254.8	312.1	293.7
	임산물(G)	287.1	295.7	309.0	297.4	329.0
	총계(H=E+F+G)	450.0	489.3	623.4	679.6	697.5
무역 수지	농산물(A-E)	-23.1	-25.3	-50.3	-60.2	-62.8
	축산물(B-F)	-131.9	-157.6	-253.1	-310.3	-291.8
	임산물(C-G)	-287.1	-295.7	-308.9	-297.3	-328.9
	총계(D-H)	-442.1	-478.6	-612.2	-667.8	-683.6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9-20. 한국-뉴질랜드 농산물 주요 수입 품목

단위: 톤, 1000 USD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합계	물량	3,859,108	3,689,458	2,953,209	2,742,154	2,988,421	2,956,099	2,792,876	3,140,189
	금액	449,968	489,253	623,444	679,586	697,465	809,925	847,173	656,688
침엽수 원목	물량	3,668,458	3,501,733	2,745,269	2,531,527	2,776,581	2,764,401	2,565,782	2,936,250
	금액	268,316	276,061	292,423	277,184	307,302	380,234	363,800	309,331
쇠고기	물량	19,804	28,962	47,736	51,831	49,038	44,891	42,718	40,711
	금액	43,348	71,718	138,691	178,653	163,458	161,908	155,918	130,528
치즈	물량	10,982	11,163	15,043	13,215	11,344	15,254	18,207	13,601
	금액	26,732	25,737	36,927	39,186	34,217	47,314	82,664	41,825
키위	물량	8,714	9,803	19,139	19,469	20,653	25,282	26,396	18,494
	금액	14,464	18,017	38,219	42,698	45,710	54,108	52,905	38,017
카세인	물량	2,832	2,436	3,135	2,935	3,220	4,087	2,521	3,024
	금액	15,144	11,787	17,711	21,749	23,776	32,207	32,994	22,196

(표 9-20 계속)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녹용	물량	146	109	176	205	231	221	189	183
	금액	11,091	10,288	11,655	9,955	10,308	16,344	12,138	11,683
침엽수 제재목	물량	61,188	47,773	49,604	45,739	44,470	41,077	51,751	48,800
	금액	8,299	7,150	8,778	9,594	9,554	9,976	12,961	9,473
양장	물량	1,125	1,719	1,236	2,271	3,536	3,113	3,048	2,293
	금액	4,030	4,653	2,599	9,058	15,121	13,062	16,044	9,224
조제 분유	물량	899	994	1,692	1,705	1,456	1,373	691	1,259
	금액	3,620	4,979	10,616	13,125	11,904	11,228	8,398	9,12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표 9-21. 한국-뉴질랜드 농산물 주요 수출 품목

단위: 톤, 1000 USD

품목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합계	물량	3,643	4,054	4,642	4,634	5,232	5,844	6,425	4,925
	금액	7,869	10,621	11,200	11,819	13,891	16,151	17,556	12,730
라면	물량	916	1,157	1,143	929	759	700	588	884
	금액	2,883	3,779	3,551	2,948	2,516	2,421	2,061	2,880
젤라틴	물량	309	391	257	226	352	527	543	372
	금액	1,062	1,427	1,150	1,106	1,631	2,624	2,686	1,669
커피 조제품	물량	13	42	39	99	263	348	407	173
	금액	20	80	63	373	1,244	2,275	3,004	1,008
기타 파스타	물량	80	110	162	283	323	349	342	236
	금액	159	233	360	944	1,248	1,238	944	732
코코아 웨이스트	물량	200	375	501	180	310	-	-	224
	금액	441	826	1,103	397	683	-	-	493
비스킷	물량	35	60	107	78	85	199	138	100
	금액	69	222	344	328	451	918	686	431
기타 베이커리 제품	물량	82	92	102	78	108	73	119	93
	금액	224	266	297	345	539	477	723	410
김치	물량	49	146	155	89	196	201	274	159
	금액	95	321	440	231	497	554	719	408
곡류 조제품	물량	140	72	78	167	116	110	138	117
	금액	325	217	268	560	448	458	536	40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5. 농산물 관세

뉴질랜드의 농산물(HS 3류를 제외한 24류까지) MFN 관세율은 평균 6.1%로 호주에 비해 높다. 신선 농산물 가운데 비교적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축산물(육류와 낙농품)과 채소류이다. 과일과 곡물류의 관세는 낮다. 육류(2류)와 낙농품(4류)의 관세율은 각각 평균 8.7%와 8.0%이다. 채소류(7류)의 관세율은 평균 7%이다. 반면 과일(8류)과 곡물(10류)의 평균 관세율은 각각 1.8%와 0.8%에 불과하다. 비종가세는 일부 주류(2208호) 10품목에 적용된다.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신선 농산물에 비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경향이 있어 관세가 누진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육조제품(16류), 채소와 과일 조제품(20류), 곡분 및 전분(11류), 기타 조제 식료품(21류), 주류(22류), 담배(24류) 등의 관세율이 평균 관세율보다 높다.

표 9-22. 뉴질랜드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전체	6.1	13류	0.8
01류	0.0	14류	0.0
02류	8.7	15류	2.6
04류	8.0	16류	8.0
05류	0.2	17류	3.7
06류	1.3	18류	11.6
07류	7.0	19류	16.5
08류	1.8	20류	14.5
09류	4.8	21류	14.9
10류	0.8	22류	10.5
11류	11.5	23류	3.6
12류	0.7	24류	8.8

주: 종가세, 양허 품목 기준임.

자료: WTO, Comprehensive tariff data on the WTO websit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ariffs_e/tariff_data_e.htm)

육류 가운데에 쇠고기의 관세율은 0%인 반면, 돼지고기의 관세율은 8.5%로 경쟁력 있는 품목과 보호 대상 품목이 구분되어 있다. 가금육이 속해 있는 0206호와 사슴고기가 속해 있는 0207호의 관세율도 각각 평균 17.2%, 12.8%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04류 가운데에서는 조란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세율이 높다. 채소류는 일시저장처리된 것(0711호)과 건조채소(0712호)의 관세가 평균 16.0%와 16.8%에 달한다. 맥주의 관세율은 0%이지만 포도주의 평균 관세율은 주류 가운데 가장 높은 19.9%이다.

관세율 체계로 볼 때 뉴질랜드가 관세를 통해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품목은 돼지고기, 가금육, 낙농품, 저장처리된 채소, 호프, 과일 및 채소 조제품, 포도주 등이다. 쇠고기를 제외한 육류, 낙농품, 채소와 과일의 가공품 등이 주요 보호 대상 품목이라 할 수 있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신선 채소와 과일보다 가공 형태의 조제품 관세율이 높다.

표 9-23. 뉴질랜드의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0101	0.0	0403	19.2	0511	0.0
0102	0.0	0404	11.1	0601	0.0
0103	0.0	0405	7.1	0602	0.0
0104	0.0	0406	9.0	0603	2.7
0105	0.0	0407	0.0	0604	3.5
0106	0.0	0408	0.0	0701	0.0
0201	0.0	0409	14.7	0702	0.0
0202	0.0	0410	0.0	0703	6.3
0203	8.5	0501	0.0	0704	7.5
0204	0.0	0502	0.0	0705	7.5
0205	0.0	0503	0.0	0706	7.5
0206	11.4	0504	0.0	0707	7.5
0207	17.2	0505	0.0	0708	7.5
0208	12.8	0506	0.0	0709	6.3
0209	0.0	0507	0.0	0710	7.9
0210	9.5	0508	0.0	0711	16.0
0401	7.5	0509	3.2	0712	16.8
0402	10.7	0510	0.0	0713	0.8

(표 9-23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0714	6.3	1106	0.0	1515	0.0
0801	0.0	1107	0.0	1516	3.7
0802	0.0	1108	22.0	1517	18.0
0803	0.0	1109	0.0	1518	0.0
0804	0.0	1201	0.0	1520	3.0
0805	0.0	1202	0.0	1521	3.2
0806	0.0	1203	0.0	1522	0.0
0807	0.0	1204	0.0	1601	7.5
0808	5.2	1205	0.0	1602	10.7
0809	0.8	1206	0.0	1603	14.5
0810	0.0	1207	0.0	1604	5.3
0811	9.9	1208	0.0	1605	6.4
0812	15.5	1209	0.0	1701	0.0
0813	0.6	1210	11.4	1702	4.2
0814	8.0	1211	0.0	1703	0.0
0901	6.0	1212	0.0	1704	12.5
0902	0.0	1213	8.0	1801	0.0
0903	0.0	1214	0.0	1802	0.0
0904	5.0	1301	0.0	1803	12.5
0905	0.0	1302	1.1	1804	0.0
0906	5.0	1401	0.0	1805	15.0
0907	6.3	1402	0.0	1806	17.4
0908	5.9	1403	0.0	1901	17.3
0909	6.3	1404	0.0	1902	19.1
0910	6.3	1501	0.0	1903	0.0
1001	0.0	1502	0.0	1904	16.8
1002	0.0	1503	8.0	1905	16.4
1003	5.0	1504	5.9	2001	11.9
1004	7.5	1505	8.0	2002	19.4
1005	0.0	1506	0.0	2004	12.8
1006	0.0	1507	2.5	2005	12.9
1007	0.0	1508	0.0	2006	12.4
1008	0.0	1510	0.0	2007	16.4
1101	20.0	1511	0.0	2003	12.8
1102	10.8	1512	0.0	2008	13.8
1103	9.5	1513	5.5	2009	16.7
1104	12.8	1509	0.0	2101	14.3
1105	14.1	1514	0.0	2102	12.2

(표 9-23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2103	15.8	2206	4.3	2305	0.0
2104	18.7	2207	2.7	2306	0.0
2105	20.3	2208	9.2	2307	0.0
2106	12.3	2209	7.5	2308	16.0
2201	11.7	2301	16.0	2309	11.1
2202	14.4	2302	0.0	2401	2.7
2203	0.0	2303	0.0	2402	13.7
2204	19.9	2304	3.2	2403	9.9
2205	8.9				

주: 종가세, 양허 품목 기준임.

자료: WTO, Comprehensive tariff data on the WTO websit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ariffs_e/tariff_data_e.htm)

6. 한-뉴질랜드 FTA 협상 추진 동향과 전망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와의 FTA에 관한 민간공동연구는 2007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진행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정부간 FTA 협상을 위한 예비 협의가 개최되었다. 정부간 공식협상은 2009년 6월부터 시작되어 9월까지 두 차례 개최되었다. 협상은 빠르면 2010년 상반기까지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협상에서 쟁점이 될 부분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개방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출국인 뉴질랜드와의 FTA로 수입 증가와 그로 인한 농업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이 높은 나라로 쇠고기, 낙농품 등의 수입 증가가 우려된다. 원예작물 가운데에서는 사과, 체리, 포도 등의 시장개방 폭이 중요한 협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 10 장

MERCOSUR

1. MERCOSUR 개요

1.1. MERCOSUR의 연혁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남미지역에서 공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결성된 경제공동체이다. 1985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촉구한 ‘이과수 선언(Declaration of Iguasu)’이 MERCOSUR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1991년 3월 26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의 4개국 정상들은 1995년 1월 1일까지 역내 관세 철폐 및 대외공동관세 설정에 합의한 ‘아순시온 협정(Treaty of Asuncion)’을 체결하였다. MERCOSUR는 1995년 1월 1일 발효된 불완전한 형태의 관세동맹(Customs Union)이며 2006년 공동시장(Common Market)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1996년에는 칠레와 볼리비아가 준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1.2. MERCOSUR의 목적과 원칙

MERCOSUR의 목적은 회원국들간의 상품, 서비스,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비회원국들에 대한 대외공동관세를 부과하고 공동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MERCOSUR는 회원국간 자유경쟁을 보장하면서 회원국들간 부문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상호 조율하고 필요한 각국의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MERCOSUR에는 두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회원국 상호주의와 이행 의무 준수 원칙은 이행기간 동안 각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는 국별 일정에 따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으나 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는 것이다. 둘째,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MFN) 원칙은 특정 회원국이 역외 국가와 체결한 협정에 따른 특혜는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MERCOSUR의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시장이사회(Council of the Common Market)이다. 공동시장이사회는 MERCOSUR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아순시온 협약에 명시된 목표와 일정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과 정책집행권을 보유한다. 회원국의 외무부와 경제부 장관으로 구성되며 알파벳순으로 6개월간 의장국을 담당한다. 위원회 위원들은 일년에 한번 이상 만나며 의장국이 연례회의를 주최하고 위원회 의결사항은 회원국 대표위원들의 합의로 결정한다.

공동시장그룹(Common Market Group)은 MERCOSUR의 집행기구로서 회원국 외무장관들로 구성된다. 공동시장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회원국별로 4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예비위원을 두고 위원은 각 회원국의 외무·경제·중앙은행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회원국 명칭의 알파벳순으로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의장국의 대표위원이 주재하고 그들의 합의로 의사를 결정한다.

2. MERCOSUR의 농업 개황

2.1. MERCOSUR의 경제 현황

MERCOSUR는 2006년 현재 인구 2억 3800만 명, GDP 1조 3,100억 달러 규모로 세계 GDP의 2.7%에 해당하는 거대 시장이다<표 10-1>.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120배, 인구는 약 5배 수준에 달한다. MERCOSUR는 사실상 브라질(역내 GDP의 81.5% 차지)과 아르헨티나(16.3%)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MERCOSUR의 역내 1인당 GDP는 평균 5,500 달러 수준이나 파라과이는 1,500달러로 가장 낮다. 구매력 반영 평균 GNI는 약 8,500 달러로 평가된다(World Bank).

2006년 MERCOSUR의 수출액은 약 1,900억 달러 수준이다. 브라질이 1,400억 달러, 아르헨티나 460억 달러, 우루과이 40억 달러 등이다. 수입액은 약 1,800억 달러로 브라질이 910억 달러, 아르헨티나 340억 달러, 파라과이 59억 달러 순이다.

표 10-1. MERCOSUR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2006년 기준)

	인구 (백만 명)	면적 (천 km ²)	경지면적 (천 km ²)	GDP (10억 달러)	1인당GDP (달러)	수출 (10억 달러)	수입 (10억 달러)
브라질	189.3	8,515	666	1,068.0	5,665	137.8	91.3
아르헨티나	39.1	2,780	295	214.1	5,475	46.4	34.2
우루과이	3.3	176	14	19.3	5,796	4.0	4.8
파라과이	6.0	407	43	9.1	1,542	1.9	5.9
MERCOSUR(a)	237.7	11,878	1,018	1,310.5	5,513	226.1	179.2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2.2. MERCOSUR의 농업 현황

MERCOSUR의 경지면적은 약 1억 ha에 이른다. 그 가운데 브라질이 6,700만 ha, 아르헨티나가 3,000만 ha를 차지한다. 초지 면적은 약 3억 ha로 넓다. 주요 농림축산물로는 대두와 옥수수, 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바나나, 포도, 사탕수수, 커피, 카사바 등이 생산된다.

브라질의 주산물은 대두와 옥수수, 사탕수수, 카사바, 오렌지, 바나나, 커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다. 아르헨티나는 대두와 밀, 옥수수, 사탕수수, 쇠고기, 포도와 포도주, 사과, 레몬 등이 많이 생산된다. 그 밖에 우루과이는 쌀, 파라과이는 대두가 주산물이다.

MERCOSUR의 농산물 수출은 2007년 기준 약 780억 달러로 4개 회원국 모두 케언즈 그룹에 속한다. 브라질의 수출액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450억 달러이며 아르헨티나도 280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주요 수출농산물은 브라질의 대두, 닭고기, 쇠고기, 커피, 사탕수수당, 오렌지 등과 아르헨티나의 대두박과 대두유, 대두, 옥수수, 밀, 쇠고기, 해바라기씨유, 포도주 등이다. MERCOSUR 농산물의 수출시장은 네덜란드와 중국, 러시아, 스페인, 칠레 등이다.

MERCOSUR의 농산물 수입액은 수출에 비해 미미한 편이다. 주요 수입품목은 브라질의 밀과 맥아, 쌀, 포도주 등과 아르헨티나의 대두, 바나나, 커피, 돼지고기 등이다. 주요 수입대상국은 미국의 비중이 가장 크며 MERCOSUR 역내무역 비중도 큰 편이다. 그 밖에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칠레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2.3. 회원국별 농업 개황

2.3.1. 브라질

브라질의 국토 면적은 8억 5천만 헥타르를 넘으며, 경지면적은 6,660만 헥타르로 국토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다<표 10-2>. 국토면적 대비 경지면적 비율이 낮은 이유는 초지와 미개발 면적이 넓기 때문이다.

표 10-2. 브라질의 주요 농업지표

		2002	2003	2004	2005	2006
국민생산 (억 달러)	GDP	5,059	5,525	6,638	8,825	10,680
인구 (천 명)	총인구	179,246	181,787	184,317	186,830	189,322
	농업인구 (비중, %)	27,484 (15.3)	26,913 (14.8)	26,342 (14.3)	25,771 (13.8)	- (-)
국토면적 (천 ha)	총면적	851,488	851,488	851,488	851,488	851,488
	경지면적	66,580	66,600	66,600	66,600	66,600
	(비중, %)	(7.8)	(7.8)	(7.8)	(7.8)	(7.8)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2006년 기준 브라질의 GDP는 1조 680억 달러이다. 농업이 국가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브라질의 인구는 1억 9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농업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500만 명이 넘는 수준이다.

1) 브라질의 곡물 수급 현황

브라질의 곡물 생산량은 2004~2006년 평균 약 1억 1천만 톤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두가 5,100만 톤으로 가장 많고 옥수수 4,000만 톤, 쌀은 1,300만 톤이었다<표 10-3>. 밀 생산량은 430만 톤으로 소비량 900만 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 밖에 수수, 귀리, 호밀 등 잡곡류는 완전 자급 수준이다.

표 10-3. 브라질의 식량작물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생산량(A)	3,106	6,154	5,819	4,659	2,485
	소비량(B) ¹⁾	9,677	12,715	9,343	9,490	8,363
	자급률(A/B)	32	48	62	49	30
쌀	생산량(A)	10,457	10,335	13,277	13,193	11,527
	소비량(B) ¹⁾	10,678	10,985	13,492	13,237	11,557
	자급률(A/B)	98	94	98	100	100
보리	생산량(A)	245	345	397	326	203
	소비량(B) ¹⁾	392	601	574	473	403
	자급률(A/B)	62	57	69	69	50
옥수수	생산량(A)	35,933	48,327	41,788	35,113	42,662
	소비량(B) ¹⁾	33,531	45,559	37,087	34,640	39,680
	자급률(A/B)	107	106	113	101	108
귀리	생산량(A)	299	435	460	522	406
	소비량(B) ¹⁾	298	434	458	521	405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수수	생산량(A)	787	1,805	2,159	1,521	1,605
	소비량(B) ¹⁾	781	1,503	2,035	1,589	1,599
	자급률(A/B)	101	120	106	96	100
대두	생산량(A)	42,769	51,919	49,550	51,182	52,465
	소비량(B) ¹⁾	27,844	33,218	30,651	29,115	27,556
	자급률(A/B)	154	156	162	176	190
메밀	생산량(A)	48	48	48	50	51
	소비량(B) ¹⁾	48	48	48	50	51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2) 브라질의 과일류 수급 현황

브라질은 국토가 넓고 여러 기후대가 존재하여 사과, 배 등 온대성 과일과 오렌지, 바나나 등 열대 과일을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다. 브라질의 대표적 과일인 오렌지 생산량은 평균 1,800만 톤 이상으로 전체 과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10-4>. 바나나 생산량은 평균 680만 톤, 파인애플은 240만 톤이며 레몬 생산량도 100만 톤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 생산량은 평균 125만 톤, 사과는 90만 톤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관심품목인 배와 복숭아, 감도 생산되고 있지만 물량이 많지 않은 편이다.

표 10-4. 브라질의 과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오렌지	생산량(A)	18,531	16,918	18,314	17,853	18,032
	소비량(B) ¹⁾	18,492	16,850	18,224	17,825	17,983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레몬	생산량(A)	985	981	986	1,031	1,031
	소비량(B) ¹⁾	963	948	949	987	980
	자급률(A/B)	102	104	104	104	105
자몽	생산량(A)	67	67	68	68	71
	소비량(B) ¹⁾	67	67	68	68	71
	자급률(A/B)	99	100	100	100	100
바나나	생산량(A)	6,423	6,801	6,584	6,703	6,956
	소비량(B) ¹⁾	6,182	6,580	6,395	6,491	6,762
	자급률(A/B)	104	103	103	103	103
사과	생산량(A)	857	842	980	851	863
	소비량(B) ¹⁾	845	808	870	819	884
	자급률(A/B)	101	104	113	104	98
파인애플	생산량(A)	2,150	2,160	2,216	2,292	2,561
	소비량(B) ¹⁾	2,141	2,148	2,193	2,273	2,538
	자급률(A/B)	100	101	101	101	101

(표 10-4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포도	생산량(A)	1,149	1,067	1,291	1,233	1,257
	소비량(B) ¹⁾	1,133	1,037	1,269	1,190	1,207
	자급률(A/B)	101	103	102	104	104
배	생산량(A)	20	20	20	20	18
	소비량(B) ¹⁾	112	83	96	122	143
	자급률(A/B)	18	24	21	16	13
복숭아	생산량(A)	218	220	236	235	200
	소비량(B) ¹⁾	227	228	243	249	219
	자급률(A/B)	96	97	97	95	91
감	생산량(A)	141	158	162	165	168
	소비량(B) ¹⁾	141	158	162	164	167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3) 브라질의 채소류 수급 현황

브라질의 대표적인 채소류인 토마토는 최근 3년(2004~2006년) 평균 생산량이 340만 톤으로 전체 채소 생산량의 40%를 넘는다<표 10-5>. 수박 생산량은 170만 톤을 넘으며 양파 생산량도 평균 120만 톤을 넘어 모두 완전 자급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나 마늘 생산량은 평균 9만 톤에 불과하여 자급률은 약 40%에 머물고 있다.

표 10-5. 브라질의 채소류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마늘	생산량(A)	114	123	86	86	88
	소비량(B) ¹⁾	193	215	187	218	208
	자급률(A/B)	59	57	46	40	42
수박	생산량(A)	1,491	1,906	1,719	1,637	1,947
	소비량(B) ¹⁾	1,479	1,889	1,703	1,615	1,917
	자급률(A/B)	101	101	101	101	102
양파	생산량(A)	1,222	1,230	1,158	1,138	1,346
	소비량(B) ¹⁾	1,222	1,230	1,158	1,138	1,346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토마토	생산량(A)	3,653	3,709	3,516	3,453	3,363
	소비량(B) ¹⁾	3,649	3,705	3,515	3,453	3,363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4) 브라질의 축산물 수급 현황

국토 면적의 4분의 1에 가까운 광대한 면적의 목초지를 보유한 브라질에서 축산업은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영년생 목초를 사료로 투입하는 축산업 형태이므로 사료곡물 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육류 생산이 가능한 조건이다.

브라질의 쇠고기 생산량은 연평균 약 800만 톤을 넘어 자급이 가능하다<표 10-6>. 2002년 대비 2006년 쇠고기 생산량은 10% 이상 증가하였다. 2001년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브라질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돼지고기 생산량은 약 310만 톤으로 자급률이 100%를 넘는다. 닭고기 생산도 2002년 705만 톤에서 2006년 87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중국과 EU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닭고기 자급률 140% 수준으로 세계 3위의 닭고기 생산국인 동시에 세계 2위의 수출국이다.

표 10-6. 브라질의 축산물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닭고기	생산량(A)	7,050	7,760	8,668	8,830	8,669
	소비량(B) ¹⁾	5,451	5,838	6,244	6,069	6,084
	자급률(A/B)	129	133	139	146	142
돼지고기	생산량(A)	2,798	3,059	3,110	3,110	3,120
	소비량(B) ¹⁾	2,578	2,913	2,975	2,920	2,985
	자급률(A/B)	109	105	105	106	105
쇠고기	생산량(A)	7,139	7,230	7,774	8,592	7,800
	소비량(B) ¹⁾	7,159	7,230	7,775	8,593	7,801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천연꿀	생산량(A)	24	30	32	34	34
	소비량(B) ¹⁾	11	11	11	19	19
	자급률(A/B)	210	279	286	175	176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2.3.2.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국토 면적은 2억 7,800만 헥타르로 남한의 85배이며, 국토의 길이는 3,800km, 넓이는 약 1,400km에 이르고 대륙과 섬, 남극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표 10-7>. 대륙부분의 서쪽은 칠레, 북쪽은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동쪽은 브라질, 우루과이와 국경을 이루고 있다. 경지면적은 약 2,950만 헥타르로 국토면적의 10.6%를 차지하며, 목초지는 국토면적의 약 51%에 이를 정도로 넓게 분포한다.

아르헨티나의 GDP는 2,140억 달러이며 농업이 국가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 수준이다. 총인구는 약 3,910만 명이며 농업인구는 전체의 9%인 350만 명이다.

표 10-7. 아르헨티나의 주요 농업지표

		2002	2003	2004	2005	2006
국민생산 (억 달러)	GDP	1,020	1,296	1,531	1,832	2,141
인구 (천 명)	총인구	37,642	38,005	38,371	38,747	39,134
	농업인구	3,635	3,584	3,534	3,485	-
	(비중, %)	(9.7)	(9.4)	(9.2)	(9.0)	(-)
국토면적 (천 ha)	총면적	278,040	278,040	278,040	278,040	278,040
	경지면적	29,130	29,205	29,505	29,505	29,505
	(비중, %)	(10.5)	(10.5)	(10.6)	(10.6)	(10.6)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1) 아르헨티나 곡물 수급 현황

아르헨티나에서 곡물은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인 동시에 주요 수출농산물이다. 대두 생산량은 최근 3년 평균 약 3,700만 톤에 달하며 옥수수 생산량은 1600만 톤 정도이다. 밀 생산량도 1,500만 톤을 넘어 자급률이 300%에 달하고 있다. 쌀 생산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연평균 100만 톤 수준으로 늘어났으나 소비량도 증가하여 자급률은 110% 수준이다.

표 10-8. 아르헨티나의 식량작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생산량(A)	12,300	14,563	15,960	12,574	14,550
	소비량(B) ¹⁾	3,249	8,394	5,983	2,143	4,853
	자급률(A/B)	379	173	267	587	300
쌀	생산량(A)	713	718	1,060	956	1,193
	소비량(B) ¹⁾	587	676	1,013	952	1,192
	자급률(A/B)	122	106	105	100	100
보리	생산량(A)	530	550	1,005	894	1,268
	소비량(B) ¹⁾	417	484	809	569	878
	자급률(A/B)	127	114	124	157	144
옥수수	생산량(A)	14,712	15,045	14,951	20,483	14,446
	소비량(B) ¹⁾	5,230	3,135	4,261	5,841	4,047
	자급률(A/B)	281	480	351	351	357
수수	생산량(A)	2,847	2,685	2,160	2,894	2,328
	소비량(B) ¹⁾	2,435	2,039	1,970	2,573	2,110
	자급률(A/B)	117	132	110	112	110
감자	생산량(A)	2,262	2,095	2,021	1,789	1,944
	소비량(B) ¹⁾	2,248	2,083	2,001	1,757	1,928
	자급률(A/B)	101	101	101	102	101
대두	생산량(A)	30,180	34,800	31,500	38,300	40,467
	소비량(B) ¹⁾	24,277	26,428	25,540	29,086	33,307
	자급률(A/B)	124	132	123	132	121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2) 아르헨티나 과일류 수급 현황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과일은 포도이며 레몬과 사과도 주요 과일이다. 최근 3년간 평균 포도 생산량은 약 280만 톤 수준이며 주로 양조용으로 소비되고 있다<표 10-9>. 레몬과 라임 생산량은 약 130만 톤이며 사과 생

산량도 130만 톤에 달한다. 그 밖에 오렌지 생산량은 80만 톤이다. 한편 배 생산량은 약 60만 톤인데, 국내 소비량이 약 20만 톤에 불과하여 세계 최대의 배 수출국이다.

표 10-9. 아르헨티나의 과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오렌지	생산량(A)	767	687	770	886	765
	소비량(B) ¹⁾	682	610	635	717	588
	자급률(A/B)	112	113	121	124	130
레몬	생산량(A)	1,313	1,236	1,340	1,498	1,250
	소비량(B) ¹⁾	1,046	900	1,024	1,129	935
	자급률(A/B)	126	137	131	133	134
자몽	생산량(A)	205	184	177	273	175
	소비량(B) ¹⁾	183	158	149	240	157
	자급률(A/B)	112	117	119	114	112
바나나	생산량(A)	180	180	180	180	181
	소비량(B) ¹⁾	409	466	483	482	477
	자급률(A/B)	44	39	37	37	38
사과	생산량(A)	1,157	1,307	1,262	1,206	1,280
	소비량(B) ¹⁾	991	1,108	1,057	933	1,043
	자급률(A/B)	117	118	119	129	123
포도	생산량(A)	2,281	2,339	2,651	2,830	2,881
	소비량(B) ¹⁾	2,244	2,301	2,604	2,779	2,809
	자급률(A/B)	102	102	102	102	103
배	생산량(A)	537	639	589	749	510
	소비량(B) ¹⁾	227	311	269	310	114
	자급률(A/B)	237	206	219	241	446
복숭아	생산량(A)	212	256	272	273	260
	소비량(B) ¹⁾	206	246	264	261	243
	자급률(A/B)	103	104	103	104	107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3) 아르헨티나 채소류 수급 현황

아르헨티나의 대표 채소류인 양파의 최근 연평균 생산량은 70만 톤을 넘어 자급률 150%를 보이고 있다<표 10-10>.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토마토 생산량도 67만 톤에 달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수박과 고추 생산량은 모두 13만 톤 수준으로 국내 소비량을 거의 전량 충족시키고 있다. 마늘은 약 15만 톤이 생산되며 자급률은 300%에 달한다.

표 10-10. 아르헨티나의 채소류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추	생산량(A)	126	128	128	128	129
	소비량(B) ¹⁾	126	128	128	128	129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마늘	생산량(A)	125	146	143	116	136
	소비량(B) ¹⁾	63	59	42	19	36
	자급률(A/B)	199	246	339	604	382
수박	생산량(A)	126	126	126	126	126
	소비량(B) ¹⁾	127	129	128	126	127
	자급률(A/B)	99	97	98	100	99
양파	생산량(A)	646	678	699	765	698
	소비량(B) ¹⁾	495	470	483	564	453
	자급률(A/B)	131	144	145	136	154
토마토	생산량(A)	668	670	675	675	670
	소비량(B) ¹⁾	671	674	676	675	668
	자급률(A/B)	99%	99%	100%	100%	100%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4) 아르헨티나 축산물 수급 현황

아르헨티나에서 축산업은 곡물과 함께 중요한 산업이며 연평균 육류 생산량은 약 430만 톤 정도이다<표 10-11>. 쇠고기 생산이 전체 육류 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여 완전 자급이 가능한 상태다. 2001년 구제역 발생으로 쇠고기 생산이 감소한 이후 2002년부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닭고기 생산량은 약 100만 톤으로 자급률이 110% 수준이며 돼지고기 생산량은 약 20만 톤이며 완전 자급 수준이다.

표 10-11. 아르헨티나의 축산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닭고기	생산량(A)	699	738	866	1,010	1,159
	소비량(B) ¹⁾	673	706	802	900	1,044
	자급률(A/B)	104	105	108	112	111
돼지고기	생산량(A)	165	150	150	185	225
	소비량(B) ¹⁾	165	150	151	186	226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쇠고기	생산량(A)	2,493	2,658	3,024	2,980	2,800
	소비량(B) ¹⁾	2,496	2,661	3,018	2,973	2,792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천연꿀	생산량(A)	83	75	80	110	-
	소비량(B) ¹⁾	3	5	18	2	-
	자급률(A/B)	2,752	1,643	457	4,514	-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2.3.3. 우루과이

우루과이의 국토 면적은 1,760만 헥타르로 남한의 1.8배에 달한다<표 10-12>. 경지면적은 140만 헥타르로 국토면적의 약 8%에 불과하다. 국토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초지로 이루어져 있다. 2006년 기준 총인구는 약 333만 명이며 농업인구는 전체의 약 11%인 36만 명이다. 2006년 GDP는 193억 달러이다.

표 10-12. 우루과이의 주요 농업지표

		2002	2003	2004	2005	2006
국민생산 (억 달러)	GDP	123	112	132	166	193
인구 (천 명)	총인구	3,326	3,324	3,323	3,325	3,331
	농업인구	371	369	368	366	-
	(비중, %)	(11.2)	(11.1)	(11.1)	(11.0)	(-)
국토면적 (천 ha)	총면적	17,622	17,622	17,622	17,622	17,622
	경지면적	1,412	1,412	1,412	1,412	1,412
	(비중, %)	(8.0)	(8.0)	(8.0)	(8.0)	(8.0)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우루과이에서 생산되는 식량작물은 쌀이 연평균 약 120만 톤 정도로 가장 많으며 완전 자급을 실현하고 있다<표 10-13>. 밀과 대두 생산량은 각각 50만 톤으로 2006년 밀 자급률은 12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대두는 역사적으로 국내 소비가 적어 자급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보리 생산량도 약 32만 톤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자급률도 상승하였다. 옥수수 생산량도 약 22만 톤으로 증가하였지만 소비가 더 빠르게 증가하여 자급률은 50%대로 낮아지고 있다. 감자도 약 15만 톤 정도 생산되고 있어 거의 자급이 가능한 수준이다.

표 10-13. 우루과이의 식량작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생산량(A)	206	326	533	388	611
	소비량(B) ¹⁾	434	578	620	333	513
	자급률(A/B)	47	56	86	116	119
쌀	생산량(A)	939	906	1,263	1,215	1,146
	소비량(B) ¹⁾	856	766	1,169	1,205	1,142
	자급률(A/B)	110	118	108	101	100
보리	생산량(A)	217	324	407	225	432
	소비량(B) ¹⁾	368	416	384	212	405
	자급률(A/B)	59	78	106	106	107
옥수수	생산량(A)	163	179	223	251	205
	소비량(B) ¹⁾	174	204	263	337	393
	자급률(A/B)	94	87	85	74	52
감자	생산량(A)	141	174	138	158	148
	소비량(B) ¹⁾	151	178	141	163	151
	자급률(A/B)	93	98	98	97	98
대두	생산량(A)	67	205	420	478	632
	소비량(B) ¹⁾	7	34	88	12	10
	자급률(A/B)	907	602	478	4,038	6,489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우루과이는 과일류 가운데 오렌지 생산이 약 15만 톤으로 가장 많다<표 10-14>. 국내 소비는 약 6만 톤에 불과하여 자급률은 230%에 달한다. 포도 생산량은 약 13만 톤이며 완전 자급이 가능한 수준이다.

사과 생산량은 약 7만 톤 정도지만 소비량이 약 6만 톤에 불과하여 자급률은 1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밖에 레몬 생산량은 약 4만 톤으로 국내 소비를 충당하고도 약 절반은 수출하고 있다.

표 10-14. 우루과이의 과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오렌지	생산량(A)	116	132	124	177	138
	소비량(B) ¹⁾	66	71	47	80	60
	자급률(A/B)	175	184	263	221	231
레몬	생산량(A)	39	37	33	46	43
	소비량(B) ¹⁾	29	26	20	30	29
	자급률(A/B)	133	143	165	152	150
사과	생산량(A)	46	74	67	77	61
	소비량(B) ¹⁾	43	68	60	67	55
	자급률(A/B)	107	109	111	115	112
포도	생산량(A)	94	108	147	124	130
	소비량(B) ¹⁾	94	108	147	124	130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우루과이도 토마토와 양파가 최대 생산 채소류이다. 최근 3년 평균 생산량은 토마토가 약 4만 5천 톤, 양파가 4만 톤 등으로 모두 완전 자급하는 수준이다 <표 10-14>. 그 밖에 고추 생산량이 약 1만 3천 톤, 수박 생산량이 1만 2천 톤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모두 자급이 가능한 상태이다.

표 10-15. 우루과이의 채소류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추	생산량(A)	13	14	12	14	14
	소비량(B) ¹⁾	13	15	13	14	14
	자급률(A/B)	98	98	98	98	98
수박	생산량(A)	11	12	12	12	12
	소비량(B) ¹⁾	12	12	12	12	12
	자급률(A/B)	95	97	99	99	99
양파	생산량(A)	27	40	58	28	35
	소비량(B) ¹⁾	27	40	55	24	35
	자급률(A/B)	100	100	106	114	100
토마토	생산량(A)	41	47	44	46	48
	소비량(B) ¹⁾	41	47	44	46	47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우루과이 최대의 축산물인 쇠고기이며 생산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 생산량은 약 57만 톤으로 2002년 41만 톤에 비해 40% 정도 증가하였다<표 10-16>. 하지만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어 자급률은 100%대에 머물고 있다.

닭고기 생산량은 4만 5천 톤, 돼지고기 생산량은 약 2만 톤 수준이지만 두 품목 모두 국내 소비량보다 많아 자급률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천연꿀 생산량은 1만 3천 톤으로 국내 소비량을 열 배 이상 크게 웃돌고 있다.

표 10-16. 우루과이의 축산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닭고기	생산량(A)	45	31	43	45	45
	소비량(B) ¹⁾	44	31	43	45	43
	자급률(A/B)	102	100	100	100	104
돼지고기	생산량(A)	20	17	17	20	19
	소비량(B) ¹⁾	20	17	17	19	18
	자급률(A/B)	100	100	100	103	104
쇠고기	생산량(A)	412	424	544	600	560
	소비량(B) ¹⁾	408	416	539	594	552
	자급률(A/B)	101	102	101	101	101
천연꿀	생산량(A)	10	10	13	13	13
	소비량(B) ¹⁾	0.7	0.8	-0.2	4.3	1.1
	자급률(A/B)	1,487	1,275	-8,408	305	1,182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2.3.4. 파라과이

파라과이의 국토 면적은 4,068만 헥타르로 남한의 약 4배에 달한다<표 10-17>. 경지면적은 312만 헥타르로 남한 경지 면적의 1.6배 수준이고 전체 면

적의 약 8%를 점하고 있다. 초지면적은 국토면적의 절반이 넘는 53%를 차지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GDP는 약 91억 달러로 MERCOSUR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으며 농업이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로 높은 편이다. 파라과이의 총 인구는 약 600만 명이며 농업인구는 총인구의 39.6%인 234만 명이다. 전체 인구에서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51%, 1990년 45%, 그리고 2002년 40.6%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농업인구 비중이 높은 편이다.

표 10-17. 파라과이의 주요 농업지표

		2002	2003	2004	2005	2006
국민생산 (억 달러)	GDP	48	46	70	73	91
인구 (천 명)	총인구	5,570	5,681	5,793	5,904	6,015
	농업인구	2,262	2,288	2,314	2,339	-
	(비중, %)	(40.6)	(40.3)	(39.9)	(39.6)	(-)
국토면적 (천 ha)	총면적	40,675	40,675	40,675	40,675	40,675
	경지면적	3,598	3,898	4,298	4,298	4,298
	(비중, %)	(8.8)	(9.6)	(10.6)	(10.6)	(10.6)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파라과이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식량작물은 대두이며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3년간 평균 생산량은 약 380만 톤으로 2002년 330만 톤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했다<표 10-18>. 대두 소비량은 150만 톤 이하로 자급률 2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옥수수 생산량도 100만 톤 이상으로 국내 소비량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자급률은 200% 수준이다. 그 밖에 밀은 생산량 62만 톤에 소비량 37만 톤으로 자급률은 170% 수준이다. 쌀은 생산량이 12만 톤으로 소비량을 30% 이상 초과하고 있다.

표 10-18. 파라과이의 식량작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생산량(A)	359	450	715	630	620
	소비량(B) ¹⁾	346	252	396	17	369
	자급률(A/B)	104	179	181	3,632	168
쌀	생산량(A)	105	110	125	102	126
	소비량(B) ¹⁾	105	109	113	69	92
	자급률(A/B)	100	101	110	148	137
옥수수	생산량(A)	867	1,056	1,120	830	1,100
	소비량(B) ¹⁾	820	252	757	355	-
	자급률(A/B)	106	418	148	234	-
고구마	생산량(A)	124	106	167	135	165
	소비량(B) ¹⁾	124	106	167	134	165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대두	생산량(A)	3,300	4,205	3,584	3,988	3,800
	소비량(B) ¹⁾	1,322	2,488	1,024	1,051	1,559
	자급률(A/B)	250	169	350	380	244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파라과이에서 생산되는 과일류는 대부분 열대과일이다. 특히 오렌지 생산량이 약 20만 톤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지만 국내 소비량도 비슷한 수준에 있어 자급률은 100%에 약간 못 미치는 실정이다<표 10-19>. 그 밖에 파인애플 생산량이 평균 6만 톤, 바나나 5만 톤, 자몽 4만 톤으로 대부분 자급이 가능한 수준이다.

표 10-19. 파라과이의 과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오렌지	생산량(A)	207	201	200	188	183
	소비량(B) ¹⁾	220	201	209	218	198
	자급률(A/B)	94	100	96	86	92
자몽	생산량(A)	47	41	40	38	38
	소비량(B) ¹⁾	47	40	40	38	38
	자급률(A/B)	100	102	102	100	100
바나나	생산량(A)	49	62	44	48	45
	소비량(B) ¹⁾	50	62	33	42	37
	자급률(A/B)	97	100	135	115	123
파인애플	생산량(A)	82	73	52	57	72
	소비량(B) ¹⁾	83	73	52	56	72
	자급률(A/B)	99	100	101	102	101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파라과이의 채소류 생산은 수박 생산량이 11만 5천 톤으로 가장 많았다<표 10-20>. 토마토 생산은 최근 약 7만 6천 톤 수준으로 2002년 6만 톤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자급률은 80% 이하에 머물고 있다. 반면 양파 생산량은 같은 기간 3만 4천 톤에서 2만 7천 톤으로 감소하였지만 자급률은 100%를 유지하고 있다.

표 10-20. 파라과이의 채소류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추	생산량(A)	9	10	9	13	9
	소비량(B) ¹⁾	20	10	13	17	15
	자급률(A/B)	46	100	70	76	61
수박	생산량(A)	115	115	115	115	115
	소비량(B) ¹⁾	115	116	116	115	115
	자급률(A/B)	100	99	99	100	100
양파	생산량(A)	34	30	30	27	27
	소비량(B) ¹⁾	34	30	30	27	27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토마토	생산량(A)	58	67	69	69	88
	소비량(B) ¹⁾	71	67	92	87	109
	자급률(A/B)	82	101	76	79	81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파라과이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모두 완전 자급이 가능한 수준이다. 최근 쇠고기 생산량은 21만 5천 톤으로 2002년 20만 5천 톤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다<표 10-21>. 돼지고기 생산량도 같은 기간 9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늘어났다.

표 10-21. 파라과이의 축산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닭고기	생산량(A)	35	37	37	37	37
	소비량(B) ¹⁾	35	37	36	36	37
	자급률(A/B)	100	100	103	104	101
돼지고기	생산량(A)	90	97	100	106	98
	소비량(B) ¹⁾	90	97	99	104	96
	자급률(A/B)	100	100	101	101	102
쇠고기	생산량(A)	205	215	215	215	215
	소비량(B) ¹⁾	205	212	213	213	213
	자급률(A/B)	100	101	101	101	101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3. MERCOSUR의 관세

3.1. MERCOSUR의 관세 구조

MERCOSUR는 관세동맹으로서 대외공동관세(Common External Tariff; CET)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동안은 예외품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MERCOSUR 회원국들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1995년부터, 그리고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1996년부터 자동차와 설탕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에 대하여 2000년 1월 1일까지 역내 관세를 철폐하였다<표 10-22>.

표 10-22. MERCOSUR 역내 관세인하 일정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1995년 1월	초기 관세인하 개시	-
1996년 1월	25%	초기 관세인하 개시
1997년 1월	50%	25%
1998년 1월	75%	50%
1999년 1월	100%	75%
2000년 1월	100%	100%

MERCOSUR는 1995년 1월 1일부터 0~20%의 대외공동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여 늦어도 2006년까지는 완전한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외공동관세 적용이 면제되는 예외품목은 자본재와 컴퓨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 위성통신 등이며 자동차와 설탕은 특별 예외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MERCOSUR는 HS-10 단위 기준 2,281개 품목에 대해 예외없이 종가세를 적용하여 투명성이 높은 편이다. 대외공동관세의 평균 세율은 HS-2 단위 기준으로 10.45%이다<표 10-23>.

표 10-23. MERCOSUR의 관세부과 형태별 농산물 품목분류 현황

단위: 개

총품목	종가세 품목	종가세 평균(%)
2,281	2281	10.45

3.2. 품목 및 품목군별 관세율

HS-2 단위 기준으로 평균 관세율 10.45%보다 높은 부류(Chapter)는 낙농품(04류, 14.75%), 육류 및 어류 조제품(16류, 16%), 당류(17류, 17.9%), 코코아류(18류, 18.1%), 곡물 및 곡분의 조제품(19류, 16.8%), 기타 조제 식품류(21류,

16.2%), 음료 및 주류(22류, 20%), 담배류(24류, 16%) 등으로 대부분 가공농산물이다<표 10-24>.

반면에 평균 관세율보다 낮은 부류는 산 동물(01류; 2.5%), 동물성 생산품(05류; 6.1%), 산 식물(06류; 4.1%), 유지종자(12류; 4.4%), 수지류(13류; 7.4%), 식물성섬유(14류; 6%), 박류(23류; 6.6%) 등 신선 또는 원료용 농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10-24. MERCOSUR의 농산물 품목류별(HS-2 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 분	평균 MFN 관세율	구 분	평균 MFN 관세율
전 체	10.45	18류	18.12
01류	2.46	19류	16.82
02류	9.89	20류	14.00
04류	14.75	21류	16.20
05류	6.13	22류	20.00
06류	4.12	23류	6.56
07류	9.01	24류	16.00
08류	9.94	29류	14.00
09류	10.00	33류	9.68
10류	8.24	35류	13.23
11류	10.60	38류	10.50
12류	4.35	41류	2.00
13류	7.41	43류	10.00
14류	6.00	50류	4.00
15류	9.78	51류	7.86
16류	16.00	52류	6.00
17류	17.92	53류	6.00

자료: MERCOSUR, Customs Tariff, 2004.1

낙농품 가운데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밀크와 크림, 버터, 유장, 치즈와 커드, 천연 꿀 등으로 16% 수준이다. 그 밖의 축산물은 대부분 전체 평균보다 낮은 10% 수준이다. 쇠고기 평균 관세율은 10.4%이다<표 10-25>.

화훼류의 관세율은 휴면 상태의 것이 무관세, 절화 상태가 10%로 평균 5%의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특히 기타 산식물과 뿌리의 관세율은 1.4%로 낮은

수준이다. 채소류는 대부분(고추, 토마토, 배추, 무, 버섯, 오이, 당근, 상추 등) 평균세율 수준에 근접한 10%가 적용된다. 감자는 6.7%, 파속 채소는 4%로 채소류 품목별 관세 격차는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다.

과실류의 평균 관세율은 9.9%로 평균 관세율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기타 견과류(0802; 9.4%)를 제외하고는 모든 과실류에 10%가 부과된다. 곡물류의 평균 관세율은 8.2%로 평균 관세율보다 낮다. 메밀과 조 등 잡곡이 4.8%로 낮은 반면 쌀은 10.4%로 상대적으로 높다. 맥주, 포도주, 과실주 등 주류에는 20%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담배류에도 13.7~20%의 관세를 부과한다.

표 10-25. MERCOSUR의 품목군별 평균 관세율

단위: %

품목	평균MFN 관세율	품목	평균MFN 관세율	품목	평균MFN 관세율
0101류	2.20	0405류	16.00	0604류	8.00
0102류	1.50	0406류	16.00	0701류	6.67
0103류	1.45	0407류	2.67	0702류	10.00
0104류	2.14	0408류	10.00	0703류	4.00
0105류	2.57	0409류	16.00	0704류	10.00
0106류	3.85	0410류	14.00	0705류	10.00
0201류	10.40	0501류	8.00	0706류	10.00
0202류	10.40	0502류	8.00	0707류	10.00
0203류	10.00	0503류	8.00	0708류	10.00
0204류	10.00	0504류	7.20	0709류	10.00
0205류	10.00	0505류	8.00	0710류	10.00
0206류	10.00	0506류	8.00	0711류	10.00
0207류	10.00	0507류	8.00	0712류	10.00
0208류	10.00	0508류	8.00	0713류	8.67
0209류	6.00	0509류	4.00	0714류	10.00
0210류	10.00	0510류	2.30	0801류	10.00
0401류	13.20	0511류	4.71	0802류	9.37
0402류	15.78	0601류	0.00	0803류	10.00
0403류	16.00	0602류	1.41	0804류	10.00
0404류	14.00	0603류	10.00	0805류	10.00

(표 10-25 계속)

품목	평균MFN 관세율	품목	평균MFN 관세율	품목	평균MFN 관세율
0806류	10.00	1106류	10.00	1509류	10.00
0807류	10.00	1107류	14.00	1510류	10.00
0808류	10.00	1108류	10.00	1511류	10.00
0809류	10.00	1109류	10.00	1512류	10.86
0810류	10.00	1201류	5.33	1513류	10.00
0811류	10.00	1202류	8.00	1514류	10.00
0812류	10.00	1203류	8.00	1515류	10.00
0813류	10.00	1204류	5.33	1516류	10.00
0814류	10.00	1205류	6.40	1517류	12.00
0901류	10.00	1206류	6.40	1518류	10.00
0902류	10.00	1207류	4.24	1520류	9.00
0903류	10.00	1208류	10.00	1521류	10.00
0904류	10.00	1209류	0.00	1522류	10.00
0905류	10.00	1210류	8.00	1601류	16.00
0906류	10.00	1211류	8.00	1602류	16.00
0907류	10.00	1212류	8.00	1603류	16.00
0908류	10.00	1213류	8.00	1604류	16.00
0909류	10.00	1214류	8.00	1605류	16.00
0910류	10.00	1301류	7.33	1701류	16.00
1001류	8.18	1302류	7.44	1702류	16.00
1002류	5.33	1401류	6.00	1703류	16.00
1003류	8.33	1402류	6.00	1704류	20.00
1004류	5.33	1403류	6.00	1801류	10.00
1005류	6.86	1404류	6.00	1802류	10.00
1006류	10.36	1501류	8.00	1803류	12.00
1007류	5.33	1502류	6.00	1804류	12.00
1008류	4.80	1503류	8.00	1805류	14.00
1101류	12.00	1504류	7.60	1806류	19.85
1102류	10.00	1505류	7.00	1901류	15.73
1103류	10.00	1506류	6.00	1902류	16.00
1104류	10.00	1507류	11.25	1903류	16.00
1105류	12.00	1508류	10.00	1904류	16.00

(표 10-25 계속)

품목	평균MFN 관세율	품목	평균MFN 관세율	품목	평균MFN 관세율
1905류	18.00	2206류	20.00	3504류	14.00
2001류	14.00	2207류	20.00	3505류	14.00
2002류	14.00	2208류	20.00	3809류	10.50
2003류	14.00	2209류	20.00	4101류	2.00
2004류	14.00	2301류	6.00	4102류	2.00
2005류	14.00	2302류	6.00	4103류	2.00
2006류	14.00	2303류	6.00	4301류	10.00
2007류	14.00	2304류	6.00	5001류	4.00
2008류	14.00	2305류	6.00	5002류	4.00
2009류	14.00	2306류	6.00	5003류	4.00
2101류	15.55	2307류	6.00	5101류	8.00
2102류	14.00	2308류	6.00	5102류	8.00
2103류	17.44	2309류	9.64	5103류	6.00
2104류	17.18	2401류	13.64	5104류	6.00
2105류	17.00	2402류	20.00	5201류	6.00
2106류	15.73	2403류	17.20	5202류	6.00
2201류	20.00	2905류	14.00	5203류	6.00
2202류	20.00	3301류	9.68	5301류	6.00
2203류	20.00	3501류	14.00	5302류	6.00
2204류	20.00	3502류	11.60		
2205류	20.00	3503류	12.29		

3.3. 관세율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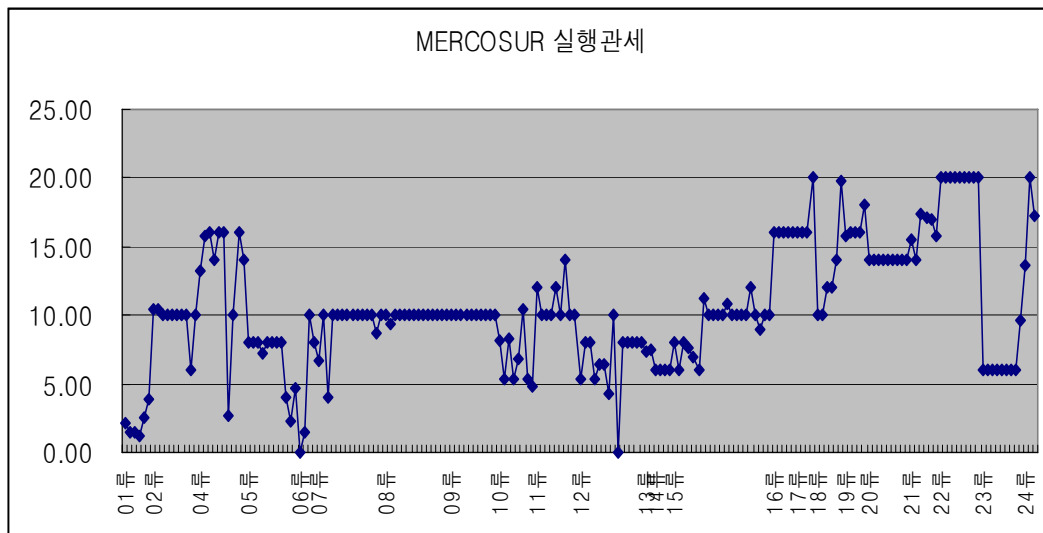
MERCOSUR의 농산물 가운데 관세율 10% 미만 품목은 전체의 31.4%인 716개이며 10% 이상 20% 미만 품목은 전체의 62.3%인 1,422개였다<표 10-26>. 나머지 143개 품목은 최고세율인 20%의 공동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다.

표 10-26. MERCOSUR의 관세 구간별 분포

단위: 개, %

MERCOSUR	0~10% 미만	10~20% 미만	20%	합 계
소 계	716 (31.4)	1422 (62.3)	143 (6.3)	2281 (100.0)

그림 10-1. MERCOSUR의 관세 구간별 품목 분포 (HS 4단위 평균 기준)



4. MERCOSUR의 농산물 무역

4.1. 회원국별 농산물 교역

4.1.1. 브라질

브라질의 농산물 수출액은 2006년 346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1,378억 달러의 25.1%를 차지하고 있다<표 10-27>. 2002~2006년 기간에 전체 수출액은 2.3배로 증가하였고, 농산물 수출은 2.1배로 증가하여 농산물 수출 비중이 약간 하락했다.

2006년 브라질의 농산물 수입액은 약 47억 달러로 수입총액의 5.1%에 불과하였다. 수입총액이 2002년에 비해 1.9배로 증가한데 비해 농산물 수입액은 1.5배로 증가하여 비중이 감소하였다.

브라질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흑자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 2002년 농산물 무역수지는 135억 달러 흑자에서 2006년 30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한편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은 2002년 4.4%에서 2006년 8%로 확대되었다.

표 10-27. 브라질의 교역지표

단위: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2005	2006
총수출액(A)	60,439	73,203	96,677	118,529	137,806
농업수출액(B)	16,721	20,903	27,197	30,761	34,594
농업수출액 비중(A/B)	28	29	28	26	25
총수입액(C)	47,243	48,326	62,836	73,600	91,343
농업수입액(D)	3,231	3,591	3,592	3,386	4,686
농업수입액 비중(C/D)	7	7	6	5	5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 ¹⁾	4.4	5	6	7	8

주: 1)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 = $\frac{\text{농업수출액} + \text{농업수입액}}{GDP} \times 100$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2006년 브라질 최대의 수출농산물은 사탕수수당으로 수출액은 62억 달러에 달했다<표 10-28>. 전통적으로 최대 수출품인 대두 수출액(57억 달러)을 넘어섰다. 닭고기 수출액도 29억 달러에 근접했다. 그 밖에 옥수수(4억 8천만 달러), 돼지고기(2억 2천만 달러), 포도(1억 2천만 달러) 등의 수출액도 1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였다.

표 10-28. 브라질의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수출량	1.0	50.3	1,323.4	156.6	652.1
	수출액	0.2	7.5	207.8	14.8	64.6
옥수수	수출량	2,747.0	3,566.2	5,031.0	1,070.0	3,938.0
	수출액	267.6	375.1	597.3	120.9	481.9
대두	수출량	15,970.0	19,890.5	19,247.7	22,435.1	24,958.0
	수출액	3,032.0	4,290.4	5,394.9	5,345.0	5,663.4
사탕수수당	수출량	13,356.9	12,922.7	15,789.8	18,169.0	18,905.9
	수출액	2,095.7	2,143.2	2,647.3	3,924.5	6,178.6
오렌지	수출량	40.4	68.0	90.1	30.7	50.1
	수출액	8.1	13.3	21.5	9.0	16.5
레몬	수출량	21.8	34.0	37.3	44.3	51.4
	수출액	9.9	16.9	18.3	26.3	32.9
바나나	수출량	241.0	220.8	188.1	212.2	194.3
	수출액	33.6	30.0	27.0	33.0	38.5
사과	수출량	65.9	76.5	153.0	99.3	57.1
	수출액	31.4	37.8	72.6	45.8	31.9
포도	수출량	26.4	37.6	28.8	51.2	62.3
	수출액	33.8	59.9	52.8	107.3	118.4
고추	수출량	6.5	6.8	8.6	9.2	4.9
	수출액	12.4	13.6	17.3	23.5	12.4
수박	수출량	12.3	16.4	16.1	22.5	30.3
	수출액	2.8	3.5	4.0	6.9	9.7
닭고기	수출량	1,599.9	1,922.0	2,424.5	2,762.0	2,585.7
	수출액	1,335.1	1,709.7	2,493.9	3,324.2	2,922.6
돼지고기	수출량	219.8	145.9	135.3	189.7	134.7
	수출액	180.2	122.6	177.9	287.0	217.6
천연꿀	수출량	12.6	19.3	21.0	14.4	14.6
	수출액	23.1	45.5	42.3	18.9	23.4
땅콩	수출량	6.4	13.7	38.8	59.0	47.8
	수출액	3.7	9.5	26.2	34.0	26.2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브라질의 농산물 수입은 수출에 비해 규모가 작다. 브라질 최대의 수입농산물인 밀의 2006년 수입액은 11억 3천만 달러로 2002년에 비해 29% 늘어났다 <표 10-29>. 그 밖에 주요 수입농산물은 마늘(9,100만 달러), 배(8,900만 달러), 옥수수(8,500만 달러) 등이다.

표 10-29. 브라질의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수입량	6,572.2	6,611.9	4,847.8	4,988.1	6,530.5
	수입액	878.2	1,009.7	838.8	649.0	1,132.5
쌀	수입량	221.1	650.2	214.8	44.3	30.8
	수입액	26.7	102.8	42.7	6.4	4.8
보리	수입량	147.0	255.5	176.4	146.3	200.1
	수입액	20.4	39.1	34.4	22.9	35.7
옥수수	수입량	345.3	797.7	330.5	597.0	956.4
	수입액	34.8	70.6	35.9	58.8	85.3
감자	수입량	4.2	4.2	22.8	18.0	8.7
	수입액	1.9	1.7	4.0	3.0	3.9
대두	수입량	1,045.2	1,189.2	348.3	367.7	48.9
	수입액	174.7	231.2	73.8	68.8	9.9
사과	수입량	53.5	42.4	42.5	67.5	77.7
	수입액	18.0	15.8	19.9	30.0	48.5
포도	수입량	11.0	7.6	6.1	8.4	12.1
	수입액	7.2	5.1	4.5	6.6	12.8
배	수입량	92.5	62.9	75.9	102.6	124.7
	수입액	34.8	29.2	42.6	54.0	88.8
복숭아	수입량	9.0	7.2	7.5	13.1	19.4
	수입액	5.3	4.1	5.0	8.3	16.5
마늘	수입량	79.3	91.6	101.2	132.6	120.6
	수입액	46.0	43.2	54.4	73.5	91.3
쇠고기	수입량	20.2	0.5	2.2	3.0	4.2
	수입액	16.6	0.7	2.3	4.1	6.2
참깨	수입량	3.2	2.7	2.4	2.6	1.6
	수입액	1.9	2.3	2.6	2.6	2.0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4.1.2.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수출액은 2006년 196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464억 달러의 42%를 차지하고 있다<표 10-30>. 2002~2006년 기간에 전체 수출액은 1.8배로 증가하였고, 농산물 수출도 1.8배로 증가하여 농산물 수출 비중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수입액은 2006년 약 10.6억 달러로 수입총액의 3% 수준에 불과하였다. 수입총액이 2002년 3.8배로 증가한데 비해 농산물 수입액은 2.1배로 증가하여 농산물 수입비중이 하락하였다.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무역수지도 흑자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는 2002년 105억 달러에서 2006년 18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은 2002년 11%에서 2006년 20%로 확대되었다.

표 10-30. 아르헨티나의 교역지표

단위: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2005	2006
총수출액(A)	25,709	29,939	34,576	40,106	46,423
농업수출액(B)	11,015	13,859	15,829	17,977	19,620
농업수출액 비중(A/B)	43	46	46	45	42
총수입액(C)	8,990	13,851	22,445	28,689	34,160
농업수입액(D)	499	730	881	936	1,062
농업수입액 비중(C/D)	6	5	4	3	3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 ¹⁾	11	14	16	19	20

주: 1)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 = $\frac{\text{농업수출액} + \text{농업수입액}}{GDP} \times 100$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농산물은 대두, 밀, 옥수수 등 곡류로 수출액 10억 달러 이상을 보이고 있다<표 10-31>. 그 밖에 배, 레몬, 사과 등 과일류와 닭고기, 천연 꿀, 땅콩 등이 1억 달러 이상 수출되고 있다.

표 10-31.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수출량	9,051.6	6,169.2	9,976.6	10,431.1	9,697.4
	수출액	1,097.4	940.5	1,365.5	1,280.6	1,472.0
보리	수출량	112.9	66.2	196.7	325.4	389.7
	수출액	15.9	9.7	31.8	41.0	56.0
옥수수	수출량	9,483.6	11,912.8	10,692.0	14,643.5	10,399.8
	수출액	924.8	1,235.3	1,193.8	1,367.5	1,263.8
수수	수출량	413.4	646.5	191.8	322.5	218.5
	수출액	32.1	60.8	19.3	26.0	23.5
대두	수출량	6,163.4	8,709.6	6,519.8	9,962.1	7,872.9
	수출액	1,118.8	1,840.3	1,740.1	2,295.7	1,779.1
오렌지	수출량	84.8	78.1	136.0	169.4	177.7
	수출액	17.6	22.5	41.9	46.5	59.8
레몬	수출량	267.7	336.8	316.1	369.5	314.7
	수출액	87.3	130.8	126.9	151.8	121.6
사과	수출량	165.9	200.4	206.0	273.6	237.3
	수출액	63.2	82.0	90.7	125.3	116.6
포도	수출량	37.4	39.1	47.8	52.0	73.0
	수출액	34.9	33.7	41.6	48.6	73.6
배	수출량	310.8	328.2	320.7	440.5	395.7
	수출액	135.5	148.6	153.3	208.8	210.7
마늘	수출량	62.4	86.7	100.6	97.3	100.0
	수출액	45.7	57.3	66.6	85.0	93.7
양파	수출량	152.1	208.7	224.0	201.9	245.0
	수출액	19.3	28.9	34.9	30.2	41.0
닭고기	수출량	27.4	40.3	64.7	111.7	117.8
	수출액	16.8	32.4	55.6	110.2	111.8

(표 10-31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천연꿀	수출량	80.0	70.5	62.5	107.7	104.0
	수출액	114.2	159.9	120.5	128.5	154.1
녹차	수출량	57.6	59.1	67.8	68.3	72.1
	수출액	40.3	34.1	40.5	45.7	50.8
땅콩	수출량	118.5	107.2	70.5	117.3	181.6
	수출액	66.9	72.9	53.9	72.6	119.3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아르헨티나가 1억 달러 이상 수입하는 농산물은 대두뿐이다<표 10-32>. 그 밖에 바나나 수입액이 약 6천만 달러에 달할 뿐 나머지 품목의 수입액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표 10-32.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옥수수	수입량	1.8	3.0	1.9	2.3	1.4
	수입액	5.4	4.8	4.5	5.7	7.5
대두	수입량	260.7	338.1	559.4	747.7	712.4
	수입액	45.8	70.7	148.5	156.3	156.0
바나나	수입량	229.5	286.4	303.4	302.2	295.7
	수입액	38.8	46.6	53.7	54.8	59.3
파인애플	수입량	8.3	11.8	11.8	9.7	9.8
	수입액	1.8	2.5	2.6	1.9	2.0
닭고기	수입량	0.5	7.8	0.9	2.0	2.4
	수입액	0.4	5.9	1.4	3.3	3.9
돼지고기	수입량	-	0.2	0.5	0.8	0.9
	수입액	-	0.3	0.7	1.3	1.6
쇠고기	수입량	3.7	8.1	2.9	2.6	3.0
	수입액	2.7	6.1	2.5	2.7	3.7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4.1.3. 우루과이

우루과이의 농산물 수출액은 2006년 22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40억 달러의 56%를 차지하였다<표 10-33>. 2002~2006년 기간에 전체 수출액은 2.1배로 증가하였고 농산물 수출은 2.3배로 증가하여 농산물 수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우루과이의 농산물 수입액은 2006년 약 4.3억 달러로 수입총액의 9%를 차지하였다. 수입총액은 2002년에 비해 2.4배 증가하였는데, 농산물 수입액은 1.4배 늘어나는 데 머물러 농산물 수입비중이 줄어들었다.

우루과이의 농산물 무역수지도 흑자 규모가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 6.6억 달러 흑자에서 2006년 18.8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은 2002년 11%에서 2006년 22%로 확대되고 있다.

표 10-33. 우루과이의 교역지표

단위: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2005	2006
총수출액(A)	1,861	2,198	2,918	3,405	3,952
농업수출액(B)	982	1,211	1,587	1,870	2,209
농업수출액 비중(A/B)	53	55	54	55	56
총수입액(C)	1,964	2,190	3,119	3,879	4,775
농업수입액(D)	320	323	322	354	433
농업수입액 비중(C/D)	16	15	10	9	9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 ¹⁾	11	12	16	18	22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우루과이의 주요 수출농산물은 대두이다. 대두 수출액은 2006년 1억 3,800만 달러에 달했다<표 10-34>. 오렌지와 천연 꿀, 쇠고기 등도 주요 수출 농산물이다. 최근 밀이 우루과이의 주요 수출농산물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2003년 2,700만 달러에 이르던 쌀 수출액은 백만 달러 이하로 낮아졌다.

표 10-34. 우루과이의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수출량	0.1	-	10.8	86.9	100.4
	수출액	-	-	1.2	9.7	16.5
쌀	수출량	85.5	139.3	93.6	9.6	3.4
	수출액	10.5	26.9	17.5	1.4	0.5
보리	수출량	-	3.1	27.8	12.9	27.3
	수출액	-	0.3	4.8	1.6	4.1
대두	수출량	61.6	179.5	341.6	477.4	631.6
	수출액	10.1	36.4	82.7	100.7	138.2
오렌지	수출량	49.6	60.2	77.0	96.7	78.7
	수출액	14.6	19.9	27.3	30.9	29.1
레몬	수출량	9.5	11.0	13.3	15.9	14.3
	수출액	3.4	4.2	5.3	5.9	5.2
쇠고기	수출량	3.8	8.6	5.1	5.5	7.7
	수출액	2.7	6.4	4.6	6.6	10.3
천연꿀	수출량	9.5	9.2	13.4	8.9	12.1
	수출액	14.7	23.7	28.8	10.9	17.4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우루과이는 대부분의 농산물을 자급하고 있어 수입액은 매우 적다. 2006년 현재 옥수수 수입액이 약 2,700만 달러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급증하고 있다<표 10-35>. 반면 밀 수입액은 2003년 이래 감소 추세에 있어 2006년 수입액은 50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표 10-35. 우루과이의 농축산물 수입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수입량	228.8	252.2	98.5	32.6	2.5
	수입액	35.1	39.6	13.9	4.4	0.3
옥수수	수입량	11.2	25.6	40.3	86.0	188.2
	수입액	1.8	5.7	9.8	12.1	26.9
대두	수입량	2.3	8.5	9.5	11.2	9.4
	수입액	0.8	2.9	3.6	4.7	3.7
바나나	수입량	47.5	41.0	43.9	47.6	45.1
	수입액	6.1	4.6	5.3	6.1	6.7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4.1.4. 파라과이

파라과이의 농산물 수출액은 2006년 15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19억 달러의 78%를 차지하였다<표 10-36>. 2002~2006년 기간 전체 수출액이 2배로 증가하는 동안 농산물 수출은 3.2배로 늘어나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농산물 수입액은 2006년 약 3.6억 달러로 수입총액의 6%를 차지하였다. 수입총액은 2002년에 비해 3.5배 늘어났는데, 농산물 수입액은 1.8배 늘어나는 데 그쳐 농산물 수입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농산물 무역수지도 흑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는 2002년 2.6억 달러에서 2006년 11.2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은 2002년 14%에서 2006년 38%로 확대되었다.

표 10-36. 파라과이의 교역지표

단위: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2005	2006
총수출액(A)	951	1,242	1,626	1,688	1,906
농업수출액(B)	469	1,020	1,350	1,371	1,479
농업수출액 비중(A/B)	49	82	83	81	78
총수입액(C)	1,672	2,228	3,097	3,715	5,879
농업수입액(D)	206	224	278	304	364
농업수입액 비중(C/D)	12	10	9	8	6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 ¹⁾	14	26	34	35	38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파라과이의 최대의 수출농산물은 대두이며 옥수수과 밀, 땅콩도 주요 수출품목이다. 2006년 대두 수출액은 4억 4,000만 달러, 옥수수 수출액은 1억 6,600만 달러에 달했다<표 10-37>. 밀 수출액은 3,700만 달러, 땅콩 수출액은 2,900만 달러였다.

표 10-37. 파라과이의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수출량	14.0	203.7	319.3	612.7	251.3
	수출액	1.7	27.6	37.5	70.2	37.1
쌀	수출량	0.5	1.6	11.8	33.4	33.9
	수출액	0.1	0.3	2.1	4.4	5.0
옥수수	수출량	53.2	805.4	370.2	480.2	1,895.0
	수출액	3.8	63.4	33.4	42.9	165.7
대두	수출량	1,986.6	1,727.4	2,575.1	2,971.6	2,251.8
	수출액	280.6	517.0	578.7	566.2	439.1
땅콩	수출량	1.2	4.3	2.9	3.9	7.0
	수출액	0.6	3.1	2.0	2.2	4.8
참깨	수출량	1.1	7.2	22.6	33.6	28.9
	수출액	0.5	4.6	22.9	25.6	28.7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파라과이의 농산물 수입액은 미미하다. 옥수수 수입액이 2006년 1,3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대두 수입액이 약 500만 달러에 불과했다<표 10-38>.

표 10-38. 파라과이의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옥수수	수입량	6.0	2.1	7.2	4.7	7.2
	수입액	6.7	2.5	12.3	8.5	12.7
대두	수입량	8.4	10.8	15.0	34.2	10.4
	수입액	2.8	4.1	6.2	19.2	4.6
오렌지	수입량	13.1	0.2	9.3	29.4	15.5
	수입액	0.7	-	0.4	1.1	0.6
사과	수입량	3.8	0.8	4.7	3.0	3.6
	수입액	1.2	0.2	0.9	0.5	0.6
토마토	수입량	13.0	0.1	22.4	18.3	20.6
	수입액	0.8	-	2.6	1.9	1.1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4.2. 한-MERCOSUR 농산물 교역 현황

4.2.1. 전체 교역 추이

한국과 MERCOSUR간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98년 브라질 금융위기 여파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0년대 들어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수출액은 2005년 28억 3,000만 달러에서 2007년 41억 1,000만 달러로 45% 늘어났다<표 10-39>. 농산물 수출액은 같은 기간 570만 달러에서 54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MERCOSUR에서의 수입도 수출과 비슷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수입액은 같은 기간 29억 달러에서 35억 7,000만 달러로 23% 증가하였다. 농산

물 수입도 같은 기간 8억 7,000만 달러에서 12억 달러로 늘어났다.

한국의 MERCOSUR에 대한 무역수지는 2005년 7,500만 달러 적자에서 2007년 5억 5,000만 달러 흑자로 반전되었다. 하지만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8억 6,000만 달러에서 12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전체 무역수지 흑자보다 크게 나타났다.

표 10-39. 한국-MERCOSUR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수 출	2,828.0	3,516.8	4,112.9
농림축산물 수출	5.7	5.7	5.4
수 입	2,902.7	3,298.6	3,567.8
농림축산물 수입	866.8	917.4	1,199.3
무역수지	-74.7	218.2	545.1
농림축산물 수지	-861.1	-911.7	-1,193.9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4.2.2. 농산물 품목별 수출입 동향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MERCOSUR에 1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농산물이 하나도 없다. 가장 수출액이 많은 김이 약 80만 달러, 라면이 76만 달러,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 72만 달러에 불과하며 대부분 가공농산물로 구성되어 있다<표 10-40>.

반면 수입은 1억 달러 이상 품목이 대두박, 옥수수, 대두유, 대두 등 4개나 되며 10개 품목이 3천만 달러를 넘는다. 대두박 3.2억 달러, 옥수수 2.7억 달러, 대두유와 대두 각각 1.7억 달러 등 대부분 신선농산물 위주로 수입되고 있다.

표 10-40. 한국-MERCOSUR 농산물 수출입 현황(2007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		수입		비고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김	0.80	대두박	318.8	
2	라면	0.76	옥수수	266.1	
3	기타 베이커리 제품	0.72	대두유	172.7	
4	기타 식물성 점질물	0.32	대두	170.3	
5	웹톤	0.31	닭고기	44.3	
6	단일과실 조제품	0.29	오렌지	43.1	
7	곡류 조제품	0.26	에틸알콜	37.5	
8	기타 병과	0.24	일담배	33.8	
9	소주	0.22	치즈	33.5	
10	권련	0.20	커피	29.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008. 「주요 농산물 경쟁력 조사」. 한-MERCOSUR FTA 자료. 17쪽.

4.2.3. 회원국별 농축산물 교역 현황

브라질로의 농산물 수출액은 2006년 200만 달러였다<표 10-41>. 반면 수입액은 6억 달러를 넘었다. 특히 농산물 수입액이 5억 5,000만 달러에 달했다.

표 10-41. 한국-브라질 농산물 교역현황

단위: 백만 USD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	농산물(A)	1	1	1	2	2
	축산물(B)	-	-	-	1	1
	임산물(C)	-	-	-	-	-
	총계(D=A+B+C)	1	1	2	3	2
수입	농산물(E)	418	451	650	552	548
	축산물(F)	9	4	8	20	44
	임산물(G)	17	15	15	10	9
	총계(H=E+F+G)	443	471	673	582	601
무역수지	농산물(A-E)	-416	-450	-649	-550	-546
	축산물(B-F)	-9	-4	-8	-19	-43
	임산물(C-G)	-17	-15	-15	-10	-9
	총계(D-H)	-442	-470	-672	-579	-59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우리나라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농산물 수출도 200만 달러였다<표 10-42>. 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의 수입액은 2억 7,400만 달러로 농림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2억 7,200만 달러에 달했다.

표 10-42. 한국-아르헨티나 농산물 교역현황

단위: 백만 USD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	농산물(A)	1	1	1	2	2
	축산물(B)	-	-	-	-	-
	임산물(C)	-	-	-	-	-
	총계(D=A+B+C)	1	1	1	2	2
수입	농산물(E)	162	91	213	258	274
	축산물(F)	0	1	4	9	17
	임산물(G)	4	9	6	1	0
	총계(H=E+F+G)	167	101	222	267	290
무역수지	농산물(A-E)	-161	-90	-212	-256	-272
	축산물(B-F)	-0	-1	-4	-9	-16
	임산물(C-G)	-4	-9	-5	-1	-0
	총계(D-H)	-166	-100	-221	-265	-28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우루과이와의 농산물 교역 규모는 미미하다. 우루과이에 대한 수출액은 100만 달러 규모이며 수입액은 2,000만 달러 수준이다<표 10-43>.

표 10-43. 한국-우루과이 농산물 교역현황

단위: 백만 USD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	농산물(A)	-	-	-	-	-
	축산물(B)	-	-	-	-	-
	임산물(C)	-	-	-	-	-
	총계(D=A+B+C)	-	-	-	1	1
수입	농산물(E)	-	-	-	-	1
	축산물(F)	-	4	7	17	20
	임산물(G)	-	-	-	-	-
	총계(H=E+F+G)	-	4	7	17	20
무역수지	총계(D-H)	-	-4	-7	-16	-2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파라과이와의 농산물 교역도 미미한 수준이다. 농산물 수출은 40만 달러, 수입은 550만 달러 규모로 농림축산물 무역수지는 510만 달러이다<표 10-44>.

표 10-44. 한국-파라과이 농산물 교역현황

단위: 백만 USD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	농산물(A)	0.2	0.2	0.3	0.4	0.4
	축산물(B)	-	-	-	-	-
	임산물(C)	-	-	-	-	-
	총계(D=A+B+C)	0.2	0.2	0.3	0.4	0.4
수입	농산물(E)	0.1	0.1	0.4	0.7	5.4
	축산물(F)	-	-	-	-	-
	임산물(G)	0.2	0.2	0.2	0.2	0.1
	총계(H=E+F+G)	0.3	0.3	0.6	0.9	5.5
무역수지	총계(D-H)	-0.1	-0.1	-0.3	-0.5	-5.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5. 한-MERCOSUR FTA 논의 동향과 전망

5.1. 양자간 FTA 논의 동향

한-MERCOSUR FTA에 대한 논의는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남미 순방시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정상과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2005년 5월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한-MERCOSUR 무역협정(TA) 공동연구 1차 회의부터 2006년 10월 브라질리아의 한-MERCOSUR 무역협정(TA) 공동연구 4차 회의까지 공동연구가 계속되었다. 이후 2007년 10월 한-MERCOSUR 무역협정(TA) 공동연구 결과 발표회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되었다.

5.2. 향후 FTA 전망과 대응방안

MERCOSUR의 4개 회원국들은 모두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Cairns) 그룹 소속으로 농산물 생산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 개방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MERCOSUR는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위치하여 농산물 출하 시기가 상반되고 원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비가 높아 FTA 체결시 과일과 채소 등 신선농산물의 수입이 제한되므로 직접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회원국별로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이 다양하여 관세 철폐시 많은 품목의 수입 증가로 국내 생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육류와 과일가공품, 유지류 등은 향후 수입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MERCOSUR의 회원국들은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광대한 국토에 잠재적 부존자원이 풍부하여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

는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현재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이 대두와 대두박, 대두유, 옥수수 등 대부분 식품가공용 및 사료용 원자재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 제외와 무역구제제도 도입 등 FTA 체결에 따른 급격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선결조건으로 하여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 11장

터 키

1. 역사

터키의 공식 명칭은 터키 공화국이며 지리적으로 중동,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아나톨리아 반도에 위치한 국가로서 동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있다. 수도는 앙카라이며 최대 도시는 이스탄불(1453년부터 1922년까지는 수도)이다. 터키의 기후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흑해 연안은 온난한 편이고, 내륙은 대륙성 기후 그리고 지중해 지방은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터키의 해안선은 8,000km에 달한다. 유럽 지역과 볼루 지역, 트라브존 지역을 제외하고 국토가 대부분 사막화되었다. 아나톨리아는 동부에 펼쳐진 고원 지대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시작으로 15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 호수도 많으며 그중에서도 반 호수와 같이 내해에 필적할 정도로 큰 호수도 있다. 북부에는 흑해와 평행을 이루고 달리는 산맥이 있고, 남부에는 토로스 산맥이 해안을 따라 비옥한 평지와 연결되어 있다.

터키의 인구는 약 7,400만 명(2007년 기준)이며, 40% 정도가 농촌 지역에 살고 있다. 터키인 이외에 쿠르드인, 아제르바이잔인, 러시아인, 그루지야인, 아르메니아인, 그리스인, 아랍인 등이 거주한다. 주요 지역별 인구는 이스탄불 1,257만 명, 앙카라 414만 명, 부르사 244만 명, 아다나 200만 명 등이다. 터키

에서는 인구의 98%가 이슬람교를 믿는다. 주요 농작물은 밀, 쌀, 면화, 담배, 개암, 과일 등이다. 주요 가축은 양이다. 터키는 면화와 양모 제품이 유명하다.

터키는 북아시아의 유목민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6세기 중반 경에는 동북아시아로부터 페르시아에 이르는 제국을 세웠으나, 당나라에 의해 밀려나 중앙아시아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후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의 교차로 역할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해 갔다. 13세기 말에 성립된 오스만투르크 제국(1297~1922)은 16세기에 아시아·유럽·아프리카까지 그 세력을 떨쳤으나 1453년에는 오스만 제국에 의해 콘스탄티노플(현재의 이스탄불)이 함락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편으로 참전하였다. 패전을 틈타 그리스군이 본토에 침입해오자 1919년 케말 파샤(아타튀르크)가 ‘아나톨리아·루메리아 권 리옹호단’을 조직하였다. 1920년에는 터키 대국민의회를 소집하고 국민군을 조직하여 1922년 9월 그리스군을 완전히 격퇴하였다.

1923년 10월 앙카라를 수도로 하는 공화국 선언이 있었고 케말 파샤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1945년 2월 독일·일본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할 때까지 중립을 지켰다. 1950년 총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공화인민당을 누르고 제1당으로 등장하였다. 바야르를 대통령으로 한 민주당 정권은 국영산업의 축소, 민간기업의 조성, 민간 외자의 도입을 기본정책으로 하여 농업의 근대화, 공업의 발전, 도로·댐의 정비 등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 반면 적자 재정에서 오는 인플레이션, 정부의 언론탄압 등에 대한 불만이 군부·언론계·지식층·학생들 사이에 퍼져 1960년 5월 구르셀 장군의 쿠데타로 민주당 정권이 붕괴되었다.

새로 수립된 군사정권(국가통일위원회)은 신헌법을 제정하였다. 1961년 10월 신헌법에 의한 총선거가 실시되어 새 국회가 소집되고 민정이관 후 구르셀이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1974년 2월 터키 군부는 키프로스 분쟁에 개입하여 키프로스를 장악하였다. 1978년대 후반에는 종교갈등과 쿠르드독립운동 등 민족분규가 빈발하였다.

터키는 한국 전쟁 참전국으로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증가하고 있다. 터키는 1949년 8월 14일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고, 1950년 7월에 한국전 참

전을 결정하였다. 1957년 3월에는 대한민국과 공식적으로 수교하였다. 1977년 12월 한국과 터키 양국은 통상진흥 및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1979년 항공 협정, 1986년 이중 과세 방지 협정, 1994년 투자 보장 협정, 1997년 섬유 협정, 1999년 원자력 협력 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2. 주요 경제지표

터키의 인구는 7,392만 명(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5배에 달한다. 농가인구(FAO의 정의에 따르면 농업인구 즉, *agriculture population*)는 2천만 명(200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8%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농가인구 비율 7.1%(2005년 기준)보다 4배 정도 높다. 국토면적은 7,836만 ha이며, 이 가운데 53%인 4,122만 ha가 농경지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국토면적은 터키가 8배 정도 넓고, 경지면적은 23배 넓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에서 경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터키는 우리나라보다 평야지대가 훨씬 넓은 나라이다.

터키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4,027억 달러(2006년 기준)로 2002년에 비해 2.2배(연평균 30%) 증가하였다. 우리나라가 터키와 FTA를 추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제조업 분야의 수요 증대와 자원 확보 때문이다. 국민 1인당 GDP는 5,458 달러이다. 2006년 우리나라의 GDP는 8,887억 달러, 1인당 GDP는 18,401 달러이다. 우리나라의 GDP와 1인당 GDP는 각각 터키의 2.2배, 3.4배 수준이다.

터키의 대외교역 규모는 수출 855억 달러(2006년 기준), 수입 1,386억 달러로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 무역수지(상품수지)는 2002년에는 155억 달러의 적자에서 2006년에는 531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외교역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수출 3,255억 달러, 수입 3,094억 달러이다. 전체 교역규모는 터키의 3배로 인구나 GDP 규모의 차이보다 크다.

표 11-1. 터키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2002	2003	2004	2005	2006
인구(A)	1000명	70,135	71,083	72,024	72,969	73,921
농촌거주인구		24,141	24,150	24,103	23,955	-
농업인구(B)		20,739	20,594	20,442	20,287	-
농업인구비중(A/B)	%	30	29	28	28	-
국토면적(C)	1000ha	78,356	78,356	78,356	78,356	78,356
경지면적(D)		41,196	40,644	41,210	41,223	41,223
경지면적비중(C/D)	%	53	52	53	53	53
GDP	백만 USD	183,888	240,376	302,678	363,370	402,710
1인당 GDP	USD	2,626	3,372	4,193	4,969	5,458
수출(E)	백만 USD	35,762	47,253	63,121	73,476	85,526
수입(F)		51,270	69,340	97,540	116,774	138,581
경상수지(E-F)		-15,508	-22,087	-34,419	-43,298	-53,055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3. 농산물 수급

터키의 주요 곡물은 밀, 보리, 감자, 옥수수, 쌀 등이다. 밀은 가장 중요한 곡물로 2천만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다. 밀 수급은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곡물은 보리로 950만 톤 정도가 생산되며 소비량은 920만 톤으로 자급률은 103% 수준이다. 감자 생산량은 440만 톤으로 자급자족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옥수수 생산량은 2006년에 380만 톤이나 연도별로 차이가 크다. 2002년 생산량은 210만 톤에 불과하였으며, 2005년에는 420만 톤이 생산되었다. 쌀 생산량은 2002년 36만 톤에서 2006년 70만 톤으로 94% 증가하였다. 쌀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량 증가에 따라 쌀의 자급률은 2002년 55%에서 2006년 97%로 증가하였다. 그 밖에 귀리와 대두가 소량 생산되고 있다. 대두 소비량은 연간 100만 톤을 넘기 때문에 자급률은 5% 정도에 불과하다.

표 11-2. 터키의 식량작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생산량(A)	19,508	19,008	21,000	21,500	20,010
	소비량(B) ¹⁾	20,567	20,846	22,065	21,308	20,153
	자급률(A/B)	95	91	95	101	99
쌀	생산량(A)	360	372	490	600	696
	소비량(B) ¹⁾	652	619	525	702	721
	자급률(A/B)	55	60	93	85	97
보리	생산량(A)	8,300	8,100	9,000	9,500	9,551
	소비량(B) ¹⁾	7,721	7,793	9,240	9,263	9,241
	자급률(A/B)	107	104	97	103	103
옥수수	생산량(A)	2,100	2,800	3,000	4,200	3,811
	소비량(B) ¹⁾	3,270	4,607	4,039	4,290	3,698
	자급률(A/B)	64	61	74	98	103
귀리	생산량(A)	290	270	270	270	209
	소비량(B) ¹⁾	295	271	294	277	210
	자급률(A/B)	98%	100%	92%	97%	99%
수수	생산량(A)	-	-	-	-	0.2
	소비량(B) ¹⁾	-	-	-	-	0.3
	자급률(A/B)	-	-	-	-	80%
감자	생산량(A)	5,200	5,300	4,800	4,090	4,397
	소비량(B) ¹⁾	5,187	5,137	4,654	4,026	4,373
	자급률(A/B)	100	103	103	102	101
고구마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	-	-	-	-
	자급률(A/B)	-	-	-	-	-
대두	생산량(A)	75	85	50	29	47
	소비량(B) ¹⁾	687	895	730	1,184	1,045
	자급률(A/B)	11	9	7	2	5
매니옥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	-	-	-	-
	자급률(A/B)	-	-	-	-	-
메밀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	-	-	-	-
	자급률(A/B)	-	-	-	-	-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터키는 위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열대성 과일과 온대성 과일이 고루 생산되고 있다.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과일은 포도로 400만 톤이 생산되며, 자급률은 103% 수준이다(2006년). 사과는 200만 톤 정도가 생산되어 자급률은 100% 수준이다. 배와 복숭아 생산량은 각각 32만 톤, 55만 톤으로 자급률은 100%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열대성 과일인 오렌지, 레몬, 자몽, 바나나 등도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다. 오렌지의 생산량은 154만 톤, 소비량은 132만 톤으로 자급률은 117%이다. 레몬은 과일 가운데 자급률이 두 번째로 높은 품목으로 70만 톤 정도가 생산되어 자급률 164%를 나타내고 있다. 자몽은 18만 톤이 생산되지만 소비량은 3만 톤에 불과하여 자급률 700%를 나타내고 있다. 바나나의 생산량은 18만 톤, 소비량은 28만 톤, 자급률 63%이다.

표 11-3. 터키의 과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오렌지	생산량(A)	1,250	1,250	1,300	1,445	1,536
	소비량(B) ¹⁾	1,139	1,115	1,197	1,306	1,317
	자급률(A/B)	110	112	109	111	117
레몬	생산량(A)	525	550	600	600	710
	소비량(B) ¹⁾	320	393	386	247	433
	자급률(A/B)	164	140	155	243	164
자몽	생산량(A)	125	135	135	150	180
	소비량(B) ¹⁾	35	59	30	66	26
	자급률(A/B)	358	231	454	227	700
바나나	생산량(A)	95	110	130	150	178
	소비량(B) ¹⁾	160	202	240	301	282
	자급률(A/B)	60	54	54	50	63
사과	생산량(A)	2,200	2,600	2,100	2,570	2,002
	소비량(B) ¹⁾	2,189	2,583	2,082	2,545	1,999
	자급률(A/B)	101	101	101	101	100
파인애플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	-	-	-	2
	자급률(A/B)	-	-	-	-	-

(표 11-3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포도	생산량(A)	3,500	3,600	3,500	3,850	4,000
	소비량(B) ¹⁾	3,423	3,501	3,341	3,695	3,866
	자급률(A/B)	102	103	105	104	103
배	생산량(A)	340	370	320	360	318
	소비량(B) ¹⁾	327	359	315	350	314
	자급률(A/B)	104	103	102	103	101
복숭아	생산량(A)	455	470	372	510	553
	소비량(B) ¹⁾	427	426	352	471	509
	자급률(A/B)	106	110	106	108	109
감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	-	-	-	-
	자급률(A/B)	-	-	-	-	-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터키는 비교적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생산과 소비가 많은 편이다. 2006년 고추 생산량은 186만 톤, 소비량은 180만 톤이다. 2002~2006년 기간에 고추의 자급률은 평균 103% 수준이다. 양파는 177만 톤이 생산되고 166만 톤이 소비되어 자급률은 106%이다. 마늘 생산량은 100만 톤 정도이며, 자급자족을 이루고 있다.

과채류 가운데에서는 토마토가 가장 많이 생산된다. 토마토 생산량은 986만 톤으로 자급률은 103%이다. 수박의 생산량은 380만 톤 정도로 자급자족을 이루고 있다. 오이의 생산량은 180만 톤으로 자급률은 103%를 나타내고 있다. 딸기는 20만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다.

표 11-4. 터키의 채소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추	생산량(A)	1,770	1,810	1,720	1,849	1,862
	소비량(B) ¹⁾	1,718	1,765	1,668	1,784	1,804
	자급률(A/B)	103	103	103	104	103
딸기	생산량(A)	145	150	155	200	211
	소비량(B) ¹⁾	145	150	155	194	201
	자급률(A/B)	100	100	100	103	105
마늘	생산량(A)	96	125	109	109	96
	소비량(B) ¹⁾	98	128	109	109	97
	자급률(A/B)	98	98	100	100	99
생강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	-	-	-	-
	자급률(A/B)	-	-	-	-	-
수박	생산량(A)	4,575	4,250	3,825	3,970	3,805
	소비량(B) ¹⁾	4,564	4,222	3,808	3,955	3,795
	자급률(A/B)	100%	101%	100%	100%	100%
양파	생산량(A)	2,050	1,750	2,040	2,070	1,765
	소비량(B) ¹⁾	1,911	1,613	1,966	2,006	1,663
	자급률(A/B)	107	109	104	103	106
오이	생산량(A)	1,670	1,780	1,725	1,745	1,800
	소비량(B) ¹⁾	1,649	1,757	1,698	1,714	1,751
	자급률(A/B)	101	101	102	102	103
토마토	생산량(A)	9,450	9,820	9,440	10,050	9,855
	소비량(B) ¹⁾	9,206	9,593	9,205	9,800	9,609
	자급률(A/B)	103	102	103	103	103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터키는 이슬람 국가로 돼지고기의 생산과 소비는 없다. 2006년 닭고기 생산량은 92만 톤, 소비량은 100만 톤으로 자급률 91%를 나타냈으나 2002~2005년 기간에는 자급률이 100%를 약간 상회하였다. 쇠고기 생산량은 41만 톤으로 자급률 100%를 보이고 있다. 천연꿀 생산량은 8만 4천 톤으로 자급률은 103%이다.

표 11-5. 터키의 축산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닭고기	생산량(A)	696	872	877	937	918
	소비량(B) ¹⁾	677	848	848	893	1,005
	자급률(A/B)	103%	103%	103%	105%	91%
돼지고기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	-	-	-	-
	자급률(A/B)	100	100	100	100	-
쇠고기	생산량(A)	328	290	365	322	341
	소비량(B) ¹⁾	328	290	365	322	341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천연꿀	생산량(A)	75	70	74	82	84
	소비량(B) ¹⁾	60	55	68	80	81
	자급률(A/B)	125	126	108	102	103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녹차와 땅콩 생산량은 각각 21만 톤과 8만 톤으로 교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깨 생산량은 2만 7천 톤, 소비량은 6만 7천 톤으로 자급률은 40%에 머물고 있다.

표 11-6. 터키의 특작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녹차	생산량(A)	135	154	202	218	205
	소비량(B) ¹⁾	132	150	199	215	205
	자급률(A/B)	103	103	102	101	100
땅콩	생산량(A)	90	85	80	85	77
	소비량(B) ¹⁾	90	85	84	116	78
	자급률(A/B)	100	100	95	73	99
참깨	생산량(A)	22	22	23	26	27
	소비량(B) ¹⁾	88	84	98	108	67
	자급률(A/B)	25	26	23	24	40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4. 농산물 교역

터키는 전체 상품 수출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이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농산물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6년에는 전체 상품 수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농산물 수출은 전년보다 감소하여 그 비중이 7%로 낮아졌다. 농산물 수입 비중은 2002~2006년 기간에 6%에서 4%로 감소하였다.

농산물 수출액은 2002년 34억 달러에서 2006년 61억 달러로 증가하였다(2005년 77억 달러). 농산물 수입액은 같은 기간에 31억 달러에서 53억 달러로 연평균 17.7%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에 0.7%, 수입 비중은 3.4% 수준이다.

표 11-7. 터키의 교역지표

단위: 백만 USD, %

	2002	2003	2004	2005	2006
총수출액(A)	35,762	47,253	63,121	73,476	85,526
농업수출액(B)	3,449	4,824	5,953	7,703	6,065
농업수출액 비중(A/B)	10	10	9	10	7
총수입액(C)	51,270	69,340	97,540	116,774	138,581
농업수입액(D)	3,056	4,167	4,651	4,829	5,347
농업수입액 비중(C/D)	6	6	5	4	4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 ¹⁾	4	5	6	7	6

주: 1)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 = $\frac{\text{농업수출액} + \text{농업수입액}}{GDP} \times 100$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터키의 주곡으로 볼 수 있는 밀은 수출과 수입이 다 같이 이루어지지만 주로 수입이 많다. 2002~2006년 기간에 연평균 수입량은 95만 톤에 달한다. 최근 수입량이 가장 많은 곡물은 대두로 100만 톤 정도가 수입되고 있다. 대두의 자급률은 5%에 불과하다. 그 밖에 쌀, 보리, 옥수수 등이 미미한 수준으로 수입되

지만 보리와 옥수수는 수출량이 수입보다 많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수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과일 가운데 자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품목은 바나나로 수입 규모는 10만 톤을 넘는다. 그 밖에 다양한 과일이 수입되고 있지만 규모는 미미하다. 바나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일에 있어서 터키는 순수출국으로 볼 수 있다. 채소류와 육류의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다. 녹차, 땅콩 등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깨의 자급률은 40%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수입량이 연간 7만 톤에 달한다.

표 11-8. 터키의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USD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수입량	1,097.8	1,838.7	1,065.4	135.6	595.1
	수입액	148.0	276.2	221.9	25.0	97.0
쌀	수입량	292.0	247.7	35.4	102.2	25.2
	수입액	48.8	55.5	15.3	26.2	6.1
보리	수입량	16.8	89.4	240.3	52.2	61.3
	수입액	2.4	15.7	39.8	10.6	12.4
옥수수	수입량	1,177.7	1,818.1	1,049.7	218.1	38.3
	수입액	133.8	276.2	190.5	47.3	12.8
귀리	수입량	5.2	0.6	23.6	7.2	1.4
	수입액	0.3	-	2.8	0.8	0.2
수수	수입량	-	-	-	-	0.1
	수입액	-	-	-	-	0.1
감자	수입량	11.8	9.3	9.1	13.7	15.0
	수입액	5.8	5.2	5.9	7.7	9.7
고구마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대두	수입량	612.5	810.1	682.0	1,154.5	997.6
	수입액	139.6	219.3	226.8	328.5	255.2

(표 11-8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매니옥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메밀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오렌지	수입량	38.8	41.2	30.8	54.1	0.6
	수입액	4.6	6.4	5.9	11.2	0.3
레몬	수입량	3.7	5.8	2.7	2.6	0.2
	수입액	0.4	1.0	0.6	0.5	0.1
자몽	수입량	12.7	10.3	11.4	15.2	0.1
	수입액	1.5	1.2	2.1	2.9	-
바나나	수입량	64.6	91.9	110.2	151.0	106.6
	수입액	25.6	36.4	43.3	61.6	27.0
사과	수입량	3.2	2.9	2.5	4.0	5.6
	수입액	1.3	1.4	1.5	3.0	5.0
파인애플	수입량	0.1	0.1	0.2	0.4	1.8
	수입액	-	-	0.1	0.3	1.4
포도	수입량	0.1	-	0.2	0.2	0.6
	수입액	0.1	-	0.2	0.2	0.9
배	수입량	0.1	0.1	0.2	0.2	0.7
	수입액	-	-	0.1	0.1	0.8
복숭아	수입량	-	-	-	0.2	0.2
	수입액	-	-	-	0.1	0.4
감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고추	수입량	0.2	0.5	0.5	0.6	0.2
	수입액	0.2	0.6	0.5	0.7	0.6
딸기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마늘	수입량	2.4	3.3	0.4	-	1.1
	수입액	0.9	1.4	0.2	-	1.0
생강	수입량	0.2	0.2	0.1	0.3	0.1
	수입액	0.1	0.1	0.1	0.2	0.2
수박	수입량	-	0.1	0.1	0.2	5.1
	수입액	-	-	-	0.1	1.2
양파	수입량	0.2	0.1	0.1	0.1	0.6
	수입액	-	-	-	-	0.2
오이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표 11-8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토마토	수입량	0.1	-	-	0.1	0.2
	수입액	-	-	-	-	0.3
닭고기	수입량	-	0.1	-	0.1	92.1
	수입액	-	-	-	0.2	78.6
돼지고기	수입량	-	-	-	-	0.1
	수입액	-	-	-	-	0.3
쇠고기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0.5
천연꿀	수입량	0.4	0.5	0.2	0.1	0.1
	수입액	0.7	1.2	0.6	0.5	0.3
녹차	수입량	1.5	2.5	2.9	3.3	2.8
	수입액	2.7	3.9	5.2	6.4	7.1
땅콩	수입량	0.1	0.3	4.0	30.9	1.1
	수입액	-	0.2	3.6	24.9	1.0
참깨	수입량	70.0	66.1	79.2	86.4	45.2
	수입액	33.5	43.1	59.0	64.3	38.4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곡물 가운데 주요 수출 품목은 보리로 2006년에 37만 톤이 수출되었다. 밀 수출량이 45만 톤에 이르렀으나 수입량은 60만 톤에 달했다. 옥수수과 감자도 순수출 품목으로 2006년 수출량은 각각 15만 톤, 4만 톤이다. 따라서 터키의 곡물 수급은 대부분 자급자족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대두와 참깨 정도이다.

과일은 바나나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급률이 100%를 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과일이 수출되고 있다. 오렌지와 레몬의 수출량은 각각 22만 톤과 28만 톤이며, 자몽 수출량도 15만 톤에 달해 열대성 과일의 수출이 많다. 온대성 과일 가운데 수출량이 많은 것은 포도와 복숭아로 각각 13만 톤, 4만 톤 수준이다. 그러나 사과와 배의 수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양념채소 가운데 수출이 비교적 많은 품목은 고추와 양파로 수출량이 각각 6만 톤, 10만 톤 수준이다. 마늘은 일부 수출되지만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과

채류 가운데에서는 토마토의 수출이 가장 많다. 토마토 수출량은 25만 톤 수준이다. 축산물과 특용작물의 수출 실적은 미미하다.

표 11-9. 터키의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USD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수출량	38.7	0.9	0.9	327.9	452.4
	수출액	6.5	0.4	0.4	52.2	78.1
쌀	수출량	0.2	0.4	0.3	0.3	-
	수출액	0.2	0.4	0.3	0.4	-
보리	수출량	595.8	396.0	0.2	289.4	371.4
	수출액	58.9	41.2	-	39.1	54.1
옥수수	수출량	7.6	11.0	10.5	127.6	151.2
	수출액	9.9	13.1	15.8	22.3	29.9
귀리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수수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감자	수출량	25.2	172.3	154.9	78.0	39.8
	수출액	1.9	16.1	14.5	6.4	7.4
고구마	수출량	0.3	0.2	0.1	-	-
	수출액	0.1	-	-	-	-
대두	수출량	0.2	-	1.5	-	-
	수출액	-	-	0.7	-	-
매니옥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메밀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오렌지	수출량	150.1	175.9	134.0	193.5	219.4
	수출액	45.2	58.5	51.6	75.9	89.7
레몬	수출량	209.0	163.0	216.8	355.7	277.4
	수출액	75.3	76.9	99.2	169.4	120.4
자몽	수출량	102.8	86.7	116.6	99.0	154.3
	수출액	26.5	32.1	52.0	50.2	83.5
바나나	수출량	-	0.1	0.1	0.1	2.8
	수출액	-	0.1	0.3	0.1	1.2

(표 11-9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사과	수출량	14.5	19.4	20.0	29.0	8.6
	수출액	5.9	9.9	10.0	12.0	3.0
파인애플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포도	수출량	76.9	98.7	159.3	155.6	134.4
	수출액	32.1	51.0	81.7	91.4	107.3
배	수출량	12.8	10.8	5.2	10.0	4.1
	수출액	5.7	6.9	3.9	6.1	2.3
복숭아	수출량	27.6	44.2	20.2	39.3	43.5
	수출액	8.1	24.2	11.8	20.6	20.0
감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고추	수출량	51.7	45.2	52.0	65.1	58.6
	수출액	30.4	40.3	51.0	61.8	57.8
딸기	수출량	-	0.2	0.3	6.3	9.9
	수출액	0.1	0.1	0.3	6.0	9.0
마늘	수출량	0.1	0.1	0.2	0.5	0.6
	수출액	0.1	0.2	0.2	0.2	0.5
생강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수박	수출량	11.4	27.9	17.4	15.7	15.3
	수출액	1.8	7.0	4.2	4.0	4.9
양파	수출량	138.9	137.4	74.3	63.7	102.9
	수출액	13.6	15.7	10.3	6.9	14.9
오이	수출량	21.1	22.7	27.2	31.4	49.0
	수출액	7.9	10.2	12.7	18.0	26.8
토마토	수출량	244.0	227.4	235.4	250.2	246.6
	수출액	67.8	88.1	109.6	145.8	125.7
닭고기	수출량	19.3	24.2	28.6	44.3	4.5
	수출액	11.2	15.3	18.9	32.0	3.0
돼지고기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쇠고기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천연꿀	수출량	15.3	14.8	5.7	2.1	2.5
	수출액	30.7	36.4	16.3	6.6	6.2

(표 11-9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녹차	수출량	4.9	6.7	5.9	5.8	2.7
	수출액	4.8	7.0	6.9	7.0	5.1
땅콩	수출량	0.1	0.3	0.2	0.1	0.2
	수출액	0.1	0.3	0.2	0.2	0.2
참깨	수출량	3.6	4.2	3.8	4.3	4.6
	수출액	4.1	5.1	5.8	6.9	6.4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우리나라와 터키 사이의 농산물 교역은 미미한 수준이다. 수출은 1백만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수입은 2002년 2천 5백만 달러에서 2006년 3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표 11-10. 한국-터키 농산물 교역현황

단위: 백만 USD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	농산물(A)	6.3	2.5	0.9	1.6	1.4
	축산물(B)	-	0.1	-	0.6	1.8
	임산물(C)	-	-	0.1	1.1	0.6
	총계(D=A+B+C)	6.3	2.6	1.0	3.3	3.8
수입	농산물(E)	23.2	13.0	19.6	21.4	25.1
	축산물(F)	0.5	0.5	0.1	0.4	0.9
	임산물(G)	0.9	1.6	2.4	3.2	3.9
	총계(H=E+F+G)	24.6	15.0	22.2	25.0	29.9
무역수지	농산물(A-E)	-16.9	-10.5	-18.7	-19.9	-23.7
	축산물(B-F)	-0.5	-0.4	-0.1	0.2	0.9
	임산물(C-G)	-0.9	-1.5	-2.3	-2.1	-3.3
	총계(D-H)	-18.3	-12.4	-21.1	-21.7	-26.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5. 농산물 관세

터키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미양허 품목 제외)은 45.8%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미양허 품목이 많지만 비종가세 품목이 없이 단순한 관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HS 2단위에서 평균 관세율이 100% 이상되는 품목군은 육류(HS 02류), 낙농품(HS 04류), 곡분 및 전분(HS 11류), 담배(HS 24류) 등이다. 그 밖에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군은 커피·차·향신료, 곡물, 당류, 코코아·초콜릿, 주류 등이다. 반면 낮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은 화훼류, 채소, 조제사료 등이다.

표 11-11. 국가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전체	45.8	18류	66.6
01류	42.0	19류	56.1
02류	173.5	20류	55.7
04류	134.6	21류	50.9
05류	11.4	22류	80.4
06류	24.8	23류	10.5
07류	24.8	24류	113.7
08류	48.3	29류	12.8
09류	71.6	33류	68.4
10류	71.6	35류	68.4
11류	146.3	38류	21.2
12류	43.7	41류	17.2
13류	23.6	43류	25.3
14류	38.0	50류	45.0
15류	16.3	51류	18.5
16류	29.1	52류	13.0
17류	91.8	53류	6.1

주: 종가세, 양허 품목 기준임.

자료: WTO, Comprehensive tariff data on the WTO websit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ariffs_e/tariff_data_e.htm)

육류 가운데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의 관세율은 225%이며, 닭고기 등 가금류의 관세율은 83%이다. 육류 다음으로 평균 관세율이 높은 낙농품은 밀크, 크림, 분유, 연유, 요구르트, 유장, 응고유 등에 대하여는 180%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버터와 치즈는 이보다 낮은 153%와 139.2%를 각각 적용받는다. 과일·은 대부분 농산물의 평균 관세율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자급률이 60%에 머무르는 바나나는 145.8%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채소류와 화훼류에는 평균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보통이다. 차류(HS 0902)의 관세율은 168.3%이지만 HS 09류 가운데 계피, 후추 등의 관세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에는 180%의 관세가 적용된다. 쌀의 관세율은 45%로 다른 곡물류에 비해 상당히 낮다.

당류의 대부분은 100% 이상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토마토페이스트, 조제 저장처리 토마토 등 토마토 가공품(HS 2002)의 관세율은 다른 채소 조제품에 비해 높은 135.9%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주류 가운데 포도주가 다른 주류에 비해 관세율이 낮다. 포도주(HS 2204)의 평균 관세율은 81.8%이고, 기타 주류는 평균 관세율이 102%이다. 잎담배의 관세율은 45%이지만 제조된 담배의 관세율은 150.9%(HS 2403) 또는 145.1%(HS 2404)로 높다. 곡물의 경우 원료의 관세율이 가공품보다 높은 역누진관세를 보이고 있으나 담배는 누진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11-12. 터키의 품목류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0101	19.7	0510	18.0	0902	168.3
0102	68.8	0511	15.6	0903	50.0
0103	54.3	0601	10.7	0904	48.0
0104	50.2	0602	8.4	0905	15.6
0105	39.6	0603	46.8	0906	40.0
0106	15.6	0604	46.8	0907	30.0
0201	225.0	0701	19.3	0908	50.0
0202	225.0	0702	48.6	0909	75.0
0203	225.0	0703	49.5	0910	75.0
0203	225.0	0703	49.5	0910	75.0
0204	225.0	0704	19.5	1001	180.0
0205	225.0	0705	19.5	1002	180.0
0206	225.0	0706	36.9	1003	180.0
0207	83.0	0707	29.7	1004	180.0
0208	180.0	0708	19.5	1005	180.0
0209	42.5	0709	19.5	1006	45.0
0210	112.0	0710	24.4	1007	180.0
0401	180.0	0711	34.8	1008	180.0
0402	180.0	0712	18.6	1101	102.6
0403	180.0	0713	19.3	1102	40.5
0404	180.0	0714	26.9	1103	54.0
0405	153.0	0801	30.0	1104	45.0
0406	139.2	0802	43.2	1105	27.0
0407	44.7	0803	145.8	1106	30.8
0408	53.1	0804	54.3	1107	23.1
0409	38.5	0805	54.0	1108	45.4
0410	23.1	0806	54.9	1109	19.3
0501	7.0	0807	86.4	1201	23.1
0502	6.5	0808	60.3	1202	30.1
0503	2.0	0809	55.8	1203	10.0
0504	7.8	0810	55.8	1204	10.0
0505	27.0	0811	34.5	1205	10.0
0506	5.0	0812	15.4	1206	25.7
0507	6.0	0813	37.4	1207	20.4
0508	5.0	0814	15.6	1208	23.1

(표 11-12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1210	27.0	1604	81.9	2204	81.8
1211	75.0	1605	54.9	2205	102.0
1212	26.5	1701	135.0	2206	102.0
1213	19.3	1702	120.5	2207	102.0
1214	10.0	1703	31.5	2208	102.0
1301	22.4	1704	135.0	2209	39.0
1302	43.2	1801	25.0	2301	4.3
1401	18.3	1802	39.0	2302	13.5
1402	20.0	1803	66.0	2303	4.3
1402	20.0	1803	66.0	2303	4.3
1403	20.0	1804	34.8	2304	13.5
1404	9.2	1805	51.4	2305	13.5
1501	24.2	1806	90.0	2306	13.5
1502	35.8	1901	68.5	2307	13.5
1503	43.5	1902	45.0	2308	4.3
1504	26.4	1903	39.0	2309	8.1
1505	25.8	1904	63.9	2401	45.0
1506	45.8	1905	58.5	2402	150.9
1507	25.4	2001	40.1	2403	145.1
1508	25.4	2002	135.9	2901	15.0
1509	31.2	2003	39.0	2902	14.8
1510	31.2	2004	40.2	2903	12.6
1511	30.8	2005	42.8	2904	미양허 품목
1512	33.7	2006	58.5	2905	12.8
1513	30.6	2007	58.5	2906	8.7
1514	25.4	2008	58.0	2907	11.7
1515	23.1	2009	58.5	2908	11.9
1516	41.5	2101	64.9	2909	12.3
1517	45.2	2102	23.9	2910	13.8
1518	25.7	2103	47.6	2911	11.0
1520	25.0	2104	53.0	2912	16.6
1521	17.5	2105	66.8	2913	11.8
1522	29.2	2106	60.0	2914	11.8
1601	96.3	2201	15.8	2915	12.8
1602	121.5	2202	38.5	2916	12.2

(표 11-12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2918	12.4	3504	11.1	4108	미양허 품목
2919	13.7	3505	38.3	4109	미양허 품목
2920	12.8	3506	미양허 품목	4110	미양허 품목
2921	11.3	3507	미양허 품목	4111	미양허 품목
2922	11.8	3801	14.2	4301	45.0
2923	12.0	3802	미양허 품목	4302	미양허 품목
2924	12.0	3803	15.0	4303	미양허 품목
2925	13.0	3804	12.7	4304	미양허 품목
2926	13.0	3805	13.4	5001	18.4
2926	13.0	3805	13.4	5001	18.4
2927	8.8	3806	41.3	5002	19.5
2928	0.0	3807	13.3	5003	18.0
2929	13.0	3808	26.3	5004	미양허 품목
2930	16.3	3809	16.0	5005	미양허 품목
2931	15.0	3810	14.1	5006	미양허 품목
2932	16.9	3811	17.5	5007	미양허 품목
2933	16.8	3812	13.8	5101	6.0
2934	18.1	3813	14.8	5102	14.0
2935	11.6	3814	14.6	5103	24.0
2936	4.9	3815	14.6	5104	미양허 품목
2937	미양허 품목	3816	13.1	5105	미양허 품목
2938	5.0	3817	14.5	5106	미양허 품목
2939	11.2	3818	0.0	5107	미양허 품목
2940	미양허 품목	3819	14.8	5108	미양허 품목
2941	0.0	3820	15.0	5109	미양허 품목
2942	13.0	3821	23.0	5110	미양허 품목
3301	71.0	3822	15.0	5111	미양허 품목
3302	102.0	3823	20.0	5112	미양허 품목
3303	62.6	3824	15.1	5113	미양허 품목
3304	75.1	4101	14.6	5201	6.0
3305	62.6	4102	36.0	5202	12.0
3306	41.0	4103	36.0	5203	12.6
3307	42.9	4104	미양허 품목	5204	미양허 품목
3501	22.0	4105	미양허 품목	5205	5.0
3502	16.3	4106	미양허 품목	5206	5.0

(표 11-12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5208	미양허 품목	5302	15.0	5307	26.1
5209	미양허 품목	5303	3.0	5308	10.3
5210	미양허 품목	5304	6.5	5309	20.0
5211	미양허 품목	5304	6.5	5310	18.0
5212	미양허 품목	5305	7.2	5311	25.0
5301	12.0	5306	13.6		

주: 종가세, 양허 품목 기준임.

자료: WTO, Comprehensive tariff data on the WTO websit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ariffs_e/tariff_data_e.htm)

6. 한-터키 FTA 협상 추진 동향과 전망

2008년 6월 한-터키 FTA 공동연구가 개시되었으며, 2008년 9월에 제1차 한-터키 공동연구 회의가 개최되었다. 양국 간의 협상 절차는 큰 쟁점 사항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나라의 일부 농산물과 터키의 일부 공산품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감한 분야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식 협상이 개시되면 타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민감 농산물은 곡물 가운데 감자와 보리, 과일류 가운데 오렌지, 포도, 복숭아, 채소류 가운데 고추와 양파, 과채류 가운데 토마토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축산물은 상대적으로 민감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 12장

러 시 아

1. 역사

러시아 제국은 19세기까지 시베리아로부터 동유럽에 이르는 대제국이 되어 유럽 열강의 일원이 되었다. 국민의 80% 이상은 러시아인이다. 해외 진출을 위해 부동항을 얻기 위한 남하정책을 추진하여 터키 등 주변국들과 전쟁을 일으켰고, 영국과의 대립이 심해졌다. 극동에서는 연해주를 중국(청나라)으로부터 획득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세우고,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했다. 극동에서의 강경한 남하정책의 결과, 일본과의 전쟁(러일전쟁)이 일어났다.

제1차 세계 대전 중인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는 무너지고 혁명 뒤 내전에서 승리한 블라디미르 레닌이 인솔하는 볼셰비키의 혁명에 의해서, 1924년에 소비에트 연방(소련)이 건국되었다. 러시아 제국을 계승한 소련을 구성하는 15개 공화국 가운데 러시아인이 다수파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지역은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되었고, 이때 현재의 러시아 연방의 영역이 거의 확정되었다.

1924년 레닌의 사망으로 권력을 잡은 스탈린이 트로츠키파를 숙청하고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그는 일국 사회주의 건설과 소련의 온전한 경제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에서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공업화와 농업근대화를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사기업을 폐지하고 국가 주도의 제1차 5개년계획(1928~1932)과 농업의 집단화가 실시되었다. 스탈린은 계속된 12-3차 5개년 계획기간에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1937년에는 농업집단화를 완료하여 토지의 99%를 콜호스 소유로 만들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소련은 초강대국으로 성장하여 미국과 대립하는 구도를 형성했지만 계획경제와 공산주의의 모순을 드러내게 되었다. 1980년대에 소련의 지도자가 된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냉전을 종결시키는 한편 개혁에 임했지만 각지에서 민족주의가 분출하게 되었다. 1991년 12월 26일에 소련은 붕괴해 러시아는 구소련 구성국의 연합체인 독립국가연합(CIS) 가맹국의 하나가 되었다. 러시아는 구소련이 가지고 있던 국제적인 권리(상임이사국 등)와 국제법 상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승계하였다. 보리스 옐친 정부 하에서는 자본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1999년 당시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에 의해 총리로 지명되었으며, 그해 12월 31일 옐친이 사임하면서 총리로서 대통령직을 대행하다가 2000년 3월 26일 대선에서 러시아의 2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2008년까지 집권하였다. 푸틴은 러시아의 혼란을 수습하고 재건을 이끌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2008년 3월 총선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러시아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러시아의 국토는 매우 넓어, 북동유럽에서 우랄 지역을 거쳐 시베리아와 극동 지방에 이른다. 총면적은 1,700만 km^2 이다(미국의 약 2배). 동서 두 지점사이의 시차는 11시간이다. 4,000m를 넘는 고봉과 낮고 광대한 평원이 어우러져 있다. 기후는 한대, 아열대, 툰드라, 스텝, 사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러시아에는 지형·기후가 같은 토지가 널리 펼쳐져 있기 때문에, 식물이나 토양도 이에 대응하여 동서로 길게 분포되어 있다. 국토의 북부는 툰드라 지대로 러시아 전면적의 5%를 차지한다. 이곳은 이끼류가 무성하고, 수목은 일반적으로 적으며 순록의 사양 정도가 가능하다. 그 남부는 수림이 혼합된 폭이 좁은 삼림 툰드라지대를 거쳐, 삼림대로 이행한다.

삼림대는 러시아 국토의 약 30%를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북부의 침엽수림대와 남부의 활엽수림대가 섞인 혼합림대로 나뉜다. 삼림대의 남쪽 가장자리는 점이적 삼림 스텝대, 더 남쪽으로 가면 삼림이 점차 줄어들어 초원 스텝대로 이행한다. 스텝대는 러시아의 서부 국경으로부터 동방은 알타이 산지까지 연속되고 있다. 이 지역은 연강수량이 200~500mm에 불과하다. 따라서 건조한 기후에 잘 견딜 수 있는 곡물을 재배하는 한편 가축 사육이 많다. 밀, 사탕무, 해바라기 등의 농작물 재배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러시아의 곡창 지대이다.

러시아는 매우 한랭하고 긴 겨울, 서늘하고 짧은 여름을 가지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남쪽의 중앙아시아에 발달한 산악지대가 습윤한 아열대성 기단을, 또 동쪽의 험준한 습곡산지가 태평양의 해양성 기단을 차단하며 서쪽의 대서양 기단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 지역이 겨울에는 급속히 추워지는 반면 여름에는 급속히 기온이 상승한다. 대부분 지역의 강수량이 500mm 이하인 가운데, 유럽 러시아와 동시베리아에서는 500mm, 시베리아 중부 400mm, 북극해·카스피해 부근에서는 250mm 이하의 강수량 분포를 보인다. 러시아는 밀, 감자, 옥수수, 사탕무, 해바라기 등 곡물 이외에도 포도를 비롯한 과일과 육류, 양모 등의 생산량도 많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농업 생산의 감소로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집단 국영 농장의 생산 감소에서 기인한다.

2. 주요 경제지표

러시아의 인구는 1억 4,322만 명(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배에 달한다. 농가인구(FAO의 정의에 따르면 농업인구 즉, agriculture population)는 1,312만 명(200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9%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농가인구 비율은 7.1%(2005년 기준)이다. 국토면적은 17억 982만 ha이며, 이 가운데 13%인 2억 1,568만 ha가 농경지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에서 경지가 차지

하는 비율이 18%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국토면적은 러시아가 170배 정도 넓고, 경지면적은 120배 넓다.

러시아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9,869억 달러(2006년 기준)로 2002년에 비해 2.9배(연평균 46.4%) 증가하였다. 국민 1인당 GDP는 6,877 달러이다. 2006년 우리나라의 GDP는 8,887억 달러, 1인당 GDP는 18,401 달러이다. 러시아의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11% 정도 크지만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37% 수준이다.

러시아의 대외교역 규모는 수출 3,016억 달러(2006년 기준), 수입 1,377억 달러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 무역수지(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2002년에는 605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1,638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외교역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수출 3,255억 달러, 수입 3,094억 달러로 수출은 러시아와 비슷하지만 수입은 러시아의 2.4배에 달한다. 전체 교역규모는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1.45배 수준이다.

표 12-1. 러시아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2002	2003	2004	2005	2006
인구(A)	1000명	146,159	145,438	144,695	143,953	143,221
농촌거주인구		38,860	38,710	38,521	38,263	-
농업인구(B)		14,407	13,965	13,536	13,123	-
농업인구비중(A/B)	%	10	10	9	9	-
국토면적(C)	1000ha	1,709,824	1,709,824	1,709,824	1,709,824	1,709,824
경지면적(D)		216,651	216,277	215,980	215,680	215,680
경지면적비중(C/D)	%	13	13	13	13	13
GDP	백만 USD	345,471	431,487	591,742	764,501	986,940
1인당 GDP	USD	2,364	2,967	4,089	5,310	6,877
수출(E)	백만 USD	106,692	133,656	181,600	241,452	301,551
수입(F)		46,177	57,346	75,569	98,707	137,728
경상수지(E-F)		60,515	76,310	106,031	142,744	163,823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3. 농산물 수급

러시아의 곡물 자급률은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100% 이상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작물인 밀의 경우 2006년에 생산은 4,500만 톤, 소비는 3,670만 톤으로 자급률은 123%를 나타냈다. 1천 만 톤 정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밀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것은 감자이다. 감자의 생산량은 3,857만 톤, 소비량은 3,888만 톤, 자급률은 99%이다. 감자는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리의 생산량은 1,815만 톤, 소비량은 1,707톤으로 자급률은 106%이다.

쌀 생산량은 69만 톤에 불과하고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옥수수는 자급률 100% 이하의 대표적인 품목이다. 옥수수는 367만 톤이 생산되었으나 소비량은 391만 톤으로 자급률 94%를 나타냈다. 2002년의 경우 옥수수 자급률은 78%에 불과하였다. 그 밖에 대두와 메밀이 각각 80만 톤, 90만 톤 정도 생산되며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이다.

표 12-2. 러시아의 식량작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생산량(A)	50,609	34,104	45,413	47,698	45,006
	소비량(B) ¹⁾	40,615	27,157	42,105	37,955	36,699
	자급률(A/B)	125	126	108	126	123
쌀	생산량(A)	490	451	471	575	686
	소비량(B) ¹⁾	486	449	471	567	681
	자급률(A/B)	101	100	100	101	101
보리	생산량(A)	18,739	18,003	17,180	15,791	18,154
	소비량(B) ¹⁾	15,883	15,177	16,664	14,275	17,074
	자급률(A/B)	118	119	103	111	106
옥수수	생산량(A)	1,563	2,122	3,516	3,211	3,669
	소비량(B) ¹⁾	2,010	2,319	3,945	3,342	3,909
	자급률(A/B)	78	92	89	96	94

(표 12-2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귀리	생산량(A)	5,694	5,183	4,955	4,565	4,880
	소비량(B) ¹⁾	5,691	5,184	4,967	4,567	4,877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수수	생산량(A)	27	33	44	28	35
	소비량(B) ¹⁾	27	33	44	28	35
	자급률(A/B)	100	100	100	100	100
감자	생산량(A)	32,871	36,747	35,914	37,280	38,573
	소비량(B) ¹⁾	33,054	37,233	36,054	37,630	38,876
	자급률(A/B)	99	99	100	99	99
고구마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	-	-	-	-
	자급률(A/B)	-	-	-	-	-
대두	생산량(A)	423	393	555	689	807
	소비량(B) ¹⁾	487	408	552	723	806
	자급률(A/B)	87	96	101	95	100
매니옥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	-	-	-	-
	자급률(A/B)	-	-	-	-	-
메밀	생산량(A)	302	525	650	606	866
	소비량(B) ¹⁾	305	598	677	602	853
	자급률(A/B)	99	88	96	101	101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러시아는 국토가 넓고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걸쳐 있지만 기후적 특성으로 열대성 과일은 생산되지 않는다. 온대성 과일 가운데에서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이 생산되지만 사과를 제외하면 다른 과일 생산 실적은 미미하다. 2006년 사과 생산량은 160만 톤에 머물렀지만 200만 톤까지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2004년 생산량 205만 톤). 소비량은 250만 톤 수준으로 자급률은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과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포도는 30만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자급률은 50%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배와 복숭아의 생산 실적은 미미하다. 따라서 배와 복숭아의 자급률은 각각 17%와 14%를 나타냈다.

표 12-3. 러시아의 과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오렌지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359	397	393	384	501
	자급률(A/B)	-	-	-	-	-
레몬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142	152	164	176	205
	자급률(A/B)	-	-	-	-	-
자몽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33	32	45	45	56
	자급률(A/B)	-	-	-	-	-
바나나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641	787	844	851	882
	자급률(A/B)	-	-	-	-	-
사과	생산량(A)	1,950	1,700	2,047	1,800	1,609
	소비량(B) ¹⁾	2,311	2,307	2,750	2,520	2,418
	자급률(A/B)	84%	74%	74%	71%	67%
파인애플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19	22	25	23	26
	자급률(A/B)	-	-	-	-	-
포도	생산량(A)	217	348	318	333	243
	소비량(B) ¹⁾	317	503	576	624	564
	자급률(A/B)	69	69	55	53	43
배	생산량(A)	90	74	95	74	68
	소비량(B) ¹⁾	252	284	352	384	391
	자급률(A/B)	36	26	27	19	17
복숭아	생산량(A)	45	40	42	38	22
	소비량(B) ¹⁾	107	93	119	139	154
	자급률(A/B)	42	43	35	27	14
감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	-	-	-	-
	자급률(A/B)	-	-	-	-	-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양념채소류 가운데 고추는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 양파의 생산량은 179만 톤, 소비량은 233만 톤으로 자급률은 77%이다. 마늘은 26만 톤 정도가 생산되어 자급률은 87% 수준이다. 과채류 가운데에서는 토마토의 생산이 가장 많다. 토마토 생산량은 242만 톤이나 소비량 283만 톤에는 미치지 못한다. 오이 생산량은 142만 톤, 자급률은 95%이다. 그 밖에 딸기와 수박이 각각 24만 톤, 10만 톤 정도 생산되지만 자급률은 93~94% 수준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채소와 과채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서 자급자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표 12-4. 러시아의 과채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추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31	48	63	67	76
	자급률(A/B)	-	-	-	-	-
딸기	생산량(A)	195	199	207	221	235
	소비량(B) ¹⁾	191	194	214	234	254
	자급률(A/B)	102	102	97	94	93
마늘	생산량(A)	230	220	236	257	256
	소비량(B) ¹⁾	257	269	280	298	293
	자급률(A/B)	89	82	84	86	87
생강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	-	-	-	-
	자급률(A/B)	-	-	-	-	-
수박	생산량(A)	857	932	920	965	986
	소비량(B) ¹⁾	880	997	985	1,020	1,043
	자급률(A/B)	97	94	93	95	94
양파	생산량(A)	1,402	1,565	1,673	1,759	1,789
	소비량(B) ¹⁾	1,828	2,151	2,231	2,259	2,328
	자급률(A/B)	77%	73%	75%	78%	77%
오이	생산량(A)	1,174	1,312	1,322	1,414	1,423
	소비량(B) ¹⁾	1,193	1,337	1,366	1,471	1,503
	자급률(A/B)	98	98	97	96	95
토마토	생산량(A)	1,980	2,021	2,018	2,296	2,415
	소비량(B) ¹⁾	2,155	2,229	2,309	2,648	2,828
	자급률(A/B)	92	91	87	87	85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러시아의 육류 생산과 소비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은 닭고기로 280만 톤 수준이며, 생산량은 160만 톤으로 자급률이 57%에 불과하다. 돼지고기는 164만 톤이 생산되고 216만 톤이 소비되어 자급률은 76%이다. 쇠고기의 생산과 소비는 각각 171만 톤과 197만 톤이다. 쇠고기 자급률은 86%이다. 천연꿀은 5만 5천 톤 정도가 생산, 소비되고 있다.

표 12-5. 러시아의 축산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닭고기	생산량(A)	938	1,030	1,152	1,346	1,580
	소비량(B) ¹⁾	2,142	2,104	2,152	2,550	2,758
	자급률(A/B)	44	49	54	53	57
돼지고기	생산량(A)	1,583	1,706	1,643	1,520	1,641
	소비량(B) ¹⁾	2,185	2,242	2,039	2,024	2,157
	자급률(A/B)	72	76	81	75	76
쇠고기	생산량(A)	1,957	1,990	1,951	1,794	1,705
	소비량(B) ¹⁾	2,102	2,099	2,136	2,053	1,974
	자급률(A/B)	93	95	91	87	86
천연꿀	생산량(A)	49	48	53	52	55
	소비량(B) ¹⁾	50	50	53	52	55
	자급률(A/B)	99	96	99	100	100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녹차, 땅콩, 참깨 등은 생산과 소비가 미미하다.

표 12-6. 러시아의 특작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녹차	생산량(A)	1	1	1	1	1
	소비량(B) ¹⁾	165	167	168	174	165
	자급률(A/B)	1	1	1	1	1
땅콩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83	80	89	92	96
	자급률(A/B)	-	-	-	-	-
참깨	생산량(A)	-	-	-	-	-
	소비량(B) ¹⁾	3	4	5	6	5
	자급률(A/B)	-	-	-	-	-

주: 1)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4. 농산물 교역

러시아는 농산물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2%에서 2006년 1%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20%에서 2006년 14%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 수입 비중은 3.4% 수준이다.

농산물 수출액은 2002년 18억 달러에서 2006년 44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34.4%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농산물 수입액은 같은 기간에 93억 달러에서 191억 달러로 연평균 26.3% 증가하였다. 농산물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높지만 무역수지 적자는 2002년 75억 달러에서 2006년 147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러시아는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큰 나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2-7. 러시아의 교역지표

단위: 백만 USD, %

	2002	2003	2004	2005	2006
총수출액(A)	106,692	133,656	181,600	241,452	301,551
농업수출액(B)	1,836	2,332	2,190	3,448	4,365
농업수출액 비중(A/B)	2	2	1	1	1
총수입액(C)	46,177	57,346	75,569	98,707	137,728
농업수입액(D)	9,336	10,963	12,316	15,384	19,060
농업수입액 비중(C/D)	20	19	16	16	14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 ¹⁾	3	4	4	5	7

주: 1)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 = $\frac{\text{농업수출액} + \text{농업수입액}}{GDP} \times 100$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UN(<http://data.un.org>)

곡물류 가운데 공급 부족으로 수입 규모가 큰 것은 옥수수와 감자 정도이다. 다른 곡물의 경우 수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출이 더 많아 수출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옥수수 수입량은 2006년 30만 톤 수준이다. 감자는 37만 톤이 수입되었다. 밀과 보리의 수입이 각각 140만 톤, 19만 톤에 달하지만 수출량은 더 많다. 대두의 수입은 거의 없다. 따라서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곡물의 자급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밀과 보리는 수출이 가능한 수준이다.

러시아는 사과, 포도 등 일부 과일을 제외하면 생산량이 많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과일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오렌지와 레몬의 수입량은 각각 51만 톤, 21만 톤에 달한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의 수입 규모는 각각 89만 톤, 3만 톤이다. 배와 복숭아 수입량은 각각 32만 톤, 13만 톤이다. 국내 생산이 많은 사과와 포도의 경우에도 수입량은 각각 81만 톤, 32만 톤에 달한다.

채소류 가운데 수입 규모가 큰 것은 양파와 토마토이다. 양파와 토마토의 수입량은 각각 54만 톤, 41만 톤이다. 그 밖에 고추, 딸기, 생강, 마늘 등도 수입되지만 수입량은 미미하다. 오이와 수박 수입량은 각각 8만 톤, 7만 톤이다.

육류의 자급률이 낮고 수입 규모가 크다. 닭고기 수입 규모는 118만 톤(8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수입 규모는 각각 52만 톤(12억 달러), 27만 톤(7억 달러) 수준이다.

특용작물 가운데 녹차와 땅콩이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 규모는 땅콩 10만 톤, 녹차 17만 톤 수준이다.

러시아가 수출하는 농산물은 주로 곡물(밀, 보리)이며, 과일, 채소, 축산물 등은 순수입국이다. 밀의 수출 규모는 1천만 톤에 달한다(14억 달러). 보리는 130만 톤(1억 6천 만 달러) 정도가 수출되고 있다. 러시아의 밀, 보리 수출은 국내 생산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2002년과 2003년의 경우 보리 수출량은 3백만 톤을 넘기도 하였다.

표 12-8. 러시아의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USD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수입량	264.8	640.7	1,364.1	577.1	1,397.4
	수입액	24.2	69.4	210.7	67.7	156.4
쌀	수입량	0.2	0.2	1.9	0.4	-
	수입액	0.1	-	0.3	0.1	-
보리	수입량	170.6	272.8	439.0	251.5	187.8
	수입액	23.8	39.3	67.1	42.7	27.6
옥수수	수입량	448.9	209.5	448.8	200.6	295.5
	수입액	47.1	30.3	75.1	36.6	67.8
귀리	수입량	0.3	1.5	13.5	4.1	0.5
	수입액	-	0.1	1.5	0.4	0.1
수수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감자	수입량	193.0	508.0	161.2	376.6	370.9
	수입액	31.7	86.3	32.8	87.4	96.1
고구마	수입량	-	0.1	-	0.1	0.1
	수입액	-	-	-	-	-
대두	수입량	64.4	16.0	1.2	39.9	3.1
	수입액	12.8	4.5	0.3	10.0	1.2
매니옥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메밀	수입량	3.4	72.5	28.0	-	-
	수입액	0.4	6.8	1.8	-	-
오렌지	수입량	361.7	403.8	398.7	391.1	509.8
	수입액	117.4	138.5	154.5	195.1	281.4
레몬	수입량	144.0	155.4	166.3	179.8	209.6
	수입액	49.5	57.5	68.3	89.4	121.5
자몽	수입량	33.0	32.4	44.8	45.6	56.5
	수입액	10.2	10.4	16.4	22.4	33.2
바나나	수입량	650.0	802.1	858.1	863.5	894.2
	수입액	199.6	272.7	359.3	450.5	480.1
사과	수입량	362.1	608.3	705.3	723.6	812.7
	수입액	113.8	197.9	237.4	294.9	351.1
파인애플	수입량	18.6	21.8	24.7	22.9	26.1
	수입액	7.6	9.4	12.8	13.6	18.5

(표 12-8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포도	수입량	99.7	154.5	257.5	291.2	320.7
	수입액	46.1	80.5	151.8	210.6	342.7
배	수입량	162.0	210.6	257.2	311.2	324.4
	수입액	55.8	76.0	103.4	154.2	201.0
복숭아	수입량	61.7	52.9	76.8	100.6	132.3
	수입액	26.8	25.0	45.6	61.7	91.1
감	수입량	-	-	-	-	-
	수입액	-	-	-	-	-
고추	수입량	30.6	47.6	63.4	66.9	76.0
	수입액	12.2	19.3	30.8	41.4	72.3
딸기	수입량	2.6	2.8	7.4	13.5	18.8
	수입액	1.9	2.1	6.7	15.7	25.6
마늘	수입량	27.1	49.1	43.7	41.1	37.1
	수입액	8.7	16.3	17.3	18.3	16.6
생강	수입량	0.2	0.3	0.3	0.4	0.5
	수입액	0.1	0.2	0.2	0.3	0.6
수박	수입량	29.4	79.8	81.3	70.1	70.8
	수입액	5.3	12.8	15.8	21.1	33.6
양파	수입량	425.8	588.3	560.5	500.5	539.1
	수입액	58.0	84.9	88.6	113.7	135.2
오이	수입량	19.9	25.0	44.1	57.4	79.8
	수입액	7.8	11.3	21.5	32.6	52.4
토마토	수입량	176.1	207.8	291.4	351.8	413.6
	수입액	64.0	89.6	139.5	216.2	298.4
닭고기	수입량	1,205.5	1,073.7	999.4	1,204.0	1,178.2
	수입액	720.3	630.7	601.8	777.6	817.9
돼지고기	수입량	602.0	535.3	395.2	503.7	516.0
	수입액	676.6	653.9	552.1	743.7	1,189.2
쇠고기	수입량	144.5	109.1	184.4	259.4	269.3
	수입액	172.5	138.0	267.2	385.4	670.1
천연꿀	수입량	0.5	2.3	0.9	0.5	0.4
	수입액	0.4	1.5	0.9	0.6	0.5
녹차	수입량	165.3	168.9	172.1	179.6	172.9
	수입액	228.7	244.8	292.2	313.1	354.4
땅콩	수입량	82.9	80.5	88.9	92.5	96.2
	수입액	24.1	28.1	49.7	50.5	68.3
참깨	수입량	2.8	4.0	4.6	5.8	5.1
	수입액	2.0	2.5	2.3	2.7	4.4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표 12-9. 러시아의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USD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밀	수출량	10,259.3	7,587.9	4,672.2	10,319.6	9,704.6
	수출액	773.1	779.3	536.0	1,134.3	1,368.5
쌀	수출량	4.0	2.4	2.3	7.9	5.5
	수출액	0.5	0.3	0.4	1.6	0.8
보리	수출량	3,026.2	3,099.0	955.0	1,767.7	1,267.9
	수출액	214.3	301.9	105.2	202.7	158.1
옥수수	수출량	1.8	12.8	19.6	69.5	55.5
	수출액	0.3	1.3	2.3	6.6	8.8
귀리	수출량	3.4	1.2	1.0	1.7	3.5
	수출액	0.2	0.1	0.1	0.2	0.5
수수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감자	수출량	9.7	21.6	21.7	26.6	67.9
	수출액	1.2	2.7	2.4	3.3	9.9
고구마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대두	수출량	0.1	1.1	4.3	5.6	3.2
	수출액	-	0.2	1.4	1.9	1.0
매니옥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메밀	수출량	1.3	0.3	0.6	4.1	12.3
	수출액	0.2	0.1	0.3	1.2	4.7
오렌지	수출량	3.2	6.9	5.7	7.2	9.4
	수출액	1.6	5.0	3.5	4.2	5.6
레몬	수출량	2.0	3.4	2.6	3.6	4.3
	수출액	1.1	2.9	2.1	2.0	2.7
자몽	수출량	0.1	0.1	0.1	0.1	0.1
	수출액	0.1	0.1	0.1	0.1	0.1
바나나	수출량	9.2	15.0	14.2	12.1	12.0
	수출액	3.9	9.2	6.7	6.3	7.3
사과	수출량	1.2	1.3	2.3	3.6	3.4
	수출액	0.5	0.8	0.7	1.7	2.0
파인애플	수출량	-	-	0.1	0.1	0.1
	수출액	0.1	0.1	0.1	0.1	0.1
포도	수출량	-	-	-	0.1	0.2
	수출액	-	0.1	0.1	0.1	0.2

(표 12-9 계속)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배	수출량	0.1	0.2	0.1	0.8	1.4
	수출액	0.1	0.2	0.1	0.5	1.0
복숭아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감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고추	수출량	0.1	0.1	0.1	0.2	0.1
	수출액	0.1	0.1	0.1	0.1	0.1
딸기	수출량	5.9	7.5	-	-	-
	수출액	4.8	8.6	-	-	-
마늘	수출량	-	-	-	-	0.1
	수출액	-	-	-	-	0.1
생강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수박	수출량	7.1	15.7	16.5	14.9	13.3
	수출액	0.9	1.7	2.0	1.7	1.9
양파	수출량	0.1	1.6	3.1	0.6	0.3
	수출액	-	0.4	0.5	0.1	0.1
오이	수출량	0.3	0.3	0.1	0.1	-
	수출액	0.1	0.2	0.1	0.1	-
토마토	수출량	0.4	0.1	-	-	-
	수출액	0.1	0.1	-	-	-
닭고기	수출량	1.0	0.6	0.1	0.2	0.3
	수출액	1.1	0.5	0.1	0.3	0.5
돼지고기	수출량	-	-	-	-	0.1
	수출액	-	-	-	-	0.3
쇠고기	수출량	-	0.1	-	-	-
	수출액	-	0.1	0.1	-	-
천연꿀	수출량	0.1	0.3	0.3	0.3	0.2
	수출액	0.2	0.6	0.6	0.7	0.7
녹차	수출량	1.8	3.0	5.8	6.7	8.5
	수출액	4.7	8.7	23.0	33.1	44.8
땅콩	수출량	-	0.1	-	0.1	-
	수출액	-	0.1	-	0.1	0.1
참깨	수출량	-	-	-	-	-
	수출액	-	-	-	-	-

자료: FAO, STAT(<http://faostat.fao.org>)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이의 농산물 교역 실적은 미미하다. 농림축산물 전체 수출은 2억 1천만 달러, 수입은 1억 9천만 달러 정도로 무역수지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품목류별로 보면 교역 유형에 차이가 크다. 농산물은 수출(1억 6,500만 달러) 위주이고 임산물은 수입(1억 8,300만 달러) 위주이다. 축산물은 4천만 달러 정도가 수출되었다. 러시아와의 FTA로 인한 수입 증가 우려가 있는 품목은 곡물류 가운데 보리, 감자, 과일 가운데 사과, 포도, 채소류 가운데 토마토, 양파 등으로 볼 수 있다.

표 12-10. 한국-러시아 농산물 교역현황

단위: 백만 USD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	농산물(A)	111.8	122.6	140.9	149.4	165.9
	축산물(B)	22.0	33.6	32.7	51.8	39.0
	임산물(C)	0.7	1.2	1.9	2.7	2.6
	총계(D=A+B+C)	134.5	157.4	175.4	203.8	207.5
수입	농산물(E)	0.4	12.9	1.6	0.5	1.1
	축산물(F)	8.9	6.5	12.2	10.5	9.9
	임산물(G)	109.9	111.8	147.2	165.7	183.3
	총계(H=E+F+G)	119.1	131.2	161.0	176.7	194.4
무역수지	농산물(A-E)	111.4	109.7	139.3	148.9	164.8
	축산물(B-F)	13.1	27.1	20.5	41.2	29.1
	임산물(C-G)	-109.1	-110.6	-145.3	-163.0	-180.7
	총계(D-H)	15.4	26.2	14.4	27.1	13.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참고 문헌

- 김경필 외. 2006. 「과실 수입 파급영향 분석과 대응방안」. C2006-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도형 외. 1999.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동훈 외. 「FTA 세이프가드 규정에 관한 연구: 동북아시아 FTA의 일반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분석과 한중일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방향 및 국내법적 대응」. 현안분석 2008-34. 비교법제 연구 08-03. 한국법제연구원.
- 김완배 외. 2008.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 김한호 외. 2004. 「한-캐나다 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대학교.
- 김홍중 외. 2005.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 방안」. 정책연구 05-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혜정 외. 2006. 「한-MERCOSUR FTA 영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남영숙 외. 2004.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FTA협동연구시리즈 04-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신재근. 2007. 「EU 농산물의 경쟁력과 FTA 시사점」.
- 송송이. 2005. 「원산지 규정의 이해와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무역연구소. 무역조사보고서 2005-06.
- 정인교. 2000.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구상: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미진 외. 2008.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8-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양평섭 외. 2007.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 07-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어명근 외. 2004. 「한-중·일 FTA 농업부문 파급효과 계측」.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FTA 협동연구시리즈 04-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 외. 2006a. 「한-중 FTA 영향 분석」. C2006-9-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 외. 2006b. 「중국의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 R5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 외. 2006c. 「한-EU FTA 영향분석」. C2006-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 외. 2008a.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한 농산물 양허전략 연구」. C2008-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 외. 2008b. 「한-중 FTA 농업부문의 예상 쟁점과 대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03-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대섭 외. 2008. 『한-호주, 뉴질랜드 FTA 추진 대비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C2008-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명헌 외. 2007. 『한-EU FTA 농업부문 협상전략 수립』. 인천대학교.
- 이장규 외. 2006.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06-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송수 외. 2008. 『한-GCC FTA 협상 대비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C2008-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정빈. 2007. “한-EU FTA 농업협상의 쟁점과 대책.”
- 최세균 외. 2002a.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외. 2002b.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농업분야 대응방안』. C2002-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외. 2004. 『한-일 FTA 농업분야 파급영향 및 협상전략』. R47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외. 2006. 『농업부문 FTA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한-캐나다, 한-멕시코』. C2006-9-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외. 2006. 『농업부문 FTA 추진전략 연구 및 DB구축』. C200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中國農業部. 2006. 『中國農產品貿易發展報告』. 中國農業出版社.
- 中國農業部. 2008.2.4. “2007年我國農產品進出口情況”.
- 中國農業部. 市場監測信息(<http://www.agri.gov.cn/xxfb/>)
- 中國農業部. 2006. 『2005 全國農業統計摘要』.
- 中國統計出版社. 各년도. 『中國農村統計年鑑』.
- 中國國家統計局. 2008.2.28. “2007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 어명근, 이재옥, 최윤국(1999).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99-35-1.
- 어명근, 강혜정(2006). 『한-캐나다 FTA 협상 대응방안; 국별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6-9-5.
- 최세균, 어명근, 서진교, 박준기, 이병훈(2002).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52.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004, 2007, 2008
- _____. 양정자료. 각 연도.
- 농림축수산물수출입통계시스템(<http://www.maf.go.kr>)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fmc.co.kr/kor/index.jsp>)
-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농촌진흥청. 『농축산표준소득자료』. 각 연도.
농협. 『농협조사월보』. 각 월호.
주캐나다 한국대사관(<http://www.emb-korea.ottawa.on.ca>)
캐나다. Customs Tariff, 2004. 1.
캐나다-미국 FTA 협정문(<http://www.dfait.gc.ca>)
캐나다-칠레 FTA 협정문(<http://www.dfait.gc.ca>)
캐나다 농업부(<http://www.agr.gc.ca/caisprogram>)
캐나다 통계청(<http://www40.statcan.ca>)
한국무역협회. 『주요무역동향지표』 2005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사이트(<http://china.kita.net>)
FAO. FAOSTAT (www.fao.org).
NAFTA 협정문(<http://www.dfait.gc.ca/nafta-alena>)
WTO(<http://www.wto.org>)

정책연구보고 P112
주요국과의 농업부문 FTA 추진현황과 전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9. 3.
발 행 2009. 3.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